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000454-01

국어 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 체계 정비 연구

2012. 12.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국어 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 체계 정비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2.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유 환

《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이 세 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 상 윤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 의 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 귀 현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목 차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5
1. 연구의 방법	15
2. 연구의 구성	16
제 2 장 주요 외국의 언어 발전 · 진흥 관련 정책 및 법제	17
제 1 절 미 국	17
1. 이중언어교육법	18
2. 라우(Lau) 판결 이후의 후속 판결	24
3. 낙오아동방지법	27
4. 쉬운 영어 사용에 관한 법률	31
제 2 절 프랑스	43
1. 개 관	43
2. 구체제하에서의 프랑스어 정책 및 법제	44
3. 현대의 프랑스어 정책 및 법제	48
4. 공공언어 개선 및 전문용어 표준화	55
5. 프랑스어 교육과 보급	57
제 3 절 중 국	63
1. 중국의 언어 정책 방향	63
2.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제정	64
3. 전문용어 표준화	64
4. 중국어 해외 보급	67
제 4 절 일 본	83
1. 일본의 국어(일본어) 정책 기관	83
2. 다문화 관련 언어 정책	86
3. 일본어 해외 보급	90

제 3 장 국어책임관 제도 실효성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전문가 초점	
집단 인터뷰(FGI)	97
제 1 절 조사 개요	97
1. 조사 목적	97
2. 조사 설계	97
제 2 절 연구 방법	99
1.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99
2. 초점 집단 인터뷰의 실시	100
제 3 절 조사 결과	104
1. 제도 인식과 문제점	104
2.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평가	108
3. 국어전문관제(가칭)에 대한 의견	110
4.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112
제 4 장 국어기본법 정비 방안	115
제 1 절 국어기본법의 연혁	115
제 2 절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119
1. 개 관	119
2. 국어기본법의 구성 체계	120
3. 국어기본법의 법적 성격 및 기능	121
4. 국어기본법 개별 조문의 주요 내용	133
제 3 절 국어기본법 주요 정비 사항 및 정비안	156
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제1안)	157
2. 국어기본법 전부개정안(제2안)	184
3. 향후 정비 사항	209
제 4 절 국어·한글 사용 관련 법령 정비 사항 및 정비안	210
1. 정비 사항	210
2. 정비안	210

제 5 장 국어기본법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 방안	215
제 1 절 국어기본법 시행령 정비 방안	215
1. 연 혁	215
2. 주요 내용	215
3. 정비안	217
4. 향후 정비 사항	249
제 2 절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정비 방안	250
1. 연 혁	250
2. 주요 내용	250
3. 주요 정비 사항 및 정비안	250
참 고 문 헌	265

《부 록》

【부록 1】 ‘국어’·‘한글’ 사용에 관한 현행 법령 입법례	273
【부록 2】 ‘국어’·‘한글’ 사용에 관한 현행 행정규칙 입법례	367
【부록 3】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2일 법률 전문(투봉법)	421
【부록 4】 2008-2011년 문화공보부 불어총무처 연례보고서 목차	429
【부록 5】 中华人民共和国 国家通用语言文字法	433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437
【부록 6】 전문가 초점 집단 인터뷰(FGI) 지침서	441
【부록 7】 부처별 소관 기본법 입법 체계	443
【부록 8】 국어기본법 개정안 (제1안)	533
【부록 9】 국어기본법 개정안 (제2안)	543
【부록 10】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553
【부록 11】 국어심의회운영세칙 개정안	56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외래어·외국어의 오용·남용, 규범에 맞지 않는 인터넷 통신언어의 사용 확산 등 국어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영어 조기교육 등으로 국어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하는 등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이 점차 저하됨에 따라 국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국민에게 국어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류 열풍,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으로 언어 사용 계층이 다양화되고 국내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타 문화권과의 언어·문화 교류의 강화와 정보 소통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어 보급 정책을 강화하는 등 언어권역을 확장하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문화를 통한 한국어 보급 전략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어 사용·보급 등에 관한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2005년 1월 27일 자로 「국어기본법」(법률 제 7368호)이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국어기본법」 시행 전에는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서 국어에 관한 사항을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세계화·정보화·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에 관한 기본법의 부재로 국어 정책의 수립·시행에 한계가 있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의 국외 보급 및 국어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국어기본법」 제정 전의 국어 정책의 근거법이었던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1948년 제정된 이래 56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으로 운영되어 왔고, 국어 관련 법 규정들이 「문화예술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국어의 진흥과 보전에 많은 어려움

이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의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기존의 국어 관련 조항들을 수정·보완하여 「국어기본법」을 제정한 것이다.

「국어기본법」은 제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본법’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현행 법제상 기본법은 정책 입법·프로그램 입법으로서의 기능과 성격을 가지는 독특한 입법 형식, 즉 당해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의 정비를 도모하는 입법 유형을 말한다.

「국어기본법」 역시 기본법으로서 국어 정책의 기본 이념 및 방향, 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국가 등의 책무, 제도적 목적 달성을 위한 관련 개별법의 해석·적용 기준, 국어 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총괄적·포괄적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국어기본법」 외에 「방송법」, 「특허법」, 「상표법」 등 다음의 표와 같은 다수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국어(한글, 한자 포함)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¹⁾ 이들 법령의 규정 사항과 「국어기본법」상의 규정 사항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법률의 내용을 알기 어렵게 만들며, 법령의 적용상 우선순위의 결정 시 곤란을 초래하는 등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문제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어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일적·체계적 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법률의 체계와 관련하여 「국어기본법」상 장(章) 안에서의 조문 배치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장의 명칭과 그 규율사항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조문 배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어 사용 촉진·보급, 국어능력의 향상 등을 통한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 마련을 위한 규율사항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여 이러한 입법 목적 달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행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련 예산의 부족, 행정기관의 무관심, 국어책임관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1) 현행법상 국어·한글 사용 관련 법령 목록은 부록 1을 참조하고, 국어·한글 사용 관련 행정규칙 목록은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람.

외래어·전문용어의 빈번한 사용 등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에서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공언어 개선으로 사회 소통성을 높이고 외래어·전문용어를 정비하여 사회적 이익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각 행정기관마다 해당 부처 관련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국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구가 부재하여 전문용어 표준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 일반의 과도한 외래어·외국어 사용, 청소년층의 비속어 사용의 일상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어 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품위 있는 언어생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어 순화에 관한 사항을 「국어기본법」에서는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책 추진에 한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 언어 소외 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언어 학습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들의 사회적 적응도가 현저하게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쉬운 영어(용어) 쓰기를 통한 사회 통합 정책 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을 추진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일반 국민이나 언어 소외 계층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쉬운 용어 사용 정책을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보급과 관련하여서는 「국어기본법」 제19조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인력의 중복·낭비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외 한국어 학습자의 접근성 곤란과 표준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한국어 보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국어기본법」에서는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1개의 항(項)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빈약한 법률적 근거만으로는 국어 보급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 역시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같은 조(條)에서 2개의 항을 할애하여 규율하고 있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불가피하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여 다소 기형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에게 명확성·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어렵고, 한국어교원 제도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곤란을 초래하는 등 한국어교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국어문화원의 지정요건이나 지정취소 사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법률적 근거, 응시자격 정지, 응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법률유보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 법률 차원에서 규정되거나 또는 법률의 수권 근거 하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국어기본법」과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국어기본법」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그 심의사항, 구성·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관련 하위법령에서도 새로이 국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훈령 「국어심의회운영세칙」의 경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불명확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회 운영의 원활화를 저해하거나 자의적인 운영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국어기본법」 관련 행정규칙의 경우 ‘국어’ 관련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주어, 술어, 목적어 관계가 불분명한 등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많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도 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장관명의 변경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국어 관련 문헌 및 법령의 조사·분석, 주요 외국의 언어 진흥 관련 법령의 체계적 비교 분석, 국어 관련 정책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기초로 「국어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어기본법」 관련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등 국어 또는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다른 법령을 「국어기본법」에 맞도록 정비안을 작성·제시하며,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어 관련 법령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어기본법」의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어 사용 촉진·보급, 국어능력 향상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의 통일적·체계적인 국어의 발전과 진흥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어기본법」 관련 하위 법령 및 「국어심의회운영세칙」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도모, 국어심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선진화된 법률 체계로의 정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방법론을 채택하고자 한다.

<연구 수행 방법론>

연구 방법론	내 용
• 문헌 조사 방법론	- 국어 정책 및 국어기본법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도모하는 연구 방법론을 채택
• 법령 조사 방법론	- 「국어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등 국어기본법 관련 행정규칙, 국어 사용 관련 법령, 현행 법령상 기본법의 형식을 취하는 법령 등과 주요 외국의 언어 진흥 관련 법령을 수집·분석·비교 검토함으로써 법 제도의 실재를 반영하는 연구 방법론을 채택
• 입법학적 연구 방법론	- 「국어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등 국어기본법 관련 행정규칙,

연구 방법론	내 용
	국어 사용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방법론을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전문가 회의 및 의견 수렴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관련 전문가, 역대 국어 정책 담당자 등 관련 분야 정책 담당자 및 유관 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워크숍·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는 연구 방법론을 채택

2. 연구의 구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언어 발전·진흥 관련 정책 및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어 발전·진흥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0조를 근거로 중앙 부처 및 광역·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운영 중인 국어책임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기법을 활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국어기본법」의 연혁,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정비 사항을 도출한 뒤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등 국어 또는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다른 법령을 「국어기본법」에 맞도록 정비안을 작성·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국어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국어심의회운영세칙」의 연혁,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정비 사항을 도출한 뒤 각각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주요 외국의 언어 발전·진흥 관련 정책 및 법제

제1절 미국

한 나라의 언어 정책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분리해서 살펴볼 수 없다. 미국에서의 언어 정책을 살펴보는 이유는 첫째, 미국은 이민 국가로서 짧은 시간 안에 초기 독립국가에서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둘째, 초기의 유럽인 중심의 이민 국가에서 다양한 인종을 포함하는 이민 국가로 변형되었고, 셋째, 미국에서 공용어로서 사용되는 미국 영어의 위상이 사실상 세계적 공용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넷째,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다양한 국민들을 미국인으로 전환시킨 원동력 중에서는 공용어로서 영어의 기능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 때문이다.²⁾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방국가로서 기본적으로 주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주가 독립된 헌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인 자국어(를) 지정하지 않은 다민족·다문화 국가 중 대표적인 국가로서,³⁾ 현재 미국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는 미국의 국어 혹은 공용어를 명시적으로 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986년 네브라스카 주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 28개 주가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⁴⁾

그런데 알래스카와 아리조나의 경우는 영어를 공식어로 정한 1988년 법은 둘 다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2007년 법률을 다시 입안하여 영어를 공식어로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 영어가 공용어가 된 것은 주로 1980년도 이후의 일로써, “영어만 사용”정책의 일환이었다. 미국에서 주정부에서 공용어로 영어가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영어는 연방 차원에서는 ‘사실상의 국어’(de factonational language)이지 ‘법률상의 국어’는 아니다.⁵⁾

또한 미국에서 이민 정책은 초기부터 주정부의 관할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관할 사항이었고, 영어 정책은 미국의 이민 정책과 관련성을 가지고 발전하였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의 변화와 영어 정책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민 정책의 경우와는 달리 교육 정책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교육구로 대변되는 지역의 사무로 분류되었고,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교육은 지역 사무였기 때문에,⁶⁾ 연방 차원에서

2) 김성배, 미국의 쉬운 영어 사용 및 전문용어 표준화 관련 정책 및 법제, 「국어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법 체계 정비 방안 연구」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12. 10. 19, 11쪽.

3) 오영인, 미국 이중언어 교육정책과 이민자들: 1968년 이중언어 교육법과 1970년대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35권, 한국미국사학회, 2012. 5, 161쪽.

4) 하와이의 경우는 영어와 하와이어가 공식어다.

5) 김성배, 앞의 글, 14쪽.

6) 김용규, 미국 교육격차해소법(NCLB)의 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육부가 재탄생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⁷⁾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①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주정부가 원칙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된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② 연방정부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③ 교육에 대해서는 주정부 내의 교육구 또는 지역이 독자적인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④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권한과 지역의 권한에 대해서 주로 재정 배분 권한(Spending power), 주간 통상권(interstatecommerce) 등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는 공식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어를 가지고 있고, ⑥ 미국의 이민 정책은 정치적·경제적 사정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⁸⁾

1. 이중언어교육법

(1) 제정 배경

건국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즉 기존 이민 구성의 다수를 차지했던 북서부 유럽 이민자들이 아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남동부 유럽인들이 대거 미국에 유입되기 이전까지 미국인들은 다양한 인종과 그에 따른 다양한 언어 사용에 대하여 큰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실제로 19세기 중·후반까지 다수의 개별 주에서 실시된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영어가 아닌 이민자들의 모국어를 사용하거나 영어와 모국어를 함께 활용하는 이중언어교육이 실시되었다. 특히 미국문화나 언어에 다소 수용적 태도를 보였던 유럽인들, 그중 독일인에게, 미국인들도 학교교육이나 공공장소에서 독일어를 유지하고 사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 예컨대, 1840년 오하이오 주는 독일어-영어학교를 지정하였고, 이러한 정책은 이후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일리노이,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오리건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어는 미시간 주에서, 프랑스어는 루이지애나 주에서, 덴마크어와 스웨덴어는 위스콘신 주와 미네소타 주에서 허용되었다.⁹⁾

2010. 8, 122쪽.

7) 김성배, 앞의 글, 15쪽 참조. 미국의 교육부는 1867년 설치되었다가 1868년 사라졌다. 그 후 독립된 국무위원으로 존재하지 못하다가 1980년부터 연방 교육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교육부는 행정부처 중 가장 작은 부처로써 약 5천명의 공무원들을 두고 있다. 김성배, 앞의 글, 각주 6번.

8) 김성배, 앞의 글, 16-17쪽.

9) 오영인, 앞의 논문, 164쪽.

19세기 말, 미국의 이민자 구성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즉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의 구성 성분이 기존의 북서 유럽인들이 아닌 남동부 유럽인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언어를 사회 통합인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1910년대까지 15개 주 이상이 미국화(Americanization)를 주장하며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네브래스카 주는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언어를 영어로 국한시켰고, 오리건 주는 주법(州法)으로 당시 발행 중인 외국어 주간지들을 모두 영어로 번역하여 발행할 것을 의무화하였다.¹⁰⁾

그런데 미국에서는 냉전시대를 맞이하여 군사·경제·외교적 측면에서 외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1957년 구 소련의 스푸트니크(Sputnik)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과학과 수학의 중요성과 더불어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다음 해인 1958년 연방 차원에서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ce Education Act of 1958)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¹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60년대에 들어 미국은 민권사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건설하려는 존슨(Johnson)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물려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이 진행되었다.¹²⁾ 특히 기존의 거의 모든 인종차별적 제도에 저항하는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이 미 전역을 휩쓸었고, 미국은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등을 실시하면서 소위 말하는 다문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¹³⁾

이때 불공평한 언어 정책이 문제되기 시작했고, 게다가 1965년에는 국적쿼터제(National Origin and Quota System)를 도입하여 이민을 자유화함으로써¹⁴⁾ 수없이 다양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대량 유입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 인구 구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¹⁵⁾

무엇보다도 이민을 통한 외국인의 유입의 증가에 따라 영어 미숙달자들이 증가하였고, 이에 이들에 대한 영어 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런 시대적

10) J. Higham, *Strangers in the Land: Patterns of American Nativism, 1860-1925*,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1963, p. 260.

11) 오영인, 앞의 논문, 167쪽.

12) 엄철현, 미국의 이중언어교육법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비교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08, 105쪽.

13) 오영인, 앞의 논문, 167쪽.

14) 오영인, 앞의 논문, 167쪽.

15) 오영인, 앞의 논문, 161쪽.

흐름을 반영하여 미 연방정부는 영어 미숙달 학생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할 필요성을 인식한 최초의 미국연방법률인 「이중언어교육법」(Bilingual Education Act of 1968)을 제정하여 이미 시행 중이던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의 제7편에 포함시켰다.¹⁶⁾

(2) 주요 내용

「이중언어교육법」은 영어 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민 학생들 중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언어장벽 없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몇몇 교과과정을 영어가 아닌 이민자의 모국어로 교육하도록¹⁷⁾ 지역 교육구가 ‘영어 미숙달자’(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연방차원에서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¹⁸⁾

초기에는 주로 인종차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며, 그 대상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불완전한 초기의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중언어교육법」은 연방차원에서 영어 미숙달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과 외국 이민자와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¹⁹⁾

「이중언어교육법」은 1968년에 제정된 후, 1974년 수정, 1978년 수정, 1984년 수정, 1988년 수정을 거쳐 1994년에 다시 효력인정을 받았지만, 2002년 「낙오아동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영어습득·언어강화·학력신장법」(English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Enhanc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ct)으로 대체되었다.²⁰⁾

<미국의 이중언어교육법 변천 과정>

연 도	내 용	비 고
1967년	•이중언어교육에 관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제7편에 포함함	◦선언적 수준

16) 김성배, 앞의 글, 17쪽. 「이중언어교육법」 제정 전 미국에서 이중언어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것과 관련된 법률적 토대로는 1986년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1964년 민권법, 1965년 「초중등교육법」을 들 수 있고, 판례로는 연방대법원의 “분리평등의 원칙은 위헌이다”라고 판시한 1954년 브라운(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을 들 수 있다. 염철현, 앞의 논문, 105쪽 참조.

17) 오영인, 앞의 논문, 171쪽.

18) 김성배, 앞의 글, 17쪽.

19) 염철현, 미국의 이중언어교육법 변천 과정에 대한 고찰, 참조.

20) 김성배, 앞의 글, 18쪽.

연 도	내 용	비 고
196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의 비영어사용학생(특히, 스페인어 사용자)에게 우선순위를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성 결여 ◦자발적 참여
197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의 정의를 내림 •프로그램의 목표설정 •지역지원센터 건설 •자체 시행 역량 확보 •예산: \$68m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이 드러남
197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를 제한된 영어능력사용자(limited English speaking ability)와 영어 미숙달자(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까지 포함시킴 : 우선 순위는 영어 미숙달 학생에게 둠 •과도기적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 program)의 목표를 구체화함: 영어 미숙달 학생을 가능한 신속하게 정규반으로 편성시키고, 모국어도 영어를 능통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함 •교육구의 재정 지원 기간을 1~3년으로 함: 영어 미숙달 학생에 대한 교육구의 권한을 강화함 •예산: \$135m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불황의 여파로 재정 압박 ◦연방교육부 지침 : 20명 이상의 학생이 동일 언어를 사용할 경우, 이중언어교육을 시행하고, 한 반의 영어사용자는 최고 40%까지 허용함
198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정부와 교육구에 재량권과 유연성을 부여함 •교육구 자체 계획 하에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게 함 •전체 예산의 75%를 교육구의 과도기적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에, 최고 4%를 특별대안교수프로그램에 배정함 •가족 영어 문자 해독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함 •부모 또는 후견인은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함 •예산: \$135.679m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불황으로 예산삭감 요구 ◦연방의회에서 연방교육부의 라우(Lau) 판결 실천조치를 취소하도록 압박함
198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정부와 교육구에 재량권과 유연성을 대폭 부여함 •전체 지원예산 60% 중 75%를 교육구의 과도기적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에, 최고 25%를 특별대안교수 프로그램에 배정함(상황에 따라 최고 2년을 추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함) •예산: \$146.573m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불황의 지속 ◦영어 미숙달 학생들의 다양성 증가
199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어와 다른 언어의 유창함을 장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다원주의와 언어

연 도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대안교수 프로그램 소요 예산 최고 25%가 해제될 수 있음 •예산: \$201.163mil. 	<p>자원이 국가 경쟁력 강화</p>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초중등교육법」 제7편의 「이중언어교육법」과 이민자교육 프로그램을 「낙오아동방지법」 제3편으로 흡수 통합시킴 •결과에 대한 주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함 •유연성과 지역 교육구의 통제를 강화함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함 •효율적인 교수 방법에 초점을 둠 •예산: \$296m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자의 급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이민자 출신 국가의 다양화와 많은 언어 때문에 훈련받은 교사의 부족이 문제됨

* 출처 : G. Stewner-Manzanares, The Billigual Education Act: Twenty Years Later. the national clearinghouse for bilingual education(ncbe). Fall(No. 6), 1988/ Wiese, Ann-Marie and Garcia, Eugene E, The Bilingual Education Act: Language Minority Students and US Federal Educational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Vol. 4(4), 2000/ Professional Association of Georgia Educators, Biligual Educaion. Issue Brief, Vol. 8(1), 2006 재구성; 엄철현, 앞의 논문, 114쪽 재인용

(3) 관련 판례

1) 메이어(Meyer v. Nebraska) 판결

미국의 외국어교육에 대한 첫 번째 연방대법원 판결인 1923년의 메이어(Meyer v. Nebraska) 판결²¹⁾은 영어를 제외한 어떤 다른 언어로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한 네브라스카 주법을 무효로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 제임스 맥레이놀즈(James C. McReynolds)는 “헌법상의 보호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며, 이는 영어를 모국어로 해서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을 포함한 양육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판례이기도 한다.²²⁾

1923년 메이어(Meyer) 판결은 학교에서 영어만을 사용하여 교육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로써, 학교에서 이중언어교육을 지지하는 판결이며, 이민자와 이민

21) 262 U.S. 390 (1923)

22) 김성배, 앞의 글, 18쪽.

자의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최초의 판례이다. 그러나 이 판례 이후 이중언어에 대한 연방법이 제정된 것은 45년이 지난 후였다.²³⁾

2) 라우(Lau v. Nichols) 판결²⁴⁾

앞서 설명한 것처럼 1968년 연방의회가 「이중언어교육법」을 제정하였지만, 이 법은 법집행의 강제성이 떨어지고 그 시행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며 교육구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였기에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또한 차별철폐 및 인권운동의 측면에서 시작된 이중언어교육이 인권 측면에서의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²⁵⁾ 그러던 중 1974년에 이중어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연방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된다. 이 판결의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²⁶⁾

1970년경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에 있는 공립학교에 다니던 수천 명의 중국계 미국인 학생들 중 약 3천 명은 영어를 거의 말하지 못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들 중 약 1천 8백 명은 그들의 언어적 부족을 충족할 만한 아무런 특별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은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연방수정헌법 제14조²⁷⁾와 1964년에 제정된 「인권법」(Civil Right Act of 1964) 제6편²⁸⁾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못하는 학생 또는 영어 미숙달 학생들이 교실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인 영어로만 수업을 듣게 될 때 그들의 동등한 교육기회가 박탈되는지 여부였다.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교육구의 수만 명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간과 조건으로 교육할 경우에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연방고등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1974년 연방대법원은 “영어가 수업의 유일한 전달 수단인 상황에서,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23) 김성배, 앞의 글, 18쪽.

24) 414 U.S. 563 (1974)

25) 염철현, 앞의 논문, 106쪽.

26) 이하 염철현, 앞의 논문, 106쪽 이하 참조.

27) “어떤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사람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한 평등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

28) “... 어떤 사람도 인종, 피부색, 국적에 근거하여 연방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거나 편익의 혜택에서 거부 혹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없는 경우, 영어를 조금 이해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거부당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미국 사회에서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당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주정부가 강제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똑같은 시설, 교재, 교사 그리고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했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떤 의미 있는 교육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학습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영어는 공립학교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에 속하며, 아동이 교육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영어의 기초를 습득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교육을 조롱하게 만든다.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실에서의 경험도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판시²⁹⁾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연방대법원은 “1970년 보건교육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가 공표한 지침에 따르면, 공립학교가 연방재정지원을 받는 조건은 인권법 제6편에 근거하여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특별훈련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라고 판시³⁰⁾하여 공립학교가 연방정부의 지침과 동떨어진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1974년 연방대법원의 라우(Lau) 판결은 미국에서 이중언어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물론, 그동안 이중언어교육을 시행하면서 모호했던 평등교육 기회보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라우(Lau) 판결이 의미하는 ‘평등교육 기회보장’이란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시설, 교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효과성도 고려하여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라우(Lau) 판결 이후의 후속 판결³¹⁾

연방대법원의 라우(Lau) 판결 이후, 연방보건교육복지부의 인권국(office of Civil Right)은 라우 판결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영어 미숙달자를 위한

29) 414 U.S. 563 (1974)

30) 414 U.S. 563 (1974)

31) 이하의 내용은 김성배, 앞의 글, 21쪽부터 22쪽까지를 정리한 것이다.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기본지침인 ‘라우 구제책’(Lau Remedies)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각 교육구가 라우 판결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인지 여부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연방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었고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각 교육구에서 시행하는 이중언어 교육정책은 영어 미숙달 학생의 실질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중언어 교육을 추진할 만한 자원 마련이나 훈련받은 교사 등 인적자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³²⁾

한편, 1980년 민주당의 카터 행정부는 라우 판결의 정신을 살려 8학년까지 25명의 영어 미숙달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은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철회되었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이중언어 교육 시행규정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책임을 방해하고 있으며, 규정이 가혹하고 유연성도 없고 감당하기 힘들며 운영도 어렵고 신뢰성은 떨어지며 고비용이 든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³³⁾

정권이 교체되면서 연방정부의 이중언어 교육정책이 변화하는 가운데, 1978년 카스타네다(Castañeda v. Pickard) 판결이 남부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서 나오게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텍사스 교육구와 보건교육복지부가 멕시코계 미국인들에게 부여된 헌법, 「인권법」 및 「평등교육 기회법」(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ct of 1974)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였다.

원고인 멕시코계 미국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언어장애로 교육구의 교육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교육구가 적절한 이중언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고, ② 연방재원을 차별적인 행태로 사용하였으며, ③ 교육구가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④ 교육구의 불법적인 관행을 교정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하였다. 1981년 제5연방고등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이 판결은 「평등교육 기회법」의 적절한 조치를 해석하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32) Mora, Jill Kerper, “Legal History of Bilingual Education.” San Diego State University. 26 January 2005. San Diego State University. 12 February 2007. <<http://coe.sdsu.edu/people/jmora/Pages/HistoryBE.htm>>.

33) Temple, Charles et al. (2005). “Bilingual Education.” All Children Read: Teaching for Literacy in Today’s Diverse Classrooms. Pearson/Merrill/Prentice Hall Publishers. Page 54.

이 판결에서 실시한 영어 미숙달 학생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적합한 기준은 ① 교육이론, ② 교육과정 및 인적자원 ③ 교육결과 측면이었다. 여기서의 세 가지 기준이란, ① 학교는 건전하거나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교육이론에 기초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고, ② 학교는 교육과정, 자원, 그리고 이론을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③ 학교는 교육프로그램이 언어장애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³⁴⁾

앞서 살펴본 라우 판결이 이중언어 교육의 원칙과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면, 카스타네다(Castañeda) 판결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중언어 교육의 교육이론, 교육과정 및 인적자원 그리고 평가와 효과성까지 언급하고 있어서 진일보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³⁵⁾

그 후, 1987년 고메즈(Gomez v. 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는 일리노이 주법에 따르면 주교육위원회가 영어 미숙달 학생들의 교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20명 미만의 영어 미숙달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고등법원은 영어 미숙달 학생에 대한 주정부의 교육책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2002년 벨러리아(Valeria v. Gray Davis) 사건에서³⁶⁾ 연방 제9고등법원은 영어 미숙달 학생은 고립되고 분리된 소수이므로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기초한 어떠한 차별도 엄격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심사하였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주가 영어 미숙달 학생들이 모국어로 교육을 받는 제도를 영어전용교육으로 대체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정책의 변경은 인종에 기초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는 증거는 없고, 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이므로 엄격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34) Castañeda v. Pickard 648 F.2d. 989

35) Gomez v. 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 811 F.2d 1030.

36) Valeria v. Davis 307 F.3d 1036

3. 낙오아동방지법

(1) 개 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이중언어교육법」은 정치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천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법률적 기반이 된 법은 1965년의 「초·중등교육법」이었다. 그런데 2001년 연방의회가 「낙오아동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제정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중언어교육법」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사용되어 온 이중언어 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영어습득·언어강화·학력신장법」(English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Enhanc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ct)으로 바뀌면서 이중언어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 「낙오아동방지법」에서 이중언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1968년 제정된 「이중언어교육법」이 2002년 폐지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기능은 「영어습득·언어강화·학력신장법」 속에 살아 있다고 할 것이다.³⁷⁾

「이중언어교육법」이 변천을 거듭하면서 논쟁의 핵심이 되는 것은 ① 누가 이중언어교육을 관할할 것인가? ② 학교에서는 영어만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모국어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③ 누가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등이다.³⁸⁾

「낙오아동방지법」은 2001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가 1993년 텍사스 주지사를 역임하면서 주정부 차원에서 시도한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아동이 교육의 혜택을 보게 한다”는 소위 ‘텍사스의 기적(The Texas Miracle)’이라는 교육적 성과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을 입법화한 것이다.³⁹⁾ 이 정책의 핵심은 ‘평가와 책임’(testing and accountability)에 있다. 이 정책은 ① 학생의 학업 수행에 대한 주와 지역교육구와 학교의 책임성의 강화, ② 아동에 대한 읽기 능력 강화 등의 수업 수행 효율성에 대한 집중, ③ 연방 교육 지출 예산 사용에 대한 관료주의의 최소화와 지방교육구의 교육정책의

37) 김성배, 앞의 글, 24쪽.

38) 김성배, 앞의 글, 24쪽.

39) 엄철현, 미국 초·중등교육개혁법 고찰 - ‘No Child Left Behind Act’를 중심으로, 비교교육법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05, 60쪽 참조.

유연성 확대, ④ 열등한 학교에 취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강화라는 4가지 목표를 지향하였다.⁴⁰⁾

(2) 입법 배경

부시행정부의 정책은 연방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선택권과 차터제 선택은 삭제되었고, 연방의회에서 1년 동안의 논의 결과 「낙오아동방지법」은 주와 학교들에 새로운 필수이행조건 부가와 더불어 초중등교육법 프로그램에 대한 26%의 기금 지원을 강제하는 1천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법률안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2002년 1월 8일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낙오아동방지법」은 2014년까지 주단위의 시험에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학생을 참여하도록 하는 평가와 책임 요구 시스템이 그 핵심이었다. 이 법이 입법된 배경에는 극빈자, 소외계층 및 영어 미숙달 학생과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과의 극심한 학력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다.⁴¹⁾

(3) 주요 내용⁴²⁾

「낙오아동방지법」은 불우한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공고히 하기 위하여 1965년 「초·중등교육법」을 재승인하고 있다. 또한 「낙오아동방지법」은 모든 학생들은 2014년까지 읽기와 수학에서 우수성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선언하고 있다.

1) 연도별 학업 향상

학교들은 적절한 연도별 학업 향상(adequate yearly progress: AYP) 목표를 매년 달성해야 하고, 8개의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증명해야 한다. 8개 그룹의 학생은 흑인, 아시아인, 백인, 경제적 빈곤 계층 영어 학습자, 히스패닉, 인디언계, 인디언, 신체장애인 학생 등으로 구분된다. 2년 연속 연도별 학업 향상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들은 주정부에 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학교로 분류된다. 연차별 적정 학업 향상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학교들은 공립학교 선택, 방과 후 수업, 학교 구조 조정과 같은 개선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40) 김용규, 앞의 논문, 126쪽 참조.

41) 김성배, 앞의 글, 25쪽.

42) 이하, 김성배, 앞의 글 25쪽 이하 참조.

2) 읽기와 수학의 강화

「낙오아동방지법」의 제1장은 모든 학생들이 2014년까지 읽기와 수학 분야에 능숙할 수 있도록 주와 자치구에 대한 현존하는 책임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낙오아동방지법」의 책임 조항의 의미는 연방의 지원의 대가로 필수 이행 사항 등은 충족되어야 하며, 자세한 보고 의무는 학교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강제하는 기능을 한다. 해마다 주정부는 연차별 적정 학업 향상 목표를 정하고 주로 영어 미숙달 학생들을 포함하여 8개 그룹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이나 그 이상을 획득한 것을 통계 내어 보고해야 한다. 개별 주들은 2014년까지의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읽기와 언어 분야에서 고유 언어의 평가 유형도 있지만 「낙오아동방지법」은 3년 연속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영어로 평가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장에서는 기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기금은 각 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읽기 같은 기초 프로그램의 향상에 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금은 재정이 열악한 학교와 지역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문적 기초를 토대로 한 읽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의 투자를 상당히 증대시키고 있는바, 특히 언어, 문학, 저학년들의 읽기 분야에서 연방의 투자가 증대되었다.

3) 영어 교육 분야

제3절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위하여 학교들에게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의 이중언어 교육법 프로그램과 긴급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을 주정부가 집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통합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주정부의 프로그램은 각 지역 학교와 교육구가 담당하는 영어 미숙달 학생과 이민자 가정 학생 수에 기초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각 학교는 영어 미숙달 학생들에게 언어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영어 미숙달 학생들의 학부모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낙오아동방지법」은 이중언어교육지원기금에 수행평가(performance measures) 조건을 부과하여 학교들에게 영어 교육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였다. 학교들은 영어 미숙달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영어 능숙자로 전환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낙오아동방지법」이 통과된 후 「이중언어교육법」은 「영어습득·언어강화·학력신장법」으로 대체되었고, 이중언어교육과 소수인종언어 사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영어 미숙달 학생들을 위한 영어습득·언어강화·성취부로 대체되었다.⁴³⁾

4)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조치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은 개별 주⁴⁴⁾에 대하여 「낙오아동방지법」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였다. 즉, 2014년까지 기존 이상의 학업 향상과 모든 학생이 우수한 수준 이상의 기준을 달성하는 것의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이들 주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기준을 향상시키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⁴⁵⁾

5) 언어교육에 대한 평가

「낙오아동방지법」상 기금 증액과 수행평가 등은 영어 미숙달 학생과 그 밖의 이중언어 사용 학생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운용되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중언어와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을 주정부의 단일화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통합한 것은 주정부가 오히려 이중언어 교육 지원기금을 다른 우선순위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라틴계와 이민자 가정 학생들에게 정작 그들이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예를 들면, 3년에서 5년 정도 미국에 체류한 비영어권 학생들은 기금들이 너무 기초적인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낙오아동방지법」은 이중언어 교육을 폐지하지 않았지만, 선행 경쟁력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의 75 퍼센트는 학생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교육기회평등법」이 폐지됨으로써 이중언어 교육이 사실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사실이다. 결국 영어만을 사용한 교육으로 정책이 전환됨으로써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43) 김웅규, 앞의 논문, 129쪽.

44) February 9, 2012 - Colorado, Florida, Georgia, Indiana, Kentucky, Massachusetts, Minnesota, New Jersey, Oklahoma, and Tennessee; February 15, 2012 - New Mexico; May 29, 2012 - Connecticut, Delaware, Louisiana, Maryland, New York, North Carolina, Ohio and Rhode Island; June 29, 2012 - Arkansas, Missouri, South Dakota, Utah and Virginia; July 6, 2012 - Washington and Wisconsin

45) Obama to push 'No Child Left Behind' overhaul. CNN. March 15, 2010.

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이민자 가정의 학생의 빠른 영어 습득이 학업 성취의 격차를 종식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⁴⁶⁾

4. 쉬운 영어 사용에 관한 법률⁴⁷⁾

(1) 초기의 미국에서 쉬운 영어 사용 운동

미국에서 ‘쉬운 영어 사용 운동’(plain English Movement)은 1960년대의 소비자 보호운동과 인권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체결하는 각종 계약문서의 내용과 형식이 소비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들 계약문서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들 소비자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쉬운 영어 사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카터 대통령이 1976년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연방세법전이 복잡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대통령이 되자 연방행정기관들이 채택하는 규칙에서 쉬운 영어(plain English)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하였다. 이처럼 미국에서 쉬운 영어 사용은 초기에는 소비자 보호 문제에서 시작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갔다.

쉬운 영어 사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법률 문제에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험 계약서, 주식 청약서 등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법률 문서는 쉬운 영어로 작성하도록 하는 쉬운 영어 입법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정부 문서, 각종 서식 그리고 연방 규칙을 쉬운 영어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첫 번째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각종 요구 사항 등이 있다. 이 위원회의 요구 사항은 6가지 원칙으로 대변되는데, ① 짧은 문장을 사용할 것, ②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일상생활 용어를 사용할 것, ③ 능동태를 사용할 것, ④ 가능한 경우에는 복잡한 내용을 표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표시를 붙여 열거할 것, ⑤ 전문 법률 용어·법적 언어나 과도하게 전문적인 경제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⑥ 다중 부정문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이다.

46) 김응규, 앞의 논문 참조.

47) 이하의 내용은 김성배, 앞의 글, 29쪽 이하를 정리한 것이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1972년 닉슨 대통령은 연방관보는 보통 사람의 용어로 써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다. 가장 획기적인 진전은 1978년 카터 대통령령이 대통령령 제12044호와 제12174호를 발령한 것이다. 이들 대통령령은 정부의 규제는 비용에서 효과적이어야 하며 정부 규제의 수범자가 쉽게 그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78년 카터 대통령의 대통령령 제12044호가 시행된 후 1979년 보건교육복지부 산하의 국가교육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은 공문서의 분명한 글쓰기와 명확한 양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3년간 문서 디자인 프로젝트를 마련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① 국민들이 전형적인 공문서와 관련하여 가지는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이해, ② 연방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서모델의 마련, 그리고 ③ 장래 업무상의 문서를 개발할 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의 개발이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조사연구원(American Institute of Research)과 카네기멜론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미국조사연구원은 1988년에 연방문서디자인센터를 설립하였고, 카네기멜론대학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센터를 설치하였다. 연방문서디자인센터는 문서디자인이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서 디자인 분야는 인류학, 인식 심리학, 작문, 그래픽 디자인, 양식 디자인, 법률 문서 작성, 언어학, 조직 심리학, 수사학, 사회학의 제요소를 결집하고 있다.

카터 대통령이 제정한 대통령령 제12044호와 제12174호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는 폐지되었으나, 민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문서를 단순화하고 쉬운 영어를 사용하고자 노력을 계속하였다.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폐지되었던 쉬운 영어 쓰기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부활하였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령 제12866호를 발령하였는데, 이 대통령령은 규제의 계획과 검토에서 규제의 이념적 기초의 하나로서 “각 행정기관은 잠재적 불확실성의 감소와 그러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규정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⁴⁸⁾라고 규정하고 있다.

48) 제1조(b)(12)

또한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6월 1일에 대통령지시(Presidential Memorandum)를 발령하여 연방정부의 문서는 반드시 쉬운 영어로 작성하도록 지시하면서, 1998년 10월 1일부터는 규칙을 제외한 모든 신규 작성 문서는 쉬운 영어로 쓰도록 하고 2002년 1월 1일까지는 1998년 10월 1일 이전에 작성한 문서도 쉬운 영어로 바꾸도록 지시하였다.

연방규칙에 대해서는 기한을 늦추어 1999년 1월 1일부터 연방관보에 수록되는 모든 최종 규칙과 규칙 예고안을 쉬운 영어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규칙에 대하여는 기회와 여력이 있을 때 쉬운 영어로 고쳐 쓰도록 지시했다.

또한 정부개혁동반위원회(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에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2) 연방 법률의 통과

1) 목 적

2010년 3월 17일 하원에서 쉬운 글쓰기 법안이 검토 및 통과되었고, 같은 해 9월 27일 상원에서 수정되어 통과되어 다시 9월 29일 상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하원이 동의하고 최종 법안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 2010년 10월 13일 연방 법률인 「쉬운 글쓰기 법」(Plain Writing Act of 2010)⁴⁹⁾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총 7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은 “대중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정부와의 명확한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연방 기관들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적용 범위와 쉬운 글쓰기의 정의

「쉬운 글쓰기 법」 제3조는 정의 규정으로 적용 기관과 적용 문서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은 연방 법령 제5편의 제105조하에 정의된 행정기관에 적용된다. 또한 적용되는 문서는 ① 연방정부의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거나 세금 납부 신고에 필요한 문서, ② 연방정부의 혜택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또는 ③ 연방정부가 관리하고 시행하는 요구 사항을 대중이 따르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 그리고 ④ (종이든 전자적 형태이든) 편지, 발간물, 양식, 공고 또는 지시를 포함한다.

49) Pub.L. 111-274, §§ 1 to 7, Oct. 13, 2010, 124 Stat. 2861

이 법은 쉬운 글쓰기를 “용어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잘 구성되어 있고 아울러 주제 또는 분야 그리고 대상 독자에게 적합한 다른 최상의 관례들을 따르는 글쓰기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연방기관의 책임

「쉬운 글쓰기 법」 제4조에 따르면 연방행정기관은 법률 시행 후 9개월 이내에 각 행정기관에서 이 법의 시행을 감독하기 위한 1명 이상의 고위 공무원을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 법의 요구 사항을 공무원 등에게 알리고, 쉬운 글쓰기를 교육해야 하며, 쉬운 글쓰기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에 쉬운 글쓰기 섹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접수하고 답변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연락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된 지 1년 이내, 즉 2011년 10월 12일까지 각 행정기관은 해당 기관이 발행하거나 상당하게 수정하는 모든 적용 대상 문서에 쉬운 글쓰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행정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늦어도 6개월까지 관리예산처(OMB)의 장은 이 조의 요구 사항 시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 조치로서 ‘쉬운 글쓰기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가 개발한 글쓰기 지침, 또는 해당 기관장이 제공하는 위와 유사한 지침에 의거하여 쉬운 글쓰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4) 의회 보고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쉬운 글쓰기 법」 제5조는 의회에 대한 보고를 규정하고 있다. 의회에 대한 보고는 초기 보고와 연례 준수 보고로 나뉜다.

먼저 초기 보고는 이 법률의 제정일부로부터 늦어도 9개월까지 각 기관의 장이 웹사이트의 쉬운 글쓰기 섹션상에 이 법률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해당 기관의 계획을 설명하는 보고를 말한다.

연례 준수 보고는 이 법률의 제정일부로부터 늦어도 9개월까지 그리고 이후 매년 각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웹사이트의 쉬운 글쓰기 섹션상에 이 법률의 요구 사항을 기관이 준수하는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5) 쉬운 글쓰기 법의 구속력

「쉬운 글쓰기 법」 제6조에서 사법성과 강제성을 규정하고 있다. 아쉽게도 이 법은 이 법의 준수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하지 않으며, 이 법률의 어떤 조항도 어떤 행정적 내지 사법적 행위에 의해 강제될 수 있는 실질적이거나 절차적인 권리 또는 혜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쉬운 글쓰기 법」은 선언적·행정내부적·비구속적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3) 쉬운 글쓰기 법의 통과 후의 조치

1) 규제 및 규제 검토의 향상(대통령령 13563)

「쉬운 글쓰기 법」이 통과된 후,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월 18일 규제와 규제 검토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였다. 이 대통령령은 직접적으로 쉬운 글쓰기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고 유연한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규제에 대해 재검토를 하면서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대중과 소통하도록 하고 있다.

「쉬운 글쓰기 법」 제2조는 대중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열린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2 조 대중 참여

- (a) 규제들은 대중 참여를 포함하는 과정을 통해 채택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규제는 법과 일관되고 실현 가능한 정도로 주, 지역 및 민족 공무원들, 적합한 분야의 전문가들, 민간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 주주들 그리고 대중 일반 사이의 정보 및 관점의 열린 교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b) 그러한 열린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각 기관은 행정명령 12866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법적 요구 사항과 일관되게 대중들에게 규제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법에 의해 허용되고 실현 가능한 정도로 각 기관은 대중에게 임의의 제안된 규제에 관해 인터넷을 통해 발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발언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 60일이 되어야 한다. 법에 의해 허용되고 실현 가능한 정도로 각 기관은 제안된 규칙 및 최종 규칙 모두에 대해 적절한 과학적 및 기술적 발견을 포함하여 regulations.gov의 의사결정 일람표를 쉽게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열린 형태로 시의적절하게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안된 규칙의 경우, 그런 접근에는, 법에 의해 허용되고 실현 가능한 정

도로, 적절한 과학적 및 기술적 발견을 비롯하여 의사결정 일람표의 모든 적절한 부분들에 대한 대중의 발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 (c) 제안된 의사결정의 공고를 발표하기 전에, 각 기관은 실현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및 잠재적으로 종속될 사람들을 포함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견해를 요청하여 들어야 한다.

「쉬운 글쓰기 법」 제4조는 유연한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 유연한 방법

적절하고 실현 가능하며 규제 목적과 일치할 경우 그리고 법에 의하여 허용된 정도로 각 기관은 부담을 줄이고 유연성과 대중의 선택의 자유를 유지할 규제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방법들에는 경고, 적절한 기본 규칙, 그리고 공시 요구 사항뿐 아니라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대중에게 제공되는 정보 조항이 포함된다.

「쉬운 글쓰기 법」 제6조는 기존 규칙의 성찰적 분석을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쉬운 글쓰기 법」은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규정들의 내용 즉 규제에 대해서는 쉬운 글쓰기가 적용되고 있다.

제 6 조 기존 규칙의 성찰적 분석

- (a) 기존의 중요한 규제들의 주기적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관들은 오래되었거나 비효율적이거나 불충분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이 될지 모를 규칙들에 대한 성찰적 분석을 촉진할 최상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 규칙들을 그동안 익힌 내용과 일치되게 수정하거나 간소화하거나 확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그러한 성찰적 분석은 지원데이터를 포함하여 가능하면 언제나 온라인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 (b) 이 명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각 기관은 법 그리고 법의 자원과 규제 우선순위에 맞게 정보규제국(OIRA)에 예비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기존의 중요한 규제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기관의 규제 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또는 규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덜 부담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어떤 규제들이 수정되거나 간소화되거나 확장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행정부 및 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최종 지침

① 지침의 제정 배경과 효과

「행정부 및 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최종 지침」은 정보규제국(OIRA) 국장이 행정부 및 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지침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지침은 2010년 11월 22일에 발표된 “2010 쉬운 글쓰기 법의 예비 지침”인 관리예산처(OMB) 제안서 M-11-05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이 지침은 2010년 「쉬운 글쓰기 법」의 시행에 관한 최종 지침을 제공하고 대통령령의 열린 정부 계획의 목표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쉬운 글쓰기의 장점에 대해서 ① 모호성과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하면 대중이 수령 자격이 있는 중요한 보조금과 서비스를 이해하고 지원하기가 쉬워지며, ② 쉬운 글쓰기는 내용 이해가 더 쉬워지는 까닭에 대중이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쉬운 글쓰기는 형식적인 요구 사항 이상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② 쉬운 글쓰기의 효과

「행정부 및 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최종 지침」에서 예시한 쉬운 글쓰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정부 발표 내용을 대중이 더 잘 이해한다.
- 돈이 절약되고 효율이 높아진다.
- 대중이 기관 직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할 필요가 줄어든다.
- 기관 요구 사항을 대중이 더 잘 이해하므로 이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자원을 줄인다.
- 기관의 행정 서식 및 신청서를 대중이 더 잘 이해하므로 이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작성 실수가 줄기에 따라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기관과 대중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도 줄어든다.

③ 적용 대상과 적용 시한

- (1) 적용 대상. 이 법 및 이 지침은 5 U.S.C. § 105하에 정의된 모든 “행정 기관⁵⁰⁾”에 적용된다.
- (2) 적용 시한. 이 법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적용 시한과 요건이 정해져 있다.
- 2011년 7월 13일(법 제정일 후 9개월)까지 각 기관은 반드시
- 해당 기관이 이 법 및 이 지침을 시행하는지를 감독할 쉬운 글쓰기 담당 선임 공무원을 한 명 이상 지정한다.
 - 기관 웹사이트의 쉬운 글쓰기 섹션을 마련한다.
 - 이 법의 요구 사항을 기관 직원에게 알리고 기관 직원에게 쉬운 글쓰기를 교육한다.
 - 해당 기관이 이 법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를 감독할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 해당 기관이 이 법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시행 계획을 설명하는 첫 보고서를 기관 웹사이트의 쉬운 글쓰기 섹션상에 발표한다.
- 2011년 10월 13일(법 제정일 후 일 년)까지 기관들은 새로 작성하는 모든 문서 또는 실질적으로 수정할 문서를 쉬운 글쓰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 2012년 4월 13일(법 제정일 후 18개월)까지, 그리고 이후 매년 각 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 법을 계속 준수하는지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④ 공식적인 정부 간 실무 그룹

쉬운 언어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PLAIN)는 공식적인 정부 간 실무그룹으로서 쉬운 글쓰기 지침 발표를 보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단계로서, 해당 기관이 쉬운 글쓰기 노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자를 이 그룹에 돌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쉬운 언어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PLAIN)’와 협의해야 한다. 이 결정을 위해 ‘쉬운 언어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PLAIN)’의 공동 회장인 에이미 벅크와 캐트린 카타니아를 amy.bunk@nara.gov 및 kathryn.catania@dhs.gov를 통해 연락할 수 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쉬운 언어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PLAIN)’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www.plainlanguage.gov.

50) 105조는 “행정 기관”을 “행정부, 정부운영기업, 독립기관”으로 정의한다. “행정부”, “정부운영기업” 그리고 “독립기관”의 정의는 5 U.S.C. §§ 101, 103, 및 104에 나온다.

⑤ 연방 쉬운 글쓰기 지침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 기관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연방 쉬운 언어 지침을 따라야 한다.⁵¹⁾

만약 여러분 기관이 자체 지침을 사용하거나 작성하기로 한다면, “연방 쉬운 언어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가령 구체적 사례들을 변경함으로써 여러분 기관에 적합하도록 이 지침을 수정할 수 있다.

⑥ 시행 전략

적절하게 시행되면 쉬운 글쓰기는 대중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해당 기관이 임무를 더 잘 달성하도록 도울 것이다. 쉬운 글쓰기 및 이 법의 요구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기관들은 반드시

- 쉬운 글쓰기를 잘 활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도전 과제 제시 및 상(賞) 주기와 같은 장려책(인센티브) 사용을 고려한다.
- 대중과 함께 협력하며, 아울러
- 쉬운 글쓰기의 진척 상황 및 효과를 측정할 수행 목표를 세운다.

⑦ 교육

이 법에 따라 쉬운 글쓰기 담당 선임 공무원은 해당 기관이 직원에게 실시하는 쉬운 글쓰기 교육의 감독 임무를 맡는다.

- 여러분 기관은 어떤 직원이 쉬운 글쓰기 교육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얻을지 및 어느 정도로 혜택을 얻을지를 판단할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이 법이 적용되는 문서들을 정기적으로 쓰거나 편집하는 직원들은 이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 해당 기관은 신입 직원에게 쉬운 글쓰기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한 특정 교육 과정이 쉬운 글쓰기 원리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분 기관이 의문이 있다면, 쉬운 글쓰기 담당 선임 공무원과 연락하기 바란다. ‘쉬운 언어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PLAIN)’는 자체 웹사이트인 www.plainlanguage.gov에 교육 자료를 올려놓고 있다.

51) <http://www.plainlanguage.gov/howto/guidelines/FederalPLGuidelines/index.cfm?CFID=9858358&CFTOKEN=c28e1e0084247f71-6D73A648-1372-4132-8D1119A287299534&jsessionid=bc308c4fabb1f28546967983951515d50431>.

⑧ 적용 시한 내 세부 사항

i) 쉬운 글쓰기 담당 공무원 임명과 책임

(1) 2011년 7월 13일까지 쉬운 글쓰기 담당 선임 공무원을 한 명 이상 지정한다. 2011년 7월 13일까지 여러분 기관은 이 법 및 이 지침을 시행하는지를 감독할 쉬운 글쓰기 담당 선임 공무원을 한 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이 선임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관리예산처(OMB)와 백악관 공무원들에게 해당 기관의 쉬운 글쓰기 시행 노력을 보고해야 하므로, 반드시

- 기관 내에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 기관 프로그램, 인력, 기술, 규정 또는 정책을 감독한다. 아울러
- 기관의 의사소통에 참여한다.

이 법에 따라, 쉬운 글쓰기 선임 공무원은 또한 아래 사항을 위한 2011년 7월 13일 추가적인 요구 사항의 시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 이 법의 요구 사항을 기관 직원에게 알리기.
- 기관 직원에게 쉬운 글쓰기를 교육하기. 아울러
- 해당 기관이 이 법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를 감독할 절차를 마련하기.

2011년 7월 13일까지, 해당 기관의 쉬운 글쓰기 담당 선임 공무원(들)의 이름(들)과 직책(들)을 포함하여 infopolicy-oira@omb.eop.gov에 전자우편을 보내야 한다. 이 선임 공무원들 목록은 www.plainlanguage.gov에 게재된다.

ii) 쉬운 글쓰기 홈페이지의 개설

(2) 2011년 7월 13일까지 쉬운 글쓰기 웹페이지를 마련한다.

이 법에 따라, 2011년 7월 13일까지 해당 기관은 기관 웹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쉬운 글쓰기 섹션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열린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이 섹션은 해당 기관이 이 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대중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대중의 의견이나 제안을 접수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 웹페이지상의 이 섹션은 [www.\[agency\].gov/open](http://www.[agency].gov/open)에 위치한 해당 기관의 열린 정부 웹페이지상에 위치하거나 여기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⁵²⁾
- 모범적인 쉬운 글쓰기 웹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연방 웹 관리자 위원회의 웹페이지 <http://www.howto.gov/plain-language>에서 최상의 용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쉬운 글쓰기 웹페이지는 해당 기관이 이 법을 시행하고 수정하기 위해 불명확한 특정 문서를 골라내려는 해당 기관의 노력에 대해 대중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i) 시행 보고서 발표

(3) 2011년 7월 13일까지 시행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법에 따라 각 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 법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행 계획을 설명하는 첫 시행 보고서를 2011년 7월 13일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여러분 기관의 최초 및 연례 보고서를 위하여 <http://www.plainlanguage.gov/plLaw/law/index.cfm>에 나오는 보고서 템플릿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 각각은 이해당사자와 대중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쉬운 글쓰기 웹페이지상에 발표되어야 한다.

iv) 신규 문서에 대한 쉬운 글쓰기 적용

(4) 2011년 10월 13일까지 기관들은 이 법이 “적용되는 문서들”을 발표할 때 쉬운 글쓰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2011년 10월 13일까지 기관들은 새로 작성하는 모든 문서 또는 실질적으로 수정할 문서를 쉬운 글쓰기로 작성해야 한다. 이 요구 사항은 이 법에서 정의하는 아래 “적용 문서들”에 적용된다.

- 연방정부 보조금이나 서비스를 얻는 데 또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필요한 문서(가령, 세금신고서나 보조금신청서)
- 연방정부 보조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가령, 의료 내지 사회보장 수령자에 대한 핸드북),

또는,

- 연방정부가 관리하거나 시행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방법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문서(가령,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서)

또한 이 법에 따라 기관들은 모든 문서나 전자 서한, 발간물, 서식, 공고문 또는 지시에 쉬운 글쓰기를 이용해야 한다.⁵²⁾ 한 기관이 어떤 특수한 또는 전문적인 발간물을 준비할 때에는 그 주제에 대해 대상 독자들이 전문 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52) 아래 웹사이트에서 열린 정부 지침(각 기관이 “open” 웹페이지를 작성해야 함)에 관한 2009년 12월 8일 자 관리예산처(OMB) 디렉터의 제안서를 참조할 것. <http://www.whitehouse.gov/omb/assets/memoranda_2010/m10-06.pdf>

열린 정부 지침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쉬운 글쓰기 웹페이지는 여러분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53) 아래 웹사이트에서 규제 수단으로서의 공시 및 단순화에 관한 2010년 6월 18일 자 정보규제국(OIRA)

이 법의 목적상, “대중”은, 해당 기관의 임무에 영향을 받는 외부 이해 당사자 또는 해당 기관이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독자나 수령자를 의미한다.

기관들이 명확하고 간결하고 유의미하며 전문용어가 없는 방식으로 대중과 의사소통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명확성이 결여되면 사람들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며, 서식이 혼란스럽거나 복잡하면 사람들은 수령 자격이 있는 보조금이나 서비스에 신청하지 못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명확성이 결여되면 사람들은 특정한 요구 사항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지, 설령 적용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이 법이 적용 문서들 속의 규정들은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규칙 제정 전문(前文)은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오래된 정책들은 규정들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성되도록 요구하고 있다.⁵⁴⁾

v) 연례 준수 보고서

(5) 2012년 4월 13일까지 최초의 연례 준수 보고서를 제출한다.

2012년 4월 13일까지 각 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 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자체 웹사이트에 발표해야 한다. 권장 사항으로서, 발표 전에 기관들은 이전 해에 기관들의 이 법 시행 실적에 관한 의견을 대중과 이해 당사자로부터 구하고 해당 기관의 쉬운 글쓰기 웹페이지상에 서면 의견을 게재하고 아울러 실질적인 답변을 연례 보고서에 싣도록 한다.

⑨ 대중 참여 권장에 대한 안내

지속적으로 해당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을 향상시킬 방법 및 쉬운 글쓰기 향상이 필요한 문서들을 찾는 방법에 관하여 대중 및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을 얻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해당 기관의 쉬운 글쓰기 웹페이지와 더불어 다른 상호작용적인(인터랙티브) 온라인 도구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 문서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행정관의 제안서를 참조할 것.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inforeg/disclosure_principles.pdf>.

54) 아래 웹사이트에서 행정명령 12866 “규제계획 및 검토”의 1조 (b)(12)(“각 기관은 불확실성의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송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를 참조할 것. <<http://www.archives.gov/federal-register/executive-orders/pdf/12866.pdf>> 더욱 최근의 예로서, 아래 웹사이트에서 행정명령 13563 “규정 및 규제 검토 향상”은 규정이 반드시 “접근가능하고, 일관적이며, 쉬운 언어로 쓰이고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http://www.gpo.gov/fdsys/pkg/FR-2011-01-21/pdf/2011-1385.pdf>>.

- 소셜 미디어, 웹 기반 인터랙티브 기술 및 문서업무감축법에 관한 2010년 4월 7일 자 정보규제국(OIRA) 행정관의 제안서⁵⁵⁾
- 문서업무감축법 - 포괄적 정리에 관한 2010년 5월 28일 자 정보규제국(OIRA) 행정관의 제안서⁵⁶⁾
- 웹 관리 및 최적화 기술의 온라인 사용에 대한 지침에 관한 2010년 6월 25일 자 관리예산처(OMB) 디렉터의 제안서(M-10-22)⁵⁷⁾
- 제삼자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의 기관 사용을 위한 지침에 관한 2010년 6월 25일 자 관리예산처(OMB) 디렉터의 제안서(M-10-23)⁵⁸⁾

제 2 절 프랑스

1. 개 관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그 어떤 국가보다도 크고 프랑스어에 대한 긍지가 대단한 국가이다. 프랑스 헌법 제2조 제1항은 “공화국 언어는 프랑스어다(La langue de la République est le français).”라고 명시하여 프랑스의 국어가 프랑스어임을 천명하고 있고, 이는 오래 전부터 프랑스어가 국가의 단합을 이루게 하고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뒷받침해 주는 매개체라는 프랑스 국민들의 정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⁵⁹⁾

프랑스어는 12~15세기에는 문학 언어, 16세기에는 행정 언어, 18세기에는 유럽 상류층의 언어 등으로 시대에 따라 달리 불리며 그 위상이 바뀌어 왔다. 19세기에는 러시아의 상류층이 프랑스어를 사용했고, 20세기 중반까지는 유럽의 외교어로 자리잡았다. 오늘날 영어의 강세로 프랑스어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손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프랑스어는 프랑스인 6천만 명을 포함하여 세계 52개국의 프랑스어권에서 약 2억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 언어이다.⁶⁰⁾

55)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inforeg/SocialMediaGuidance_04072010.pdf.

56)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inforeg/PRA_Gen_ICRs_5-28-2010.pdf.

57)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memoranda_2010/m10-22.pdf.

58)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memoranda_2010/m10-23.pdf.

59) 전학선, 프랑스 알리앙스 프랑세즈 관련법제 및 운영 현황, 외국의 자국어 보급기관 관련법제 및 운영현황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0. 8. 23, 73쪽.

60) 김진수, 프랑스의 언어 정책,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11쪽.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라는 법문은 1992년 헌법률(loi constitutionnelle)에 의해 추가로 도입되었다. 이 조항은 유명한 「투봉(Toubon)법」(더 정확한 법 이름은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4일 법률」이다⁶¹⁾. 이하 “투봉법”이라 한다.)⁶²⁾ 제1조⁶³⁾에서 다시 한 번 천명되고 있다. 한 나라가 자신의 국어를 헌법에 규정한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언어라는 중요한 문화에 대한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은 글로벌이란 수식어가 일반화된 현 시점에서 보면 그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⁶⁴⁾

1970년대 이후 유럽공동체법이 점차적으로 체계를 잡아가고 영어가 전문용어뿐 아니라 일상과 공공에서 폭넓게 사용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자국어의 문화적 자존심의 상징적 표현으로 대변되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1975년)을 제정하고, 자국어 보호주의의 정책을 강화하였다.⁶⁵⁾

프랑스 언어 정책의 전통적인 명제인 “프랑스어의 옹호와 선양(Dé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은 시대에 따라 대상이 달라져 왔는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는 프랑스어가 오랫동안 누려 왔던 외교어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영어의 위협과 프랑스 국내에서도 확산되어 가는 영어의 오남용의 확산에 대하여 관용적 자세만 견지해서는 안 된다는 국내외의 프랑스어를 옹호하고 애호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들에 의해 언어 나아가 문화 정책적인 측면에서 법령과 제도로 확립하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⁶⁶⁾

2. 구체제하에서의 프랑스어 정책 및 법제

대체로 프랑스의 위정자들은 프랑스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러한 입장은 근대 프랑스의 성립 이전인 구체제(앙시앙 레짐, Ancien Régime)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61) La loi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62) 「투봉법」 전문은 부록 3 참조.

63) “헌법상 공화국의 언어인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인격과 자산의 근본적 요소이다” Langue de la République en vertu de la Constitution, la langue française est un élément fondamental de la personnalité et du patrimoine de la France.

64) 전 훈, 프랑스의 공공언어 개선 및 전문용어 표준화 관련 정책 및 법제, 「국어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법 체계 정비 방안 연구」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12. 10. 19, 49쪽.

65) 전 훈, 앞의 글, 49쪽.

66) 이재영, EU연구 제1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06, 116쪽 참조.

실제로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구체제 시절에 제정되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에 대한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⁶⁷⁾

(1) 빌레르 코트레(Villers-Cotterêts) 칙령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 법령은 1539년 8월 프랑수아(François) 1세가 제정한 「빌레르-코트레(l'ordonnance de Villers-Cotterêts) 칙령」이다. 「빌레르-코트레 칙령」은 모든 사법 절차와 행정 절차에서 프랑스어만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⁶⁸⁾ 이른바 사법(司法) 사무에 관한 오르도낭스(ordonnance)⁶⁹⁾인 이 칙령은 이장베르(Isambert)가 편찬한 ‘옛 프랑스법률 총람(le recueil général des anciens lois français)’ 제12권에 언급되어 있다.

「빌레르-코트레 칙령」이 제정될 당시 전 국민의 99%가 프랑스어를 모르고 각기 지방 특유의 지방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강력한 언어 통일 정책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⁷⁰⁾

「빌레르-코트레 칙령」이 제정된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왕국이 통일된 기반 위에서 국내외적으로 왕권을 확립해 가는 시기로, 국외적으로는 이탈리아와의 전쟁으로, 국내적으로는 종교전쟁으로 불안정한 사회 기반이 왕권을 중심으로 더욱 공고해지는 시기였다. 특히 행정의 조직화, 조세 제도를 통한 재정의 강화, 사법권의 확립으로 왕국이 조직되어 가는 시기이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인문주의 정신과 인쇄술의 발달로 학문 연구가 쇄신되고, 지적 생활이 꽃피기 시작했고, 장원 경제의 몰락과 도시의 발흥, 사회 계층의 신분 이동에 따른 부르주아 계급의 성립 등 사회경제적 변동이 큰 시기였다. 또 복잡한 법률 체계(로마법, 국가 성문법, 관습법, 교회법 등)로 인해 법률가들이 득세하는 시기인 동시에 이 법률을 성문화, 체계화(codification)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언어적으로는 중기 프랑스어에서 근대 프랑스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으로

67) 전 훈, 앞의 글, 51쪽.

68) 김진수, 앞의 책, 25쪽; 김현권, 프랑스의 모국어 보호 정책과 법제, 새국어생활 제13권 제2호, 국립국어원, 2003 <http://www.korean.go.kr/nkview/nklife/2003_2/13_6.html> 참조.

69) Ordonnance는 프랑스 법제사(法制史)상으로는 본래 국왕의 칙령일반(勅令一般)을 뜻하는 것이었다. 콩세유데타(conseal d'État: 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각의에서 결정되며, 공시 후에 즉각 효력을 발생하지만, 추인의 법률안이 수권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일자 이전에 의회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실효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8013&mobile&categoryId=200000258>>

70) 이재영, 앞의 논문, 117쪽.

모국어인 프랑스어에 대한 국민적 자의식의 발로로서 프랑스어가 라틴어를 대신해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언어에 대한 규범화, 체계화(codification)가 이루어진 시기이다.⁷¹⁾

이 시기에 와서 특히 법과 행정 관련 문헌들이 프랑스어로 광범위하게 기록되면서, 라틴어와 지방어로 기록된 문헌들이 점차 감소한다. 그리고 각 지방에 고유한 관습에 따른 관습법들이 프랑스어로 기록되어 성문법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또한 개인과 관련된 사법 영역에서 유언, 공증 문서, 영수증, 공적 서신 등이 프랑스어로 작성되었다.⁷²⁾

「빌레르-코트레 칙령」 110조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판결문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결코 모호하거나 불확실하여 별도의 해석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여 판결문의 이해에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불확실성이나 별도의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빌레르-코트레 칙령」 111조에서는 “판결문 내용의 오해는 라틴어 문구의 사용에 기인하므로, 지금부터는 모든 법원—파리의 고등법원과 지방의 법원—의 소송과 관련된 문서, 등록대장, 심문기록, 계약서, 선고문, 유언장, 영장 등을 포함한 모든 공문서는 프랑스어로 작성되고 프랑스어만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체 소송 절차가 “오직 모국어 프랑스어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빌레르-코트레 칙령」이 공포되고 10년이 지나서 프랑스의 어느 지방에서도 법률 문헌에서 지방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16세기 말경에는 모든 지방의 관습법, 개인 사법조차 모두 프랑스어로만 작성되었다고 한다.⁷³⁾

다만, 「빌레르-코트레 칙령」이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어의 사용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귀족과 부르주아지, 지식 엘리트와 종교 지도 계급에 국한된 것으로 프랑스 대중들의 언어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었다.⁷⁴⁾

71) 김현권, 앞의 글 참조.

72) 김현권, 앞의 글 참조.

73) 김현권, 앞의 글 참조.

74) 김현권, 앞의 글 참조.

(2) 1794년 법률—언어상 공포정치

제 1 조

이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공화국의 어떤 영토에서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공적 문서(l'acte public)는 프랑스어로만 작성될 수 있을 뿐이다.

제 2 조

이 법률의 공포가 있는 날 1개월 후부터, 사서증서(le seign privé)라 하더라도, 프랑스어로 작성된 문서만 등기할 수 있다.

제 3 조

모든 공무 종사자, 정부의 직원은 이 법률의 공포일로부터 자신의 업무 수행에서 프랑스어가 아닌 언어나 방언으로 조서(des procès-verbaux), 판결, 계약과 기타 행위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형사법원(le tribunal de police correctionnelle)에서 6개월 금고와 파면에 처한다.

제 4 조

이 법률의 공포가 있는 날 1개월 후부터 사서증서라 하더라도 프랑스어가 아닌 언어나 방언으로 작성된 등기문서를 수령하는 자는 동일한 형에 처한다.

혁명력 2년 열(熱)월 2일(2 thermidor de l'an II, 1794년 7월 20일) 법률은 혁명기에 공화국의 영토 전체에 걸쳐 프랑스어의 사용을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앞의 「빌레르-고트레 칙령」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2개 이상의 법률안을 제안하였는데, 위 법률은 행정, 교육,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언어가 주요한 국가 사무(l'affaire d'Etat)가 되었음을 반증한다.

당시 보고서 제출을 담당한 바레르(B. Barère)는 “국민들에게 국어(프랑스어)를 모르게 내버려 두면 이는 조국을 배반하는 것이며, 공화국 언어는 하나이며 모든 이에게 동일한 언어라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⁷⁵⁾ 그레구아르(H.-B. Grégoire)는 “프랑스어가 아닌 언어는 지방어나 봉건주의 잔재로서 일소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제정된 국민공회 법령인 1794년 법률은 언어적 공포정치로 표현된다. 이후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이 법률은 공교육과 입법을 위한 위원회의 새로운 보고서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행이 중지되었다.

75) 심을식, 프랑스의 언어 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 제38집, 한국프랑스학회, 2002, 6쪽.

어떻든 간에 주목할 사항은 드디어 국가(정부)의 공적 업무의 하나로 프랑스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3) 쥘 페리(Jules Ferry) 법(1882)

프랑스 근대교육사에서 쥘 페리를 빼놓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제국주의 시절의 식민지 확장 경쟁에서 영국의 위세에 밀리고,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애국주의가 확산되는 시절이었고, 당시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의 무상성, 의무성, 중립성을 역설한 페리의 노력으로 1881년~1886년에 걸쳐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다. 「쥘 페리법」이라 불리는 1882년 법률 제4조는 “초등교육(L'instruction primaire)은 6세부터 13세까지의 남녀 아동에게 의무적이며, 공립 혹은 사립 초등 혹은 중등 교육 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프랑스어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인 학교에 대한 사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⁷⁶⁾

따라서 문맹 퇴치, 철자법의 습득, 문법 교육을 하는 어휘 교육의 보급과 확대를 목표로 한 사전의 편찬은 프랑스어의 사용의 체계를 지원하는 구체적 노력인 동시에 정부의 언어 정책이 교육이라는 새로운 과제와 본격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⁷⁷⁾

3. 현대의 프랑스어 정책 및 법제

(1) 바-로리올법

프랑스는 1975년 12월 31일 자로 프랑스 최초의 프랑스어 사용법인 1975년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이른바 바-로리올(Bas-Lauroil)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바-로리올법」은 1975년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두 국회의원, 바(Bas)와 로리올(Lauriol)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⁷⁸⁾ 이 법은 프랑스 현대 언어 정책의 법적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바-로리올법」은 프랑스어 일반 어휘 내에 들어오는 외국의 전문 어휘를 막는 것을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 했다. 「바-로리올법」은 민사·상사 분야에서 프랑

76) 전 훈, 앞의 글, 53쪽.

77) 전 훈, 앞의 글, 53쪽.

78) 김진수, 앞의 책, 107쪽; 김현권, 앞의 글 참조.

스어 사용을 규율한 법으로서 물품과 서비스의 명명, 소개, 광고, 보증 조건, 노동 계약서 작성, 공공기관 등록 등에서 프랑스어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도록 의무화했고, 프랑스어 해당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했다.⁷⁹⁾

즉 「바-로리올법」 제1조에서는 “상품명, 소개, 광고, 사용 안내, 상품과 용역의 보증 조건, 신용장, 청구서 및 영수증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한다. 외국어 용어의 사용은 금지한다.”라고 규정하여 물품과 서비스의 명명, 소개, 광고, 보증 조건 등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외국어 사용을 금지하였다.

「바-로리올법」 제4조에서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유효한 고용 계약서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외국어의 용어나 표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 계약서 작성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외국어 사용을 금지하였다.

「바-로리올법」 제8조에서는 “그 목적이나 형태가 어떠하든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계약, 개인 간의 계약은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프랑스 공공기관과 외국의 공적·사적 계약 단체가 맺은 계약에는 외국어가 병기될 수 있고, 이는 프랑스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여 계약서 작성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바-로리올법」은 민사·상사 분야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규율한 법이므로 그 집행은 ‘소비자보호 정무장관’ 산하의 ‘소비 및 규제방지 총괄국’과 재경예산부 산하의 ‘소비 및 공정거래 총괄국’, 관세청이 담당하였다.⁸⁰⁾

(2) 투봉법

1) 개 관

프랑스는 1994년 8월 4일 자로 「바-로리올법」을 강화한 「투봉법」⁸¹⁾을 제정하였다. 「투봉법」은 당시 문화부 장관이자 법안의 제안자인 자크 투봉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 기업 활동, 매스미디어, 상품 광고나 라벨 부착 등에서 다른 외국어에 대한 프랑스어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술

79) 김진수, 앞의 책, 101쪽.

80) 김현권, 앞의 글 참조.

81) 종전의 「바-로리올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반면, 「투봉법」은 특히 하원에서 논쟁을 벌인 끝에 통과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통적인 프랑스어 수호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줄어든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김진수, 앞의 책, 36쪽 이하 참조.

활동과 집회에서 프랑스어의 사용 의무를 강화하고,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995년 3월 3일 자 데크레(décret 명령, 법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⁸²⁾

「투봉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공화국 언어인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인격과 자산의 근본적 요소이다. 프랑스어는 교육·연구·의사 전달 및 공공 서비스의 언어이다. 프랑스어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 속하는 국가들의 특권이다.”라고 규정하여 프랑스어를 수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 내에서 점차 지배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영어의 일반화 및 영어와 프랑스어의 혼용 현상에 대한 견제를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⁸³⁾

2) 투봉법에 나타난 프랑스 정부의 언어 정책의 구체적 적용⁸⁴⁾

① 재화, 제품과 서비스에서의 원칙적 프랑스어 사용

「투봉법」 제2조는 재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 제공, 소개, 사용법 또는 사용설명서, 보증 기간과 조건 기재, 그리고 계산서와 영수증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제 2 조

- ① 재산과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 제공, 게시, 사용법 또는 활용법 및 보증의 범위와 조건, 기타 계산서와 영수증 등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서면이나 구두에 의한 시청각 광고에도 적용된다.
- ③ 이 조의 규정은 다수 국민에게 알려진 외국 이름의 대표적 제품과 특수한 제품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와 함께 등록된 기재와 메시지에 이 조의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프랑스에서 상품화되는 모든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프랑스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 조항에 대한 위반은 공정거래처(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가 단속하고 그 실적을 아주 상세히 보고한다. 이러한 단속은 모든 매장과 전자상거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단속은 전통적인 정보

82) 김진수, 앞의 책, 36-37, 87쪽.

83) 김진수, 앞의 책, 87쪽 참조.

84) 이하의 내용은 전 훈, 앞의 글, 55쪽 이하를 정리한 것이다.

매체(광고, 라벨, 사용법, 조작법, 사용 조건, 보증서 등)와 인터넷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텍스트, 메시지에 프랑스어 번역이 수반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품 위의 그림, 기호, 그림기호들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점검한다. 단, 상표에 관련되는 것들은 단속하지 않는다.

② 투봉법 제2조 위반에 대한 제재와 유럽공동체 정책과의 갈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통보하고 좀 더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정말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이첩한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판사는 범칙금을 위반한 제품 수량 전체에 부과하기 때문에 파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투봉법」 제정 직후부터 제2조 1항이 유럽연합의 최우선 원칙인 ‘상품의 자유 이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해 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관련 판결들과 지침에 의지하여 2000년 6월에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위반 시정 절차’에 착수하였다(이른바 ‘닭날개 사건’).

닭 날개가 들어 있는 종이 상자에 분명한 닭 날개 그림이나 사진이 있으면 예컨대 ‘chicken wings’라는 표기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에 대해 프랑스어 수호 단체들은 물론이고 프랑스 정부(문화부) 내부에서도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왔지만, 독일과 함께 유럽 통합의 양대 축을 자임하는 프랑스로서는 국내법의 상위법인 공동체 법규를 우여곡절 끝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프랑스는 2002년 8월 1일 자 데크레를 통해 소비자보호법(code de la consommation) R. 112-8 조를 개정하고, 2005년 4월 26일 자 공정거래처 관보에 「투봉법」 제2조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다음 경우에는 「투봉법」 제2조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하지 않는다.

- 라벨에 프랑스어 대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는 다른 언어로 된 용어 또는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경우,
- 라벨에 그림, 기호, 그림기호같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수단들이 사용되거나, 이런 다른 수단들이 다른 언어로 된 용어 또는 표현을 동반하더라도 그 언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는 「투봉법」 제2조가 유럽연합의 상품라벨 관련 지침에 위배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는 여러 가지 속사정 때문에 이와 같은 미봉책으로 더 이상의 확전을 피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⁸⁵⁾ 물론 프랑스 국내에서도 「투봉법」 폐지론자나 무용론자도 이 점에 근거하여 「투봉법」을 공격하고 있다.⁸⁶⁾

그러나 「투봉법」 제2조(상품 관련 모든 설명은 프랑스어로 해야 한다)가 유럽연합의 법령(상품의 정보를 알려 주는 그림이나 기호가 있으면 프랑스어 대신에 영어 등의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에 위배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2001년 9월 20일 자 ‘투봉법 제2조 시행에 관한 훈령⁸⁷⁾’을 제정하는 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로서는 집행위원회의 ‘위반 시정 절차’가 진행되어 「투봉법」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사태는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국의 국내법에 대한 유럽공동체법의 우월성과 프랑스 소비자들의 언어적 권리의 보호 사이에서 정부는 어정쩡한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프랑스의 언어 정책의 확고함이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 단면일 수도 있는 것이다.

③ 방송에서의 프랑스어 사용

방송에서 프랑스어 사용 의무에 대한 위반은 법적 처벌이 아니라 권장과 자율규제의 대상이고, 방송에 관한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방송위원회가 담당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사들에 ‘방송과 광고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준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올바른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④ 노동 분야에서의 프랑스어 사용

「투봉법」상 노동 분야에서의 프랑스어 사용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85) 「투봉법」 시행에 따른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 사이의 갈등에 관한 상세한 것은 송기형(2008), ‘프랑스어 사용법과 유럽연합’, “프랑스학연구” 제43권(프랑스학회 발간) 및 송기형(2003), ‘프랑스어 사용법 시행의 성과와 문제점 - 유럽연합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 “프랑스학연구” 제25권(프랑스학회 발간) 참조.

86) [Http://www.europelibre.com/CL2002/CL020730.htm](http://www.europelibre.com/CL2002/CL020730.htm) 참조.

87) [Http://www.culture.gouv.fr/culture/dgIf/rapport/2002/Rapport_au_parlement_2002](http://www.culture.gouv.fr/culture/dgIf/rapport/2002/Rapport_au_parlement_2002). 그러나 이 훈령은 국사원(Conseil d'Etat)의 2003년 7월 30일 자 판결에 의해 무효화되고, 프랑스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2005년 4월 26일 자 공정거래처 관보에 지침을 게재한 것이다. 송기형, 앞의 논문(2012), 51면.

제 8 조

노동법전 제L.121조의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L.121조의1 ② 서면으로 공증하는 근로 계약은 프랑스어로 작성한다. ③ 근로 계약의 대상에 상응하는 프랑스어 용어가 없어 부득이하게 외국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 계약에 관한 외국어 용어에 대하여 프랑스어의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근로자와의 계약이 문서로써 공증되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계약서는 해당 외국인의 모국어 및 번역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의 계약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해당 두 가지의 계약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근로자는 모국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만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9 조

노동법전 제L.122조의39 다음에 제L.122조의39의 1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L.122조의39의 1 ① 근로자의 의무가 포함되거나 작업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이해가 필요한 문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한다. 해당 문서는 하나 또는 다수의 외국어 번역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이 조항은 외국으로부터 접수되거나 외국인에게 한정된 문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9 조의3

노동법전 제L.122조의37 제1항과 제3항 중 “제L.122조의34와 제L.122조의35”를 “제L.122조의34, 제L.122조의35와 제L.122조의39의 1”로 개정한다.

제 9 조의4

노동법전 제L.132조의2 다음에 제L.132조의2의 1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L.132조의2의 1. 단체 협약 및 협정, 기업 및 기관의 협약은 프랑스어로 작성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규정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다.”

제10조

노동법전 제L.311조의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외국어로 작성된 텍스트. ⑨ 서비스 또는 근로 제공에서 상응하는 프랑스어 용어가 없어 부득이하게 외국어 용어에 의해서만 지칭될 수 있을 때에는 제2호의 의미 속에서 잘못을 유도하지 않도록 프랑스어 교본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⑩ 제9항의 규정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사용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프랑스 영토 내에서 실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며, 제공자 또는 사용자의 국적이 프랑스인 경우에는 외국어의 완벽한 이해가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프랑스 밖에서 실시되는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출판업체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외국어로 작성된 고용 제공을 프랑스 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

3) 투봉법 이행을 위한 프랑스어총무처 연례보고서

「투봉법」 제22조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이 법의 시행과 국제기구에서의 프랑스어의 위상에 관한 연례 보고서⁸⁸⁾를 매년 9월 15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문화공보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소속의 프랑스어(담당)총무처(Délégation générale à langue française, 이하 총무처⁸⁹⁾)가 작성하고 있다. 총무처는 정부의 모든 관련 부서와 다양한 공·사립기관 그리고 여러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총무처 보고서는 「투봉법」 시행과 프랑스어의 국제적 위상뿐 아니라 프랑스어에 관한 공공정책 전반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프랑스 언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되고 있다.⁹⁰⁾

총무처가 작성한 프랑스어 관련 보고서는 시기별로 변화를 보이는데, 초기(1997~2001) 보고서에서는 「투봉법」 시행 결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다른 사항들은 부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전체 보고서의 반에 해당하는 국내 차원의 언어 정책에서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2005년 보고서는 본론에 앞서 ‘프랑스어 정책 쇄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2006년 보고서가 화두로 제시한 ‘움직이는 정책’의 목표에서는 이전의 국수주의 냄새가 짙은 정책 목표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⁹¹⁾

- 경제·사회·문화 생활의 주역들을 동원한 프랑스어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
- 자기 언어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보장,
- 프랑스어 정책과 사회적 통합,
- 어휘 개발 작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수요와의 부응.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2006년 이후 보고서에서 프랑스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어 숙달의 필요성은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미 1870년대의 「쥘 페리 법」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연상시킨다. 총무처의 2007년 보고서에서 학교는 이 핵심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프랑스어 숙달을 의무교육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점은 종전에 문맹은 재앙이므로 더 일

88) 2008-2011년 문화공보부 프랑스어 총무처 연례보고서 목차는 부록 4 참조.

89)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index.php/Disciplines-et-secteurs/Langue-francaise-et-langues-de-France2>.

90) 전 훈, 앞의 글, 50쪽.

91) 전 훈, 앞의 글, 54쪽.

관되고 단호한 방식으로 퇴치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프랑스 언어 정책의 중심이 「투봉법」에서 프랑스어 교육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성급할 수도 있지만, 이런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⁹²⁾

4. 공공언어 개선 및 전문용어 표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 입법자들은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하였고, 이를 위하여 프랑스어 사용의 개선과 확대, 그리고 용어(어휘)의 확대를 위한 개발을 공식화하였다. 1994년 4월 12일 자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 또한 1996년 7월 3일 제정된 데크레⁹³⁾는 공적 용어(la terminologie officielle)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⁹⁴⁾

(1) 프랑스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공공언어 관련 정책⁹⁵⁾

1) 헌법위원회 「투봉법」 결정과 1996년 데크레(décret)의 제정

1970년부터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용어위원회가 설치되어 자신의 부처가 사용하는 용어를 관보에 게재하기 전에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전기한 1975년 「바-로리올법」은 관보에 공포되는 용어는 「프랑스어의 풍부함에 관한 데크레」(1972)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국가는 특정한 용어에 대해서는 이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에 위반되지 않고 사기업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프랑스어의 풍성함에 관한 좀 더 강화된 규율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1996년 7월 3일 데크레’가 제정되었다. 이 데크레는 국가로 하여금 아래의 기관에 대해 이러한 용어의 생산과 신조어, 특히 외래어(영어로 보아도 큰 오류는 없을 것이다)의 프랑스어화에 수반되는 신조어 생산에 관한 전문위원회, 프랑스 아카데미 등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그 실행과 보급 수단의 시행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동 데크레는 특히 공적 용어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2) 전 훈, 앞의 글, 55쪽.

93) le décret du 3 juillet 1996 relatif à l'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

94) 전 훈, 앞의 글, 62쪽.

95)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index.php/Disciplines-et-secteurs/Langue-francaise-et-langues-de-France2>

2) 네트워크

1996년 데크레는 공적 용어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역할을 다음 기관에 맡기고 있다.

- 각 부처의 용어 및 신조어 전문위원회(Les commissions spécialisées de terminologie et de néologie)
- 용어 및 신조어 전체위원회(La Commission générale de terminologie et de néologie)
- 아카데미 프랑세즈(L'Académie française)
- 과학기술협력자(Les partenair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 과학연구재단(Le CNRS)
- 프랑스어권 협력체(La coopération francophone)

(2) 전문용어 표준화 정책

프랑스는 1635년부터 프랑스어 표준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1975년에는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프랑스 전문용어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 terminologie)를 설립하였다. 1986년에는 모든 행정부처에 고유한 전문용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20개의 위원회 및 40개의 하위 분과가 설치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캐나다 대표, 퀘벡 대표, 스위스 대표, 벨기에 대표 등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었다.⁹⁶⁾

1970년~1988년 사이에 행해진 위원회들의 활동을 묶어 프랑스어 총괄국(DGLF)에서 ‘공용 신어사전’과 ‘공용 용어사전’을 발간하였다.⁹⁷⁾

프랑스 정부는 1973년 1월 18일에 ‘신어관보’(Journal officiel de néologisme)에 행정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장관 조례로 추천되거나 의무적인 용법으로 규정된 표현과 용어의 목록을 발표했는데, 이 목록에는 시청각 용어, 건축 용어, 도시계획 용어, 핵 기술 용어, 석유 산업 용어, 항공·운수 산업 용어 등이 포함되었다. 이 후 경제와 회계(1973년), 건강과 의학(1975, 1978년), 국방(1976년), 사법(1977년), 우주 항공 개발(1980, 1982년), 컴퓨터 공학(1981, 1983년), 관광(1982년), 통신(1982년)에 관련된 용어의 목록이 발표되었다.⁹⁸⁾

96) 김진수, 앞의 책, 99쪽 참조.

97) 김진수, 앞의 책, 100쪽.

98) 김진수, 앞의 책, 100쪽.

현재는 1996년 데크레에 따라 각 부처에 ‘용어 및 신조어 전문위원회’(Les commissions spécialisées de terminologie et de néologie)가 설치되어 있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용어 및 신조어 전체위원회’(La Commission générale de terminologie et de néologie)가 설치되어 있다.⁹⁹⁾

특히 ‘용어 및 신조어 전체위원회’는 새로운 전문용어 및 일상용어의 도입을 통하여 프랑스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전문용어 및 신조어에 관한 각 행정부처의 ‘용어 및 신조어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고, 개별 위원회와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이의 협력을 관장한다.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4년 임기로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아카데미 프랑세즈 종신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 문화부 장관이 관련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4년 임기의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용어 및 신조어 전체위원회’는 월 1회 소집된다.¹⁰⁰⁾

그 밖에 프랑스 표준화 기구(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s; AFNOR)와 프랑스 전문용어 연구위원회(CETT)도 전문용어 표준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5. 프랑스어 교육과 보급

(1) 국내에서의 프랑스어 교육 및 보급

1) 학 계

「투봉법」 제6조와 제7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가 영어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어는 학계의,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소통언어로서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다.

제 6 조

- ① 프랑스 내에서 프랑스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주최하는 전시, 토론 또는 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프랑스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 ② 행사계획을 제시하기 위하여 회의 개시 이전과 도중에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문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하나 또는 다수의 외국어 번역문을 제시할 수 있다.

99) 전 훈, 앞의 글, 63쪽; 김진수, 앞의 책, 101쪽 참조.

100) 김진수, 앞의 책, 101쪽.

- ③ 전시, 토론 또는 회의에서 준비 서류 또는 작업 서류를 배부하여야 하거나 결의안 또는 작업 보고서를 출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로 제시한 서류 또는 부속 자료는 적어도 프랑스로 된 요약본을 수반하여야 한다.
- ④ 이 조는 외국인만이 관여하는 전시, 토론 또는 회의와 프랑스의 국외 무역 진흥에 관한 회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 공익 법인 또는 공익 서비스 임무를 띤 사단법인이 이 조에서 의도하는 발표를 주최하는 경우 번역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7조

공익 법인이나 공공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공공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개인이 발행하고 프랑스에서 보급되는 출판물과 잡지 및 홍보물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때에는 적어도 프랑스로 요약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이미 「투봉법」 제정 과정에서 격렬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같은 법 제6조 위반을 경죄 위반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1995년 3월 3일자 데크레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형사 제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문화공보부 프랑스로 담당 총무처에서 2001년까지 국제학회의 동시통역과 프랑스로 학술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총무처 보고서에서도 학계에서의 프랑스로 사용 관련 부분이 1997~2001년도 보고서까지는 포함되었으나 2002~2005년도 보고서에서는 제외되었다. 2006년~2007년 보고서는 이 문제를 다시 다루면서, 국제학회에서의 통역을 지원하는 ‘파스칼 기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이 연 10만 유로에 불과해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 언어 교육·보급의 확대

「투봉법」 제11조는 혁명기 언어 정책에 의해 확립된 원칙(프랑스로 교육)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외국어 교육을 강화(외국어 2개에 대한 지식 습득이 교육의 기본 목표)하였다. 프랑스로 수호는 다른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전제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적 세계를 건설하려는 소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7년에서 2007년까지 모든 보고서들의 서언은 프랑스로 수호와 언어적 다양성 또는 다언어주의 장려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1997~2004년 보고서는 프랑스로와 외국어 교육을 함께 다루었다. 그

러나 이런 방식은 2005년 보고서를 기점으로 변경되어 외국어 교육은 다루지 않게 된다. 대신 프랑스어 숙달이 사회적 단결에 직결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7) 해외에서의 프랑스어 보급

프랑스는 1635년 프랑스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를 설립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프랑스어 관련 기관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기존의 문인협회를 공식화한 것으로,¹⁰¹⁾ 1637년에는 법적 기관으로 인준되었다.¹⁰²⁾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프랑스에 필요한 규칙을 제공하고, 프랑스어로 풍부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프랑스어로 예술과 과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했다.¹⁰³⁾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창설부터 언어 규범화(codification)를 목적으로 한 언어 정책 기구로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프랑스 학술원 사전(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¹⁰⁴⁾ 편찬 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¹⁰⁵⁾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어의 정서법과 표준어 제정, 표준어의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¹⁰⁶⁾

19세기에 접어들어 근대국가로서 국가, 국민 전체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거듭해 왔는데, 이때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프랑스어 보급과 공유화였다. 다만, 이 당시의 프랑스어의 보급은 무엇보다도 자국 내 보급을 위한 것이었다.¹⁰⁷⁾

프랑스어 국외 보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세기 전반 즈음으로 1830년 알제리 침략 이후 가속화되었던 식민지 획득과 깊은 관련이 있다.¹⁰⁸⁾ 즉 식민지에서 현지인에게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식민지 통치를 효율화하고 프랑스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현지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101) 김진수, 앞의 책, 29쪽.

102) 김현권, 앞의 글 참조.

103) 김진수, 앞의 책, 29쪽.

104) 프랑스 학술원(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은 대다수의 프랑스인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용어를 등재 기준으로 삼아, 방언이나 예술·과학 등의 전문어, 직업어 등은 등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전에 등재되는 모든 표제어는 프랑스 정부의 관보(Journal Officiel)에 발표한다.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설립된 지 60년 만인 1694년에 초판이 발간되었으며, 1935년에는 출판 300주년을 기념한 8판이 발간되었다. 현재는 9판이 발간 중인데, 2권까지는 출판이 완료되었으며, 3권은 2012년에, 최종권인 4권은 2016년에 출판될 예정이다. 정희원·위진,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 새국어생활 제21권 제4호, 국립국어원, 2011. <http://www.korean.go.kr/nkview/nklife/2011_4/21_19.html> 참조.

105) 루이 14세 통치 시기인 1674년에 독점적 사전 편찬권을 부여받았다. 김현권, 앞의 글 참조.

106) 김진수, 앞의 책, 90쪽.

107) 권재욱,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의 통합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8쪽.

108) 권재욱, 앞의 논문, 28쪽.

이후 프랑스어 국외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883년 폴 캉봉(Paul Cambon)과 피에르 풍생(Pierre Foncin)의 제안으로 설립된 ‘식민지 및 해외에서의 프랑스어 보급을 위한 국립협회’(L’association nationale pour la propagation de la langue française dans les colonies et à l’étranger)라는 호칭을 가진 민간단체인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를 활용했다.¹⁰⁹⁾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1884년부터 정식 활동을 시작했고, 1886년 공공기관으로 공인되었다.¹¹⁰⁾ 이 당시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식민지에 프랑스어를 보급하고 식민지 이외 국가에도 프랑스어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¹¹¹⁾

그러나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설립 배경은 단순한 프랑스 문화 보급 차원에서 프랑스어의 해외 보급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설립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아 설립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1870년도 보불전쟁의 패배로 침체된 분위기를 만회하고 프랑스 문화를 재건하여 외국에 프랑스 문화를 전파하고자 설립된 측면이 있다. 또한 종교적으로 가톨릭과 개신교 성직자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 첫 사무국의 구성원으로 했다. 알리앙스 프랑세즈라는 이름도 알리앙스 프랑세즈보다 20여 년 일찍 설립된 알리앙스 이스라엘(L’Alliance israélite universelle)에서 차용했다.¹¹²⁾

(1)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연혁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연혁>

연 도	주요 내용
1883년	폴 캉봉(Paul Cambon)과 피에르 풍생(Pierre Foncin)의 제안으로 ‘식민지 및 해외에서의 프랑스어 보급을 위한 국립협회’ 알리앙스 프랑세즈 설립
1884년	- 레셉스(Ferdinand de Lesseps), 파스퇴르(Louis Pasteur), 르낭(Ernest Renan), 베른(Jules Verne), 콜랭(Armand Colin)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을 파리 알리앙스

109) 배수옥, 프랑스의 외국인에 대한 자국어 보급 정책, 교육정책 포럼 제177권,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8. 8, 17쪽.

110) 권재욱, 앞의 논문, 28쪽.

111) 전학선, 앞의 글, 76쪽.

112) 전학선, 앞의 글, 76쪽.

연 도	주요 내용
	프랑세즈의 운영위원(les membres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lliance française de Paris)으로 임명 - 바로셀로나, 세네갈, 모리스 섬, 멕시코에 알리앙스 프랑세즈 설립
1886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파리의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공공기관으로 공인
1889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멜버른)에 알리앙스 프랑세즈 설립
1902년	캐나다(몬트리올)에 알리앙스 프랑세즈 설립, 미국에 알리앙스 프랑세즈 연합 설립
1904년	프랑스 내에 150여 개, 해외에 450여 개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설립
1917년	서인도 제도, 도미니카에 알리앙스 프랑세즈 설립
1919년	현재 프랑스 파리의 프랑스어 보급소인 101 Bd Raspail(라스파이 대로 101)에 프랑스어 학원 개원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한 상황에서 독일이 알리앙스 프랑세즈 기록물을 베를린으로 가져감.
1943년	드골 장군이 알제리 연설에서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기록물들을 다시 되 찾을 것이라고 하여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중요성을 더욱 더 부각시킴.
1944년	파리 회복 후 파리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개원
2002년	알리앙스 프랑세즈 현대화 추진
2008년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법인화

* 출처 : 전학선, 앞의 글, 76~77쪽 재구성

(2)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의 설립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재단법인(fondation)이다. 프랑스에서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2008년 이전에는 단순한 결사체, 즉 단체(association)로 인정되었다. 1901년 법률(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t d'association)에 따라 단순한 단체로서 인정되었으나, 2008년 재단법인화한 것이다.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의 본부는 파리에 있다.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은 프랑스 정부부처 가운데 외교·유럽부(ministère français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européennes) 소속이다.

(3) 운영 현황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은 프랑스어 보급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요건을 검토한 후 알리앙스 프랑세즈로 인증을 한다. 해외에 프랑스어의 보급을 위하여 일찍이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설립한 프랑스는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하여 프랑스어 보급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고 있다. 2010년 현재 135개국에 1,016개의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있으며, 여기에서 492,4612명의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주요 8개 도시(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대구, 전주)에 설치되어 있다.¹¹³⁾ 전 세계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각 대륙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¹¹⁴⁾

<알리앙스 프랑세즈 현황>

	국가 수	알리앙스 프랑세즈 수	학생 수
아프리카	36	129	76,152
북아메리카	2	133	41,899
라틴아메리카	33	274	188,291
아시아	23	78	99,408
유럽	41	354	86,711
합 계	135	968	492,461

(4) 재 원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은 2001~2008년도에 550만 유로의 기금을 모았는데, 2008년도 기준으로 재단의 규모는 3,860만 유로 정도이다.¹¹⁵⁾ 정부의 재정적 지원 보다는 수강료 등 현지 수입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113) <http://www.afcoree.co.kr/index.php?idobjet=2>.

114) 전학선, 앞의 글, 73쪽.

115) Rapport d'activité 2008, p. 34.

(5) 임 무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프랑스 국경 밖의 지역에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전파해 왔다.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임무를 수행한다.¹¹⁶⁾

-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랑스어 강좌를 제공한다.
- 프랑스는 물론 프랑스어권의 문화를 다양한 차원에서 보다 잘 알린다.
- 프랑스의 모든 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프랑스 문화의 다양성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 외에도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프랑스 정부가 공인하는 프랑스어 능력 시험인 DELF(Dipl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 일반불어능력인증시험)와 DALF(Diplôme approfondi de langue française, 고급불어능력인증시험)를 주관하고 있다.

제 3 절 중 국

1. 중국의 언어 정책 방향

과거 중국의 언어 정책은 문맹 퇴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문자 개혁 위주로 시행되었다. 한자의 필획을 줄이고 형태를 간단하게 고치는 간체자(簡體字)의 제정 및 보급, 표음문자로의 개혁을 염두에 둔 한어 병음(漢語拼音) 방안의 제정, 보급에 주력하였다. 개혁 개방 이후에는 문자 개혁에서는 안정 유지로 선회하여 더 이상의 약자를 제정하지 않고 시대적 요구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과거 언어 정책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던 중국문자개혁위원회는 언어 정책의 방향 조정을 반영하여 1985년 그 명칭을 국가언어문자개혁위원회로 개칭하였다.¹¹⁷⁾

2000년 10월 31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주석령 제37호, 이하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여 중국의 공통언어문자의

116) 전학선, 앞의 글, 80쪽.

117) 맹주역, 국제화와 중국의 언어변화, 아시아문화 제17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8, 261-262쪽 참조.

사용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중국은 과학 기술 발달·국제화에 따른 새로운 언어의 유입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사업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정치·경제 발전에 따른 중국의 대내외적 위상 변화에 따라 중국어 해외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2.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제정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은 우리나라의 「국어기본법」과 비교할 수 있는 법률로 총 4장¹¹⁸⁾ 2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¹¹⁹⁾ 「국가통용언어문자법」에서는 보통화(普通話)와 규범한자를 중국의 국가통용 언어문자(공용어 및 공용문자)로 선언하고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보급 및 시행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민의 국가통용 언어문자 학습 및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공공언어, 방송언어, 학교·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 공중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언어, 정보 처리 및 정보 기술 제품에 사용하는 언어 등과 관련한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전국적인 관리·감독은 국무원 언어문자 기관에서 담당하고, 지방 언어문자 기관과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사용을 관리·감독하며(국가통용언어문자법 제21조 및 제22조), 현급(懸級)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의 공상행정(工商行政) 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라 회사명, 상품명 및 광고 언어문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의 「국어기본법」과는 달리 「국가통용언어문자법」에서는 이 법의 내용을 위반하여 국가통용 언어문자 규범과 기준에 따르지 않고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6조 및 제27조 참조).

3. 전문용어 표준화¹²⁰⁾

(1) 개 관

중국에서는 전문용어와 관련하여 ‘번역명’, ‘학술 명사’, ‘전문 분야 명사’, ‘전문 직업 술어’, ‘술어’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 중에서 ‘학술 명사’와

118)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본칙과 부칙을 나누지 않고 부칙을 본칙의 마지막 장에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119)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전문은 부록 5 참조.

120) 이하의 내용은 국립국어원, 전문 용어 연구, 태학사, 2007, 82쪽 이하를 정리한 것이다.

‘술어’가 가장 많이 쓰이다가 최근에는 ‘술어’로 표준화되어 사용 중이다. ‘술어’는 1985년에 중국의 전문용어 표준화 기구에 의해 전문 용어 표준으로 수록된 항목으로써, “각 학과에서 전문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 또는 단어 결합”¹²¹⁾으로 정의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전문용어 정비 사업은 ‘술어 표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1983년에 공포한 중국의 국가 표준 ‘GB 3935.1-83 표준화 기본 술어 제1부분’에서 “표준화는 경제, 기술, 과학 및 관리 등 사회 실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 제정, 공포 및 표준의 실시 등을 통해 통일을 이루며, 이로써 최적의 질서와 사회 효율을 얻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996년에는 다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질서를 얻기 위하여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공통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여 표준화의 실행 범위와 활동을 보다 넓게 수정하였다.

(2) 전문용어 정비 사업의 연혁

1) 새 중국 건립 이전(~1949년)

중국에서의 전문용어 정비에 대한 관심은 서양 사회와의 접촉과 서양 문물의 수용 등에서 비롯된 전문용어의 도입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초기의 전문용어의 정비는 번역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청나라 정부는 1909년에 과학 명사 편정관(科學名詞編定館)을 설치하여 각 전문분야의 중외명사 대조표 및 전문분야별 사전을 만들어 번역명의 통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고, 이것이 중국 최초의 과학기술 전문용어 의결 통일기구이다.

1919년 신해혁명을 전후하여 과학기술 지식의 전파와 더불어 전문용어의 심의·결정 사업은 보다 중요한 입지를 갖게 되었다. 장쑤 교육회의 물리화학 교수 연구회, 중화 의학회 등 지역적·전국적 학술 단체에서 물리학, 화학, 의학 분야의 ‘명사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화학, 물리학, 수학, 동물학, 식물학, 의학 분야의 전문용어가 의결되었다.

1918년 중국과학사(中國科學社)는 과학 명사 심의 결정 초안을 마련하였고, 1919년에는 과학 명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21) 중국 표준 연구 센터의 전문 용어 표준화 연구실에서 구축하고 관리하는 중국 전문 정보넷 (<http://www.cnterm.org>) 전문 용어 DB 참조.

한편, 청나라 정부의 대학원(교육부에 해당한다)은 1928년에 ‘번역 명칭 통일 위원회’를, 1932년에는 ‘국립번역관’을 설치하여 전국 과학기술 전문용어 심사·결정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2) 새 중국 건립 이후(1949년~현재)

1949년 중국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그 이듬해인 1950년부터 국립번역관의 전문용어 정비 사업은 새 정부의 과학 기술 기관인 중국과학원에 이관되었다. 중국과학원 주관으로 같은 해에 ‘학술 명사 통일 사업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산하에 자연과학조, 사회과학조, 의학위생조, 시사문학조, 예술조 등 5개의 하위 소조를 설치하였다.

전문용어의 표준화는 학술 명사 통일 사업 위원회의 각 관련 자연과학 학회 및 연구 기구에서 학술 명사를 제안하고, 중국과학원에서 갈무리를 하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결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1956년에 문화교육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전문용어의 규범화 사업은 중국과학원에서 주관하게 되었고, 중국과학원 편역출판위원회 산하에 ‘명사실’이라는 연구실을 설치하여 전국의 자연과학 전문용어의 통일과 심사·결정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중국의 정치 환경으로 말미암아 전문용어 정비 사업은 10여 년간 정지되었다가 1978년에 재개되었다.

같은 해 중국은 ISO(국제표준화기구) 국제 표준화 조직에 다시 가입하여 TC (Technical Committee) 37(제37 전문위원회)의 회원국이 되었다. 1985년에는 ‘전국 과학기술 명사심사 결정위원회’를 정식으로 설치하였고, 그 산하에 이학, 공학, 의학, 농학 등 총 49개의 하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국 과학기술 명사심사 결정위원회는 2006년 현재까지 67개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규범 전문 용어를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한편, 1985년 10월에 정부 기관인 국가기술감독국은 ‘전국 술어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 주관 부서로서 주로 전문용어학의 일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연구,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서 편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전문용어 정비 관련 기구

중국에서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구에 의해 수행된다.

- CSTBS(중국 표준화 위원회)/TC62: 국제적으로는 ISO/TC37과의 연계를 담당하고 국내적으로는 전문용어 표준화 원칙의 제정과 조정 작업, 전문용어의 제정과 수정 원칙 및 방법에 관한 국가 표준을 제정한다.
- 각 부처의 표준화 부서와 각 전문분야 표준화 기술위원회: 해당 전문 분야 내의 국가 전문용어 표준의 제정과 수정 작업을 담당한다.
- 지방 표준화 부서: 국가 표준의 제정에 협력하고 국가 표준의 선전, 시행과 감독을 수행하며, 지방성 표준을 제정한다.

(4) 전문용어 표준화 원리

중국의 ‘전문용어 표준 작성 규정’의 국가 표준, 즉 GB1.6-88은 중국 국가기술 감독국에 의하여 1988년에 발표된 것인데, 이 표준에서는 전문용어의 표준화의 기본 요구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 전문용어 표준화는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언어 문자 방면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전문용어 표준은 GB1.1 「표준화 사업 지침: 표준 작성의 기본규정」과 GB10112 「전문용어의 일반 원칙과 방법의 확립」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 같은 표준 또는 같은 그룹의 표준에서 개념이 같은 서로 다른 전문용어는 하나로 통일해야 하며, 이미 발표된 국가표준이나 전문 분야 표준(부처 표준)과도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표준화된 전문용어는 관련 학과의 전문용어와 일치해야 하며, 전국 과학기술 명사 심의·결정위원회에서 공포한 전문용어와도 조정하여 통일한다. 전문용어가 지칭하는 개념은 가능한 한 국가표준과 일치해야 한다.

4. 중국어 해외 보급¹²²⁾

최근에는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어 사용의 범위가 확대되고 빈도도 높아지는 등 국제 공용어로서의 위상

122) 이하의 내용은 중국의 대외한어교육 행정조직과 법제, 「국어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법 체계 정비 방안 연구」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12. 10. 19. 83~101쪽을 보완·정리한 것이다.

도 올라가고 있다. 과거 중국의 언어 정책의 영향권 밖에 있던 홍콩, 마카오, 대만 및 화교가 널리 분포되어 있는 동남아 지역 등 중화권에서의 중국어 표준어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언어권의 국가에서도 중국어가 매우 중요한 외국어로 교수·학습되고 있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화교 및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육 전담기구 국가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판공실을 설치하고, 한어수평고시(‘汉语水平考试(Hanyu Shuiping Kaoshi)’의 약칭은 HSK.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국어능력 시험.)라는 중국어 시험 제도를 정비하여 중국어능력 검정 시험을 시행하는 등 중국어의 국제적 보급, 전파에 노력하고 있다.¹²³⁾

중국어 해외 보급을 중국에서는 대외한어교육(對外漢語教學)이라 일컫는다. 대외한어교육은 최근 10년간 신속히 발전하였다. 국가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판공실 쉬린(許琳) 주임의 소개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 세계에서 각종 방식으로 한어를 배우는 학생은 이미 4,000만 명에 달하고¹²⁴⁾ 2011년 중국에서 공부한 외국 유학생 수는 29만 명에 달한다.¹²⁵⁾ 세계에서의 한어 공부 열풍은 중국의 경제 발전, 국제 위상의 향상에 따른 국제 교류의 확대 등 객관적인 배경 이외에,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외 한어 교육 지원과도 갈라놓을 수 없다.

(1) 대외 한어 교육 행정 조직

1) 국가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

중국의 대외 한어 교육 주관 부서는 국가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國家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 이하 ‘한어영도소조’)이다. 국무원은 1987년 7월 24일 한어영도소조를 설립하여 전국의 대외 한어 교육을 주관하고 교육부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였다. 1987년부터 1998년까지 한어영도소조는 교육부, 국무원화교업무판공실(國務院僑務辦公室), 국무원의사판공실(國務院外事辦公室, 1998년 국무원신문판공실로 변경), 외교부, 문화부, 라디오영화텔레비전부(廣播電影電視部, 1998년 국가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으로 변경), 신문출판서, 국가언어문자업무위원회(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8개 부서와 북경언어학원(北京語言學院)의 지도자로 구성되었다. 1998년 대외 한어 교육 발전의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대외한어

123) 맹주역, 앞의 논문, 261쪽 참조.

124) 孔子學院搭建中國與世界交流的橋樑, <http://news.xinhuanet.com/overseas/2009-12/08/content_12610570.htm>

125) 教育部, 2011年全國來華留學生數據統計, <http://www.edu.cn/dong_tai_421/20120228/t20120228_745546.shtml>

소조에 재정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2003년 상무부로 변경) 3개 부서를 추가하고 북경언어학원은 한어영도소조에서 제외하였다.

한어영도소조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국무원의 지도 아래 국가 대외 한어 교육 사업의 방침 정책, 발전 전략, 업무 계획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2) 한어 교육의 대외 지원 계획과 대외 교류 및 협력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심사한다. (3) 관련 중앙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외 한어 교육 사업을 조정한다. (4) 중국대외한어교학학회를 지도한다. (5) 대외 한어 교육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처리한다. (6) 대외 한어 교육 전문 경비 예산을 심사한다.

한어영도소조 각 부서의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국가대외한어교육영도소조의 업무를 주도하고 전국 교육 부서의 대외 한어 교육 업무를 책임지며 외국 정부와 한어 교육 문제 관련 연락을 담당한다. 국무원화교업무판공실은 해외 한어 교육 기구를 연락하고 해외 각종 한어학교의 한어 교육과 관련 중화문화의 교육 활동을 지도 및 지원하고 동 판공실 소속 학교의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국가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대외 한어 교육 업무의 거시적인 지도를 강화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대외 홍보 방침 정책과 경비 방면에서 지도 및 협력한다. 외교부는 해외 주재 대사(영사)관의 주재국 한어 교육의 발전을 지도하고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북경 주재 대표기구의 주재원과 북경 주재 외국 기자의 한어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재정부는 경비 방면에서 대외 한어 교육 업무를 지원한다. 상무부는 경제 무역 영역의 대외 한어 교육 및 대외 한어 교육의 관련 지원 프로젝트의 입안을 담당한다. 문화부는 해외 방송국, 문화 업체 등 한어 교육의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해외에 설립한 중국문화센터의 한어 교육 활동을 지도한다. 국가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은 국제방송의 한어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해외 방송국의 한어 교육 기구와 교류 협력을 전개하고 국내 관련 제작사의 대외 한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협력한다. 신문출판서는 대외 한어 교재와 기타 관련 도서, 간행물의 출판, 발행을 담당한다. 국가언어문자업무위원회는 국가 언어 정책, 언어 계획 및 언어 문자 규범 기준 및 교사진 양성 영역에서 대외 한어 교육을 지도하고 조언을 담당한다.¹²⁶⁾

현재 국무원의 학과 전공(學科專業) 목록에는 249개 전공이 있는데 어느 전공도 11개 중앙 부서에서 연합으로 영도 소조를 구성한 적이 없다. 이것은 중국

126)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852/200506/8590.html.

정부가 대외 한어 교육을 “국가와 민족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가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판공실

국가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판공실(이하 ‘한어판공실’이라 함)은 한어영도소조의 일상 사무국이며 교육부 소속으로서 교육부에서 관리한다. 한어판공실의 설립 취지는 “대외 한어 교육 보급에 힘써 세계가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¹²⁷⁾

한어판공실의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한어영도소조에 대외 한어 교육 사업의 방침 정책, 발전 계획 및 사업 계획 등 방안을 제안한다. (2) 각 관련 부서 및 기구를 지도 및 협력하고 한어영도소조가 결정한 방침 정책, 발전 계획 및 사업 계획을 시행한다. (3) 대외 한어 교육의 학과(學科) 건설, 교사진 양성, 교재 편찬 등 업무를 기획 및 지도하고 각종 대외한어고시의 시험 문제 연구 작성 및 시험 감독 업무를 조직하고 협력한다. (4) 대외 한어 교육 영역의 국제 교류와 합작을 조직, 협력 및 실시한다. (5) “중국대외한어교학학회”와 “세계한어교학학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협력한다.

한어판공실은 7개 부서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서 명칭과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종합처: 한어판공실 내 행정, 인사, 비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중국대외한어교학학회와 세계한어교학학회의 업무를 연락하며 대외한어교육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정리하고 한어판공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한어영도소조 구성원 사이의 연락 업무를 협력한다. (2) 교류처: 대외 한어 교육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해외 공자학원의 설립 기준과 건설 계획을 담당하며 해외 공자학원의 허가과 관리 업무에 참여하고 “Chinese Bridge”(漢語橋, 중국어 다리, 중국어 가교(架橋))¹²⁸⁾ 한어 경시 대회 및 각종 국제 한어 경시 활동을 조직하고 협력한다. (3) 교학처: 대외 한어 교육의 교재를 편찬 및 보급하고 대외 한어 교육 요강을 연구 작성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교육 자원을 개발하고 학과 개설을 추진하며 우수한 교재를 추천하고 교재, 도서 및 음향 제품을 대외에 증여한다. (4) 교사처(師資處): 대외 한어 교사진 양성 계획과 조직 업무를 담당하고 “한어를

127) <http://www.edu.cn/20050721/3144266.shtml>.

128) “Chinese Bridge”(漢語橋, 중국어 다리, 중국어 가교)는 공자학원이 주최하는 한어 경시 대회이다. 이 경시 대회에는 漢語橋-세계대학생한어경시, 漢語橋-세계중학생한어경시, 漢語橋-재중유학생한어경시, 漢語橋-비즈니스한어경시가 포함된다.

외국어로 가르치는 능력” 고시와 인정(認定) 업무를 조직하고 실시하며 국가에서 파견하는 한어교사의 선정과 파견 업무를 담당하고 국제한어교사 지원자의 초빙, 선정과 파견 및 관리를 담당하며 외국 한어학 연구학자의 단기 중국 방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5) 고시처: 국내외 대외 한어 고시 업무를 조직하며 협력하고 대외 한어 고시 시험 문제를 연구 개발하며 고시 보급 업무를 실시하고 시험 장소의 자격 평가, 설립 허가를 실시하며 관련 관리 제도 등을 마련한다. (6) 재무처: 국가 대외 한어 교육 경비 예산을 작성하고 각종 재무 관리 제도를 작성하고 집행하며 한어판공실의 정상적인 운영과 사업 발전을 보장한다. (7) 북경화도(華圖)한어문화서비스센터: 국내외 한어 교육 교재 지원을 담당하고 한어판공실을 대리하여 교재, 도서, 음향 제품 등을 증여하거나 판매하며 해외 한어 교재 출판과 발행 기구 및 대리인과 연락하고 대외 한어 교육 교재의 출판에 참여하며 대외 한어 교육 교재 전시 행사를 주최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고 한어 교육 업무와 관련된 상업 활동 등을 전개하고 해외에 보급한다.

(2) 대외 한어 교육 정책 및 법제

1) 대외 한어 교육 정책

① 정책 연혁

신중국의 대외 한어 교육 사업은 1950년부터 시작되었다. 같은 해 1월, 체코와 폴란드 양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유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는데 이 제안을 받은 당시 정무원(현 국무원)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회의를 소집하고 정무원 문화교육위원회, 외교부, 교육부로 전문소조를 구성하고 계획을 작성하며 관련 국가와 유학생 교환 사항에 대하여 협상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8월 31일, 정무원 문화교육위원회는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5개국 유학생 교육 임무를 교육부에 하달하였다. 같은 해 9월, 칭화대학(清華大學)이 신중국 최초 유학생의 한어교육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명칭은 칭화대학 동유럽 교환생 중국 언어 전문반(清華大學東歐交換生中國語言專修班)이다.¹²⁹⁾ 중앙 정부는 유학생 업무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부, 교육부, 공청단중앙, 전국학련(全國學聯) 및 칭화대학의 관계자들로 동유럽 중국 주재 유학생 업무조를 구성하여

129) 程裕禎：新中國對外漢語教學發展史，北京大學出版社，2005，第7頁。

매달 한차례 회의를 소집하고 유학생 업무 문제를 논의, 해결하고 각 부서의 관리를 조정하였다. 1951년부터 베트남의 민족 해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닝(南寧)과 구이린(桂林)에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학원을 개설하였다. 1952년에는 “인민일보”¹³⁰⁾에 뤼수샹(呂淑湘)과 자오위안런(趙元任)이 편찬한 “문법 수사 강의”(語法修辭講話)를 연재함으로써 대외 한어 교육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을 체현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이 중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함에 따라 저우언라이 총리의 지시 아래 아프리카유학생판공실과 외국유학생고등예비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교사진을 파견하여 해외에서 한어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유학생고등예비학교의 설립은 대외 한어 교육 기구가 안정된 기지와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1962년 7월, 저우언라이 총리와 천이(陳毅)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무원 외사판공실은 교육부, 대외경제연락총국, 대외문화위원회 및 북경, 상해, 충칭(重慶) 등 도시의 외사판공실, 북경대학, 외국유학생고등예비학교의 관계자를 소집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외국 유학생과 실습생 업무의 2개 시범 조례 초안을 작성하였다. 1963년 8월, 고등교육부는 신중국 최초로 제1차 전국유학생 업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외국 유학생 업무 시범 조례(초안)의 제정과 제1차 전국유학생 업무회의 소집은 외국유학생고등예비학교 및 관련 대학교의 유학생 교육과 관리 업무의 임무, 방침, 정책을 더욱 명확히 하고 규범화 궤도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한다. 1965년 1월, 외국유학생고등예비학교는 북경언어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규모, 방식 등의 면에서 대외 한어 교육이 상당한 발전을 가져 왔다.

시작 단계의 대외 한어 교육은 당시 중국이 국제적으로 서방 국가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주로 동유럽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및 제3세계 신생 독립 국가가 파견하는 유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부가 주도한 정치적 성격이 농후하고 문화 전파보다는 단순히 교류 수단으로서의 단기 언어 교육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66년부터 극단적인 좌경 문화 대혁명이 발동되면서 1969년 북경언어학원도 폐교 조치를 당했다. 그 후 1971년 중국 정부가 유엔 대표 자격을 회복하면서 서서히 대외 한어 교육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북경언어학원은 1973년에 다시

130)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기관 일간지로서 당시 인민일보의 사설, 논평은 중국의 법률, 정책과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학교 운영을 회복하였으며 1975년에 외국 유학생 한어 학부 교육의 시범 강의를 시작하여 1978년에는 정식으로 해당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다. 이어서 북경 및 기타 지방 주요 도시의 대학교 역시 외국 유학생 교육을 회복하였다. 1978년 북경의 언어학자들은 외국인에 대한 한어 교육을 하나의 전문적인 학과로서 상응한 전공을 설립하고 전문적 연구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대외 한어 교육” 명칭은 대외한어교학학회의 준비 과정에서 산생되었다. 21개 관련 학회는 1982년 4월 북경언어학원에서 제1차 준비 회의를 소집하고 이 회의에서 학회의 명칭을 “중국교육학회 대외한어교학연구회”라 부르고 이 연구회는 추후 1급학회로 승격할 때 “중국대외한어교학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7년 중국 정부는 한어영도소조를 설립하고 대외 한어 교육 관리를 제도화하고 교사진의 관리와 양성을 보강하였으며 통일된 대외한어교사자격시험을 치르기 시작하였다.¹³¹⁾ 1988년 9월 제1차 전국대외한어교육 업무회의에서는 “대외 한어 교육은 국가와 민족의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대외 한어 교육의 중요한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1993년 2월 13일, 국무원은 20세기 90년대 및 21세기 초의 교육 개혁과 발전의 정책성 문서인 “중국 교육 개혁과 발전 요강”에서 대외 한어 교육 업무를 대대적으로 보강한다고 강조하였다.

1999년 12월, 제2차 전국대외한어교육 업무회의를 북경에서 소집하고 대외한어영도소조 천즈리(陳至立) 조장이 ‘인식을 제고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긴박감을 증가하고 대외 한어 교육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주제 보고를 하였으며 “2000-2004년 대외 한어 교육 발전 계획”을 검토하였다. 교육부는 2000년 2월 3일 “제2차 전국대외한어교육 업무회의 기요”를 발표하였다. 이 회의는 향후 대외 한어 교육 업무의 지도 사상, 업무 방침, 목표 및 주요 임무를 명확히 하였다. 이 회의는 향후 2개의 중요한 발전 방향을 제기하였다. 즉 (1) 해외에 한어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 주동적으로 한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한다. 과거 수동적으로 한어 교육을 실시하던 데로부터 변화하여 주동적으로 세계로 진출한다. 2004년 최초의 공자학원이 해외에 설립되고 대외 한어 교육 방침 정책은 “초청”(請進來)해서 한어를 가르치는 데로부터 “진출”(走出去)하는 데로 변화하고 광대한 해외 학생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중국대외한어현대교육과정센터”를 설립하고 현대화 수단을 적극 이용

131) 張永麗：淺談我國對外漢語教學，華商，2008(04)，第56頁。

하여 인터넷상 한어 교육과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대외 한어의 멀티미디어 교육의 주동권을 장악한다. 이 회의는 중국 정부의 대외 한어 정책을 가장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중요한 회의로서 필자는 아래에 별도로 상세히 논술한다.

2004년 교육부는 업무 중점을 중국 주재 유학생 관리 제도의 보강, 중국 주재 유학생의 규모와 수준의 향상, “Chinese Bridge(중국어 다리, 중국어 가교(架橋))” 프로젝트의 실시 강화, 해외 공자학원의 건설, 중미(중국과 미국) 네트워크 언어 교육 합작 프로젝트의 적극 추진, 한어수평고시 관리 방법의 개혁 등이다.¹³²⁾ 같은 해 2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03-2007년 교육 진흥 행동 계획”에서는 “대외 한어 교육을 대대적으로 널리 보급하고 국제 교육 서비스 시장을 적극 개척”할 것을 강조하였다.

2010년 5월 5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한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계획 요강”(2010-2020년)에서는 “대외 한어 교육을 지원하고 공자학원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며 교육의 국제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전문가 인재 양성에 힘쓰며 인재 양성 경로(루트)와 영역을 확대하여 대학교 졸업생의 해외 봉사자 서비스 체계(메커니즘)을 구축한다.”¹³³⁾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해외 공자학원의 운영을 정부에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민간의 이중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문가 양성의 일환으로 대외 한어 교육을 적극 활용한다. 교육부가 2012년 6월에 발표한 “국가교육사업발전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대외 한어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국제 교류 합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 유학 계획을 실시하여 각계의 적극성을 활용하고 중국 방문 유학생 규모를 확대하는바, 중국정부장학금 유학생 규모를 2015년까지 5만 명으로 향상시켜 아시아 최대의 유학목적지국으로 성장하며 계속해서 공자학원과 공자학원 건설을 지원하고 한어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한다.”라고 강조하였다.¹³⁴⁾

② 주요 내용

앞에서 밝혔듯이 교육부가 2000년 발표한 “제2차 전국대외한어교육 업무 회의 기요”(이하 ‘회의 기요’)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대외 한어 교육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한 정부 문서이다. 필자는 회의 기요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132) 楊秀華：深化時期的對外漢語教育政策與課程設置研究，長江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2(6)，第78頁。

133) “國家中長期教育改革和發展規劃綱要(2010-2020年)” “第十六章擴大教育開放(五十)”。

134) 教育部，國家教育事業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2012年6月，第62-63頁。

중국이 대외 한어 교육 사업을 적극 실시하는 이유는 대외 한어 교육 사업의 전략적 의미를 인식하고 상당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회의 기요는 동 사업의 중대한 역할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 대외 한어 교육은 국가와 민족의 사업으로서 중국이 실시하는 개혁 개방 정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대외 한어 교육 사업의 발전은 세계에 한어를 보급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홍보하며 중국과 세계 각국 국민과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가하고 더욱 많은 친중 인사를 배출하며 중국과 세계 각국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국제 영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전세계 3,000만 화인(華人),¹³⁵⁾ 화교와 중화 문화의 혈연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대외 한어 교육 사업의 흥망성쇠는 국운에 달려 있다. 국가의 흥성과 발전은 대외 한어 교육 사업의 발전에 기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 사업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한다. 즉 대외 한어 교육은 국가 개혁 개방의 국면을 위해 힘써야 하고 국가 외교 전략의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세계가 다극화로 발전하는 추세에서 경제 발전에 따라 국제 지위가 향상되고 중국은 미래 세계의 새로운 국면에서 필경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한어와 중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자국의 언어를 세계에 보급하는 것을 일종의 국책으로 결정하고 국가 외교 전략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중국도 한어(중국어) 보급과 중화 문화의 전파를 중시하는 것은 중국의 대외 개방 및 세계적으로 대국의 영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질적으로 대외 한어 교육을 국가와 민족의 사업으로 인정하고 한어를 전세계에 보급하는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대외 한어 교육을 대륙과 대만의 통일을 위한 정치 투쟁으로 보고 있다. 대만 당국은 소위 “국제 생존 공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대외 한어 교육”을 “융통성 있는 실무 외교”의 정치 궤도에 넣고 자금 우세를 이용하여 일부 국가에서 대륙과 한어 교육 장소를 쟁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만을 고립시키고 국가의 평화 통일 대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회의 기요(會議紀要)는 대외 한어 교육 업무의 지도 사상, 업무 방침 및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135) 화인(華人)은 중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거주국의 국적을 가진 중국계 주민을 말한다.

- 향후 일정한 기간 중국의 대외 한어 교육 업무의 지도사상은 대외 한어 교육을 국가와 민족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국가 개혁 개방과 외교 업무의 전반적인 방침에 따라 한어와 중화 문화를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급하며 국제 사회에서 한어의 역할과 영향을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 대외 한어 교육 사업의 방침은 주변국을 강화하고 유럽과 미국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기타 국가와 지역을 겸하여 고려하며 화교 및 유학생 자녀의 한어 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대외 한어 교육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교육 규모와 진영을 확대하고 대내로는 개혁을 심화하고 질과 양을 보증하며 관리를 개선하고 중국 방문 유학생의 한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온건하게 발전시키며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대외 한어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대외 한어 교육의 목표는 중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국에 우호적이며 한어를 장악한 인재¹³⁶⁾를 더욱 많이 양성하여 한어와 중화 문화가 더욱 넓은 범위에서 보급되도록 하고 한어 교육이 국제적인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과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서 지녀야 할 지위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신속히 개변하여 21세기 대외 한어 교육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회의의 기요는 지도 사상, 업무 방침 및 목표에 근거하여 향후 일정한 기간 대외 한어 교육의 주요 임무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정력과 인력을 집중하여 부동한 국가, 부동한 지역, 부동한 차원, 부동한 영역에서 걸맞은 실용적인 한어 명품 교재를 빠른 시일 내에 각각 편찬한다. 특히 현대화 정보 수단으로 대외 한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중시하고 방송과 인터넷용 교재를 편찬한다.
- 교사진 양성을 보강하고 한어 교사 파견 정원(定員)을 확대하며 여러 가지 방식, 경로를 통해 국내외 한어 교육 대오를 확대한다.¹³⁷⁾

136) 교육부는 각국 한어교사의 한어 교육 수준을 향상을 지원하고 국내외 한어교사의 한어 교육 영역에서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한어교사 단기연수프로젝트 신청 방법”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국한어교사 단기연수프로젝트”를 설립하고 각국 전문직 한어교사가 중국 방문을 통해 하계 단기 연수반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며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유학기금위’) 사무처에서 이 프로젝트의 모집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방법은 조문 형식이 아닌 일반 통지문 형식인데 2009년 9월 11일 제정 및 실시하는 방법의 내용을 보면 “1. 연수반 주최 시간과 담당 학교, 2. 연수 내용, 교육과 여행 안내, 3. 지원 내용 및 표준, 4. 신청인 자격, 5. 신청 자료, 6. 합격 및 통지, 7. 국가유학기금위사무국 중국방문부 연락 방식”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37) 교육부는 대외 한어 교육에서 멀티 교육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실무형, 복합형

- 해외에 한어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국내에 대외 한어 교육 기지를 설립하여 국내외 한어 교육 업무의 전개를 추진한다.
- 학과 이론 연구를 강화하고 학과 체계를 보완하며 학과 개선을 진일보로 추진한다.
- “중국대외한어현대원격교육센터”(中國對外漢語現代遠程教學中心)를 설립하고 현대화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인터넷 한어 교육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며 대외 한어의 현대 원격 교육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 한어수평고시(HSK)를 보완하고 문제은행(題庫)을 구축하고 확충하며 고시 장소 범위를 적극 확대하고 더욱 많은 학생들의 응시를 유치한다.
- 대외 경로를 더욱 확대하여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한어 교육 업무를 전방위로 추진한다.
- 자금 모집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가능한 재력을 동원하며 자금 투입을 점차 확대한다. 국가에서 전문 용도의 재정을 점차 확대 조달하는 외에, 관련 중앙 정부 각 부처, 지방 정부 역시 상응한 재정 지출 항목을 설립하고 대학교는 매년 수입 중 일정한 비율의 자금을 지출하여 해당 지역, 해당 대학교의 대외 한어 교육을 지원하며 사회 각 계층을 동원하여 대외 한어 교육 사업을 지원토록 권장하고 조건을 적극 창조하여 “중국언어문화발전 전문기금”을 설립한다.

2) 대외 한어 교육 법규

중국에서 교육과 관련된 법률로는 입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교육법” 및 “교사법”이 있고, 한어와 관련된 법률로는 이 입법 기구에서 제정한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이 있다. 대외 한어 교육을 직접 규정한 법률은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인데 이 법 제20조는 “대외 한어 교육은 반드시 표준어(普通話)와 규범 문자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타 관련 조항은 없다. 관련 대외 한어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규에서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입법 체계(지방 입법 체제 제외)를 보면 입법 기구에서 제정하는 법률 이외, 국무원에서 제정하는 행정법규 및 각 중앙 부처인 부(部)와 위원회에서 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10일 “한어국제교육석사 전공학위 대학원생 양성 지도 방안”(學位辦【2007】77號)을 제정하였다.

정하는 부문규장(部門規章)¹³⁸⁾이 있다. 부문규장은 일반적으로 규정(規定), 방법(辦法)이라 부른다.¹³⁹⁾ 대외 한어 교육 관련 법규는 교육부에서 제정한 “한어를 외국어로 교육하는 능력에 대한 인정 방법”(漢語作為外語教學能力認定辦法), “중국어수평고시(HSK) 방법”(中國漢語水平考試(HSK)辦法), “교육부 ‘중국어언어문화 우의상’ 설치 규정”(教育部‘中國語言文化友誼獎’設置規定)이 있다.

결론적으로 대외 한어 교육에 관련한 종합 법규는 없으며 대외한어교사 자격 인정, 대외 한어 교육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한 장려, 한어수평고시 관리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의 개별 부문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대외 한어교사 자격 인정 법규

교육부는 2004년 8월 23일 “한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능력에 대한 인정 방법”(이하 ‘능력인정방법’)(교육부령 제19호)을 제정하여 2004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1990년에 제정한 “대외한어교사 자격 심의 방법”을 대체하였다. 대외한어교사 자격 심의 방법은 중국 국내에서 신청한 대외한어교사에 대한 심의에 한정해서 규정하였지만 새로 제정한 능력인정방법은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더욱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대외 한어 교육 사업에 종사할 수 있고 외국 한어교사의 전공 수준과 교육 능력 향상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능력인정방법은 한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수준을 제고하고 한어를 외국어로 교육하는 능력 인정 업무를 규범화하며 교사진의 건설을 보강하여 대외 한어 교육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제정하였다(제1조). 능력인정 방법은 대외 한어 교육에 종사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갖춘 상응한 전공 지식 수준과 기능을 인정하는 데 적용한다. 인정을 거쳐 상응한 기준을 갖추면 “한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능력에 관한 인정서”를 발급한다(제2조).

능력 인정 업무는 한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능력에 관한 인정업무위원회(이하 ‘인정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인정위원회 성원은 교육부에서 임명한다. 임명위원회는 능력 인정 고시 기준을 제정하고 능력증서 교육 과정을 규범화하며 고시와 인정 업무를 실시하고 능력증서를 발급한다(제3조). 능력 인정 업무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제9조).

138) ‘부문규장’은 한국의 ‘시행규칙’에 해당한다.

139) 규장제정절차조례 (規章制定程序條例) 제6조.

능력증서 신청인은 한어 교육 업무를 사랑해야 하며 중국 문화를 열심히 소개하고 준법 정신이 있어야 하며 양호한 직업 도덕을 갖추고 2년제 대학 이상 학력과 필요한 표준어 수준을 갖춰야 한다. 내국인은 또한 대학영어 4급 이상 또는 외국어수준고시(WSK)에 합격해야 한다(제4조). 능력증서는 초급, 중급, 고급 3급으로 구분하는데(제5조) 초급증서의 고시 과목은 현대 한어 기본 지식, 중국 문화 기초 상식, 표준어 수준이고 중급증서의 고시 과목은 현대 한어, 한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이론, 중국 문화 기본 지식이며 고급증서의 고시 과목은 현대 한어 및 고대 한어, 언어학 및 한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이론, 중국 문화이다(제6조).

능력인정방법은 또한 고시 면제 대상, 신청 자료, 법률 책임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② 대외 한어 교육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한 장려에 관한 법규

교육부는 1999년 3월 15일 “교육부 ‘중국언어문화우의상’ 설치 규정”(교육부령 제2호(이하 ‘언어문화상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언어문화상규정은 세계 한어 교육의 발전과 중국 언어문화의 전파를 추진하고 중국 국민과 세계 각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중국언어문화우의상”(이하 ‘언어문화상’)을 설립하였다(제1조). 언어문화상은 한어 교육, 중국학 연구 및 중국 언어문화 전파 영역에서 특별한 공헌을 한 외국인에게 수여한다(제2조). 입상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의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한어 교육 방면에서 특별한 성과를 이룩한 자 (2) 한어와 중국학 연구 방면에서 특별한 성과를 이룩한 자 (3) 중국 언어문화 방면에서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 (4) 한어 보급과 중국 언어문화 전파를 조직, 관리하는 업무 영역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자이다(제4조).

언어문화상은 교육부에서 심의 결정하고(제6조) 구체적 업무는 대외한어교육영도소조판공실에서 담당한다(제8조). 매 3년에 1회 교육부 또는 외국 주재 중국 외교 기관에서 수여한다(제3조). 국내 각 성(省)급 교육 행정 부서, 대외 한어 교육에 종사하는 대학교와 저명한 전문가, 중국 언어문화 연구에 종사하는 기관과 저명한 전문가, 대외 교육과 문화 교류에 종사하는 기관, 외국 주재 중국 외교 기관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제5조).

입상자에 대한 장려는 아래와 같다. (1) 교육부에서 명예증서와 훈장을 수여한다. (2) 입상식과 단기 학술 방문 또는 3개월의 학술 연구에 초청하고 비용은 교육부 전문기금에서 제공한다(제7조).

③ 한어수평고시 관리에 관한 법규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 전신)는 한어수평고시(HSK, 중국어능력시험)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국어수평고시(HSK)방법”(국가교육위원회령 제21호)을 1992년 9월 2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어수평고시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의 중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한 표준고시이다(제2조). 한어수평고시는 초등(A,B,C), 중등(A,B,C), 고등(A,B,C) 고시로 나누고 고시에 합격하면 상응한 등급의 “중국어능력증서”를 발급한다(제4조, 제5조). 한어수평고시는 매년 6월과 10월 1회 국내외에서 지정한 대학교 또는 학술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제7조). 국가교육위원회(현 교육부)는 한어수평고시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가 고시를 지도하고 “중국어능력증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고시 업무는 국가대외한어교육영도소조판공실과 북경언어학원에서 담당한다.

(2) 중국 공자학원¹⁴⁰⁾

1) 설립 배경 및 근거

1980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래 폐쇄적이던 중국은 단기간 내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992년 계획 경제 체제로부터 시장 경제 체제로의 이행 선언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연 10% 전후의

고도성장을 기록해 왔다. 중국은 2002년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경제적 성공을 기반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점차 강화해 왔다. 또한 동남아시아 각국과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정치, 외교, 경제 방면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문화 및 교육 외교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의 설립과 그에 따른 중국어, 중국 문화의 적극적 보급을 들 수 있다.

140) 이하의 내용은 이세정 외,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법제연구원, 2010, 119쪽 이하를 수정 및 요약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1987년 급증하는 유학생의 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부 직속으로 ‘국가 대외 중국어 교육 지도소조’를 설치하여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외 중국어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다만, 당시에는 소극적으로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중국어 교육을 실시했다.¹⁴¹⁾

1993년 중국 중앙국무원은 「중국 교육 개혁과 발전 강요」를 통해 ‘대외 중국어 교육 강화’ 이론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대외한어(對外漢語)’라는 명칭의 과목을 과목 목록에 공식적으로 등재했다.¹⁴²⁾

중국의 중국어 보급 정책은 2000년대를 지나면서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즉 종래의 유학생에 대한 중국어 교육 중심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국어 학습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전 세계에서 중국어를 학습하는 현지 외국인에 대한 중국어 교육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¹⁴³⁾ 특히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인 2006년에는 ‘국가 대외 중국어 교육 지도소조’를 ‘국가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국가 중국어 국제 보급 지도팀)’로 변경하고 팀장을 종래의 교육부장에서 국무위원으로 승격시켰으며, 구성원도 재정부, 외교부 등 중앙 정부기관 간부 11명을 포함한 17명으로 증원했다. 이처럼 국무위원이 팀장을 맡고 각 부처의 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부터 중국 정부가 국외 중국어 교육 정책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2002년부터 국가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는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인스티튜토 등 외국의 자국어 보급 사업 기구를 모델로 해외에 중국어 보급 기구 설립을 준비했다. 2004년 3월 국무위원인 천즈리(陳至立)는 이 해외 중국어 보급 기구의 공식 명칭으로 중국 유교 문화의 대표적 인물인 공자의 이름을 따서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¹⁴⁴⁾ 다만, 공자학원은 공자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중국 외의 현지 교육 기관으로서 중국과 세계 각국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 각국 국민의 중국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각국의 중국어 학습자에게 편리하고 우수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⁴⁵⁾

141) 권재욱, 앞의 논문, 52쪽.

142) 권재욱, 앞의 논문, 52쪽.

143) 정윤철, 중국의 중국어 국제화 전략 추진 과정과 의미에 관하여, 중국연구 제47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9, 27-28쪽.

144) 정윤철, 앞의 논문, 29쪽.

145) 노윤환,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실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설치 현황

공자학원총부는 법인의 지위를 가지며 베이징에 있다. 공자학원은 2004년 11월 21일 세계 최초로 한국(서울)에 처음 개설된 이래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4년에 2010년까지 10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는 2년만인 2006년에 달성되었고, 2010년까지 500개소 개설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다. 2012년 12월 현재 전 세계 100개의 국가 및 지역에 공자학원은 400개소, 공자학당(孔子課堂)은 500개소가 설치되었으며 등록된 수강생은 65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¹⁴⁶⁾ 해외에 설치하는 공자학원의 명칭은 중국 ‘○○공자학원’으로 표시하고, 영문 명칭은 ‘Confucius Institute in ○○’으로 표시한다.

3) 설치 및 운영 방식

공자학원의 설치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중국 정부에 의한 직영 방식, 합작 방식, 독립(계약·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⁴⁷⁾

- ① 직영 방식은 학사, 교원, 교재 등 전부를 중국 정부가 정하고 공자학원의 운영에 관한 경비 일체를 중국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 ② 합작 방식은 외국 대학 등 교육 기관과 공동으로 공자학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 ③ 독립 방식은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의 경영권을 외국 기관 등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4) 주요 사업 내용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 콘텐츠 지원, 중국어 교사 양성 및 연수, 중국어 교재 개발 및 출판, 관련 학술 대회 개최를 그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설립 당시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을 그 주된 사업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각 학원마다 중국어 교육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에는 중국어 교육과 함께 중국 비즈니스 관련 지식을 교육하는 ‘비즈니스 공자학원’, 중국의학을 교육하는 ‘한방 공자학원’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종래의 대면식 수업이 아닌

2008. 2, 27쪽 참조.

146) 출처: http://www.chinese.cn/conference/article/2012-12/19/content_477820.htm (“孔子卡通图书系列”成创意典范字号 2012. 12. 29. 程莹) 近年来, 作为中外沟通的桥梁, 全世界100多个国家和地区建立了400多个孔子学院、500多家孔子课堂, 注册学员超过65万人, 而如何解决教材的问题越来越紧迫和重要。

147) 권재욱, 앞의 논문, 53쪽.

라디오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수업하는 ‘라디오 공자학원’, ‘인터넷 공자학원’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을 채용한 공자학원이 개설되고 있다.¹⁴⁸⁾

중국은 2003년부터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교재를 개발해 왔고,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학습 교재 ‘장성한어(長城漢語)’ 등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어 학습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처음 중국어를 접하는 12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승풍한어(乘風漢語)’를 개발하여 2008년 현재 미국 116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공자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재의 낮은 질과 전문 교원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특히 교원의 질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중국어 관련 전공 재학자를 ‘자원봉사 교사’로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하고, 외국인, 해외 거주 유학생 화교 등을 자원봉사 교사로 모집하는 등 전문 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국 내 중국어 교원을 국비로 파견하거나 해외 중국어 교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교원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¹⁴⁹⁾

이 외에 ‘세계 대학생 중국어 경시 대회(콘테스트)’와 ‘세계 중국어 대회’¹⁵⁰⁾ 등 중국어 보급을 위한 홍보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¹⁵¹⁾

제 4 절 일 본

1. 일본의 국어(일본어) 정책 기관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과 문화청(문화부 국어과)에서 국어(일본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국어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일본에서는 종래 학식 경험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국어심의회를 통하여 주로 표기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는데, 최근에는 사회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특히 경어를 중심으로 한 말투(말씨)에 관한 문제와 정보 기기에 대응한 글자체의 문제를 관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어에서의 외래어·외국어(이른바 가타카나어[カタカナ語])의 남용 등 ‘일본어의 국제화에 관한 문제’ 역시 관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¹⁵²⁾

148) 권재욱, 앞의 논문, 54쪽 참조.

149) 권재욱, 앞의 논문, 54쪽 참조.

150) 세계 중국어 대회는 중국어 교육의 국외 보급에 관한 중국 정부의 시책과 공자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법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대외이다. 권재욱, 앞의 논문, 55쪽 각주 50 참조.

151) 권재욱, 앞의 논문, 55쪽 참조.

152) 文部科学省, 教育白書, 2010, 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ad200001/hpad200001_2_324.html.

또한 문화청에서는 언어에 관한 보급 계발 자료로서 음성·영상 효과를 활용한 비디오테이프 시리즈 ‘아름답고 풍요로운 언어를 목표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들 시리즈는 언어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평이한 해설을 덧붙인 것이다. 또한 국어의 문제에 관한 연구협회의 개최나 사람들의 국어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¹⁵³⁾

일본에는 문부과학성 대신, 문화청 장관의 자문 기구로 우리나라의 국어심의회에 유사한 위원회를 두고 있고, 국어(일본어) 연구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과 유사한 ‘국립국어연구소’를 두고 있다.

(1) 국어 관련 위원회의 연혁 및 주요 업무

1) 국어조사위원회

1902년 3월 일본의 국어, 즉 일본어에 대한 최초의 조사 기관으로 문부성에 ‘국어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일본어의 음운, 방언, 한자, 표기법, 구어법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¹⁵⁴⁾

2) 임시국어조사회

1913년 일본 정부의 행정 조직 개편에 따라 국어조사위원회가 폐지되고, 이후 국어(일본어)에 관한 조사 기관을 재설치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1921년 6월 문부성 산하에 ‘임시국어조사회’가 설치되었다. 이 조사회는 ‘상용 한자표’(常用漢字表, 1926, 1962자), ‘가나 표기법 개정안’(1924), ‘한자체 정리안’(1926), ‘한자어 정리안’(1926~1928)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¹⁵⁵⁾

3) 국어심의회

1934년 12월 임시국어조사회를 대신하여 국어심의회관제(國語審議會官制)에 따라 문부대신의 자문기구로 ‘국어심의회’가 설치되었다. 이후 1949년 「문부성설치법」 제정에 따라 「국어심의회령」으로 그 설치 근거가 변경되었고, 이후 1984년 「문부성조직령」(昭和59年6月28日政令第227号) 제107조에 따라 문화청에 국어심

153) 文部科学省, 教育白書, 2010.

154) 임영철, 일본의 국어정책과 일본어교육, 국어교육연구 제28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1, 296-297쪽 참조.

155) 임영철, 일본의 국어정책과 일본어교육, 298쪽 참조.

의회가 설치되었다. 국어심의회는 문화대신 또는 문화청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의 개선, 국어 교육의 진흥 및 로마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문부대신, 관계 각 대신 또는 문화청 장관에게 건의했다.

4) 국어분과회

2001년 1월 중앙 부처의 재편에 따라 심의회의 수를 삭감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어심의회가 폐지되고, 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의 국어분과회에 의해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⁵⁶⁾ 국어분과회는 국어의 개선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어분과회 밑에는 ① 국어과제 검토소위원회, ② 문제점정리소위원회, ③ 일본어교육소위원회, ④ 국어연구등소위원회, ⑤ 한자소위원회, ⑥ 경어소위원회, ⑦ 독서활동등소위원회, ⑧ 국어교육등소위원회가 있다.

(2) 국립국어연구소

1949년 12월 국어(일본어)에 관한 종합적 연구기관으로 ‘국립국어연구소’가 설치되었다. 국립국어연구소는 국어 및 국민의 언어생활,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⁵⁷⁾

2009년 10월 「독립행정법인에 관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문부과학성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조에서 “국가는 국어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의 ‘인간문화연구기구’로의 이관 후 2년까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해당 업무의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연구소의 업무 및 이를 담당하는 조직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2009년 10월 1일 종전의 국립국어연구소를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인간문화연구기구 국립국어연구소’로 개편되었다.¹⁵⁸⁾

새로 설치된 국립국어연구소는 연구의 국제적 거점으로서 국내 및 해외의 대학·연구 기관과 대규모 이론적·실증적 공동 연구를 전개함으로써 일본어의 특

156) 임영철, 일본의 국어정책과 일본어교육, 298쪽 참조.

157) 임영철, 일본의 국어정책과 일본어교육, 313-314쪽 참조.

158) <http://www.ninjal.ac.jp/info/aboutus>.

질의 전모를 해명하고, 언어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에 관한 이해와 통찰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동 연구의 성과나 관련 연구 문헌 정보를 널리 사회에 발신·제공하고, 일본어 교육, 자연 언어 처리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하고 있다.¹⁵⁹⁾

2. 다문화 관련 언어 정책

(1) 정책 추진 배경

1970년대까지 일본의 외국인 주민의 대부분은 재일 한국인, 즉 종전 전부터 계속 일본에 체류해 온 재일 한국인 및 그 자손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이래 경제 활동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을 넘은 이동이 활발해졌고, 중국 귀국자 및 인도차이나 난민의 유입이나, 유학생 수의 증가 등에 따라 일본에서의 외국인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1990년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개정¹⁶⁰⁾에 따라 일본계 남아메리카인의 일본 방문이 촉진되었다. 특히 브라질인의 증가가 현저했고, 아이치현(愛知縣), 시즈오카현(靜岡縣) 등 제조업이 성행한 지역에서는 간접 고용의 형태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했다. 이러한 외국인 주민 유입 현상은 인구의 증가와 함께 다국적화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경위에 따라 1980년대부터 소위 ‘뉴커머(new comer, ニューカマー)’의 정주화가 진행되었고, 국제결혼도 증가하여 영주 자격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증가하였다. 게다가 향후 일본은 본격적인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 자녀는 적게 낳고 고령화하는 현상)가 진전되어 인구 감소의 시대를 맞게 되고, 일본의 노동력 인구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¹⁶⁰⁾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외국인 주민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가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05년 일본 총무성(總務省)은 다문화 관련 정책을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 공생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다문화 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문부과학성 차원에서는 2012년부터는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도 방법에 관한 검토 회의를 설치하고, 문화청 차원

159) <http://www.ninjal.ac.jp/info/aboutus>.

160) 総務省, 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推進に向けて~, 総務省, 2006年 3月, 3頁. <http://www.soumu.go.jp/kokusai/pdf/sonota_b5.pdf>

에서는 2007년부터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 사회에서의 일본어 교육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06년 3월 총무성 ‘다문화 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가 발표한 ‘지역에서의 다문화 공생의 추진을 위하여’라는 보고서와 문부과학성에서 2012년 4월 11일 자로 발표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도 방법에 관한 검토 회의 설치에 대해서’ 및 문화청의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육 사업’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다문화 관련 언어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총무성 차원의 정책(다문화 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기본적 입장

다문화 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는 외국인 주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이고, 「국제 인권 규약」, 「인종 차별 철폐 조약」 등의 요청에서 기본적으로는 일본인과 동등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외국인 주민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나 재류(在留) 관리라는 관점이 아니라, 외국인을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으로 보고 ‘커뮤니케이션 지원’ 및 ‘생활 지원’ 차원에서, 그리고 외국인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생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문화 공생의 추진 체제의 정비를 검토했다.

연구회는 다문화 공생 추진 체제 정비의 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인근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각종 행정 서비스의 이용이나 주민으로서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의사소통상의 곤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정보의 다언어화’ 및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¹⁶¹⁾

2) 지역에서의 정보의 다언어화

연구회는 일본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그 체재 기간이 단기인가 장기인가와 무관하게 지역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161) 総務省, 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推進に向けて～, 11頁.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행정·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주민의 생활 상담을 위한 창구를 설치하며 이와 관련한 전문가를 양성하며, 비영리 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 등과 제휴하여 다언어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외국인 주민을 상담원 등으로 활용하는 체제를 갖출 것을 권고했다.¹⁶²⁾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의 지원

연구회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일본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함께 일본의 사회나 문화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먼저 국가에 대해서는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2004년에 「이주민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강좌를 국가의 재정적 부담하에 실시하고 있는 등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올 때 국가 차원에서 어학, 문화·역사 등의 안내 교육(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국가도 있다는 것을 사례로 들어 일본에서도 출입국 정책과 연동하여 입국 시 및 입국 후의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 지원 시책을 국가의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⁶³⁾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 시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외국인이 지역 주민으로서의 생활을 개시할 때 안내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 정보나 일본 사회의 관습 등에 대해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내 교육 실시 후에도 외국인 주민이 계속적으로 일본어 및 일본 사회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¹⁶⁴⁾

(3) 문부과학성 차원의 정책(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도 방법에 관한 검토 회의 설치)¹⁶⁵⁾

일본에서는 최근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해외 귀국자나 일본계인 등 소위 ‘뉴커머(new comer, ニューカマー)’라 불리는 외국인의 증가에 수반하여 일본의 공립

162) 総務省, 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12頁 以下 参照.

163) 総務省, 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14頁.

164) 総務省, 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14頁.

165) 이하의 내용은 文部科學省 初等中等教育局長決定, 日本語指導が必要な児童生徒を対象とした指導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議の設置について, 平成24年4月11日 참조.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kaigi/1320464.htm>

소학교, 중학교 등에서도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 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어 이들 아동 학생에 대해서 일본어 지도나 일본의 학교에의 적응 지도 등의 체제를 정비하고, ‘들어가기 쉬운 공립학교(入りやすい公立学校)’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실정이나 학생의 실태에 따라 해당 학생의 재적 학급 이외의 교실에서 지도를 행하거나, 재적 학급에서의 수업 중에 일본어 지도 담당 교원이나 지도원 등이 교실에서 해당 학생을 지원하는 외에 해당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에서도 일본어 지도를 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재적하는 학교 밖에서의 일본어 지도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방과 후 등에 교육 과정 외의 지도로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학생에게 주는 부담이 크고, 이를 고려하여 문부과학성은 「정주 외국인의 자녀 교육 등에 관한 정책간담회의 의견에 입각한 문부과학성의 정책 포인트」(2010년 5월 19일)에서 ‘외국인 학생의 일본어 능력 등을 배려한 탄력적인 커리큘럼의 편성 등 제도 면에서의 검토’ 등에 따라 초등학교(소학교) 또는 중학교에 들어가기 쉬운 환경의 정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교육의 충실을 위한 검토회’(2010년 11월 1일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장 결정)를 설치하고 이 검토회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일본어 지도의 실태 등을 파악한 뒤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도 방법과 그 밖에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시책 등에 대해서 널리 검토하기로 했다.

(4) 문화청 차원의 정책(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육 사업)

문화청은 일본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일본어 교육에 관한 지원, 일본어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 및 조사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일본어 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육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고, 2012년부터는 사업의 틀을 변경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사업을 해 오고 있다.¹⁶⁶⁾

166) 文化庁, 「生活者としての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教育事業,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kyouiku/seikatsusya/index.html>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육 사업 내용>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비고
지역 일본어 교육 실천 프로그램 (A)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교실의 실시, 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자 등 인재의 육성·연수 및 학습 교재 작성	사업을 실시할 때 문화심의회 국어분과회에서 종합·정리한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 표준 커리큘럼안에 대해서 등” ¹⁶⁷⁾ 을 활용하고 있음 ¹⁶⁸⁾
지역 일본어 교육 실천 프로그램 (B)	다양한 기관 등과의 제휴·협력을 추진하고,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의 체제 정비를 추진	
지역 일본어 교육 코디네이터 연수	지역에서 일본어지도자에 대한 지도적인 입장을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지역 일본어 교육의 종합적인 추진 체제의 정비에 관한 조사 연구	지역의 실정에 따른 일본어 교육의 종합적인 추진 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각 지역의 대책 파악·분석 및 추진 체제의 정비에 관한 효과를 검증하는 조사 연구	

3. 일본어 해외 보급

국내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문부과학성, 문화청, 국립국어연구소, 대학 등 각 교육 기관,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교육진흥협회, 각 일본어 교육 시설 등이 담당하고 있고,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외무성, 국제교류기금, 국제협력사업단 등

167) 문화심의회 국어분과회에서 종합·정리한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교육의 표준적 커리큘럼안에 대해서 등”은 ①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교육의 표준적 커리큘럼안, ②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교육의 표준적 커리큘럼안 활용을 위한 가이드북, ③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교육의 표준적인 커리큘럼안 교재사례집, ④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교육에서의 일본어능력평가 등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말한다. 文化廳, 平成24年度「生活者としての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教育事業 地域日本語教育実践プログラムの採択について, 平成24年6月26日,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kyouiku/seikatsusya/pdf/h24_jigyo_saitaku.pdf>

168) 文化廳, 平成24年度「生活者としての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教育事業 地域日本語教育実践プログラムの採択について 参照.

이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무성, 통상산업성, 후생노동성 등 다양한 기관이 각각 일본어 교육을 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어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 양성, 교육 내용·방법, 교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어 학습자의 증대에 대응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본어 교육과 함께 국립국어연구소 외에 국립 대학 등에서 행하는 일본어 연구는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시책의 입안이나 교육의 기초로서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¹⁶⁹⁾

무엇보다도 일본의 일본어 해외 보급 정책은 발신형(보급형) 문화 전략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을 중심으로 국제 협력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고,¹⁷⁰⁾ 일본의 국제 문화 교류 사업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⁷¹⁾

일본에서는 인터넷 등의 급속한 보급에 수반하여 이를 통한 일본어 교육 관계자의 제휴, 일본어 교육 관계 정보의 수집·제공을 행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때 관계 부처·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고 인정하는 ‘일본어능력시험’, 일본어교원의 지식·능력을 판정하는 ‘일본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다수의 수험자를 모집하여, 일본어 학습자나 일본어 교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학습 도달 목표로 활용하고 있는 실태이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부단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¹⁷²⁾

또한 해외에서의 일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 연구의 축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국제교류기금에서는 종래부터 해외의 대학에서의 일본 연구 강좌의 충실을 위해서 일본에서 객원교수를 파견하거나 거점 연구 기관에 운영 경비를 지원하거나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¹⁷³⁾

(1) 국제교류기금의 설립 근거 및 목적

일본 국제교류기금은 외무성 소속 기관으로 1972년 10월 「국제교류기금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¹⁷⁴⁾ 이후 국제교류기금은 2002년 12월 6일 제정

169) 文部科学省, 教育白書, 2010.

170) 임영철, 일본의 언어계획 및 언어정책, 사회언어학 제6권 제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1998, 133쪽 참조.

171) 이동욱, 일본의 언어정책, 일본학연구 제19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6. 10, 179쪽 참조.

172) 文部科学省, 教育白書, 2010.

173) 文部科学省, 教育白書, 2010.

174) <http://www.jpf.go.jp/j/about/index.html>.

된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법률 제137호)¹⁷⁵⁾에 따라 2003년 10월 1일에 외무성 소관 독립행정법인화되었다.

일본 국내에 본부(도쿄·신주쿠)와 교토지부, 2개의 부속기관(일본어국제센터 및 간사이국제센터), 해외 21개국에 22개의 해외 거점을 두고 있다. 국제교류기금은 문화 예술 교류,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 및 일본 연구·지적 교류의 3가지를 주요 활동 분야로 하고 있다.¹⁷⁶⁾

국제교류기금은 i) 국제 문화 교류 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에 대한 여러 외국의 이해를 증진하고, ii) 국제 상호 이해, 문화와 그 밖의 분야에서의 공헌, 이를 바탕으로 국제 환경을 양호하게 정비하며, iii) 일본의 조화 있는 대외 관계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제2조). 이러한 목적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기금의 임원에 대해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1호).

(2) 국제교류기금의 조직 현황

국제교류기금에는 필요적으로 이사장 1명과 감사 2명을 두어야 하고(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제7조 제1항), 임의적으로 3명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같은 법 제9조).

이사는 기본적으로 이사장을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관장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제9조 제2항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임원은 이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사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가 이사를 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대리 또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감사가 이사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방지

175)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국제교류기금법」은 폐지되었다. 「국제교류기금법」은 국제교류기금의 업무 범위로 i) 국제문화교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인물 파견 및 초청, ii) 해외에서 일본 연구에 대한 원조, 알선 및 일본어 보급, iii) 국제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실시, 원조, 알선 및 참가, iv) 일본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자료, 그 밖의 국제 문화 교류에 필요한 자료 작성, 수집, 교환 및 배포, v) 국제 문화 교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 및 연구, vi) 위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vii) 이러한 업무 이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였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되어 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외무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원활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연락하도록 하였다(제23조). 또한 기금의 경우 업무를 개시할 때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여 외무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제24조).

176) <http://www.jpj.go.jp/j/about/index.html>.

하기 위하여 이사를 두지 않아 감사가 임원을 하게 되는 경우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대리 또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감사는 본래의 감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국제교류기금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벌칙 적용에서 법령에 따른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제11조). 이는 우리나라에서 벌칙 적용에 적용하는 공무원 의제(擬制) 조항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기금의 임원 및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그 직을 사퇴한 경우에도 이러한 비밀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같은 법 제10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2조).

(3) 국제교류기금의 재원

국제교류기금의 기본적인 재원은 정부 출자금이고(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6항 참조),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교류기금에 추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국제교류기금은 정부 출자금(1,130억 엔)을 재정적 기초로 정부 출자금의 운용이익, 정부로부터의 운영비 교부금 및 민간으로부터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¹⁷⁷⁾

(4) 국제교류기금의 소관 사업

1) 개 요

국제교류기금은 i) 국제 문화 교류의 목적을 수행하는 사람의 파견 및 초청, ii) 해외에서의 일본 연구에 대한 원조, 알선 및 일본어 보급, iii) 국제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실시, 원조, 알선 및 참가, iv) 일본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자료와 그 밖의 국제 문화 교류에 필요한 자료 작성, 수집, 교환 및 배포, v) 국제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정비에 대한 원조,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구입에 대한 원조 및 이러한 물품의 증여(국제교류기금이 기부를 받은 물품의 증여에 한한다), vi) 국제 문화 교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vii) 이러한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제12조).

177) <http://www.jpf.go.jp/j/about/outline/result/ar/2008/img/ar2008-01-01.pdf>

2) 주요 사업 내용

① 일본어 교육 사업

국제교류기금은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이 일본과의 교류 담당자를 양성함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층화하여 여러 국가와의 우호 관계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2010년 8월 현재 해외 133개 국가와 지역에 365만여 명이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으며(2009년 국제교류기금 조사에 의함), 학습자 수는 30년간에 약 30배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학습 목적이 다양화됨에 따라 종래의 취직·유학과 같은 실리 지향적 관점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애니메이션·만화 등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등을 이유로 일본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국제교류기금을 통해서 일본어 전문가의 해외 파견, 해외의 일본어 교사 및 학습자 방일 연수, 일본어 교재 개발·기증 등을 실시하는 것 외에 각국의 재외 공관의 문화 사업 차원에서 일본어 변론 대회를 개최하는 등 일본어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외 53개의 국가·지역, 173개 도시에서 일본어 능력 시험을 실시(2009년은 약 62만 명이 수험)하고 있고, 젊은층을 겨냥한 일본어 영상 교재(「에린이가 도전! 일본어 할 수 있습니다.」)를 제작하여 NHK 교육텔레비전, 해외의 방송국을 통해서 방영하고 있으며¹⁷⁸⁾ 향후 방영 범위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각국에서의 일본어 보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국제교류기금을 통해 세계 100여 곳 이상에서 해외 사무소 및 일본어 교육 전문가 등이 파견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일본 국제교류기금(JF) 일본어 네트워크(통칭: 벚꽃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본어 교육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¹⁷⁹⁾

② 일본어 교육 표준화 사업

국제교류기금은 2010년 3월 일본어 교육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 도달 정도의 합리적 설계부터 평가까지 일본어 학습의 체계화, 표준화, 공통화를 위하여 ‘일본 국제교류기금(JF) 스탠더드 2010’을 발표했다.

178) 영상 교재에 대한 상세한 것은 <https://www.erin.ne.jp/jp/> 참조.

179) <http://www.mofa.go.jp/mofaj/gaiko/culture/koryu/edu/index.html>.

‘일본 국제교류기금(JF) 스탠더드 2010’은 ‘일본어를 사용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일본어의 숙달도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습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일본어 교육 즉,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으면 지금 자신이 배우고 있는 수준이 어디에 도달했는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으면 지금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수준이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숙달도를 평가하여 언어적·문장 체험을 기록하고 과제 수행 능력과 문화 이해 능력을 육성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⁸⁰⁾

③ 일본어 교육 활성화 사업

국제교류기금은 일본어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일본 브랜드 전략과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 행정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무성과는 여러 외국의 일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외 공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세계 140개 국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 행정 기관과 협조하여 국제 예술 견본시(見本市) 실시, 문화청의 문화교류사 파견 사업, 문부과학성의 청년예술가 파견 사업, 농림수산성의 일식 해외 보급 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해외에서의 효과적인 사업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NTO(국제관광진흥기구), JICA(국제협력기구) 등과 의견 교환 등을 실시하고 있다.

180) <http://jfstandard.jp/top/ja/render.do>.

제3장 국어책임관 제도 실효성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전문가 초점 집단 인터뷰(FGI)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이 조사는 「국어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 집단 인터뷰(FGI)¹⁸¹⁾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들과의 집단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따르는 문제점과 향후 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국어책임관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¹⁸²⁾

2. 조사 설계

국어책임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 집단 인터뷰는 현장에서 국어책임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정확한 현실 인식과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하였다. 국어책임관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서울시 국어담당자와의 사전 인터뷰를 통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어책임관 제도 시행이 유명무실한 수준에 가깝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인터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기관들 가운데 관계 기관들로부터 국어책임관 제도에 관하여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추천받은 이들 중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임의 할당하여 인터뷰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였다. 목록에 있는 대상자들 가운데 초점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기로 한 일정에 참석

181) 전문가 초점 집단 인터뷰 지침서는 부록 6 참조.

182) 초점 집단 인터뷰(FGI)를 진행하기 전, 전국 국어책임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다. 조사방법을 초점 집단 인터뷰(FGI)로 변경한 이유는, 지난 9월 초, 문화부로부터 받은 국어책임관 리스트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발송하고 전화로 확인하던 중, 본인이 국어책임관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으며, 부처에 따라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실질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문화부의 공문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연구방법을 변경하였다.

가능한 사람들을 추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국어책임관 6명, 광역 지방자치단체 3명, 이렇게 총 9명을 모아 2시간가량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초점 집단 인터뷰에 대한 개요는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초점 집단 인터뷰(FGI)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조사 방법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실시(FGI)
조사 표본 수 (총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6명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방방재청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 광역 지방자치단체: 3명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표본 추출 방법	행정기관 급, 지역 등을 고려한 임의 할당 추출법
조사 일시	2012년 12월 3일 15:00-17:00
조사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조사 내용은 크게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정도, 국어책임관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 공무원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의견, (가칭) 국어전문관제 도입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 2 절 연구 방법

1.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초점 집단(Focus group)에서는 대략 8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한 방에 모이게 된다.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 중인 주제와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선정된 사람들이다. 국어기본법 및 국어책임관 제도에 관한 초점 집단 인터뷰의 참가자들은 현재 국어책임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로서 해당 주제에 관하여 관련성 정도가 매우 높은 집단이다.

초점 집단의 참가자들은 엄격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선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른 정량적 조사 방법에서 얻어진 결과물들처럼 어떤 모집단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 현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 초점 집단 인터뷰를 이용하는 목적은 어떤 결정적인 측면을 기술하는 데 있기보다는 ‘탐색’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리처드 크루거(Kruger, R. A.)에 따르면 초점 집단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¹⁸³⁾

첫 번째,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생활을 포착하는 사회적으로 지향된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정량적 조사 방법에 비해) 유연성을 지닌다. 세 번째, 초점 집단 인터뷰는 높은 타당도를 가진다.¹⁸⁴⁾ 네 번째, (대규모 조사와 달리)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대규모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 면에서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다.

초점 집단 인터뷰는 참가자들의 생생하고도 심층적인 의견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개별 인터뷰와 달리 주제와 관련성 정도가 높은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집단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새로운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른 참가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

183) Kruger, R. A. (1988). *Focus Groups*. Newbury Park, CA: Sage. p.47

184) 인터뷰 참가자들의 말을 통해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관찰을 통해 개념화하고 그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베이나 실험연구와 비교하여 타당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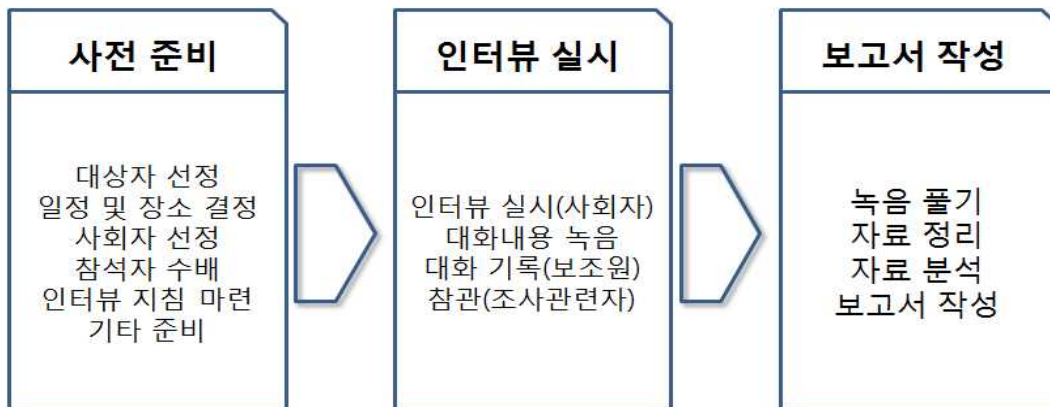
를 수도 있고, 이를 이야기 하면 또 다른 참가자가 새로운 생각을 내놓으며 발전시킬 수 있다. 집단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새로운 생각의 발상을 촉진함으로써, 개별 인터뷰에서 얻기 힘든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을 얻을 수 있다.

2. 초점 집단 인터뷰의 실시

초점 집단 인터뷰는 크게 사전 준비 작업, 인터뷰의 실시, 그리고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참가자 선정 및 연락, 인터뷰 지침서 작성, 장소 섭외, 녹음 준비 등 인터뷰를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점검한다. 인터뷰 실시 단계에서는 사회자가 참가자들과의 좌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는 녹음 내용을 듣고 정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일련의 과정은 아래 그림에 제시하였다.

<초점 집단 인터뷰(FGI) 시행 단계>

※ 아래 표의 내용 사전 준비 단계 중 ‘참석자 수배’를 ‘참석자 연락’으로 교체하기 바람.



(1) 사전 준비

1) 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그룹의 속성, 그룹의 수, 그룹별 참석자 수에 관한 내용을 결정한다. 그룹별로 동일한 속성을 지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뷰를 실시해야 참가자들 사이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며 심층적인 의견 및 새로운 의견의 도출이 가능하다. 참석자의 수가 많아지면 심도 깊은 토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너무 적다면 집단 토의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울뿐더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8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되, 다뤄야 할 내용의 깊이에 따라 심도 깊은 경우는 6명 이하, 간단한 경우는 10명 정도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

2) 일정 및 장소 선정

사회자 한 명이 초점 집단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횟수는 1~2회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자가 집중하여 참석자들을 제어하며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피로를 유발한다. 따라서 제대로 사회를 볼 수 있는 횟수는 1~2회에 그친다. 일정은 참석자들의 속성에 따라 참석하기 쉬운 요일이나 시간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장소는 참석자들이 모이기 쉽고,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된 곳을 선택한다.

3) 사회자 및 보조원 선정

초점 집단 인터뷰는 사회자의 기량에 좌우된다. 원활한 인터뷰의 실시를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인터뷰 경험이 있으면 좋다. 또한 인터뷰를 돕기 위해 인터뷰 중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인터뷰 후 녹음한 내용을 듣고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보조원이 필요하다.

4) 참석자 연락

참석자 연락은 위에서 정한 대상자 속성을 지닌 사람들 중 조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루어진다. 적합성 정도를 판단한 후 조사 목적을 알려 주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참석 여부를 묻고 최종 참석자로 선정한다.

5) 인터뷰 지침 마련

초점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회자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질문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에 따라 인터뷰를 실시하고 결론을 유도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크게 제도 인식에 대한 자료 수집,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평가, (가칭)국어전문관제에 대한 의견 등을 순서대로 묻고자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인터뷰 지침서는 꼭 정해진 순서와 내용을 따를 필요 없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 더 적절하게 필요한 질문이나 순서가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6) 기타 준비

인터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회자는 참석자들의 좌석 배치도와 같은 메모 용지와 인터뷰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메모 용지도 필요하다. 이러한 보조 도구를 통해, 앞서 나왔던 질문에 대한 각 참석자들의 응답을 헛갈리지 않고 이어 새로운 질문으로 원활하게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 밖에 녹음 장비, 필기 도구, 참석자에 대한 사례 등의 준비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2) 인터뷰 실시

1) 안내 교육(오리엔테이션)

참석자가 모이자마자 바로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가 조사 목적, 주요 내용, 사회자에 대한 소개, 참석자에게 인터뷰를 위해 몇 가지를 알리고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 당부할 내용으로는 ‘솔직하게 응답할 것’,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것’, ‘진행 중이라도 중간에 생각나면 언제든지 이야기할 것’ 등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들이다.

2) 인터뷰 실시

인터뷰에서 사회자는 대화를 주도한다기보다는 사회자가 던지는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이 주제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인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단계에서 잠정적인 판단을 통해 정리하고 참석자들에게 반응을 청취하여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사회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유의할 점에 신경을 쓴다면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모든 참석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 너무 간단히 응답할 경우 추가로 질문하여 의견을 표출하도록 유도한다.
- 인터뷰 지침 순서와 달리 참석자가 미리 다음 순서의 질문에 대한 응답까지 하는 경우, 관련성 정도에 따라 다음으로 넘기든지 혹은 응답을 끝까지 듣고 난 후 메모하여 이후 순서에서 그 부분을 빼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 응답 중에 새로운 사실, 특히 중요한 사실이 나올 경우, 사회자의 판단에 따라 지침과 달리 각 참석자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하여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다.
- 참석자의 의견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경우, 참석자들에게 거수하도록 하여 파악할 수도 있다.
- 특정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된 경우라면 간단히 넘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확인 시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얻는 데 집중한다.
-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참석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며 본 주제로 돌아가게 하거나, 다음 순서의 참가자에게 질문 기회를 줌으로써 끊도록 한다.
- 말이 너무 많은 참석자의 말은 적절히 통제하는 반면, 말이 너무 적은 참석자에게는 응답 기회를 주고, 추가 질문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묻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넘어가려는 것을 피해야 한다.

3) 대화 기록

참석자들이 펼쳐 놓는 내용들에 관하여 녹음하고 보조원이 해당 내용을 청취하여 기록하는 작업을 하여 자료 분석을 한다. 이외에 사회자가 중요한 대화 내용을 메모한 것과, 참관하는 조사 담당자가 메모한 것도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4) 인터뷰 참관

사회자는 참석자들이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진행을 이끌어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대화 내용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조사 담당자가 인터뷰를 관찰하고, 대화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메모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제 3 절 조사 결과

1. 제도 인식과 문제점

(1) 국어책임관 제도 운영 현황

1)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한 인식

먼저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국어책임관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도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참석자들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 해당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초점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전국의 국어책임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전국의 국어책임관들에게 전화를 하던 중, 거의 대부분이 본인 스스로 국어책임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공무원 사회에서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올해 7월에 보직에 임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 과장 1.)

2009년부터 보직에 임하게 되었다. 국어책임관 담당의 역할이 모호하다. 국어책임관 제도가 올해부터 정부합동평가의 지표에 반영되면서 제도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주무관)

국어책임관 제도는 대변인실에 근무하며 알게 되었다. (중앙행정기관 사무관 2.)

3주 전에 보직에 임하게 되었다. 국어책임관의 직책은 알고 있었으나, 업무에 대한 지식은 미비하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과장)

2) 현행 국어책임관으로서 수행 업무

참석자들에게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어책임관 업무가 어떤 것인지 질문하였다. 참석자들의 상당수는 보도 자료에 관하여 맞춤법과 문맥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응답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의 특성을 살려 지역의 국어문화원과의 연계 활동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관 등의 홍보 교육 시 보도 자료 작성 교육을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과장 1)

현실적으로 보도 자료 작성이 되면 홍보실에서 교정하는 과정에서 맞춤법과 문맥을 검수하는 것이 국어책임관의 주된 기본 업무이다. 간혹, 신규 직원 교육 시 홍보 교육을 통해 업무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과장 10)

대변인실에서 보도 자료를 받아 전파하는 데 춘각을 다루는 일이므로 실질적 검토나 내용의 수정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사무관 9)

제주시의 경우, 제주도 방언 연구를 통해 국어책임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경기도 국어문화원 업무 담당)의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사들을 가르치고 있다.

(2)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문제점

올해 처음으로 시·도 합동평가지표에 국어책임관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게 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국어책임관에 관한 내용들을 문화 예술 평가지표에만 반영하다 보니 해당 부서에만 그 책임이 막중하게 다가와 부담스럽고, 평가지표의 과중함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표시하였다.

시·도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시·도 평가의 지표에 들어가면서 관심을 받고 있어, 곧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제도에 대한 인식과 운영이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 과장 6)

합동평가에는 항목이 많아 부담스럽다. 운영하면서 국어문화원은 전 공무원 운영해야 하나, 업무가 많다 보니 어려움이 따른다. 합동평가를 문화 예술 평가지표에만 반영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합동평가 시 많은 항목들이 그 대상이 되므로 유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과장 7)

행정용어순화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외국어,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경기도와 전라도가 서로 상이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낮고, 이에 따른 구속력도 없다. 하지만, 지자체에 부속시킴으로써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의무적으로 수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무관 3)

국어책임관 제도의 운영이 어렵자 지자체의 평가 요소로 만드는 것은 국어책임관 제도의 역효과를 낼 것이다.(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과장 10)

실질적으로 국어책임관 제도는 대변인실 및 홍보 담당 부서, 문화예술과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력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별도의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존재하는 국어문화원과의 연계는 지역별로 온도차가 다르게 나타났다.

시·도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다. 시·도에서는 각 시도의 문화재단의 공모 사업을 통해 10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전부다. (지방자치단체 과장 5, 6)

2) 의무와 역할의 문제점

국어책임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참석자들은 대부분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간략하게 나와 있을 뿐 정확히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책임기관에 대해서만 나와 있을 뿐 그 구성 등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각 부처별로 업무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일률적으로 각 부처별로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을 부속시키고 있어 문제라는 점을 들고 있었다. 행정용어에 대한 관리는 중앙 부처에서 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기본법에는 책임 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구성 등의 세부 사항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학술 전문용어와 관련하여서는 산하기관의 의뢰에 의해 각 부처에 문의하고 있다. 과학 혹은 기술 전문용어는 비슷한 산하기관들이 많아 의견 조율과 용어의 정리가 어렵다. (중앙 행정기관 과장 1)

행정용어를 시·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다. 중앙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과장 6)

3) 기관장의 의지와 기반 구축

참석자들은 국어를 바르게 쓰는 것은 단지 국어책임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국민적으로 국어에 대한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이는 최근 서울특별시의 예에서 보듯, 기관장이 해당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업무 추진 등 여러 측면에서 활성화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한 부분을 개혁을 통해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기관장의 의지와 기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본래 취지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단편적인 부분만의 보완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과장 10)

내년부터는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하나의 범국가적인 운동 차원에서 국어책임관 제도의 병행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언어 습관은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므로,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어책임관 제도의 긍정적인 요소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대변인 5)

참석자들이 제시한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의 문제점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제시된 문제점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경계 내지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실제 제도는 있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국어라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관심도 적고 국어책임관이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기회도 적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와 제도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이 취약하다는 점이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이다.

2.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평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인식이 나 시행만으로는 국어기본법에 적시된 바와 같이 쉽고 정확한 국어(공공언어) 사용 장려, 공무원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문화 환경 개선 시책, 정보 교류 및 업무 협조를 위한 활동을 하기에 역부족이다. 공무원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이 올바른 국어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그러한 형태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참석자들 가운데 교육 경험자는 한 명도 없었다.

(1)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방안

국어책임관으로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참석자들 모두 국어책임관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어책임관 업무가 다른 업무와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있었다.

부처 특성상 직원 1명이 4-5개의 나라를 담당하고 있다. 1명이 교육을 받기 위해 빠지게 되면 처리해야 되는 엄청난 민원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무의 가중으로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앙행정기관 서기관 4)

또한 교육의 실시 역시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내었다.

우리 부서는 안 해요. (직원 대상 국어 교육을) 하자고 이야기했더니만 들은 척도 안하고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이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 국장이나 제계 (직원들이 국어 교육을 개설해 달라고) 이야기했겠죠. (중앙행정기관 과장 1)

(2)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교육의 형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태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립국어

원을 활용하여 부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꼽았다. 그러나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의 5일짜리 국어 전문 교육과정은 직무상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현실적으로 장기간 빠지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대신 부처 직원들 대상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와 같은 현장 방문형 맞춤형 국어 전문 교육이 더 참고할 만한 사례로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교육 횟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활성화되어 효과가 검증된 사례가 아직 없기에,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반기별로 한 번씩 국립국어원에 요청해 교육하고 있다. 요청하면 국립국어원에서 강사가 직접 와서 교육을 해 준다. 보도 자료 사례를 통해 실례 위주의 교육을 한다. 하반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틀리는 순화해야 할 용어에 관한 교육을 했다. 공감대 형성에는 좋으나, 교육 횟수가 2회에 그쳐 실제에서의 효과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고 본다. (중앙행정기관 사무관 2)

국립국어원을 활용한 교육 방법 외에 참석자들은 ‘공무원 임용 교육’을 할 때 국어 바르게 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유사한 취지로 공무원 시험에 한국어능력시험을 넣는 안도 제시되었다.

공무원 임용 교육 시 국어에 대한 필수적 교육이 필요하다. 국어 교육을 통해 최소한의 소양이 필요하다. 관료제의 성격상 신규 직원부터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서기관)

공무원 시험에 한국어능력시험을 넣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과장 1)

교육 내용에서는 실무에서 문서 작성 시 최신의 맞춤법에 따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들어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었다. 맞춤법이 일부 변경되다 보니, 공무원들의 연배에 따라 알고 있는 맞춤법이 개개인이 배우던 시절에 고정된 경우가 많아 결제선상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수정이 어렵다는 점을 예로 들며, 맞춤법 오류를 수정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맞춤법 교육이 필요성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인재개발원에서 담당 과장을 역임했었다. 신규 직원들과 사무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중 맞춤법 교육이 있다. 맞춤법이 일부 변경되면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과장 6)

공무원 구조상 사무관이 작성하고 과장이 고치고, 그 위에 국장이 고치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관과 국장의 연배가 20년이 넘게 차이 나는데 연배의 차이에 따라 맞춤법이 달라요. 윗분들이 당신의 기존 틀로 고치면, 일반 직원들이 좀 이상하다 싶어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도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이후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교육 과정에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맞춤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과장 10)

이 밖에 기타 의견으로는 각 기관들의 성격과 해당 기관장들의 취향에 따라 문장의 구조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바람직한 국어 환경을 조성하고 국어를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행정용어 순화는 현재의 상태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기관장들의 취향에 따라 문장의 구조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개조식으로 쓰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풀어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공무원 조직의 실정상 상급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기 마련이다. 행정용어 자체는 모르지만, 국어의 발전에는 어려움이 있다. (중앙행정부처 과장1)

3. 국어전문관제(가칭)에 대한 의견

일반 공무원들의 순환 업무라는 특성상, 국어책임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력을 두는 방안에 대하여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실적으로 인력 정원 및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먼저 제시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인력 충원으로 인해 기존 인력이 감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병존했다.

새로운 인력을 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쓰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정원 내에서 인력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원을 늘려주고,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자체는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크므로, 반드시 국비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 직원들의 감축 없이 인원이 충원된다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 과장, 중앙행정기관 과장1, 과장2 외 다수)

참석자들이 난색을 표명하는 정원 및 예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가칭)국어전문관을 국어책임관 아래에 둔다고 가정할 때, 이들에게 필요한 자격 요건이나 활용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였다.

(가칭)국어전문관의 자격 요건으로는, 학력이나 전공 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단지 맞춤법이나 문맥, 주제를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나타냈다.

맞춤법 전문가가 필요하다. 대변인실에서 점검하는 보도 자료들을 감수할 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주무관 3)

전문가 인력을 통해 각 부처의 공문서, 보도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중앙행정기관 대변인 5)

좁은 의미의 국어능력이란 맞춤법과 같은 어문 규범을 잘 알고 활용하는 능력을 들 수 있다. 맞춤법 관련 능력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글을 잘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해 주는 자격증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글을 작성해 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사무관 9)

참석자들의 인력의 활용에 대한 응답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맞춤법 등의 교열 업무에 활용할 의견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굳이 정규직은 아닐지라도 인력의 장기적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성공 사례를 들 수 있었다.

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에서 활동하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뽑아 활용하는 경우를 보면, 기존의 국어 및 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간이 오래됨에 따라 내부 보고서에 대한 내용의 인식이 탁월해져 한결 업무 수행이 원활해진 사례가 있다. 잘 아는 직원에 의해 장기간의 운영 기반이 구축된다면 보도 자료에서 어문 규범과 문법이 준수, 문맥에 맞는 어휘 선택, 정책·제도·사업의 이름을 국민이 알기 쉽게 쓰기 등에 대한 국어의 향상은 긍정적 성과가 보일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과장 10)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원 충원의 문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국어원을 통하여 전문가 파견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초점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과 장시간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실제 파견을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과연 어떠한 업무를 맡겨야 할지 모르겠고, 맡긴다 하더라도 단지 교열 보는 수준이며 그렇다고 전체 교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방안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실제 국립국어원 등으로부터 인력의 파견을 통해 전문적인 부분을 도움 받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민 관련 공문은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고 난해한 외국어, 한자어, 전문 용어 등은 쉽게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각 부처에서 다루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상위 부처에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국어책임관 업무를 겸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어책임관 업무보다는 부서 고유의 업무에 치중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에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에서 매년 주최하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수회’에 참가하면, 공공 기관의 정책이 국민에게 잘 이해되고 집행되기 위해서 국어책임관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 수 있고, 국어책임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공공 기관의 사례를 배울 수 있으며, 국어책임관들이 도움 받을 기관(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http://www.korean.go.kr/publang>, 전국의 국어문화원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그 외에 전국 국어책임관들 사이의 연계망 형성과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간의 협력망 구축 차원에서도 유용하다. 또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지역별 연수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국어책임관과 해당 지역 국어문화원 관계자(원장, 상담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별로 협력할 사업에 대해 의논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데에 유용하다. 또한 연수회에서는 “국어책임관 길잡이”(문화체육관광부 발간),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한눈에 알아보는 보도자료 바로 쓰기”, “바른 국어 생활”(이상 국립국어원 발간) 등의 책자를 배포하는데, 이런 책자들은 실제로 국어책임관의 업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어책임관 제도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제도이니만큼 지금보다 더 정확한 권한과 임무의 부여가 필요할뿐더러 상위 기관에서도 이를 장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인력 배치, 예산 배정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단기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범국민적으로 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제 4 장 국어기본법 정비 방안

제 1 절 국어기본법의 연혁

21세기 세계화·지식 정보화·문화의 시대에서는 문화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모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될 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국어 정책의 추진이 요청되고 있으나, 기존의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 예술 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국어 관련 규정으로는, 날로 악화되어 가는 국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국어 발전을 기대하기도 곤란하므로 국가의 국어 발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국어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기본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국어기본법」은 정부 입법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2002년 10월 9일에 발표된 국어발전종합계획에 「국어기본법」 추진 방침이 포함되었고, 2003년 1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어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 구축을 목적으로 「국어기본법」 제정 추진 방침을 보고하였다.¹⁸⁵⁾

2003년 1월 13일 「국어기본법」 입법 소위원회(위원장 홍윤표 연세대학교 교수)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해 2월 28일에 「국어기본법」 초안(총 7장 29개 조)을 마련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안으로 확정,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2004년 12월 7일에는 국회 문광위를,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12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¹⁸⁶⁾

「국어기본법」 제정안은 국어의 존엄성을 제정의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을 주요 지향점으로 했다.¹⁸⁷⁾

<국어기본법의 주요 지향점>

구 분	내 용
국어의 존엄성	-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므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대한민국 국민인 한국인의 정체성은 언어, 문자, 고유의 의

185) 문화관광부, 국어기본법 제정안 설명 자료, 문화관광부, 2003. 5, 3~5쪽 참조.

186) 문화체육관광부, '09~'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1, 10쪽.

187) 문화관광부, 국어기본법 제정안 설명 자료, 23쪽 참조.

구 분	내 용
	<p>식주 문화(음식, 의복, 주거) 및 민속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영속적인 것은 바로 ‘언어’임.</p>
<p>국가, 국민, 국어는 3대 존엄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도 변하고 민속도 변하는 것이지만 고유 언어는 언어의 부분적인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민속 등의 가변성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도 기본적인 특징을 보여 줌. - 따라서 언어는 국가나 민족 최후의 보루이고 국가나 민족 정체성의 최후의 상징이므로 존귀성이 있는 것임. - 이렇게 귀하게 다루어야 할 대상이므로 국어는 가장 귀한 존엄함을 그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국가, 국민, 국어를 3대 존엄체로 봄.
<p>민족과 언어의 불가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의 민족 말살과 민족어 말살 정책에서 체험하였듯, 이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하여 합병할 때 가장 먼저 언어를 파괴한다는 점에서도 민족과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따라서 국어 기본법 제정의 근거는 국어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함.

「국어기본법」은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국어 사용 유해 환경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언어생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어를 진흥·육성하는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¹⁸⁸⁾ 「국어기본법」 제정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¹⁸⁹⁾

<국어기본법의 제정 목적>

구 분	내 용
<p>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사용의 목적은 소통 기능, 친교 기능, 정보 전달 기능, 미적 기능 등을 드는데, 이러한 기능의 공통적인 바탕은 결국 올바르게 사고하여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 언어를 이용하는 것임.

188) 문화관광부, 국어 기본법 제정안 설명 자료, 3쪽 참조.

189) 문화관광부, 국어 기본법 제정안 설명 자료, 24-25쪽 참조.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언어는 사고력 증진에 기여하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궁극적 성취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서구의 경우는 이러한 창조적 사고력 증진에 기여하는 언어능력을 문해력(literacy, 문식력, 문식성, 언어 소양)이라고 표현하여 문해력 증진을 국어 교육의 제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어기본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인 창조적 사고력은 곧 전 세계적인 국어 정책, 국어 교육 정책의 목표와 일치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유언비어, 무고, 비속어가 넘쳐나 불신 사회를 조장하고 국어 생활조차 저속한 언어생활로 치닫고 있음. - 협상과 토론 문화에 미숙하고 지역, 계층, 세대, 성별 간 편견과 오해로 합리적 의사 결정 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하여 의사소통의 단절을 겪고 있으며 민주사회의 건설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침. - 따라서 「국어기본법」을 통하여 국민의 국어 생활이 선진 언어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민족문화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문화 발전은 헌법 제9조에도 명시된 개념으로 민족문화는 정치, 경제, 언어, 문학, 예술, 과학, 체육 등의 제반 영역에서 구현되는 것임. - 따라서 「국어기본법」은 이러한 여러 영역 중에서 언어문화 영역에서 국어 문화를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민족문화 창달을 이룩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족문화 창달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국어기본법」은 제정 이후 1차례의 타법 개정과 4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쳐 조문 구조상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어기본법」의 입법 체계 연혁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국어기본법 입법 체계 연혁>

제.개정 (제.개정일)	조문 구조	내 용
제 정 (2005. 1. 27.)	5장 27개조	
제1차 타법 개정 (2008. 2. 29.)	-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제2차 일부 개정 (2008. 3.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되는 ‘국어상담소’의 명칭을 ‘국어문화원’으로 함. - 효율적인 국가자격시험 관리를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뿐만 아니라 검정전문기관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위탁 규정을 확대함.
제3차 일부 개정 (2009. 3. 18.)	-	-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고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제4차 일부 개정 (2011. 4. 14.)	-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제5차 일부 개정 (2012. 5. 23.)	5장 28개조	- 한류 확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 실시,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한국어 보급 기관이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통합적·체계적인 한국어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제.개정 (제.개정일)	조문 구조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국내외에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대표 한국어 보급 기관 ‘세종학당’을 안정적으로 확대 설립함과 아울러, 정부 부처 간 한국어 보급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국내외 세종학당 운영을 총괄 지원, 관리하는 중추 기구로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내외 한국어 보급을 추진하고자 함.

제 2 절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개 관

「국어기본법」은 총 5장 2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이 법의 목적, 기본 이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정부의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의 국회 제출, 국민의 국어능력 등에 관한 실태 조사 등, 국어책임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에서는 어문규범의 제정 등,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국어심의회 설치 및 운영,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작성, 국어문화의 확산, 국어 정보화의 촉진,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에 대한 국어의 보급 등,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한글날 지정 및 기념행사,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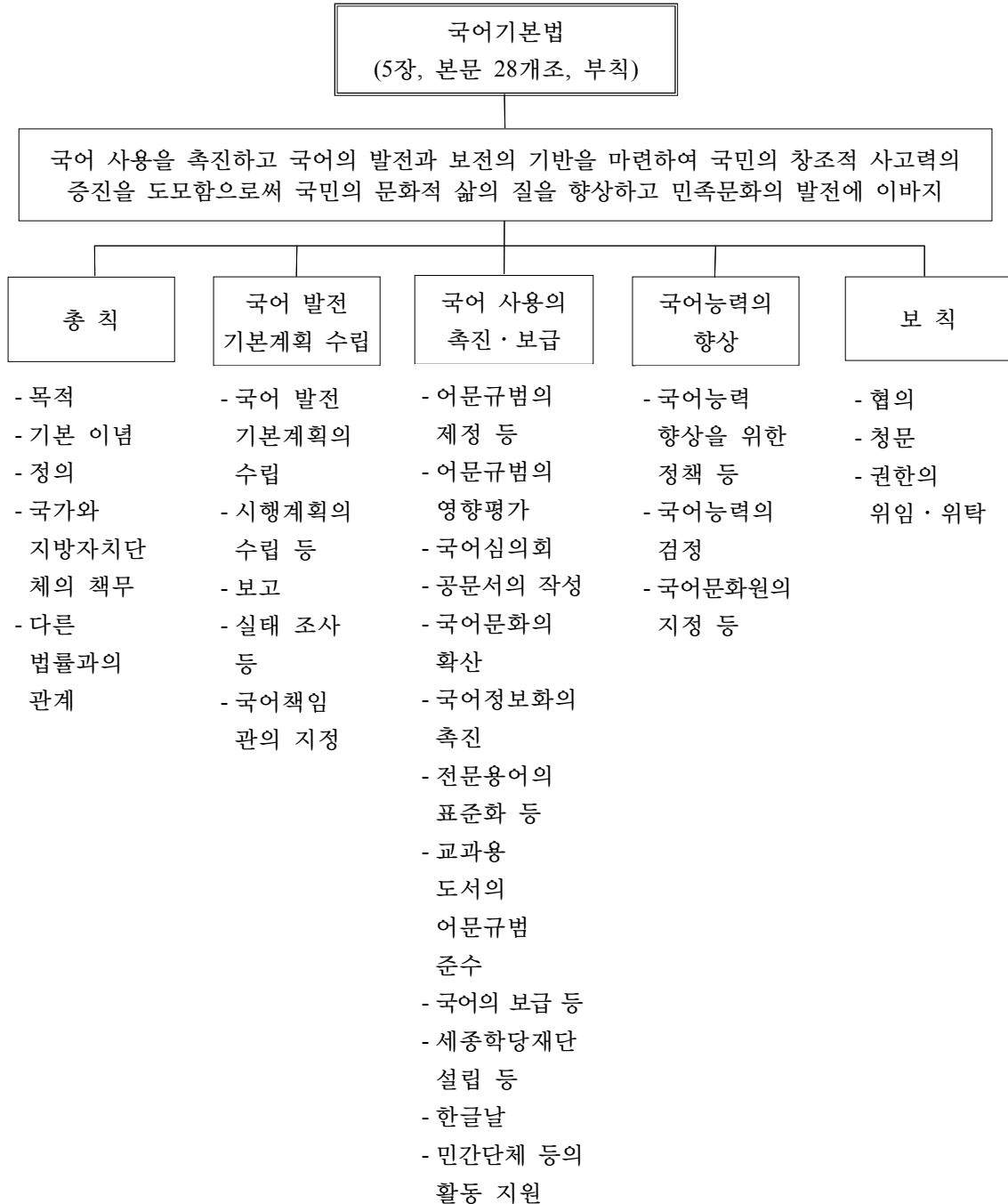
「국어기본법」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에서는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국어능력 검정에 관한 사항,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5장 ‘보칙’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어 사용에 관한 법령제·개정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국어문화원 지정 취소 신청문에 관한 사항,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국어기본법의 구성 체계

현행 「국어기본법」의 구성 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현행 국어기본법 구성 체계>



3. 국어기본법의 법적 성격 및 기능

(1) 법적 성격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진흥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¹⁹⁰⁾과 「문화예술진흥법」¹⁹¹⁾ 등을 직접적으로 승계하고 있으며, 간접적이지만, 「방송법」, 「특허법」, 「상표법」 등의 관련 법령과 같이 국어(한글, 한자 포함)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다수의 하위 법령 포함).

우리나라에는 1966년 12월 6일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2012년 10월 현재 다음의 표와 같이 57개의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다.¹⁹²⁾

<기본법 현황>

(2012. 10. 현재)

순번	법률명	제정 일자	제정 목적	소관 부처	비고
1	건강가정 기본법	2004. 2. 9. 법률 제716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 	여성가족부	
2	건강검진 기본법	2008. 3. 21. 법률 제894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보건복지부	

190)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1948년 10월 9일에 제정된 이후, 그 실천을 위하여 「정부 공문서 규정」(1965, 2. 24 개정, 대통령령 제2056호)이 마련되었으나, 한글 전용이 잘 실천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정부는 1968년 11월 5일 「한글 전용 연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3625호)을 제정하고, 1968년 12월 24일에 「한글 전용」(국무총리훈령 제68호)을 공포하여 「정부 공문서 규정」에서 법규문서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한자 혼용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한글 전용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우여곡절을 거쳐 「한글 전용」은 1991년 12월 31일 폐기되었다. 결국 2005년 1월 27일에 「국어기본법」에 따라 폐지될 때까지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이었던 것이다.

191) 「문화예술진흥법」은 1995년 1월 5일의 전면 개정으로 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제5조-제8조)에서 4개의 국어 관련 조항이 새로이 포함되었다. 2005년 1월 27일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2장 전체가 삭제되었다.

192) 부처별 소관 기본법 입법 체계는 부록 7 참조.

제 4 장 국어기본법 정비 방안

순번	법률명	제정 일자	제정 목적	소관 부처	비고
3	건설산업 기본법	1996. 12. 30. 법률 제5230호 (전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국토해양부	- 건설업법에서 명칭 변경
4	건축기본법	2007. 12. 21. 법률 제878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 	"	
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2. 2. 22. 법률 제1133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경찰청/ 해양경찰청	
6	고용정책 기본법	1993. 12. 27. 법률 제464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 	고용노동부	
7	과학기술 기본법	2001. 1. 16. 법률 제635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및 과학기술진흥법을 폐지
8	관광기본법	1975. 12. 31. 법률 제287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친선을 증진하고 국민 경제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함. 	문화체육 관광부	
9	교육기본법	1997. 12. 13. 법률 제543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 	교육과학 기술부	- 교육법을 폐지
10	국가보훈 기본법	2005. 5. 31. 법률 제757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처	

순번	법률명	제정 일자	제정 목적	소관 부처	비고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11	국가정보화 기본법	1995. 8. 4. 법률 제496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임. 	행정안전부	-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을 폐지
12	국가표준 기본법	1999. 2. 8. 법률 제593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 	지식경제부	
13	국세기본법	1974. 12. 21. 법률 제267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기획재정부	- 국세심사청구법을 폐지
14	국어기본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문화체육관광부	-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0. 1. 25. 법률 제993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개발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 개발 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 개발 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 개발 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 	외교통상부	
16	국토기본법	2002. 2. 4. 법률 제665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 	국토해양부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
17	군인복지 기본법	2007. 12. 21. 법률 제873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 정책의 수립 및 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국방부	

제 4 장 국어기본법 정비 방안

순번	법률명	제정 일자	제정 목적	소관 부처	비고
18	근로복지기본법	2001. 8. 14. 법률 제65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 복지 정책의 수립 및 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진흥법, 근로자의생활 향상과고용 안정지원에 관한법률을 폐지
1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7. 12. 21. 법률 제8749호 (전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농림수산식품부	-농업·농촌 기본법에서 명칭 변경
2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999. 2. 8. 법률 제592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문화체육관광부	
21	물류정책기본법	2007. 8. 3. 법률 제8617호 (전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 체계의 효율화,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국토해양부	-화물유통 촉진법에서 명칭 변경
22	민방위기본법	1975. 7. 25. 법률 제277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행정안전부	
2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010. 3. 22. 법률 제1016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 기준·재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 	방송통신위원회	
24	보건의료기본법	2000. 1. 12. 법률 제615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 	보건복지부	

순번	법률명	제정 일자	제정 목적	소관 부처	비고
			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25	부담금관리 기본법	2001. 12. 31. 법률 제658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 	기획재정부	
26	사회보장 기본법	1995. 12. 30. 법률 제513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에 관한법률 을 폐지
27	산림기본법	2001. 5. 24. 법률 제647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산림청	
28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2. 2. 22. 법률 제1134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소방방재청	
29	소방기본법	2003. 5. 29. 법률 제689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	
30	소비자기 본법	2006. 9. 27. 법률 제7988호 (전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보 호 법에 서 명칭 변경
31	식품 안전 기본법	2008. 6. 13. 법률 제91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보건복지부	

제 4 장 국어기본법 정비 방안

순번	법률명	제정 일자	제정 목적	소관 부처	비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		
32	여성발전 기본법	1995. 12. 30. 법률 제513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 	여성가족부	
33	영상진흥 기본법	1995. 1. 5. 법률 제488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 	문화체육 관광부	
34	인적자원 개발 기본법	2002. 8. 26. 법률 제671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 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교육과학 기술부	
35	자격기본법	1997. 3. 27. 법률 제531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 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 중심 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 	교육과학기술부/ 고용 노동부	
36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2005. 8. 4. 법률 제766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 	행정안전부	
37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2004. 3. 11. 법률 제718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행정안전부	- 재난관리 법을 폐지
3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7. 5. 17. 법률 제844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 	법무부	
39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2005. 5. 18. 법률 제749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보건복지부	

순번	법률명	제정 일자	제정 목적	소관 부처	비고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		
40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2010. 1. 13. 법률 제993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 	국무총리실	
41	전기통신 기본법	1983. 12. 30. 법률 제368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방송통신위원회	
4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 6. 1. 법률 제1146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지식경제부/법무부	-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명칭 변경
4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2006. 3. 24. 법률 제792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킴. 	국무총리실 / 행정안전부	
44	제품안전 기본법	2010. 2. 4. 법률 제1002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지식경제부	
45	중소기업 기본법	1966. 12. 6. 법률 제184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을 고도화하고 국민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 	중소기업청	
46	지방세 기본법	2010. 3. 31. 법률 제102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지방세 법칙 	행정안전부	

제 4 장 국어기본법 정비 방안

순번	법률명	제정 일자	제정 목적	소관 부처	비고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		
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005. 8. 4. 법률 제7664호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	행정안전부	
48	지식재산기본법	2011. 5. 19. 법률 제10629호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국무총리실	
4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2005. 5. 31. 법률 제7542호	◦ 항일 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함.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5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3. 7. 29. 법률 제6955호	◦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 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국토해양부	
51	청소년기본법	1991. 12. 31. 법률 제1477호	◦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여성가족부	- 청소년육성법을 폐지
5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05. 12. 7. 법률 제7715호	◦ 토지 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 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 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국토해양부	
5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2002. 5. 13. 법률 제6700호	◦ 해양 및 해양 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 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	"	- 해양개발 기본법을 폐지

순번	법률명	제정 일자	제정 목적	소관 부처	비고
54	행정규제기본법	1997. 8. 22. 법률 제536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 	국무총리실	- 행정규제관리법을 폐지
55	행정조사기본법	2007. 5. 17. 법률 제848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 	국무총리실	
56	협동조합기본법	2012. 1. 26. 법률 제112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 	기획재정부	- 2012.12.1. 시행 예정
57	환경정책기본법	1990. 8. 1. 법률 제425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 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 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환경부	- 환경보전법을 폐지

<부처별 소관 기본법 현황>

부처명	기본법명	비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본법/ 자격기본법(고용노동부와 공동 소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1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행정안전부와 공동 소관)/ 지식재산 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5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1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건축기본법/ 국토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7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3

부처명	기본법명	비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본법/ 국어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2
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
보건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5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3
외교통상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
지식경제부	국가표준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무부와 광동서관)/ 제품안전기본법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6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
국가보훈처	국가보훈 기본법	1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1
산림청	산림기본법	1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기본법	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1

현행법상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률은 대체로 정책 입법·프로그램 입법으로서의 기능과 성격을 가지는 독특한 입법 형식, 즉 해당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의 정비를 도모하는 입법 유형을 의미한다.¹⁹³⁾ 기본법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¹⁹⁴⁾

193) 다만, 제명에 기본법이 사용되고 있는 다수의 법률의 경우 진흥법·조성법·육성법·촉진법 등을 사용하고 있는 법령과 비교할 때 그 구성과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법령과 그렇지 아니한 법령 사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법률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붙이는가의 여부는 법률의 위치, 그 규정의 구성, 내용, 형식 등을 고려하여 입안자 내지 입법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0. 31, 22쪽 참조.

194) 이하 박영도, 앞의 보고서, 19쪽 이하 참조.

첫째, 사회에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의 제도·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지칭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실질적 의미의 기본법). 이러한 용례는 “실질적인 의미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가진 법률인가와는 관계가 없다. 예컨대, 「국어기본법」이 국어에 관한 기본법, 「교육기본법」이 교육에 관한 기본법,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 분야에 관한 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경제법 분야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이러한 용례에 해당한다.

둘째, 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을 지칭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형식적 의미의 기본법), 이것은 주로 국정의 중요 분야에서 제도·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천명·지시하는 법률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 밖에 국가의 기본 조직을 정하는 법 규범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의 기본법은 헌법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독일 연방공화국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치기본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어기본법」은 법률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어 정책의 기본 이념 및 기본 방향과 기준·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의 기본법이라 할 것이다.

(2) 기 능

1) 기본법의 일반적 기능

① 국가 정책의 방향 제시와 추진 기능

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그 분야의 정책이 중요하고, 해당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그 책무나 결의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제시된 방향성과 지침에 따라 계획적·종합적·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분야의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법의 제정·개정으로 새로운 이념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개별법의 정비나 정책의 변경을 도모해 가는 방법을

채용하기도 한다(이 경우에 기본법은 새로운 정책이나 개혁의 방향성·근간 등을 제시하고, 정책 전환이나 개혁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② 제도·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기능

사회의 복잡화 및 국가 역할의 비약적 증대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기본법은 일정한 분야의 제도·정책의 기본적 방향을 정하고, 관계되는 제도·정책을 정비하며, 그러한 것들의 종합화·체계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입법 수·법령 수의 증대, 무계획적인 입법, 법 제도의 고도화·복잡화 등에 따른 법률 간의 모순·충돌을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이념·지침·조감도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제도·정책의 통일성·체계성의 확보나 국민에 대한 이해 증대를 도모한다.

또한 기본법에서는 관련되는 시책을 횡단적·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종합 조정을 도모하는 구조로서 기본계획의 제도, 관계 부처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심의회 등에 관하여도 규정함으로써, 조정이나 연대를 통한 정책의 전체적·종합적 체계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③ 정책의 계속성·일관성의 확보 기능

기본법은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형성되기보다는 현실의 정책을 장기적·종합적인 시야·전망에 입각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의 구성이나 내각이 변경되더라도 기본법에 규정된 정책이 유지됨으로써, 정책의 계속성·일관성·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한다.

④ 행정의 통제 기능

현대 행정 국가에서 국회는 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여 일정한 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부를 감시·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기본법은 국회가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행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분야의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방향성·대강을 제시함으로써, 일정한 틀을 형성하고, 이에 기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하는 의미를 가진다.

⑤ 국민에 대한 정책 메시지 발신 기능

기본법은 일정한 분야·사항의 정책에 관한 국가의 기본 인식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 이념이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는, 국민에 대한 정책 메시지 발신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사회에서 새로운 이념이나 제도의 형성·정착을 도모하려는 경우, 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사회의 이해와 인식, 의식 개혁 등이 추진되도록 하며, 국민에 대한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 국어기본법의 기능

「국어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국어 정책의 추진 의지 및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진흥 정책을 계획적·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을 한다.

「국어기본법」은 국어 분야의 제도·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관계되는 제도·정책을 정비함으로써, 국어 정책의 종합화·체계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어기본법」은 관련 법령 수의 증대, 무계획적인 입법, 법 제도의 고도화·복잡화 등에 따른 법률 간의 모순·충돌을 이념·지침·조감도를 제시하여 해결함으로써, 제도·정책의 통일성·체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진흥 정책을 장기적·종합적인 시야·전망에 입각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의 구성이나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정책이 유지됨으로써, 정책의 계속성·일관성·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진흥 정책에 관한 국가의 기본 인식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이념이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는, 국민에 대한 정책 메시지 발신 기능을 수행한다.

4. 국어기본법 개별 조문의 주요 내용

현행 「국어기본법」 개별 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국어기본법 개별 조문의 주요 내용>

분 류	조 항	주요 내용
• 국어와 한글의 명시	제 3 조	-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이며,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임을 명시함.

분 류	조 항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 4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 - 정신상·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 6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
	제 8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국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결과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 조사 	제 9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국민들이 국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어 정책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책임관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에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두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규범의 영향 평가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심의회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두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서 작성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정보화 촉진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용어의 표준화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함.

분 류	조 항	주요 내용
• 국어의 보급	제19조	-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제19조의2	-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21조	-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제2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 균등을 위해 힘써야 함을 명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국어능력의 검정	제23조	-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어문화원 지정	제24조	-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각종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국어문화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 국어 발전 기본계획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언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부문별 국어 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이다.¹⁹⁵⁾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고,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는 ①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②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③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⑤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에 관한 사항, ⑥ 국어의

195) 문화체육관광부, '09~'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 보고서, 89쪽 참조.

국의 보급에 관한 사항, ⑦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⑧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⑨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⑩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었고, 2012년부터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시행 중이다.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3대 중점 추진 과제와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로 구성되었다. 3대 중점 추진 과제는 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체계의 정비, ②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추진과 세계화, ③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한습용 웹사이트 편찬이다.¹⁹⁶⁾ 3대 중점 추진 과제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의 목표와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는 다음의 표와 같다.¹⁹⁷⁾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3대 중점 추진 과제>

<p>1.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의 ‘국어전문교육기관’화 ▶ 맞춤형 국어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국내외 국어 교원 재교육 및 연수 강화 ▶ 교육 대상별·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 보급 ▶ 온라인 국어 교양강좌 개설, 운영
<p>2.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밀착형 ‘한국어문화학교’ 단계별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1차(‘07~‘08):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36개교 ○ 1단계 2차(‘09~‘11):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64개교 ○ 2단계 (‘12~‘16): 동남아, 서남아 지역 100개교 ▶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기관과 교육 전문가 연결망 구축 ○ 권역별·지역별 ‘한국어문화교류협의회’ 결성 ○ 아시아 지역 언어정책기관 국제학술회의 정례화 ○ 정보 교류를 위한 인터넷 공동체(커뮤니티) 구축 ▶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 체제 정비 및 운영 활성화 ▶ 현지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지원

196) 문화체육관광부, ‘09~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 보고서, 91쪽.

197) 문화체육관광부, ‘09~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 보고서, 92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권별, 교육 단계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현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 개발 ▶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육성 ○ 원내 국어전문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재교육 실시 ○ 현지 한국어 교육 전문가 초청 중·단기 연수 실시 ○ 국내 한국어 교육 전문가 파견 현지 연수 지원 ▶ 민간기업의 협력 유도, 민관 간 상승 전략 추진 ▶ 온라인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방송 체계 구축
<p>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이트 편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학습 지원을 위한 다국어 웹사이트 편찬 ▶ 언어권별 대역사전 집필 및 웹사이트 시스템 개발 ▶ 실용 예문 구축 및 사전 연계 음성 녹음 제공 ▶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 순차 편찬 ▶ 사전편찬실 설치, 상설 운영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

연 번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 정책의 확산	1-1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 1-2 국어 정책 추진 관련 지원 체제 운영 활성화 1-3 언어 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 체제 강화 1-4 언어 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
2	남북 언어 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2-1 남북 언어 교류 활성화 2-2 언어 정책 및 정보 교류 국제 협력망 구축
3	소의 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	3-1 국제결혼 이주 여성 등의 한국어 교육 확대 3-2 새터민 정착을 위한 국어 교육 지원 3-3 수화, 점자 체계 개선 지원
4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4-1 국어 순화 사업의 강화 4-2 대중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4-3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 개선 4-4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 체계 구축 4-5 공문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4-6 교과서, 법령문 등의 감수 제도 정착
5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 여건 조성	5-1 국어능력검정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 5-2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 활용 5-3 '국어상담소'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

연 번	추진 과제	세부 과제
6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6-1 국어 사용 실태 조사 6-2 민족생활어 및 직업생활어 조사 6-3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7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7-1 민족문화 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보완 7-2 신어 조사 지속 실시 7-3 다양한 맞춤형 사전 편찬
8	국어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8-1 국어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8-2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8-3 국어능력 향상 학습 시스템 개발 8-4 한국어의 다양성 체험관 설립 8-5 국어전문도서관 구축
9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9-1 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 문화유산 보급 9-2 우리말 역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 9-3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9-4 도시 언어경관 정비 및 조성 9-5 한글의 산업화 지원
10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10-1 국어 정보지 발간 및 보급 확대 10-2 국어 정책 홍보 맞춤 서비스 체제 구축 10-3 국어 생활 기획 총서 발간 10-4 국어운동단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10-5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5대 추진 과제와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 5대 추진 과제는 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능력 향상, ② 공공공영의 국어 문화 확산, ③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④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⑤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이다. 5대 추진 과제에 따른 15개의 세부 과제는 다음의 표과 같다.¹⁹⁸⁾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5대 부문별 세부 과제>

연 번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능력 향상	1-1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1-2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1-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198) 문화체육관광부·관계부처 합동,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2~2016), 문화체육관광부·관계부처 합동, 2012. 1. 17, 25쪽 참조.

연 번	추진 과제	세부 과제
2	공생공영의 국어 문화 확산	2-1 언어적 소외 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2-2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2-3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3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이익 증진	3-1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3-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4-1 「세종학당」 확대·운영 4-2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3 한국어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5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5-1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2 언어정보 자원 통합 관리 5-3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2) 실태 조사

「국어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태 조사는 ①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②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사항, ③ 국민의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 실태/ 가요·영화·광고·상호 및 상표 등의 언어 사용 실태 등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실태 조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국어책임관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어의 발전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정한다.

사람을 말한다. 국어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국어책임관은 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②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③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④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2012년 5월 현재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¹⁹⁹⁾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

계	중앙행정기관 (부·처·청·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383명	44명	92명	16명	231명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현행법상 국어책임관과 유사한 책임관 제도를 두고 있는 입법례는 다음의 표와 같다.

<현행법상 책임관 현황>

순번	법률명 및 근거 조문	책임관 명	직위	주요 업무	소관부처
1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전산운영책임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부 등 및 그 부분 자료를 작성·보관·관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시간, 주, 월 단위로 보존 	법원행정처

199)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2. 5, 9쪽.

순번	법률명 및 근거 조문	책임관 명	직위	주요 업무	소관부처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2	정보공개책임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 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행정안전부
3	공무원 행동강령 제 23조 제1항	행동강령책임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공무원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 행위의 신고 접수, 조사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11조 제1항	정보화책임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 업무의 지원 정보 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 활용 방안의 수립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정보화 교육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
5	국가회계법 제7조 제1항	회계책임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회계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획재정부
6	국방정보화 기반 조성 및 국방정보	국방정보화책임관	- 국방부 : 국방부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 정보 자원의 획득·배분·활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 조정 	국방부

순번	법률명 및 근거 조문	책임관 명	직위	주요 업무	소관부처
	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소속 기관, 부대 : 소속 기관, 직할기관 부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국방정보화와의 연계·조정 행정 처리 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 처리 절차의 간소화 추진 	
7	국어기본법 제10조 제1항	국어책임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
8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제1항	국유재산책임관	해당 관서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 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 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법 제27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외에 국유재산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기획재정부
9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 제1항	분석평가책임관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에 따른 분석 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에 따른 분석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부

순번	법률명 및 근거 조문	책임관 명	직위	주요 업무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분석 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10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 제1항	여성정책책임관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해당 기관의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 등 	여성가족부
1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0조 제1항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자원 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총괄 ◦ 인적 자원 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의 총괄 	교육과학기술부
12	장애인복지법 제12조 제1항	장애인정책책임관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장애인정책 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장애인정책 추진 관련 대외 협력 업무 ◦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보건복지부
1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1조	녹색성장책임관	-		국무총리실

제 4 장 국어기본법 정비 방안

순번	법률명 및 근거 조문	책임관 명	직위	주요 업무	소관부처
1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 제5항	정보보호책임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의 제정·수정 및 보안 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 사고의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 복구 지원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15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7조	교육훈련책임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비 확보 그 밖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행정안전부
16	지식재산기본법 제12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사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지식재산 관련 사업 평가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 	국무총리실
17	통계법 제6조 제1항	통계책임관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 작성 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 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무 다른 통계 작성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통계청

순 번	법률명 및 근거 조문	책임관 명	직위	주요 업무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 고 위 공 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 에 준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 가. 특별시· 광역시·도·특 별 자 치 도 :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와 별표 2 또 는 제12조와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의 직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시·군·자 치구: 「지방 자 치 단 체 의 행 정 기 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별 표 3 중 본 청에 두는 실 장(국장급을 말한다)·국장 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지방 자 치 단 체 의 행 정 기 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 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순번	법률명 및 근거 조문	책임관 명	직위	주요 업무	소관부처
			자치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과장·담당관의 직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4) 국어심의회

1) 연혁

국어심의회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어 정책 자문 기구로서 「국어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었다. 국어심의회는 1953년 3월 문교부령 제31호에 따라 처음 설치되었는데,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64년 대통령령 제1977호에 따라 문교부 장관의 자문 기구로 출범하면서부터이다.²⁰⁰⁾

1991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사, 연구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국어심의회는 심의 역할만을 전담하게 되었고,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어심의회 역할이 강화되었다.²⁰¹⁾

1994년까지 국어심의회는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순화분과, 표기법분과, 학술용어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는데, 1995년 1월 5일 「문화예술진흥법」이

200) 문화체육관광부, '09~'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 보고서, 24쪽.

201) 문화체육관광부, '09~'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 보고서, 24쪽 참조.

개정, 공포되고 같은 해 7월 13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47호)이 발효됨에 따라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일부 분과위원회가 조정되어 5개 분과위원회 중 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 폐지되고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 23일 「국어심의회운영세칙」(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을 제정하여 국어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5개 분과위원회는 3개 분과로 통합·조정되었다. 이때 표기법분과와 한자분과가 어문규범분과로 통합되고 한글분과와 국어순화분과가 국어순화분과로 통합·조정되었으며, 국어정보화분과가 언어정책분과로 확대·개편되었다.²⁰²⁾

1953년 이후 국어심의회의 설치를 규정한 법령을 중심으로 주요 연혁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²⁰³⁾

<국어심의회 설치 등 관련 법령의 주요 연혁>

시 기	주요 내용	근거 법령
• 1953년	- 한글 간소화 개정의 학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설치	문교부령 제31호
• 1964년	- 「국어심의회규정」 제정: 문교부 장관 자문기구(조사·연구·심의)로 설치	대통령령 제1977호
• 1976년	- 「국어심의회규정」 일부 개정: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설치	대통령령 제8279호
• 1990년	- 「국어심의회규정」 일부 개정: 문화부 장관 산하 심의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2895호
• 1991년	- 「국어심의회규정」 일부 개정: 국립국어연구원의 설립으로 조사·연구 기능 이관	대통령령 제13491호
• 1993년	- 「국어심의회규정」 일부 개정: 문화체육부 산하 심의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3869호
• 1995년	- 「국어심의회규정」 폐지	대통령령 제14727호
• 1995년	-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법률 제4883호
• 1995년	- 「국어심의회세칙」 제정	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

202) 문화체육관광부, '09~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 보고서, 24-25쪽.

203) 문화체육관광부, '09~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 보고서, 25쪽.

시 기	주요 내용	근거 법령
• 2005년	-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 변경, 심의위원회·분과 구성 변경	법률 제7368호
• 2009년	-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 전부 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1호

2) 구성·운영

국어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①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다(법 제13조 제2항).²⁰⁴⁾

국어심의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법 제13조 제3항),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며(같은 조 제4항), 그 임기는 2년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어심의회의는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국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국어심의회의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언어정책분과위원회는 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④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어문규범분과위원회는 ①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② 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 ③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④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⑤ 한자의 자형(字形)·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⑥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204) 그 외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어순화분과위원회는 ①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②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5)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작성 외의 공공언어²⁰⁵⁾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으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문규범의 준수, 쉬운 용어 사용 등 공공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바른 언어 사용 및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공공언어의 개선은 정부 등 공공언어 생산자와 일반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기능²⁰⁶⁾을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공공언어 개선 사업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도로 공공언어 쉽게 쓰기 사업이 ‘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 제고’(2009. 6. 24. 대통령 보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각 정책 추진 주체별로 개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대 효과의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미비하여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²⁰⁷⁾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공공언어 사용의 원칙이나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이나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전문용어의 표준화

일반적으로 전문용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구분되는 것으로 학술 목적이거나 특정 직업군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로 이해되고 있다.²⁰⁸⁾

205) ‘공공언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지원단’이라는 기구가 생기기 전부터인데, ‘공공언어’는 일반적으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언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공언어 개념의 다양한 이해에 관하여는 장후석 외,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국립국어원, 2010. 5. 31, 1쪽 이하; 민현식 외,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2010. 11. 30, 2쪽 이하 참조.

206) 문화체육관광부, ‘09~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 보고서, 149쪽.

207) 장후석 외, 앞의 보고서, 2쪽.

208) 전문용어 개념의 다양한 이해에 관하여는 강현화, 전문용어 표준화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1, 12쪽 이하; 국립국어원, 전문 용어 연구,

「국어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용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문용어는 학술 목적이거나 특정 직업군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예를 들어 의학이나 약학 분야, 법률·행정·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 표준화 및 체계화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7) 국어의 보급

1) 개요

「국어기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2009년 기준으로 약 66,300,000명으로 추산되고, 모국어 사용자 수에 따른 한국어 순위는 17위에 해당한다.²⁰⁹⁾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보급 기관은 2,000여 개, 이들 기관의 수강생은 250,000여 명에 달하며,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국내외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는 3,400권 가량이다.²¹⁰⁾

한류 및 국가 위상(또는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 등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133개국에서 약 6,150,00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한국어 보급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에서 「국어기본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

11쪽 이하 참조.

209) 세계 언어 목록, 사용자 수 등을 제공하는 웹 및 인쇄 출판물인 ‘에스놀로그’(www.ethnologue.com) 2009년판 통계 참조.

210) 국립국어원, 2010,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국립국어원, 2010. 9.

류재단법」 등 각각 다른 근거 법률에 따라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 각각 다른 기관 및 지원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²¹¹⁾

각 부처의 사업을 조정하여 상승 효과를 창출하고 업무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3개 부처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를 만들어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업무 조정 및 협조회의를 열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의 접근성 곤란, 다수 부처를 통한 보급·지원에 따른 혼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및 표준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²¹²⁾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 교육 정책에 비교적 늦게 관심을 가졌고, 주로 국외에서의 한국어 보급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결혼 이주민 증가에 따른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어린이, 취업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 등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세종학당의 설치·운영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7년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사회교육원 형태의 교육 기관이자 현지 밀착형 ‘한국어 문화 학교’인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을 설치·운영 중이다.²¹³⁾ 세종학당은 아시아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국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의 외국인 취업이 증가하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설립하게 되었다.²¹⁴⁾

세종학당은 문화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향의 문화 교류와 이해를 촉진하고, 소수 지식인 중심의 엘리트 교육에서 탈피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대중적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보급을 확대하며, 국가 간 문화적 연대와 공존을 위한 교류 협력 증진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²¹⁵⁾

세종학당은 재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 기관(대학 포함) 등과 연계하여 기존의 교육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개방형 체제로 운용되고

211) 이세정 외, 앞의 보고서, 16쪽.

212) 이세정 외, 앞의 보고서, 16쪽.

213) 국립국어원, 2007 세종학당백서, 국립국어원, 2007. 10, 32쪽.

214) http://www.korean.go.kr/09_new/about/business_2007.jsp.

215)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세종학당 운영 길잡이,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2007, 12쪽.

있는데,²¹⁶⁾ 한글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한식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고, 제1단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100개교, 제2단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 100개교 등 총 200개교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²¹⁷⁾ 2012년 10월 현재 국가별 세종학당 설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²¹⁸⁾

<국가별 세종학당 설치 현황>

대 류	문화원 세종학당(개소수)	소 계 (22개소)	일반 세종학당(개소수)	소 계 (68개소)	합 계 (90개소)
아시아	중국(2), 일본(2), 베트남(1), 필리핀(1), 인도네시아(1), 카자흐스탄(1), 터키(1)	9	중국(16), 몽골(3), 베트남(4), 필리핀(3), 태국(3), 인도네시아(1), 캄보디아(1), 카자흐스탄(2), 타지키스탄(1), 우즈베키스탄(2), 네팔(1), 방글라데시(1), 스리랑카(2), 터키(3), UAE(1), 대만(1), 파키스탄(1), 라오스(1)	47	56개소
유럽	독일(1), 러시아(1), 영국(1), 폴란드(1), 프랑스(1), 스페인(1), 헝가리(1)	7	독일(2), 러시아(2), 영국(1), 프랑스(1), 벨기에(1), 우크라이나(1), 이탈리아(1)	9	16개소
아메리카	미국(2), 아르헨티나(1), 멕시코(1)	4	미국(2), 캐나다(1), 페루(1), 브라질(1), 멕시코(1), 칠레(1), 콜롬비아(1)	8	12개소

216) 최용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세종학당 운영 방향, 문법 교육 제6호, 한국문법교육학회, 2007. 6, 236쪽 참조.

217)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09_new/about/business_2007.jsp.

218) 문화체육관광부, 2012. 10. 23. 보도 자료(‘세종학당재단’ 출범, 한국어 세계화에 날개를 달다) 참조.

대 류	문화원 세종학당(개소수)	소계 (22개소)	일반 세종학당(개소수)	소계 (68개소)	합계 (90개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1)	1	짐바브웨(1), 케냐(1), 알제리(1)	3	4개소
오세아니아	호주(1)	1	뉴질랜드(1)	1	2개소

3)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세종학당의 지정·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세종학당재단이 설치·운영 중이다. 종전에는 이와 같은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임무는 국가의 임무이고 국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공공적인 활동이지만, 국가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어 보급 사업에 대하여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상설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로서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국내외 한국어 보급 문제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시스템이 필요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그 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 5월 23일 자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법인으로서의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특수법인 제도는 민영화²¹⁹⁾에 수반하는 사업의 효율화(자유의 확보)와 국가의 직영에 의한 업무 실시의 확실성(규율 내지 제한)과의 사이에 그 장점만을 제도적으로 채용하는 현대형 조직법 체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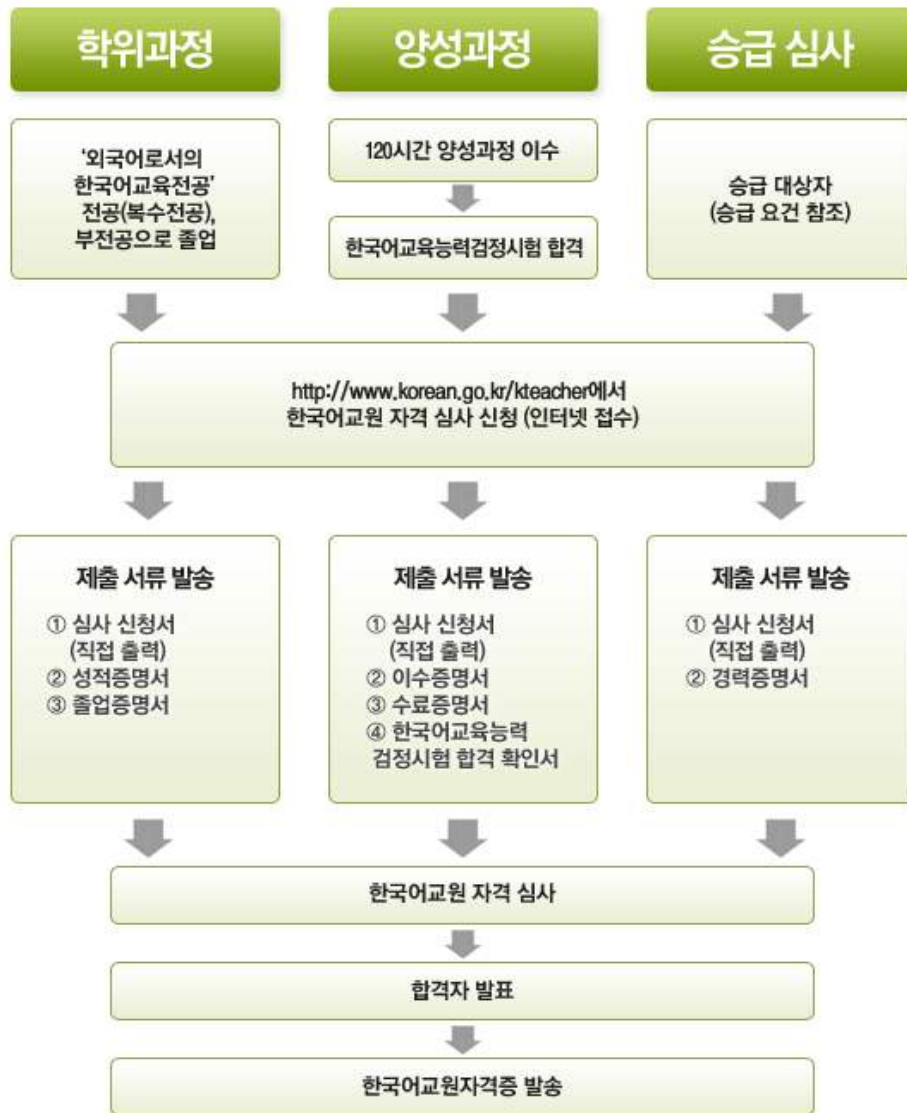
4)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한국어교원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 법적 근거는 「국어기본법」 제19조 제2항

219)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공공사무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가 증대하는 경향(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0, 451쪽) 또는 전통적으로 공행정에 의해서 제공되던 재화 및 서비스를 사적인 주체 또는 사기업으로의 이양하는 것 또는 공법적 임무의 수행에 그들을 개입시키는 것(R. Stober, Allg.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6. Aufl. Stuttgart 2008, § 3 III 2)을 말한다.

이다. 한국어교원이 되려는 사람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어교원은 대학의 한국어 교육 전공 학부 및 대학원 전공의 정규 과정이나 단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다. 단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거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대학(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²²⁰⁾



220) 문화체육관광부, '09~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 보고서, 61-62쪽.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수는 2006년 868명, 2007년 693명, 2008년 842명, 2009년 1,037명, 2010년 2,157명, 2011년 1,809명, 2012년 10월 현재 1,459명으로 누계가 8,811명에 이른다. 2009년을 기점으로 한 해 1,000명 이상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여성 결혼 이주민의 증가와 한류가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 북·남미, 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²²¹⁾

(8) 국어문화원

1) 개 요

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이다. 종래에는 그 명칭이 ‘국어상담소’였는데,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 개정 시 상담뿐 아니라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상 전화 상담만을 하는 곳으로 인식되는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을 바꿨다.²²²⁾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근 책임자 1명, 상근 상담원 2명 이상을 갖추고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 상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 지정 현황

2005년 10월 전국 11개소로 출발한 국어문화원(국어상담소)은 2007년에 강원, 제주, 전북의 세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14개소가 되었다. 2006년 1월에는 전체 국어문화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에 대한 국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국어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 국어상담소 소장이 모여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를 결성하였다. 2008년에는 울산과 대전 지역, 2010년에는 경기 지역, 2011년

221) 문화체육관광부, `09~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 보고서, 63쪽 참조.

222)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7. 11, 2쪽.

에는 인천 지역에 국어문화원을 새로 지정하여²²³⁾ 2012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18개의 국어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국어문화원 지정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²²⁴⁾

<국어문화원 지정 현황>

순 번	문화원 명칭	지정일	누리집
1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2005년 10월	www.barunmal.org
2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년 10월	knukorean.knu.ac.kr
3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년 10월	ckc.gnu.ac.kr
4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년 10월	korean.donga.ac.kr
5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천안)	2005년 10월	smkorean.net
6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년 10월	cc가.yu.ac.kr
7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년 10월	munjang.net
8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년 10월	kor.chonnam.ac.kr
9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년 10월	www.koreanlab.or.kr
10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2005년 10월	korean.chungbuk.ac.kr
11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2005년 10월	korean.kbs.co.kr
12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2007년 1월	kcc.kangwon.ac.kr
13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07년 1월	korean.jj.ac.kr
14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07년 1월	malgeul.jejunu.ac.kr
15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2008년 12월	uoukorean.ulsan.ac.kr/home
16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대전)	2008년 12월	urimal.hnu.kr
17	한양대학교(안산) 국어문화원	2010년 5월	hkli.hanyang.ac.kr
18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2011년 2월	www.inhakorean.or.kr

제 3 절 국어기본법 주요 정비 사항 및 정비안

「국어기본법」의 체계 조정 없이 내용만을 조정하는 정비안(제1안)과 체계를 조정하는 정비안(제2안)을 각각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입법을 추진할 때 제1안은 일부개정안,²²⁵⁾ 제2안은 전부개정안²²⁶⁾으로 하면 될 것이다.

223) 문화체육관광부, '09~'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 보고서, 33쪽.

224)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자료, 14쪽.

22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부록 8 참조.

226) 「국어기본법」 전부개정안은 부록 9 참조.

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제1안)

(1) 주요 정비 사항

1) 다문화 가족 및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언어 정책

현행 「국어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의 하나로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 및 북한 이탈 주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족 및 북한 이탈 주민이 언어 사용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종국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다문화 가족 및 북한 이탈 주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가족 및 북한 이탈 주민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을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국가가 장기적·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이나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 전문가 양성 등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문화 가족 및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사항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국어 사용 등에 관한 실태 조사

현행 「국어기본법」 제9조에서는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등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실태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직접 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령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단). 실태 조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할 것인지,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더라도 법리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실태 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더 확실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으로써 실태 조사와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국어책임관 제도의 내실화 및 국어전문관 제도의 도입 등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서 국어책임관을 두지 않더라도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의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유사 입법례

【국유재산법】 제27조의2(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관서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
2.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동보고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외에 국유재산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국어책임관은 대부분 국어 관련 학문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자가 지명되고,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겸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국어책임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를 국어전문관으로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신규 공무원 인력으로

전문관을 두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사상 우대 조치 등에 관한 특전이나 장려책(인센티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의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실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의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대통령령 차원에서 규정할 것인지 법률에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어문규범 제정·개정 시 영향평가 실시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 어문규범 영향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이를 법률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국어심의회의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

현재는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 제도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없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부처에 설치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가 심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각 부처 소관 전문용어 표준안을 일일이 국어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확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심의 기능은 국어심의회의 제도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이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일이 국어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처에서 올린 전문용어 표준안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성 측면에서나 표준안 확정 시 신속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바, 오히려 해당 부처별로 소관 전문용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행령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어심의회의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 제도를 창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면 전문용어 표준화와 관련한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법률 차원에서 근거를 두고 좀 더 상세한 요청 방법이나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의 규정 방식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민간단체나 학술단체뿐 아니라 그 밖의 민간단체나 학술단체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여러 분야의 전문용어의 심의가 요청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확정하는 것이 과연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제도

현행 「국어기본법」에서는 전문용어 표준화 및 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1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의 명확한 수권 근거 없이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한 전문용어 표준안을 확정·고시하는 권한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제도를 운영할 경우 각각의 행정기관마다 다른 용어의 사용을 주장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총괄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어 전문용어 표준안의 조정·통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처에서 올린 전문용어 표준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일이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성 측면에서나 표준안 확정의 신속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바, 오히려 해당 부처별로서 관 전문용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심의회의에서 각 중앙 부처에서 요청한

소관 전문용어를 심의할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협조를 받아 그 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국어능력 검정 분야

현행 「국어기본법」 제23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어능력 검정 권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다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국어능력 검정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기 타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언어 순화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공언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하여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령 차원에서 국어심의회의 분과위원회인 국어순화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만 국어 순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래어, 외국어의 오용·남용, 규범에 맞지 않는 인터넷 통신 언어의 사용 확산 등 국어 환경의 악화에 따른 국어 순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어 순화에 관한 사항 역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정비안

□ 목차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일부 수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 2 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 2 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일부 수정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일부 수정
제8조 보고	제8조 보고	
제9조 실태 조사 등	제9조 실태 조사 등	* 일부 수정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등	* 조명 및 내용 일부 수정
제 3 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 3 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등	* 장명 수정
제11조 어문규범의 제정 등	제11조 어문규범의 제정 등	
제12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12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 일부 수정
제13조 국어심의회	제13조 국어심의회	* 일부 수정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 일부 수정
제15조 국어문화의 확산	제15조 국어문화의 확산	
제16조 국어 정보화의 촉진	제16조 국어 정보화의 촉진	
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 일부 수정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 규범 준수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 규범 준수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제19조의2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19조의2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20조 한글날	제20조 한글날	
제2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2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 4 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 4 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2조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제22조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제23조 국어능력의 검정	제23조 국어능력의 검정	* 일부 수정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24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제24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 일부 수정
제 5 장 보 칙	제 5 장 보 칙	
제25조 협의	제25조 협의	
제26조 청문	제26조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 일부 수정

□ 국어기본법 신규 조문 대비표(제1안)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 2 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	제 2 조(기본 이념)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비 고
<p>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p> <p>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를 말한다.</p> <p>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p> <p>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p> <p>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p>	<p>제 3 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표준어 규정, ----- ----- ----- -----.</p> <p>4. (현행과 같음.)</p> <p>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 현행 제3조 제1호는 국어의 정의라기보다는 국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정의규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조문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 규정’의 일부로 포함되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은 삭제 필요.</p>

현 행	개정안	비 고
<p>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2 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p> <p>제 6 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p>	<p>② ----- ----- ----- ----- 국민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하 “다문화가족”이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p> <p>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과 같음.)</p> <p>제 2 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p> <p>제 6 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p>	<p>* 다문화 가족 및 북한 이탈 주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 	<p>③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u>국어의 가치 확산 및 국어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u></p> <p>6.~8. (현행과 같음.)</p> <p>9. ----- ----- ----- <u>국민, 다문화</u></p>	<p>* 나머지 호의 표현 방식에 맞추어 수정</p> <p>* 다문화 가족 및 북한 이탈 주민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을</p>

현 행	개정안	비 고
<p>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10.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p> <p>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p> <p>제 7 조(시행계획의 수립 등)</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p>	<p>가족, 북한이탈주민 및 ----- -----</p> <p>10. 공공언어의 개선에 관한 사항</p> <p>11. 국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p> <p>12.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p> <p>13. (현행 제10호와 같음.)</p> <p>14. (현행 제11호와 같음.)</p> <p>제 7 조(시행계획의 수립 등)</p> <p>① (현행 제1항과 같음.)</p> <p>② ----- ----- ----- ----- ----- ----- ----- ----- ----- ----- 등 -----</p>	<p>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p> <p>* 공공언어의 개선에 관한 사항, 국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 -----.</p>	
<p>제 8 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8 조(보고) (현행과 같음.)</p>	<p>*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5년마다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제 9 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국가기관</u>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 9 조(실태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과</u> ----- -----.</p> <p>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u></p>	<p>*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요구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을 포함 시킴.</p> <p>*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단의</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p> <p>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u>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④ ----- ----- ----- <u>관하여 필요한</u> ----- -----.</p> <p>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등)</p> <p>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관(이하 “국어전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p>	<p>실태 조사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화함.</p> <p>* 공공기관의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좀 더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대국민 소통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p> <p>*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보좌하는 국어전문관을 신설함.</p> <p>* 전문관 제도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참조</p> <p>* 단, 조직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전문관’을 두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님.</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 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 지정과 임무 등 및 제2항에 따른 국어전문관의 임무 -----.</p>	<p>*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사상 우대 조치 등에 관한 장려책(인센티브)을 추가함.</p>
<p>제 3 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p>	<p>제 3 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등</p>	<p>* 어문규범에 관한 사항은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제3장에서 함께 규율하고자 한다면 장명에 ‘등’을 포함시키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처럼 ‘올바른’을 보충할 필요가 있음.</p>
<p>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 ----- ----- ----- ----- ---. ---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p>	<p>*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어문규범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p>	<p>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p> <p>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와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경우에는,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이하 “어문규범 영향평가”라 한다)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② ----- <u>어문규범 영향평가</u>----- 관하여 필요한 ----- -----.</p> <p>제13조(국어심의회) ① ----- ----- <u>보전에 관한</u> ----- ----- <u>국어심의회</u>----- -----.</p> <p>② (현행과 같음.)</p>	<p>홈페이지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p> <p>*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을 법률화하고 그 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도 어문규범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p> <p>*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여 조문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p> <p>* 법문에서 곧바로 국어심의회로 칭하고</p>

현 행	개정안	비 고
<p>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p> <p><신 설></p> <p>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p> <p>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③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국어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어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어심의회 심의로 본다.</p>	<p>있으므로 약칭할 필요가 없음.</p> <p>*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시행령을 근거로 국어심의회가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p> <p>* 국어 관련 정책의 현실화 도모를 위하여 심의회 구성 시 민간 위원뿐 아니라 관계 부처 위원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 국어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어심의회 심의로 보도록 함(유사 입법례 : 하천법 제87조 제7항)</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 국어심의회의 탄력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p>
<p>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u>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u>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p> <p>② <u>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 ----- ---- <u>작성하되,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 공문서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외국어 및 외국어의 약어, 한자어 등을 남용하여 국민과 소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공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p>
<p>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흥</p>	<p>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의 명확한 수권 근거 없이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 방법·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현재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총괄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p>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p>	<p>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규범에 관한 규정에 이어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어문규범에 관한 사항은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직

현 행	개정안	비 고
<p>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p> <p>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u><신 설></u></p>	<p>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 ----- ----- ----- ---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 ----- -----.</p> <p>② ----- <u>재외동포, 외국인,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u> ----- -----.</p> <p>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어교육능력을</u> <u>검정할 수 있다.</u></p>	<p>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만일 제3장에서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같이 규정하더라도 조문의 위치를 맨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에 둘 필요가 있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p>	<p>④ ----- ----- ---- <u>사항과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 방법·절차·내용·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p> <p>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현행과 같음.)</p>	<p>* 현재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화를 교육하는 기관이 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 종학당 지정 및 지원</p> <p>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 육하는 누리집(누리 세 종학당) 개발·운영</p> <p>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 재 보급</p> <p>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p> <p>5. 세종학당을 통한 문 화교육 및 홍보 사업</p> <p>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 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 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 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p>		

현 행	개정안	비 고
<p>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⑧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⑨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p> <p>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한글날) (현행과 같음)</p>	<p>* 보칙 규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수도 있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현행과 같음.)</p>	<p>* 보칙 규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수도 있음.</p>
<p>제 4 장 국어능력의 향상</p>	<p>제 4 장 국어능력의 향상</p>	<p>* 제4장은 조문이 3개에 불과하므로 국어능력의 향상에 관한 입법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조문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p>
<p>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p>	<p>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현행과 같음.)</p>	<p>* 현재는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지 아니한바, 협의기구의 근거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요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p> <p><u><신 설></u></p> <p>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p>	<p>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u></p> <p>1. <u>듣기</u> 2. <u>말하기</u> 3. <u>읽기</u> 4. <u>쓰기</u> 5. <u>그 밖에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u></p> <p>③ ----- ----- ----- -----</p> <p>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 ----- 국어능력 향상, 국어 관련 상담, 국어의 발전과 보급, 국어 사</p>	<p>*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어능력 검정 분야를 법률화함.</p> <p>*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국어문화원 사업을 국어능력향상과 국어상담보다 영역을 더 확대할</p>

현 행	개정안	비 고
<p>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용 환경 개선 등의 사업</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u>----- ----- ----- ----- -----.</p> <p>④ ----- ----- <u>방법·절차</u> ----- ----- -----.</p>	<p>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함.</p> <p>*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지정 방법뿐 아니라, 절차,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보 칩</p> <p>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 야 한다.</p> <p>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 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보 칩</p> <p>제25조(협의) (현행과 같음.)</p> <p>제26조(청문) (현행과 같음.)</p> <p>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u>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u> ----- -----. ② (현행과 같음.)</p>	<p>* 2011년 7월 세종특 별자치시 출범을 반 영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는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2. 국어기본법 전부개정안(제2안)

제2안은 체계를 조정하는 안으로 구체적인 정비 내용은 제1안과 같으므로 그 체계 조정에 관한 사항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1) 주요 정비 사항

1) 국어심의회 등

현행 「국어기본법」은 국어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장(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어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제3장의 규율 사항들과 관련성도 크지 않으므로 조문의 위치를 바꿨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어문규범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어문규범의 영향평가),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국회보고, 실태 조사 등, 국어책임관의 지정 등의 조문의 위치도 바꿨다. 개선안에서는 이들 조항을 묶어 1개의 장을 신설하고, 장명(章名)을 ‘올바른 국어 사용’으로 하였다.

2) 한글날,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현행 「국어기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글날에 관한 사항과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어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일 수도 있고, '일종의 포상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므로 이를 보칙 규정으로 이동하여 규정하였다.

(2) 정비안

□ 목차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일부 수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2 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 2 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일부 수정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일부 수정
제8조 보고	제8조 보고	
제9조 실태 조사 등	제9조 실태 조사 등	* 일부 수정
<신 설>	제 3 장 올바른 국어 사용	* 장 신설
<u>제13조</u> 국어심의회	<u>제10조</u> 국어심의회	* 일부 수정
제11조 어문규범의 제정 등	제11조 어문규범의 제정 등	* 일부 수정
제12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12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u>제18조</u> 교과용 도서의 어문 규범 준수	<u>제13조</u> 교과용 도서의 어문 규범 준수	
<u>제10조</u> 국어책임관의 지정	<u>제14조</u> 국어책임관의 지정 등	* 조명 변경, 일부 수정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 3 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 4 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제15조 공문서의 작성	* 일부 수정
제15조 국어문화의 확산	제16조 국어문화의 확산	
제16조 국어 정보화의 촉진	제17조 국어 정보화의 촉진	
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제18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 일부 수정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 일부 수정
제19조의2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20조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 4 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 5 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2조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제21조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제23조 국어능력의 검정	제22조 국어능력의 검정	* 일부 수정
제24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제23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 일부 수정
제 5 장 보 칙	제 6 장 보 칙	
제20조 한글날	제24조 한글날	
제2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25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25조 협의	제26조 협의	
제26조 청문	제27조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 일부 수정

□ 국어기본법 신규 조문 대비표(제2안)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기본 이념)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 현행 제3조 제1호는 국어의 정의라기보다는 국어의 ‘법적</p>

현 행	개정안	비 고
<p>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를 말한다.</p> <p>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u>표준어 규정</u>, <u>표준 발음법</u>,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p> <p>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p>	<p>3. ----- ----- ----- ----- <u>표준어 규정</u>, ----- ----- ----- -----.</p> <p>4. (현행과 같음.)</p>	<p>지위’에 관한 사항 이므로 이를 정의규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조문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 현행 어문규범에서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 규정’의 일부로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삭제함.</p>
<p>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p>	<p>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현행	개정안	비고
<p>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 ----- 국민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하 “다문화가족”이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p>	
<p>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과 같음.)</p>	
<p>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p>	<p>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p>	
<p>제 6 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 6 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u>국어의 가치 확산 및 국어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u></p> <p>6.~8. (현행과 같음.)</p> <p>9. ----- ----- ----- <u>국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u> 및 -----</p>	<p>* 나머지 호의 표현 방식에 맞추어 수정</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 -----.</p>	
<p>제 8 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8 조(보고) (현행과 같음.)</p>	<p>*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5년마다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제 9 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제 9 조(실태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국가기관</u>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 ----- ----- <u>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과</u> ----- ----- -----.</p>	<p>*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요구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을 포함 시킴.</p>
<p><신 설></p>	<p>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를 제 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단의 실태 조사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화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 ----- 관하여 필요한 ----- ----- -----.</p> <p>제 3 장 올바른 국어 사용</p> <p>제10조(국어심의회) ① ----- 보전에 관한 ----- ----- 국어심의회----- -----.</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현행과 같음.) 3. <u>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 4. (현행 제3호와 같음.) <p>③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 -----.</p>	<p>* 장(章)을 신설함</p> <p>* 국어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장을 신설하여 조문의 위치를 조정함.</p> <p>* 법문에서 곧바로 국어심의회로 칭하고 있으므로 약칭할 필요가 없음.</p> <p>*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시행령을 근거로 국어심의회가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p> <p>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u>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는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는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p>	<p>④ (현행 제13조 제4항과 같음.)</p> <p>⑤ <u>국어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어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어심의회는 심의로 본다.</u></p> <p>⑥ (현행 제13조 제6항과 같음.)</p> <p>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 -- 제10조----- ----- -----</p>	<p>하게 함.</p> <p>* 국어 관련 정책의 현실화 도모를 위하여 심의회 구성 시 민간 위원뿐 아니라 관계 부처 위원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 국어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어심의회 심의로 보도록 함(유사 입법례 : 하천법 제87조 제7항)</p> <p>* 국어심의회는 탄력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p> <p>* 현재는 어문규범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나 그 밖의</p>

현행	개정안	비고
<p>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 ----- ---- <u>개정하거나 폐지하는</u> -----.</p>	<p>방법으로 공고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p>
<p>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와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경우에는,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이하 “어문규범 영향평가”라 한다)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② ----- <u>어문규범 영향평가</u>----- 관하여 <u>필요한</u> -----.</p>	<p>*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을 법률화하고 그 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도 어문규범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p>
<p>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p>	<p>제13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현행 제18조와 같음.)</p>	<p>* 현행 제18조 역시 어문규범에 관한 규정 이므로 어문규범에 관한 규정들에 이어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어문규범에 관한 사항은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직접적</p>

현 행	개정안	비 고
<p>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p> <p>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p> <p>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제14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등)</p> <p>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u>지정하여야 한다.</u></p> <p>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관(이하 “국어전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p>	<p>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만일 제3장에서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같이 규정하더라도 조문의 위치를 맨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에 둘 필요가 있음.</p> <p>* 공공기관의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좀 더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대국민 소통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p> <p>*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보좌하는 국어전문관을 신설함.</p> <p>* 전문관 제도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참조</p> <p>* 단, 조직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전문관’을 두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3 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p> <p>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p>	<p>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p> <p>④ ----- ---- 지정과 임무 등 및 제2항에 따른 국어전문관의 임무 -----.</p> <p>제 4 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p> <p>제15조(공문서의 작성) ① -----</p>	<p>*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사상 우대 조치 등에 관한 장려책(인센티브)을 추가함.</p> <p>* 어문규범에 관한 사항은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제3장을 신설하여 규정함. 만일 계속적으로 제3장에서 함께 규율하고자 한다면 제3장의 장명(章名)에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제3장에서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같이 규정하더라도 조문의 위치를 맨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에 둘 필요가 있음.</p> <p>* 공문서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외국어</p>

현행	개정안	비고
<p>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p> <p>② <u>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 ---- <u>작성하되,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및 외국어의 약어, 한자어 등을 남용하여 국민과 소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공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p>
<p>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6조(국어문화의 확산) (현행 제15조와 같음.)</p>	
<p>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p>	<p>제17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현행 제16조와 같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8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현행 제17조와 같음.)</p> <p>② <u>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 법률의 명확한 수권 근거 없이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 방법·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p> <p>* 현재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 규범 준수)</p> <p>제19조(국어의 보급 등)</p> <p>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p> <p><신설></p> <p>③ 제2항에 따른 자격</p>	<p>제19조(국어의 보급 등)</p> <p>① ----- ----- -----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 ----- ----- -----.</p> <p>② ----- 재외동포, 외국인,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 ----- -----.</p> <p>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어교육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u></p> <p>④ -----</p>	<p>부에 ‘총괄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p> <p>* 제3장 제14조로 이동하여 규정함.</p> <p>* 현재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 시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p>	<p>-----</p> <p>----- <u>사항과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 방법·절차·내용·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p> <p>제20조(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현행 제19조의2와 같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p> <p>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p> <p>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p> <p>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p> <p>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p> <p>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수 있다.</p> <p>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⑧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⑨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p> <p>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p>		<p>* 보칙 규정(제23조)으로 이동하여 규정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 4 장 국어능력의 향상</p> <p>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p>	<p>제 5 장 국어능력의 향상</p> <p>제21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현행과 같음.)</p>	<p>* 보칙 규정(제24조)으로 이동하여 규정함</p> <p>* 현행 제4장은 조문이 3개에 불과하므로 국어능력의 향상에 관한 입법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조문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p> <p>* 현재는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p>

현 행	개정안	비 고
<p>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국어능력의 검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p> <p>1. 듣기</p> <p>2. 말하기</p> <p>3. 읽기</p> <p>4. 쓰기</p> <p>5. 그 밖에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p> <p>③ ----- ----- ----- -----.</p>	<p>지 아니한바, 협의기구의 근거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필요로 함.</p> <p>*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어능력 검정 분야를 법률화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u>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u>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u>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u>지정 방법 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 ----- <u>국어능력 향상, 국어 관련 상담, 국어의 발전과 보급, 국어 사용 환경 개선 등의 사업</u>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u>----- ----- ----- ----- ----- -----.</p> <p>④ ----- -----<u>방법·절차</u>----- ----- -----.</p>	<p>*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지정 방법뿐 아니라, 절차, 보고에 관하여</p>

현 행	개정안	비 고
<p>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7조(청문) ----- ----- 제23조----- ----- ----- -----.</p> <p>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 ----- ----- ----- ----- 특별시 장·특별자치시장----- ----- -----.</p> <p>② (현행 제27조 제2항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는</p>	<p>* 2011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반영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향후 정비 사항

현행 「국어기본법」 제3조 제1호(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는 국어의 정의라기보다는 국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정의 규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조문화하는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언어 순화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공언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하고, 외래어, 외국어의 오용·남용, 규범에 맞지 않는 인터넷 통신 언어의 사용 확산 등 국어 환경의 악화에 따른 국어 순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어 순화에 관한 사항 역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국어기본법」 제8조에서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에 맞추어 5년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는 국어심의회를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관계 부처 위원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어 관련 정책 실현의 현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는 국어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사항을 대통령령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어심의회 탄력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 현행 「국어기본법」 제4장(국어능력의 향상)은 조문 수가 3개에 불과하므로 국어능력의 향상에 관한 입법 사항을 추가로 발굴, 조문의 수를 늘려 다른 장과의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4 절 국어·한글 사용 관련 법령 정비 사항 및 정비안

1. 정비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등 다수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국어 또는 한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국어 또는 한글 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국어기본법」의 정의 조항상의 어문규범을 인용하고 있거나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어문규범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어 또는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 중에는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국어 또는 한글 사용과 관련하여 모든 경우에 「국어기본법」상의 어문규범에 따라 국어 또는 한글을 사용할 것을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국어 또는 한글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국어기본법」상의 어문규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어 또는 한글 사용이나 표기 등의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정비안²²⁷⁾

(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 5 조(도로명의 부여· 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7	제 5 조(도로명의 부여· 변경의 세부기준) (현행과	

227) 정비안의 인용 법률의 조·항 번호는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른다.

현 행	개정안	비 고
<p>조제9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경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생 략)</p> <p>4.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아라비아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p> <p>5.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되,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u></p> <p>6. (생 략)</p>	<p>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p> <p>6. (현행과 같음.)</p>	

(2) 도로표지규칙

도로표지규칙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 5 조(글자의 표기) ① 삭제 <2005.12.30></p> <p>②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p>	<p>제 5 조(글자의 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p> <p><신 설></p> <p>③ 고유명사의 영문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의하고, 보통명사에 대한 영문표기 및 약어의 표기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p>	<p>③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한글은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규범에 따라 표기한다.(or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한글은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p> <p>④ 고유명사의 영문표기는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 ----- ----- -----.</p>	

현 행	개정안	비 고
<p>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p> <p>②~④ (생 략)</p>	<p>----- ----- ----- ----- ----- ----- ----- ----- ----- -----</p> <p>②~④ (현행과 같음.)</p>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26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생 략)</p> <p>②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p> <p>2.~5. (생 략)</p>	<p>제26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규범에 ----- -----</p> <p>2.~5. (현행과 같음.)</p>	

제 5 장 국어기본법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 방안

제 1 절 국어기본법 시행령 정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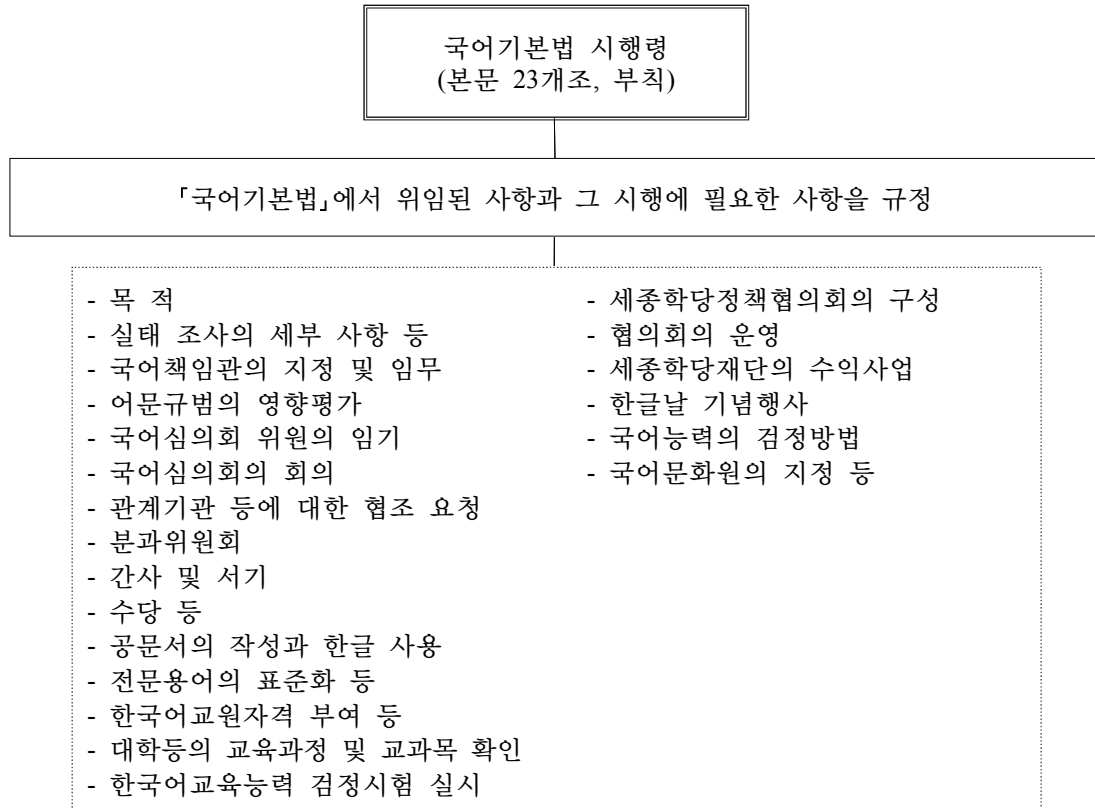
1. 연 혁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2005년 7월 27일 대통령령 제18973호로 제정된 이후 세 차례의 타법 개정과 네 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대통령령 제24053호, 2012. 8. 22., 일부개정, 2012. 8. 24. 시행)에 이르고 있다.

2.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총 2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구성 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구성 체계 >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별 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별 조문의 주요 내용>

분 류	조 항	주요 내용
• 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제2조	- 「국어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의 세부사항을 정함. -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3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4조	- 어문규범 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어문규범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대학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제5조	-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함.
	제6조	- 국어심의회의 회의 소집, 의결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제11조	- 공문서 작성 시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를 정함.
•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제12조	-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종행정기관에 두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제13조	-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의 자격 등급 및 기준 등을 정함.
• 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제13조의2	-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등의 영역별 과목, 필수 이수학점 등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제14조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분 류	조 항	주요 내용
•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제14조의2	-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 국어능력의 검정방법	제18조	- 국어능력 검정 분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 국어문화원의 지정	제19조	- 국어문화원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3. 정비안

「국어기본법」 정비안을 반영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정비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인용 법률의 조·항 번호는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른다).²²⁸⁾

□ 목차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제2조 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 일부 수정
제3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3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일부 수정
제4조 어문규범의 영향 평가	제4조 어문규범의 영향 평가	* 일부 수정
제5조 국어심의회 위원 임기	제5조 국어심의회 위원 임기	
제6조 국어심의회 회의	제6조 국어심의회 회의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 분과위원회	제8조 분과위원회	* 일부 수정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 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228)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록 10 참조.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11조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제11조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제12조 <u>전문용어의 표준화 등</u>	제12조 <u>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설치·구성 등</u>	* 조명 및 내용 일부 수정
제13조 <u>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u>	제13조 <u>한국어교원 자격 구분</u>	* 조명 변경, 내용 일부 수정 및 조 분리
<신 설>	제14조 <u>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단체</u>	
<신 설>	제15조 <u>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u>	
<신 설>	제16조 <u>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방법 등</u>	
제13조의2 <u>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u>	제17조 <u>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u>	
제14조 <u>한국어교육능력 검정 시험 실시</u>	제18조 <u>한국어교육능력 검정 시험 실시</u>	* 일부 수정
제14조의2 <u>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u>	제19조 <u>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u>	
제14조의3 <u>협의회의 운영</u>	제20조 <u>협의회의 운영</u>	
제14조의4 <u>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u>	제21조 <u>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u>	
제15조 <u>한글날 기념행사</u>	제22조 <u>한글날 기념행사</u>	
제16조 <u>삭 제</u>	<삭 제>	
제17조 <u>삭 제</u>	<삭 제>	
제18조 <u>국어능력의 검정방법</u>	제23조 <u>국어능력의 검정방법</u>	* 일부 수정
제19조 <u>국어문화원의 지정 등</u>	제24조 <u>국어문화원의 지정 등</u>	* 일부 수정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신규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 1 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민의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나. 국민의 경어·외래 	<p>제 1 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 2 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 ----- ----- 따른 ----- ----- -----.</p> <p>1.~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p> <p>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 실태라. 가요·영화·광고·상호 및 상표 등의 언어 사용 실태</p> <p>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u></p> <p>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u></p> <p>제 3 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p>	<p>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3 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 ----- ----- -----</p>	<p>* 제2항 후단은 법률화함.</p>

현행	개정안	비고
<p>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p>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p>	<p>-----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홍보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 국어책임관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시·도지사”라 한다)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u>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u> 은 시·도지사에게 소 속 국어책임관이 추진 한 국어의 발전 및 보 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 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 하여야 한다.</p>	<p>----- ----- <u>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u> ----- ----- ----- ----- ----- ----- ----- -----.</p>	<p>* 이하에서 구청장이 다시 언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하 같다’를 삭제함.</p>
<p>제 4 조(어문규범의 영향 평가) ① 법 제12조제2항 에 따른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p> <p>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 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 어문규범의 필요 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나. 어문규범으로 인 한 국민의 국어 사 용의 변화 정도</p> <p>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p>	<p>제 4 조(어문규범 영향평 가) ① ----- ----- <u>어문규범</u> <u>영향평가는 ----- 어</u> <u>는 하나 이상의 사항</u> -----.</p> <p>1.·2. (현행과 같음.)</p>	<p>* 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제1항), 평가대상규범 (제3항)을 조사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 록 융통성을 부여함.</p>

현행	개정안	비고
<p>수용도</p> <p>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나이·성(性)·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p>	<p>② ----- ----- 어문규범 영향평가----- ----- ----- 균형 있게 ----- -----.</p> <p><삭제></p> <p>③ 제1항의 어문규범 영향평가는 평가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변경 전후의 어문규범 모두를 평가할 수도 있고, 변경 후의 어문규범만이나 변경 전의 어문규범만을 평가할 수도 있다.</p> <p>④ ----- -----어문규범 영향평가-----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p>	<p>*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의 조명이 ‘학교의 종류’로 되어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교체함.</p> <p>※ 「고등교육법」 제2조</p>

현 행	개정안	비 고
<p>하 “대학”이라 한다)으 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 5 조(국어심의회 위원 의 임기) 법 제13조제1 항에 따른 국어심의회 (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 6 조(국어심의회의 회의) ① 국어심의회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開議)하고, 출 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p>	<p>하 “대학”이라 한다) ----- -----.</p> <p>제 5 조(국어심의회 위원 의 임기) (현행과 같음.)</p> <p>제 6 조(국어심의회의 회의) (현행과 같음.)</p>	<p>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 이버대학(이하 “원격 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현행	개정안	비고
<p>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p> <p>제 7 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 8 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언어정책분과위원회</p> <p>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p> <p>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p> <p>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p> <p>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p> <p>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제 7 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현행과 같음.)</p> <p>제 8 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字形)·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u>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u></p> <p>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u>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 1개 분과위원회의</p>	<p>2.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p> <p>바. <u>어문규범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u></p> <p>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u>전문용어</u>----- ----- ②~⑤ (현행과 같음.)</p>	<p>* ‘국어순화’라는 용어는 「국어기본법」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를 정의하거나 풀어서 써 줄 필요가 있음.</p> <p>* 「국어기본법」에서 전문용어 표준화로 칭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함.</p>

현행	개정안	비고
<p>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p> <p>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p>
<p>제 9 조(간사 및 서기) ① 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p> <p>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p>	<p>제 9 조(간사 및 서기) (현행과 같음.)</p>	<p>* 분과위원회에 두는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p>
<p>제10조(수당 등) 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p>	<p>제10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p>제 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현행과 같음.)</p>	<p>* 제11조 제2호에서는 ‘전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문용어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함(학자에 따라서는 전문어와 전문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므로 전문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p>
<p>제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p>	<p>제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협의회 설치·구성 등)</p> <p>① <u>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 관계 분야 전문가</u></p>	<p>*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정리함.</p> <p>* 제1항을 설치/ 구성·운영으로 구분하여 2개의 조항으로 분리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u>고시</u>하여야 한다.</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u>고시</u>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p>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p> <p>③ ----- ----- ----- <u>전문용어 및 관련 학술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를</u> ----- ----- ----- -----.</p> <p>④ ----- <u>제3항</u>----- ----- ----- ----- ----- <u>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u> 한다.</p> <p>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u>공고나 고시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린</u> ----- ----- -----</p>	<p>*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중앙 부처에서 요청한 소관 전문용어를 심의할 경우에는, 해당 중앙 부처의 협조를 받아 그 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국어심의회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p> <p>* 전문용어는 관련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잦은 변경의 필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안을 고시하는 부담을 주기 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제도 운영상 더 바람직할 것임.</p> <p>* 개정안 ④, ⑤의 조문 내에 인용된 제2항과 제3항을 변경된 조항 번호에 맞추어, 제3항과 제4항으로 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⑤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u></p> <p>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u>재외동포나 외국인</u>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한국어교원 1급</p> <p>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p>	<p>----- ----- -----</p> <p><u><삭 제></u></p> <p>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구분) ① ----- ----- <u>재외동포, 외국인,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u>----- ----- -----</p> <p>1.~3.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p>	<p>* 제13조는 조문이 길고 하나의 조항에서 이질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어교원 자격 구분/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단체/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위원회의 설치 등/ 한국어교원 자격신청 방법·절차로 구분하여 분조(分條)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2. 한국어교원 2급</p> <p>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p> <p>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 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p>		

현 행	개정안	비 고
<p>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 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p>		

현 행	개정안	비 고
<p>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 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 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p> <p>3. 한국어교원 3급</p> <p>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사람일 것</p> <p>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 간을 충족하는 한 국어교원 양성과정 을 이수한 후 제14조 에 따른 한국어교 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p> <p>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 한 사람으로서 외 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전 공 또는 복수전공 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 에 속한 과목과 같 은 표 제5호에 따 른 영역에 속한 과 목을 합산하여 10 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 위를 취득한 사람</p> <p>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p>		

현 행	개정안	비 고
<p>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교육 분야를 전 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 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 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 상의 학위를 취득 한 사람</p> <p>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 목과 같은 표 제5호 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 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 른 영역에 속한 과목 을 2학점 이상 이수</p>		

현 행	개정안	비 고
<p>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p> <p>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 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p>		

현행	개정안	비고
<p><u><신설></u></p> <p>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p>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 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단체) (현행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p> <p>1.~4. (현행 제1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 현재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결부된 [별표 1] 표하단 ‘※’에서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 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국어기본법 시행령」 차원에서 규정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p> <p>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p> <p>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및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p> <p>6. (현행 제13조 제2항 제6호와 같음.)</p> <p>제15조(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p> <p>① 제13조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p>	<p>* 법률 → 시행령 순으로 인용 순서를 정리함.</p> <p>* 위원회는 장관이 두는 것이 아니라 기관 또는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임.</p> <p>* 제2항 제6호에서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p>

현행	개정안	비고
<p>④ <u>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⑤ <u>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서 발급한다.</u></p> <p>⑥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u></p>	<p><u>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u></p> <p>제16조(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방법 등) ① <u>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② <u>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나 그 밖에 ----- ----- ----- .</u></p>	<p>에 관한 사항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이라는 단어를 추가함.</p> <p>* 자격 신청이 있으면 별도의 자격증 교부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자격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만을 위해서 자격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일 것임).</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p> <p>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육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 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가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현행 제13조의2와 같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p>⑥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p> <p>⑦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p> <p>⑧ 한국어교육능력 검</p>		<p>*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면서 이들 조항도 법률화할 필요가 있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u>환불, 그 밖에</u>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4조의2(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① 법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관,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p>	<p>⑨ ----- ----- <u>환불이나 그 밖에</u> --- ----- ----- ----- -----.</p> <p>제19조(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현행 제14조의2와 같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2.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p> <p>3. 한국어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p> <p>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된다.</p>		
<p>제14조의3(협회의의 운영)</p> <p>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p>	<p>제20조(협회의의 운영) (현행 제14조의3과 같음.)</p>	
<p>제14조의4(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이 법 제19</p>	<p>제21조(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현행 제14조의4와 같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조의2제8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수익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p> <p>①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표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p>	<p>제22조(한글날 기념행사)</p> <p>(현행 제15조와 같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16조 삭제</p>	<p><u><삭 제></u></p>	
<p>제17조 삭제</p>	<p><u><삭 제></u></p>	
<p>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그 밖에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p>제23조(국어능력 검정시험 업무의 위탁 등) <u><삭 제></u></p> <p>①·② (현행 제18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제1항을 법률화 하였으므로 삭제하고, 조명을 변경함. * 법률상 위임 사항은 검정 방법 외에 절차, 내용, 시기도 포함되므로 이들을 추가로 대통령령에 규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비고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어능력 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지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p> <p>가. 상근 책임자 1명: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p>	<p>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 ----- ----- <u>기관이나 단체는</u> ----- ----- -----.</p> <p>1.·2. (현행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p>* 종전의 시행령에서는 기관이 아닌 ‘자’로 명시하고 있었는데, 개정 시행령에서 ‘기관’으로 수정함. 그런데 「국어기본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기관뿐 아니라 ‘단체’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기관’으로 표기할 경우 단체는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관이나 단체’로 표현을 수정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p> <p>나. 상근 상담원 2명 이상: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p> <p>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p> <p>② 국어문화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 <u>기관이나 단체는</u> ---- ----- ----- ----- ----- -----.</p>	

현 행	개정안	비 고
<p>1.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p> <p>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적은 서류</p> <p>③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상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u>통보</u>하여야 한다.</p>	<p>1. 2. (현행 제19조 제21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p>③ ----- ----- ----- ----- <u>제출</u> -----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실적의 경우는 통보라는 용어보다는 ‘제출’이라는 용어가 더 자연스러움.</p>

4. 향후 정비 사항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어심의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어심의회의 분과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하고, 같은 이유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어교육능력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응시 수수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 정비 방안

1. 연 혁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은 1995년 12월 23일 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1998년 7월 28일에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문화관광부훈령 제28호), 2009년 10월 11일에 전부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1호).

2. 주요 내용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은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은 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분과별 당연직 위원의 위촉, 위원 결원 보충 및 임기, 전문소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 선출, 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의 기능, 회의의 소집 및 진행, 회의의 의결 방법, 회의록 및 검토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구, 전문가에 대한 자료의 의뢰, 분과위원회 의결의 효력 및 범위, 간사 및 서기의 지명, 그 임무,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주요 정비 사항 및 정비안

(1) 주요 정비 사항

1) 당연직 위원 제도

국어기본법령에서는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 제3조에서는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법령에 반하는 문제가 있고,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 제3조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직위나 직책상 당연히 그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갖는 ‘당연직 위원’의 특성상 관련 분야 전문가 그 자체는 당연직이 될 수 없다.

2) 위임장 제출 제도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 제8조 제4항에서는 모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되, 다만,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임장을 제출한다는 의미는 의결에 관한 사항을 수임자에게 맡기는 것인데,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만 인정하고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같은 규칙 제8조에서는 모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9조에서는 심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회의의 의결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인지가 미비되는 문제가 있다. 같은 규칙에서 심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모든 회의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분과위원회 의결 효력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심의회 운영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사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서 국어심의회(전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한 것을 행정규칙인 훈령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인바, 이 조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국어심의회(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더라도 그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법령에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취지는 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어심의회에 올려 심의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종결처리하도록 하려면 국어심의회(전체회의)의 위임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입법기술적으로는 국어기본법 제13조 제5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화할 수 있다.

- “국어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어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어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2) 정비안²²⁹⁾

□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제1조 목적에서는 법령명 등을 약칭하지 않음.</p>
<p>제 2 조(위촉 및 해촉절차)</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2 조(위원의 위촉 등)</p> <p>① -----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국어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촉한 경우 -----.</p>	

229)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 개정안은 부록 11 참조.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② <u>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취한다.</u></p> <p>1. 임기가 만료된 때</p> <p>2. 사망 등으로 법적자격을 상실한 때</p> <p>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p>	<p>②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u></p> <p>----- 인하여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 거친다.</u></p> <p>1. ----- 만료되었을 때</p> <p>2. 사망하였을 때</p> <p>3. ----- 사임하였을 때</p>	<p>* 해촉 사유는 위원 <u>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령화할 필요가 있음.</u></p> <p>* 현재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은데, 실제 위원회 운영상 해촉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2항 단서 조항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p> <p>*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조문화할 수도 있을 것임.</p> <p>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u></p>
<p><u>제 3 조(분과별 당연직 위원 의 위촉)</u>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8조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심의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u>외국어·정책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기관, 단체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u></p>	<p><u><삭 제></u></p>	<p>* 국어기본법령에서는 당연직 위원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 제3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법령에 반하는 문제가 있고,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 제3조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p>

현 행	개정안	비 고
<p><u>할 수 있다.</u></p> <p>제 4 조(위원 결원 보충 및 그 임기)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p> <p>제 5 조(전문 소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영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u>필요한</u></p>	<p>제 3 조(위원의 결원 보충 및 임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 4 조(전문 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 ----- 위원 일부로 전문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u>둘 수 있다.</u></p>	<p>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직위나 직책상 당연히 그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갖는 ‘당연직 위원’의 특성상 관련 분야 전문가 그 자체는 당연직이 될 수 없음.</p> <p>* 새로 위촉된 위원(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령화할 필요가 있음.</p> <p>* 전문 소위원회도 위원회의 일부분이고 따라서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인데 관련 전문가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전문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임.</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수만큼 들 수 있다.</p> <p>② <u>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소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u></p>	<p>② <u>소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소위원회와 합동으로 소위원회(이하 “합동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u></p>	<p>* “~ 들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더라도 ‘필요한 수만큼’ 들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p>
<p>제 6 조(위원장 등 선출) <u><신 설></u></p> <p>각 소위원회의 <u>위원장</u>이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u>합동전문소위원회(이하 “합동소위원회”라 한다)</u>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u>위원장</u>과 부위원장 <u>중</u>에 각각 호선한다.</p>	<p>제 5 조(위원장 등 선출)</p> <p>① <u>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u></p> <p>② ----- 위원장과 ----- ----- ----- ----- ----- ----- ----- <u>중</u>에서 -----.</p>	<p>*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에 앞서 이들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p>
<p>제 7 조(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의 기능) ① 필요할 시 소위원회 또는 합동소위원회는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발굴하거나 <u>토론, 사전 검토, 정리하는 등의</u></p>	<p>제 6 조(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의 업무 등)</p> <p>① ----- 때 ----- ----- ----- ----- ----- <u>이를 사전 검토하는</u> -----</p>	<p>* 토론이나 정리는 이 고시에서 업무로 정하지 않더라도 안전발굴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임.</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업무를 한다.</p> <p>② 소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검토 등을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의하여 상정할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 1인이 심의회나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결과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여야 한다.</p>	<p>-----.</p> <p><삭 제></p> <p>② 소위원회 또는 합동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심의 안건을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하려면 소위원회 또는 합동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1명이 심의회나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의 상정 이유 및 검토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p>	<p>* 소위원회가 기초 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은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어심의회 기능의 벗어난 것임.</p>
<p>제 8 조(회의의 소집 및 진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분과 내 합동소위원회, 분과 간 합동소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p>	<p>제 7 조(회의의 소집 등)</p> <p>① -----</p> <p>-----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내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내 합동소위원회, 분과위원회 간 합동소위원회 등의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분과위원회 위원장</p>	<p>* 제1항의 조문의 양이 많아 제1항을 2개의 항으로 분리함.</p> <p>분과위원회 내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내 합동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안	비 고
<p>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심의회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p> <p>③ 회의를 소집하는 소집권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개최시기, 개최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집통지서를 위원들에게 발송한다. 다만, 위급한 사유가 있을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장의 동의</p>	<p>은 해당 분과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내 합동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 합동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내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내 합동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삭 제></p> <p>③ ----- ----- ----- ----- ----- ----- ----- ----- ----- -----</p>	<p>* 심의회 전체회의(‘전원회의’는 제13조 제1항의 1호, 2호에서는 ‘전체회의’로 표현하고 있어 명칭 통일이 필요함.)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는 것보다 필요시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를 <u>언어 회의 소집 통</u> <u>보 기간을 단축할 수</u> <u>있다.</u></p> <p>④ 모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한다. 다만, 회 의 시작 전에 위원장에 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 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p> <p>⑤ 모든 회의는 위원장 이 진행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며, 부 위원장이 없거나 대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 으로 대행한다.</p>	<p>----- 받아 ----- ----- 있고 소집 통지서 대신 유선, 전자우편 등의 다른 방법으로 소집 통 보를 할 수 있다.</p> <p>④ ----- ----- -----, 위 원이 회의를 시작하기 --- ----- -----.</p> <p>⑤ 회의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진행하며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 원장이 없거나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서 로 대행한다.</p>	<p>* 모든 회의마다 소집통 지서를 발송하도록 의무 화할 필요는 없을 것임.</p>
<p>제 9 조(회의의 의결) ① <u>심의회 의결권은 대</u> <u>리하여 행사하지 못하</u> <u>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u> <u>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② 심의회 의결 사항 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이</p>	<p>제 8 조(회의의 의결 등) ① <u>심의회 회의는 출</u> <u>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u> <u>으로 의결한다.</u></p> <p>② 위원장은 심의회 의 결 사항과 특별한 이 해관계가 있는 위원의</p>	<p>*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의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야 할 것인데, 제9조 제1항에서 의결권을</p>

현 행	개정안	비 고
<p>판단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p> <p>제10조(회의록 및 검토 의견서 작성) ① 소위원회, 합동소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검토 의견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공개하기에 부적당할 경우 회의 참석자의 의결을 거쳐 공개</p>	<p>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 9 조(회의록 작성 등)</p> <p>①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 ----- 제3호 서식의 심의회(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 <p>② ----- ----- ----- 별지 제4호서식----- ----- ----- -----.</p> <p><삭 제></p>	<p>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p> <p>* 이 조에서는 검토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명을 수정함.</p> <p>* 별지 제4호서식의 명칭은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임. 본 문과 서식의 명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p> <p>*현행 제10조 제3항에 따른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심의위원에게 일일이 의향을 물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절차</p>

현행	개정안	비고
<p><u>하지 않을 수 있다.</u></p> <p>제11조(협조 요구) ① 심의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소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영 제8조의 <u>심의 사항</u>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에 심의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p> <p><u>② 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에 필요한 조사, 연구,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할 수 있다.</u></p> <p><u><신설></u></p>	<p>제10조(자료 제출·설명의 요구 등) ① -----</p> <p>-----</p> <p>----- <u>심의 사항</u>-----</p> <p>-----</p> <p>-----</p> <p>-----</p> <p>-----</p> <p>-----</p> <p>-----</p> <p>-----</p> <p>-----</p> <p><u><삭제></u></p> <p><u>② 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u></p>	<p>상의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함. 회의록 공개 건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 신청 시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면 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12조(전문가에게 의뢰) <u>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의뢰할 수 있다.</u></p> <p>제13조(분과위원회 의결 효력 및 범위) ① 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심의회 운영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사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 분과위원회에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분과 간 상호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부치기로 의결한 경우</p> <p>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이</p>	<p><u>등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삭 제></p> <p><삭 제></p>	<p>* 개정안 제10조에 포함하여 규정함.</p> <p>* 운영세칙 제13조는 법령에서 국어심의회(전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한 것을 행정규칙인 훈령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인바, 그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게 됨. 만일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심의를 종결할 필요가 있으면 국어심의회의 위임에 따르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국어기본법 개정안 제1안 제13조 제5항, 제2안 제10조 제5항에 그 내용을 반영함.)</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전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보류하는 경우</p> <p>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지체 없이 회의 결과를 심의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회 위원장은 전체 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제14조(간사 및 서기 지명)</p> <p>① 영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p> <p>② 영 제9조에 따라 언어정책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어문규범분과위원회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국어순화분과위원회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p>	<p>제11조(간사 및 서기의 지명)</p> <p>① 영 제9조에 따라 심의회의 간사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이 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p> <p>② ----- ----- ----- ----- ----- ----- ----- ----- ----- 공공언어지원단장이 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자를 지명할 수 있다.</p> <p>③ 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 간사는 <u>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u></p> <p>④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중에서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u></p> <p>제15조(간사 및 서기 임무)</p> <p>① 영 제9조에 따른 간사는 <u>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 안건의 작성, 상정 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보관 및 회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u></p> <p>② 영 제9조에 따른 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 준비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회 회의록 작성 등을 수행한다.</p> <p>[서식 1] 위촉장 [서식 2] 국어심의회의 소집</p>	<p>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p> <p>③ ----- 위원회 간사는 <u>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중에서 국어심의회의 운영 담당자가 된다.</u></p> <p>④ <u>심의회</u> ----- ----- ----- --- <u>국어심의회의 운영 담당자가 된다.</u></p> <p>제12조(간사 및 서기 임무)</p> <p>① ----- ----- <u>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u></p> <p>② ----- ----- ----- <u>개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u></p> <p>[서식 1] 위촉장 [서식 2] 국어심의회의 소집</p>	<p>* 위원회 간사는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맡음.</p>

현 행	개정안	비 고
<p>통지서</p> <p>[서식 3] 심의회(분과위원회) 회의록</p> <p>[서식 4]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p>	<p>통지서</p> <p>[서식 3] 심의회(분과위원회) 회의록</p> <p>[서식 4]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p>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헌화, 전문용어 표준화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1.
- 국립국어원, 전문 용어 연구, 태학사, 2007.
- 국립국어원, 2007 세종학당백서, 국립국어원, 2007. 10.
- 국립국어원, 2010,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국립국어원, 2010. 9.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7. 11.
- 권재욱,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의 통합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성배, 미국의 쉬운 영어 사용 및 전문용어 표준화 관련 정책 및 법제, 「국어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법 체계 정비 방안 연구」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12. 10. 19.
- 김용규, 미국 교육격차해소법(NCLB)의 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8.
- 김진수, 프랑스의 언어정책,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 김현권, 프랑스의 모국어 보호 정책과 법제, 새국어생활 제13권 제2호, 국립국어원, 2003.
- 노윤환, 재외동포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실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
- 맹주익, 국제화와 중국의 언어변화, 아시아문화 제17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8.
- 문화관광부, 국어 기본법 제정안 설명 자료, 문화관광부, 2003. 5.

- 문화체육관광부, '09~'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1.
-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2. 5.
-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세종학당 운영길잡이,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2007. 문화체육관광부·관계부처 합동,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2~2016), 문화체육관광부·관계부처 합동, 2012. 1. 17.
- 민현식 외, 공고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2010. 11. 30.
-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0. 31.
- 배수옥, 프랑스의 외국인을 위한 자국어 보급 정책, 교육정책 포럼 제177권,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8. 8.
- 송기형, 프랑스어사용법과 유럽연합, 프랑스학연구 제43권, 프랑스학회, 2008.
- 송기형, 프랑스어사용법 시행의 성과와 문제점 - 유럽연합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 프랑스학연구 제25권, 프랑스학회, 2003.
- 심을식, 프랑스의 언어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 제38집, 한국프랑스학회, 2002.
- 염철현, 미국의 이중언어교육법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비교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08.
- 염철현, 미국 초·중등교육개혁법 고찰 - 'No Child Left Behind Act'를 중심으로, 비교교육법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05.
- 오영인, 미국 이중언어 교육정책과 이민자들: 1968년 이중언어 교육법과 1970년대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35권, 한국미국사학회, 2012. 5.
- 이세정 외,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법제연구원, 2010.
- 이재영, EU연구 제1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06.

- 임영철, 일본의 국어정책과 일본어교육, 국어교육연구 제28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1.
- 장후석 외,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국립국어원, 2010, 5. 31.
- 전학선, 프랑스 알리앙스 프랑세즈 관련법제 및 운영현황, 외국의 자국어 보급 기관 관련법제 및 운영현황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0. 8. 23.
- 전 훈, 프랑스의 공공언어 개선 및 전문용어 표준화 관련 정책 및 법제, 「국어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법 체계 정비 방안 연구」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12. 10. 19.
- 정윤철, 중국의 중국어 국제화 전략 추진 과정과 의미에 관하여, 중국연구 제 47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9.
- 정희원·위진,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 새국어생활 제21권 제4호, 국립국어원, 2011.
- 최용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세종학당 운영 방향, 문법 교육 제6호, 한국문법교육학회, 2007. 6.
-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0.

외국 문헌

- 文部科學省, 教育白書, 2010.
- 文部科學省 初等中等教育局長決定, 日本語指導が必要な児童生徒を対象とした指導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議の設置について, 平成24年4月11日.
- 文化廳, 平成24年度「生活者としての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教育事業 地域日本語教育実践プログラムの採択について, 平成24年6月26日.
- 総務省, 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推進に向けて~, 總務省, 2006年3月.
- 教育部, 國家教育事業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 2012年6月.

楊秀華：深化時期的對外漢語教育政策與課程設置研究，長江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6)

張永麗：淺談我國對外漢語教學，華商，2008(04).

G. Stewner-Manzanares, The Billigual Education Act: Twenty Years Later. the
national clearinghouse for bilingual education(ncbe). Fall(No. 6), 1988.

Wiese, Ann-Marie and Garcia, Eugene E, The Bilingual Education Act: Language
Minority Students and US Federal Educational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Vol. 4(4), 2000.

Professionl Association of Georgia Educators, Biligual Educaion. Issue Brief,
Vol. 8(1), 2006.

R. Stober, Allg.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6. Aufl. Stuttgart 2008.

인터넷 자료

[Http://www.afcoree.co.kr/index.php?idobjct=2.](http://www.afcoree.co.kr/index.php?idobjct=2)

[Http://www.archives.gov/federal-register/executive-orders/pdf/12866.pdf.](http://www.archives.gov/federal-register/executive-orders/pdf/12866.pdf)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kyouiku/seikatsusya/index.html.](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kyouiku/seikatsusya/index.html)

[Http://www.culture.gouv.fr/culture/dgIf/rapport/2002/Rapport_au_parlement_2002.](http://www.culture.gouv.fr/culture/dgIf/rapport/2002/Rapport_au_parlement_2002)

[Http://www.edu.cn/dong_tai_421/20120228/t20120228_745546.shtml.](http://www.edu.cn/dong_tai_421/20120228/t20120228_745546.shtml)

[Http://www.edu.cn/20050721/3144266.shtml.](http://www.edu.cn/20050721/3144266.shtml)

[Https://www.erin.ne.jp/jp/.](https://www.erin.ne.jp/jp/)

[Http://www.jpfi.go.jp/j/about/outline/result/ar/2008/img/ar2008-01-01.pdf.](http://www.jpfi.go.jp/j/about/outline/result/ar/2008/img/ar2008-01-01.pdf)

[Http://www.jfstandard.jp/top/ja/render.do.](http://www.jfstandard.jp/top/ja/render.do)

[Http://www.europelibre.com/CL2002/CL020730.htm.](http://www.europelibre.com/CL2002/CL020730.htm)

[Http://www.gpo.gov/fdsys/pkg/FR-2011-01-21/pdf/2011-1385.pdf.](http://www.gpo.gov/fdsys/pkg/FR-2011-01-21/pdf/2011-1385.pdf)

[Http://www.jpf.go.jp/j/about/index.html](http://www.jpf.go.jp/j/about/index.html).

[Http://www.jpf.go.jp/j/about/outline/result/ar/2008/img/ar2008-01-01.pdf](http://www.jpf.go.jp/j/about/outline/result/ar/2008/img/ar2008-01-01.pdf).

[Http://www.korean.go.kr/09_new/about/business_2007.jsp](http://www.korean.go.kr/09_new/about/business_2007.jsp).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852/200506/8590.html](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852/200506/8590.html).

[Http://www.mofa.go.jp/mofaj/gaiko/culture/koryu/edu/index.html](http://www.mofa.go.jp/mofaj/gaiko/culture/koryu/edu/index.html).

[Http://news.xinhuanet.com/overseas/2009-12/08/content_12610570.htm](http://news.xinhuanet.com/overseas/2009-12/08/content_12610570.htm).

[Http://www.ninjal.ac.jp/info/aboutus](http://www.ninjal.ac.jp/info/aboutus).

[Http://www.plainlanguage.gov/howto/guidelines/FederalPLGuidelines/index.cfm?CFID=9858358&CFTOKEN=c28e1e0084247f71-6D73A648-1372-4132-8D1119A287299534&jsessionid=bc308c4fabb1f28546967983951515d50431](http://www.plainlanguage.gov/howto/guidelines/FederalPLGuidelines/index.cfm?CFID=9858358&CFTOKEN=c28e1e0084247f71-6D73A648-1372-4132-8D1119A287299534&jsessionid=bc308c4fabb1f28546967983951515d50431).

[Http://www.whitehouse.gov/omb/assets/memoranda_2010/m10-06.pdf](http://www.whitehouse.gov/omb/assets/memoranda_2010/m10-06.pdf).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memoranda_2010/m10-22.pdf](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memoranda_2010/m10-22.pdf).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memoranda_2010/m10-23.pdf](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memoranda_2010/m10-23.pdf).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inforeg/disclosure_principles.pdf](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inforeg/disclosure_principles.pdf).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inforeg/PRA_Gen_ICRs_5-28-2010.pdf](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inforeg/PRA_Gen_ICRs_5-28-2010.pdf).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inforeg/SocialMediaGuidance_04072010.pdf](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inforeg/SocialMediaGuidance_04072010.pdf).

부 록

【부 록 1】

‘국어’·‘한글’ 사용에 관한 현행 법령 입법례

(2012.8.1)

■ 국어 사용에 관한 현행 법령 입법례

● 법령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 조의3(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직접 또는 통역·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 법령명 : 「공증인법」

제26조(사용 언어)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併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법령명 : 「국적법」

제 5 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인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법령명 : 「국적법 시행규칙」

- 제 4 조(귀화적격 심사) ①** 영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의 배우자1명
 2. 미성년자
 3. 만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② 필기시험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되,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 이상 20문항 이하를 출제한다.
- ③ 영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 법령명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2조(공조의 요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범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3. 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
4. 송달촉탁은 송달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5. 증거조사촉탁은 소송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또는 주소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6.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
7.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수탁사항의 실시예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보증할 것

• 법령명 : 「군사법원법」

- 제222조(통역)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제224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 법령명 : 「군사법원사무규칙」

- 제 8 조(번역문 첨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 중 국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한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 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 법령명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2조(접견)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3.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견을 하

는 준수용자와 준수용자가 아닌 사람은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준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준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준수용자의 구분에 따른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접견 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접견기록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구술심리의 방법)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법령명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 5 조(도로명의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7조제9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경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만으로 도로의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대로와 로(路)에는 방위 등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고, 길에는 숫자나 방위 등을 사용한 다음 각 목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 가.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 나. 일련번호방식 도로명
 - 다. 복합명사방식 도로명(길의 시작지점과 연결된 도로명에 고유명사와 “길”을 합한 도로명을 말한다)
2.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도로명으로 한다.
3. 도로명을 부여할 때 지명, 마을이름, 역사적 인물의 이름,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이름, 도로의 위치와 기능 및 시·군·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의 이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4.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아라비아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
5.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되,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6. 영 제6조제1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안내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가. 대로(大路): Blvd

나. 로(路): St

다. 길(街): Rd

● 법령명 : 「도로표지규칙」

제 5 조(글자의 표기) ① 삭제

②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③ 고유명사의 영문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의하고, 보통명사에 대한 영문표기 및 약어의 표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법령명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 중의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 **법령명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 1 조의8(서류의 사용어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위임장·국적증명서·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 중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2 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제27조의2,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건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 4의2. 제출한 도면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요령 제7호바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7호사목부터 자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요령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9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0호바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기간, 법 제67조의2 또는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

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포괄위임등록철회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를 준용한다),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준용한다),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를 준용한다)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1.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 11의2. 제1조의5를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11의3. 제1조의7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조의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3.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4. 당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반려요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 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10조(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우선권증명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국어**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의8(구술심리) ① 법 제72조의18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법령명 : 「민사소송규칙」**

제106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① 재판장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을 붙일 수 있다.

제109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2. 이미 제출된 증거와 같거나 비슷한 취지의 문서로서 별도의 증거가치가 있음을 당사자가 밝히지 못한 때
3.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번역문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4.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증거설명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5. 문서의 작성자 또는 그 작성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밝히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법령명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서류의 사용어) ① 배치설계권이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적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가 외국어로 적힌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법령명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 9 조(번역문첨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중 **국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할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 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 **법령명 : 「법원조직법」**

제62조(법정의 용어)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소송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 **법령명 : 「상표법」**

제 9 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상표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 3의2. 상표등록출원서에 시각적 표현을 적지 아니한 경우(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표장만 해당한다)
- 4. 지정상품의 기재가 없는 경우
- 5.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부적합한 출원으로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법령명 : 「국적법」**

- 제 5 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인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3. 품행이 단정할 것
 -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법령명 : 「수표법」**

- 제 1 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 3. 지급인의 명칭
- 4. 지급지(支給地)
- 5.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 6.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 법령명 : 「실용신안법」

제 5 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인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4 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 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개된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경우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은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외국

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본다.

1.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 번역문)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

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 (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때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그 국어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 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그 기간 이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내에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번역문(이하 “출원번역문”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의 출원서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서로 본다.

⑥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의 출원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로 본다.

⑦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6조(도면의 제출)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국어**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 이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 및 도면의 **국어** 번역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특허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밟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가 아니거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할 때에는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조약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조약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내지 제8항, 제38조, 제3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00조, 제202조제1항·제2항 및 제20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중 “특허출원일”은 “제35조제1항의 우선일”로 한다.

● **법령명 : 「어음법」**

제 1 조(어음의 요건) 환어음(환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

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8.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證券)의 본문(本文) 중에 그 증권(證券)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법령명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등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

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법령명 : 「외국법자문사법」**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주·성·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병기할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방식 외의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및 그 원자격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과 외국법사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그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 **법령명 : 「재외공관 공증법」**

제12조(사용 언어) 공정증서는 **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주재국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제15조(통역인) 영사관은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 법령명 : 「중자산업법 시행규칙」

제63조(구두심리의 방법) 구두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법령명 : 「출입국관리법」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訊問)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문을 할 때에는 용의자가 한 진술은 조서(調書)에 적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서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야 하고,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추가·삭제 또는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⑤ 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⑥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은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용의자의 진술 중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가 있으면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 법령명 : 「특허법 시행규칙」

제 4 조(서류의 사용어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2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장·국적증명서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를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의 제출시에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 42조·제90조·제92조의3·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5의2.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 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16.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
 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 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르되, 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의 제출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란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중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65조(구술심리) ①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법 제193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를 말한다.

제106조의11(국제조사의 대상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조약규칙 43bis.1의 규정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특허청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청장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 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국제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
 - 나. 단순히 발견한 동물·식물의 변종
 - 다. 사업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 라.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
 - 마. 정보의 단순한 제시
 - 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2.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 일부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4(a)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⑦ 심사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의 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35(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번역문) 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조약 제33조(1)에 따른 견해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 우선권주장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로 기재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12조(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번역문) 법 제201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2항에 따라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또는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령명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가점평정) ① 해양경찰공무원이 별표 6에 따른 국어능력 또는 외국어능력이 있거나 별표 7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또는 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계급에서 취득하거나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취득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계급의 가점에 포함한다.

③ 별표 7에 규정된 자격증을 둘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중 해당 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른다.

• **법령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3(심판정에서의 용어) ①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법령명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 4 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나 부호로 작성된 문서에는 국어로 된 번역문을 붙인다.

제36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① 재판장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또는 서증의 입증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으면 그 문서의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을 붙일 수 있다.

제37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미 제출된 증거와 같거나 비슷한 취지의 문서로서 별도의 증거가치가 있음을 당사자가 밝히지 못한 경우
3.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번역문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에 따른 재판장의 증거설명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문서의 작성자나 그 작성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히 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령명 : 「형사소송법」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2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 법령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접견 시 외국어 사용) ① 수용자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접견내용이 청취·녹음 또는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도관 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한글 사용에 관한 현행 법령 입법례

• 법령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신고서의 문자) 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 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제63조(등록부 기록의 문자) ① 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1.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다. 또한, 개명 또는 이름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개명 또는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경우에 이름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2.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록한다. 또한, 본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제80조의2(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적취득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취득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에 가졌던 국적,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 혼인관계·입양 등 기타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국적회복자의 경우에는 한국국적상실 연월일 및 원인
 2. 부, 모, 배우자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3.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본(한자)
 4.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5. 부, 모,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부, 모,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전산제적부로 통보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법무부장관 명의로 통지서 또는 관보 등 1부
 2. 국적취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3. 국적취득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原地音)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③ 수반(隨伴)국적취득자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반(隨伴)국적취득자에 관한 첨부서류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수반(隨伴)국적취득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취득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에 가졌던 국적,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 입양 등 기타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2. 수반(隨伴)국적취득자의 부, 모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3. 수반(隨伴)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수반(隨伴)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본(한자)
 4. 수반(隨伴)국적취득자의 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부, 모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 ④ 국적취득자(수반국적취득자 포함)의 성명은 외국어로 표기하되, 외국어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한다. 부, 모, 배우자의 성명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한다.

• **법령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령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중 도착항·도착 예정일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운반용 포장 등으로 포장지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표시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 또는 성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금지에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인지의 여부를 검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원료 또는 성분 관련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국민의 건강증진 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입신고인 및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삭제 <2010.10.29>
3. 폐기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년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상황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대장과 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건강기능식품이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확인증의 교부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검사결과에 따른 부적합 통보

⑧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유통관리대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대상 건강기능식품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한다.

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8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받은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 식품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한 원재료명·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및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2.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및 명칭과 제조방법설명서
3.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표시내용
4.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5.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한다)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표 3의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확인하여 신청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수입 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된 사항중 제조공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된 소재지에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과 제1항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령명 : 「검찰보고사무규칙」

제 7 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되,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과 영자 또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직급·직위등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소속정당·출신구등을,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등을 기재하고, 한미행정협정사건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속부대를 **한글**과 영자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의 보고대상사건에 관한 각종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사건 : “법무부소속 공무원범죄”
2. 제3조제1항제2호의 사건 : “판사범죄” 또는 “변호사범죄”
3. 제3조제1항제3호의 사건 : “국회의원범죄” 또는 “지방의회의원범죄”
4. 제3조제1항제4호의 사건 : “4급이상 공무원범죄” 또는 “5급이하 기관장범죄”
5. 삭제 <1988.12.29>
6. 제3조제1항제6호의 사건 : “한미행정협정사건”
7. 제3조제1항제7호의 사건 : “외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
8. 제3조제1항제8호의 사건 : “공안사건”
9. 제3조제1항제9호의 사건 : “대통령선거사범”, “국회의원선거사범”, “지방의회의원선거사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사범” 또는 “국민투표사범”
10.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건 : “정부시책에 영향을 미칠 사건”
11. 제3조제1항제11호의 사건 :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12. 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 : “부 심판결정사건”
13. 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 : “범죄수사참고사건”, “공소유지 참고사건” 또는 “검찰정책수립참고사건”

④ 죄명은 해당죄명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서의 죄명이 수리서의 죄명과 동일한 때에는 처분보고서의 해당란에 “수리보고 죄명과 동일”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⑤ 피의사실의 요지는 범죄의 일시·장소·수단·방법·결과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지서·의견서 또는 고소·고발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첨 범죄인지서 참조”, “별첨의견서 참조” 또는 “별첨 고소·고발장 참조”라고 기재할 수 있다.

⑥ 처분요지는 “구속기소”·“불구속기소”·“구약식”·“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중지”·“참고인증지”·“각하”·“공소권없음”·“죄안됨” “○○청으로 이송”등으로 줄여 쓴다.

⑦ 판결요지는 판결주문 및 이유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 ⑧ 검찰청에서 한미행정협정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등을 접수한 때에는 피의자의 소속부대장에게 즉시 통고한 후 발생보고서의 해당란에 통고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⑨ 공안사건의 처분보고서 또는 재판결과보고서에는 보고서 표지의 발송인 위에 주서로 “○년○월○일 국가정보원 통보필” 또는 “○년○월○일 국가정보원 협의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법령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9 조(정밀도등의 표시)** ① 법 제8조에 따른 정밀도등(이하 “정밀도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별표 9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 2. 영 별표 16에 따른 검사 대상 기준기
- ② 정밀도등의 표시는 계량기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정밀도
 - 2. 기호·상표 또는 상호(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에는 제작한 자의 상표·상호를 포함한다)
 - 3. 제작·수입 또는 수리한 연·월
 - 4. 품질보증기간
 - 5. 사용상의 주의사항
 -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에는 그 포장에 정밀도등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법령명 : 「공인회계사법」**

-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법령명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선거공보) ① 법 제65조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전단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법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및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이 조에서 “선거공보등”이라 한다)는 각각 1종으로 하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및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2. 전단형 선거공보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② 선거공보등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되, 점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적어야 한다.

1.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의 앞면
명칭(“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전단형 선거공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2. 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은 제2조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구·시·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별 세대수(이하 이 항에서 “세대수”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수에 각각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대로 하고, 법과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대로 한다.

1. 책자형 선거공보
세대수와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
2. 점자형 선거공보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통보된 시각장애선거인수(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수”라 한다)
3. 전단형 선거공보
세대수
4.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하여야 할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에서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를 뺀 수
5.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4호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배부할 지역의 시각장애선거인수

④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선거공보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시·군위원

회는 미리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등은 읍·면·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결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이 제3항에 따른 제출수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초과수량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의 장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할 시각장애선거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4급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⑥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다)에 따라 작성한다.

⑦ 제6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었거나 적고자 하는 학력을 2개 이내로 적으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소명내용의 글자수는 구두점과 그 밖의 문장부호를 포함하여 100자를 넘을 수 없다.

⑧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및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작성방법은 제6항과 제7항을 준용한다.

⑨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은 추천순위에 따라 게재하되, 후보자명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

⑩ 삭제 <2010.1.25>

⑪ 제29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 등”으로, “경력등”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첨부(제9항을 말한다)”는 “발송”으로 본다.

● **법령명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 4 조(인영의 내용) ① 관인의 인영(印影)은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해당 관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업무전용” 등의 표시를 하여 해당 업무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 **법령명 : 「국새규정」**

제 5 조(국새의 인문) ① 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②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 법령명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하여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한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
2. 외국 국적의 영문 성명 및 생년월일

③ 사무소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복수국적자 기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부분(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법령명 :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4(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①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대한민국 국적의 한글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국내 주소
2. 외국 국적의 영문성명 및 생년월일
3. 대한민국 국적 및 외국 국적의 취득사유 및 취득일
4. 병역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복수국적자 기록표의 작성 및 관리는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 법령명 : 「국제우편규정」

제 8 조 (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① 발송우편물에는 그 표면에 수취인 및 발송인의 주소 우편번호(우편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에 한한다) 및 성명을 지워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재사항은 로마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우편물을 배달하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자로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라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은 대문자로 기재하고 밑

줄을 긋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발송우편물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발송인의 주소·성명 밑에 붙어로 기재하거나 그 우편물을 배달하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자로 기재한다. 이 경우 **한글**로 된 번역문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법령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2. 제품의 가격표
3. 제조원가계산서
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5.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서류
6.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7.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8.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9.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0.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12.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3. 제6조의2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4.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5. 그 밖에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법령명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보안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법령명 : 「국제환규칙」**

제 7 조(송금신청) ① 국제환에 의한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지급인증 및 송금청구서(이하 “송금청구서”라 한다)를 환금 및 국제환 취급요금과 함께 송금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송금청구서에 기재하는 송금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문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송금청구서 및 첨부서류에는 당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기관이 작성 또는 확인한 **한글**이나 영문으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송금우체국은 송금청구서에 의하여 송금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국제환 영수증서를 송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령명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방송프로그램) ①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 방송을 생방송하거나 이를 녹음·녹화한 것을 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콘텐츠: **한글·한자·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 의식 개선, 약물 남용 예방 등
2. 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
3. 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
4. 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5. 그 밖에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콘텐츠

③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
2. 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 그 밖에 군수용자의 정서 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법령명 : 「군표창규칙」**

제 4 조(서식) ① 표창장·상장·정근장 및 감사장(이하 “증장”이라 총칭한다)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증장에는 **한글**을 전용하며 타자기 또는 모필을 사용한다.
③ 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제2항의 증장외에 외국어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 **법령명 :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 3 조(신청)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합중국 주재 관할 총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합중국 국무부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받은 신청번호(case number) 서한 사본 2부
2. 귀국의무면제 신청사유서(국문·영문 각 1부)
3. **한글** 이력서 2부
4. 여권 사본 및 미합중국 비자 사본 각 2부
5. IAP-66 Form 또는 DS-2019 앞면·뒷면 사본 2부
6. 대한민국 내 원 연수과전기관의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봉투에 미합중국 국무부가 부여한 신청번호(case number)를 적어야 한다.

• **법령명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 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 사.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3.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가. 요약문
-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간접환경영향을 포함한 영향예측, 사용된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데이터 서술,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 오염저감방안 등)
- 사. 모니터링 계획(누적영향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 아.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송부된 날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령명 :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령명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 8 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담배의 갑포장지 앞·뒷면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 **법령명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원산지표시대상품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삭제 <2010.10.1>
- ⑤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령명 :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

제16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관할 위원회는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인의 신분별로 구분되도록 작성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에는 선거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선거후보자의 게재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선거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투표용지에 게재할 선거후보자의 순위는 제12조(선거후보자 등록)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후보자명부에 기재된 기호순에 의한다.

● **법령명 : 「택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 3 조(숫자 등의 기재) ① 등록부에 금액이나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의 글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해당 부분의 글자 앞뒤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欄) 밖에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다는 내용과 그 글자수를 적은 후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글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 **법령명 :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 6 조(총괄대장의 기재사항) ① 총괄대장은 1개의 도로구간을 단위로 하여 도로구간마다 각각 작성하고, 도로구간에 종속구간이 있는 경우 그 종속구간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총괄대장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부

가. 고유번호(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한 코드)

나. 면 번호(총괄대장 해당 면의 번호)

다. 도로명관할구역

라. 도로명(**한글** 도로명과 로마자로 표기한 도로명)

마. 고시일(도로명의 고시일)

바. 부여 사유(영 제21조에 따른 고시 내용 중 도로명의 부여 사유)

사. 부여권자(도로명의 결정권자)

2. 도로구간 현황 및 이동사항
 - 가. 도로명과 도로 구분[대로·로(路)·길]
 - 나. 시작지점의 기초번호와 끝지점의 기초번호
 - 다. 도로구간 길이(주된구간의 길이)
 - 라. 기초간격(주된구간의 기초간격)
 - 마. 이동일(도로명·도로구간·기초번호의 부여·변경 고시일 또는 폐지일)
 - 바. 코드 및 이동 사유(별표의 도로명주소의 이동 사유별 코드표에 따른 코드와 이동 사유)
3. 도로구간 현황도
 - 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 나. 도로중심선
 - 다. 행정구역 경계 또는 분기(分岐)된 도로구간 현황
 - 라.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 마. 종속구간
 - 바. 작성일
4. 참고사항
 - 가. 관련 도로구간 현황
 - 1) 동일도로명 수
 - 2) 유사도로명 수
 - 3) 종속구간 수
 - 나. 교차로 현황 및 도로명판 설치 현황
 - 1) 전체 도로명판 수
 - 2) 시작지점에 설치된 도로명판 수
 - 3) 끝지점에 설치된 도로명판 수
 - 4) 교차로 수
 - 5) 도로명판이 설치된 교차로 수
 - 다. 건물번호 사용 현황
 - 1) 주된구간의 건물번호 수
 - 2) 종속구간의 건물번호 수
5. 참고사항의 세부 현황
 - 가. 동일도로명 현황(도로명관할구역, 도로명)
 - 나. 유사도로명 현황(도로명관할구역, 도로명)
 - 다. 도로명판 설치현황
 - 1) 설치위치
 - 가) 건물등관할구역

- 나) 도로명과 기초번호
- 다) 구분(시작지점, 끝지점, 교차로)
- 2) 도로명판
 - 가) 유형[지주식(支柱式), 현수식(懸垂式), 벽면식 등]과 재질
 - 나) 크기
- 3) 설치 및 점검
 - 가) 최초 설치일
 - 나) 점검일과 재설치 여부

● 법령명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①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
2.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3.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② 상세주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변경한다.

1. 동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
2.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사용
3.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문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물번호로 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번호
2.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
3.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등에서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층수
4. 지하가 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아라비아숫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주소의 세부적인 부여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법령명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 5 조(도로명판의 표시 사항) ① 도로명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기초번호
4. 방향표시용 화살표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구조는 별표 2와 같고,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건물번호판의 표시 사항)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번호
2. 한글 도로명
3. 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시각 경계선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구조는 별표 9와 같고, 건물번호판의 세부 규격은 별표 10과 같다.

③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도로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로(路)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 **법령명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7조(동물용의약품등의 무환수입등) ① 자가치료·임상시험·제조시험·연구시험 및 견본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비매품의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상용 동물용의약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장 또는 보류통지서사본
2. 한글표시사항
3. 사용계획서·시험계획서 또는 배부계획서
4. 제품설명서

5. 보상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상용인 경우에 한한다)

③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동물용의약품등의 성분 및 효능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서류외에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역검사본부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2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성질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 또는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검역검사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의 타당성여부를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살아있는 미생물을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하는 자는 시험에 사용하고 남은 물량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기재상의 주의등) 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재사항은 당해동물용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적혀 있는 다른 문자·도안등과 구분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6조, 법 제58조 및 법 제65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항 및 이 규칙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이를 **한글**로 기재하거나 한자를 혼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동물용의약품등의 경우에는 다른 문자로 기재할 수 있다.

③ 법 제59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22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작성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소재지는 시·도명만을 기재할 수 있으나 용기 또는 포장이나 첨부문서중 어느 하나에는 주소를 명기할 것
2. 내용량은 용기 또는 포장자체의 무게가 포함되지 아니한 양을 기재할 것
3. 제품의 특징은 허가된 범위안에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것
4.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할 것
5. 효능·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6. 복합제의 경우 성분별 효능·효과·관련질병등을 나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효력을 표현하려는 때에 객관성이 있는 근거자료에 의할 것
7.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알아 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것
8. 예외적인 자료등을 일반적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아니할 것
9. 동물실험자료를 설명하거나 인용하는 때에는 실험동물의 종류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실험의 결과가 동물이나 인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아니할 것. 다만, 검역검사본부장이 그 실험결과를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다른 동물용의약품과의 비교자료를 기재하는 때에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 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비교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유효성분의 일반명칭으로 할 것

④ 동물용의약품등의 용기 또는 포장의 면적이 좁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제2항 및 법 제56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약칭의 사용을 포함한다) 및 주소
2. 제조번호·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3. 중량 또는 용량
4. 삭제 <2000.11.7>
5. 품목허가시 정하여진 저장방법·휴약기간·금지사항·주의사항 및 부작용. 다만, 첨부문서에 금지사항, 주의사항 및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등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령명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 2 조(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 **법령명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 5 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 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령명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5 조(허가증의 발급절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 활동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외국 정부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업 활동 허가현황 및 입어료 부과명세서
 2. 입어료 납입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하되, 그 내용 중 **한글**로 표기된 부분에는 영문을 함께 적는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에 허가증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등을 주한 외국공관(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하며, 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활동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부속선의 수에 맞추어 허가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등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

의 외국정부로 하여금 입어료의 납부 상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어료 납부명세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서류의 표기문자) 법,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법령명 : 「법원사무관리규칙」**

제 3 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라 함은 각급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각급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및 보존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4. 삭제 <2005.3.23>
5. 삭제 <2005.3.23>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8.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문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12. “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3.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각급기관이 사법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사항)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종이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법령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 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1. 조세조약의 상대방국가(이하 “계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3.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5.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6.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7.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8.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9.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10.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등록 사항 및 그 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동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투자자의 그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38조의6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1.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 계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2. 소득수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계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계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4.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약상대국의 개인·정부기관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5. 소득수취법인이 계약상대국의 연금·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6. 소득수취법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수입금액) 중 주식·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법인인 경우
 7. 소득수취법인이 제138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8.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될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⑤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제4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령명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신청 등)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한글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 2. 입국사증 사본 1부
 - 3. 본국의 감정평가사관계법령 사본 1부
 - 4. 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 사본 1부
 - 5. 사진(반명함판) 2매
- ②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법령명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제20조(사료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사료의 통관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료관련 단체(이하 “신고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대상 사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사료검정증명서[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해당한다]
 -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 설명서
 - 4. 상업송장(INVOICE)
 -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사료로 인하여 동물 등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사료공정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사료인지 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사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료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검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건을 붙여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수급 또는 가격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사료
2.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 있는 사료
3. 별표 6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정 대상 사료
- ④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사료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의 시정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⑤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정 결과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사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신고자, 농림수산물품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수입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사료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해당 사료에 대한 검정 결과 사료공정 중 수분함량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열, 가공, 용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안전상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의 제거 후 재수입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 ⑥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에 적고, 사료의 수입신고상황을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에 따라 농림수산물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과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 ⑦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발급 또는 제5항에 따른 부적합 통보를 농림수산물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 **법령명 : 「상업등기규칙」**

제 2 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와 외국인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 ③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법령명 : 「상표법 시행규칙」**

제 6 조(서류의 사용어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2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② 위임장·국적증명서·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제25조, 제43조, 제46조의2, 제47조, 제77조의2 또는 제79조 등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이의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품분류 전환등록의 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또는 그 밖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3.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8. 법 제26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 이유등의 보정기간, 법 제70조의2·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상표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

류인 경우

10.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가 불명확하거나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11.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2.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13.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조 본문을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3조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6. 해당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명시하여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한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출원서류등을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반려요청서를 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 제36조(출원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건본 1통(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대한 상표 등록출원만 해당한다)
3.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업무표장의 등록출원만 해당한다)
5.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각적 표현(이하 “시각적 표현”이라 한다)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의 등록출원에 한정한다)
6.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건본의 경우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이하 “밀폐용기”라 한다) 3통 또는 냄새가 첨가된 패치(이하 “향패치”라 한다) 30장(냄새상표의 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하고, 냄새건본은 냄새가 쉽게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밀폐용기 또는 향패치로 한다. 이하 같다)
7.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8.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③ 출원인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서
 2.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3. 등록하려는 상표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음역(音譯)한 설명서
 4. 건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로 한정한다)
 5. 소리상표의 악보
 - ④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용한 상표
 2. 사용기간
 3. 사용지역

4. 지정상품의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량 등
 5. 사용방법 및 횟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 ⑤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가 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포기 또는 취소심결 확정된 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2.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포기 또는 취소심결 확정된 등록상표의 상표 및 지정상품
 3.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포기 또는 심결확정의 일자
 4. 출원인이 법 제7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 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과 그 범위의 적정성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業)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사실(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⑦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등 및 제6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 현황(해당 지역 전체, 출

원인, 소속 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등

2. 출원인이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

제39조(절차보완명령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보완할 사항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견본(상표견본을 보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한글**로 작성한 출원서(출원서를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우선권증명서류의 **한글**번역문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3조(출원인변경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는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만으로 해당 신고를 할 수 있다.

1. 「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 출원인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에 한정한다)

제78조(구술심리) ① 법 제77조의17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에서는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2조(「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법, 영 및 이 규칙에 의한 출원·신고·신청 등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 **법령명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 3 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라 함은 각급위원회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위원회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각급위원회내의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의 문서과라 함은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다만, 구·시·군위원회의 처리과라 함은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6.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10. “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1.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11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 **법령명 : 「선박법 시행규칙」**

제17조(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①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형선박은 제3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의 명칭: 선수양현(船首兩舷)의 외부 및 선미(船尾)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각각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표시
2. 선적항: 선미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표시
3. 흘수의 치수: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 측면에 선저(船底)로부터 최대흘수선(最大吃水線)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 이 경우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하기 곤란한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표시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④ 선박에의 표시는 잘 보이고 오래가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표시를 고쳐야 한다.

• **법령명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8조(공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명세를 국토해양부의 게시관(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1. 공단, 선급법인,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의 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2. 총톤수
 3. 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
 4. 선박소유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5. 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의 명세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법령명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제18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①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이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출규제의 개요
 2. 선박의 장치와 설비의 취급기술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취급방법과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의 세정, 잔류물의 배출과 선박평형수의 적재·배출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2. 삭제 <2009.3.26>
 3.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 ③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검인표시를 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는 이 조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령명 : 「선원법」**

제151조(취업규칙 등의 공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어야 하며,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국내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과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한다)는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일] 제151조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 **법령명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 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1. 조세조약에서 상대방국가(이하 “채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해당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3. 해당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4.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5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계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⑤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① 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15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들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절차)

① 법 제156조의5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하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촬영·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③ 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들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⑤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령명 :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 2 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법령명 : 「식품신품종 보호법」**

제127조(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령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별표 4 제 2호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정밀검사의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3.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별·운반·선적 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유통기간 연장보고서(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 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재조합 안전성관련 승인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수출계획서(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협약(이하 “위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등 수입신고 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따로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식품등이 제1항 후단에 따라 미리 신고한 도착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다.

● **법령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신상정보의 제출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상정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자국어·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한다.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6. 사진: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가발이나 그 밖에 외모가 현저하게 변형되어 보일 수 있는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7.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② 제1항의 신상정보 및 관련 서류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관할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신상정보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진이 본인과 맞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일시를 명시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상정보와 신상정보의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에 관한 제출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5조(공개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자국어·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하되, 읍·면·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법령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 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법령명 : 「약사법 시행규칙」**

제77조(기재상의 주의사항) 법 제59조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75조제1항제5호·제6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도명(외국의 경우에는 국가명)만을 기재할 수 있으며, 용기 또는 포장이나 첨부 문서 중 어느 하나에는 그 주소를 명기할 것

1의2. 제75조제2항제9호에 따른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는 판독기(判讀機)로 인식될 수 있고 다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표시할 것

2. 의약품의 내용량은 용기나 포장 자체의 무게가 포함되지 아니한 양을 기재할 것

3. 제품의 특징은 허가된 범위에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할 것

4.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할 것

5. 효능·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6. 복합제의 경우 성분별 효능이나 효과, 관련 질병 등을 나열하여서는 아니되며, 상승작용 또는 상가작용을 표현하려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 자료에 의할 것

7.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것

8. 예외적인 자료 등을 일반적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아니할 것

9. 동물실험자료를 설명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실험동물의 종류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실험의 결과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아니할 것

10. 다른 의약품과의 비교자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비교대상의 약품은 유효성분의 일반명칭으로 할 것
11. 법 제56조제1항제8호 및 이 규칙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자는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할 것
12. 용법이 특정한 한가지로 정하여진 주사제 용기에는 굵은 글씨로 용법을 알아보기 쉽게 **한글** 또는 영문 약자 등을 이용하여 기재할 것(기재방법은 “정맥주사용”·“정주용”·“I.V.”, “근육주사용”·“근주용”·“I.M.” 등). 다만, 수액용주사제는 제외한다.
13. 그 밖에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85조(기재사항의 표시)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법 제65조에 따른 기재사항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의약품등의 경우는 그 수출대상국의 언어로 기재할 수 있다.

● **법령명 :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미터크기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명료하고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식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별로 어선명칭의 크기,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②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 법령명 : 「여권법 시행령」

제 2 조(여권의 규격 등) ①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 표지의 상단과 하단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의 종류를 표기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되, 법 제7조제1항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하단에 추가한다.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녹색(단수여권은 12면, 복수여권은 48면). 다만,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은 14면으로 한다.
2. 관용여권: 황갈색(48면)
3. 외교관여권: 남색(48면)
4. 여행증명서: 연청색(8면). 다만, 사진부착식 여행증명서는 10면으로 한다.

제 3 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
2. 여행증명서 발급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 18세 미만인 사람
3.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제 3 조의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

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법령명 : 「여권법 시행규칙」**

제 2 조의2(여권의 영문성명 표기·변경 등) ①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 다만, **한글**성명을 외국 성명에 대한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② 여권 발급 신청인이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간 사용한 영문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써 그 영문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한글**성명에 대한 영문표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영문성명 앞 또는 뒤에 변경하려는 영문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배우자의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의 추가나 변경 신청을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

산정보자료의 확인(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배우자의 영문 성은 “spouse of 배우자 영문 성” 형식으로 여권에 표기한다.

● **법령명 : 「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염의 품질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한글**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한다.
3.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한다.
4. 인쇄, 등사(謄寫), 날인(捺印), 낙인(烙印), 주조(鑄造), 식각(蝕刻), 박음질 또는 부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5. 품질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한다.

● **법령명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5 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併記)하도록 할 수 있다.

● **법령명 : 「외국법자문사법」**

제 3 조(자격승인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법령명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 7 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법령명 : 「외무관인규칙」

제 3 조 (규격 및 인영) ① 제2조의 외무관인은 원형으로 하며, 외무철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1.8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2.5센티미터의 외륜을 두고, 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2.5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3.5센티미터의 외륜을 둔다.

②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사용하는 외무관인에는 외교통상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며,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외무철인 및 외무고무인에는 재외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고, 주재 지역명을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 법령명 :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 ①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한다)·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법령명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금융업으로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딧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 기용어를 포함한다)

● **법령명 : 「은행법 시행령」**

제 3 조의4(상호의 제한)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bank 또는 bank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법령명 : 「의료기기법」**

제23조(기재 시 주의사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문자·기사·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적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 **법령명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8조(기재사항의 표시방법) ① 법 제23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사항을 적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한글**로 적거나, **한글**에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것. 다만, 수출용 의료기기는 수출 대상국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그 밖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 ②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등을 기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에 병행하여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

● 법령명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의 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1. 진료기록부

-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 나.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 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 라. 진료 일시분(日時分)

2. 조산기록부

-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 요령
-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 자. 임부(妊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 요령
-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3. 간호기록부

-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 나. 투약에 관한 사항
-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 법령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자기인증의 표시) ①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2. 자기인증표시는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할 것
 - 가.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 나.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 다. 나목의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
 - 라. 계기패널의 좌측 부분
 - 마.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 바.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 사. 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착할 것
3. 인증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인증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

● **법령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2조(상호의 제한)**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② 법 제3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securiti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erivatives 또는 futur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④ 법 제3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investment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⑤ 법 제38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investment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⑥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iscretionary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

(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⑦ 법 제38조제7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 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6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 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공공단체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공공단체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② 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법 제160조 전단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에는 5일을 말한다) 이내에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등에 상당하는 서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68조 및 제1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 명세
 - 나.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2.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 나.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확인과의견표시

⑤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그 외국 지주회사의 자회사(외국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증권의 양도제한, 외국법인등의 국유화 등 외국법인등이나 그 출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법령 등이 변경된 때
2. 외국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시장조성이 행하여지는 때
3.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4. 외국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해제,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때

⑥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는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3.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

⑦ 금융위원회는 외국법인등의 종류·성격, 외국 법령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의 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57조제2항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광고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서는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87조제4항제3호·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제4항제3호 중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보며, 법 제57조제3항 중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④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80조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할 때에는 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집합투자규약(집합투자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할 수 있다.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판매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이 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외국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공고·게시될 것
2.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운용보고서 등 모든 서류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될 것
3. 제2호에 따른 모든 서류가 **한글**로 작성되어 투자자에게 제공될 것.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그 납입자산 구성내역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법령명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 3 조(직인) ① 공관에는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이하 “공증담당영사관”이라 한다)의 직인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증담당영사관 직인은 원형으로 하며, 지름 2.5센티미터의 안 둘레와 지름 3.5센티미터의 바깥 둘레를 두고, 안 둘레와 바깥 둘레 사이에 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새기며, 안 둘레 안에 주재국명을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공증담당영사관을 **한글**로 각각 새긴다.

제 4 조(일자인의 비치) ① 공관에는 확정일자인과 신탁표시일자인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정일자인은 원형으로 하며, 지름 2.5센티미터의 안 둘레와 지름

3.5센티미터의 바깥 둘레를 두고, 안 둘레와 바깥 둘레 사이에 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새기며, 안 둘레 안에 주재지역명을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날짜를 아라비아 숫자로, 공중담당영사관을 **한글**로 각각 새긴다.

③ 제1항의 신탁표시일자인은 원형으로 하며, 지름 2.5센티미터의 안 둘레와 지름 3.5센티미터의 바깥 둘레를 두고, 안 둘레와 바깥 둘레 사이에 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새기며, 안 둘레 안에 주재지역명을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날짜를 아라비아 숫자로, 신탁재산을 **한글**로 각각 새긴다.

● **법령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령명 : 「중자산업법」

제163조(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령명 : 「중자산업법 시행규칙」

제 3 조(번역문의 첨부) 국적증명서 및 「중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에 관한 서류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서류에 **한글**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8조(사용문자) 법 제163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를 영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음역하여 병기하여야 한다.

1. 학명인 경우
2. 품종명칭인 경우
3. 전문용어로서 **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인 경우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인 경우

● 법령명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9 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기록을 정정·삭제 또는 삽입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하며, 정정·삭제 또는 삽입의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면·동(법정동 이름을 말한다), 리(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地番)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
-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 법령명 : 「지도도식규칙」

- 제 7 조 (주기)** ①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한자·영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자획에 복잡한 한자에 있어서는 알기 쉬운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한자와 한글에 있어서는 명조체와 등선체로 아라비아숫자와 영자에 있어서는 로마체와 등선체로 하고, 자체는 직입체, 경사체 또는 종건체로 한다.
- ③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크기(식자 급수)문자와 문자와의 간격(자격) 및 문자의 배열요령은 지도의 종류에 따라 지리원장이 정한다.

• 법령명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 9 조(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지뢰를 생산하는 자는 생산하는 지뢰의 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국
 2. 제조일
 3. 제조일련번호

● **법령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기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천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기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천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천한다.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④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 **법령명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하는 축산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사항 중 해당 축산물의 도착항·도착예정일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하는 축산물이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 축산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 사본(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축산물만 해당한다)
3.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지육 및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허가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 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검역검사본부장은 검사관으로 하여금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영 제18조의4에 따라 발급하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⑤ 검역검사본부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의 정부기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의 기재와 관련한 위생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의 발급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⑦ 영 제18조의4제1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별표 7 제2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 ⑧ 법 제15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이란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 **법령명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5조제6항에서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 상표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취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상표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신청서식 및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 **법령명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 4 조 (인영의 내용 및 규격) ① 직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학교법인의 직인은 이와 다르게 새길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의 직인은 원형·사각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법령명 : 「한국고전번역원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 **법령명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9조(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 ① 제186조제2항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방식으로 해당 종류의 정밀접근시설을 갖춘 활주로에 착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정밀접근의 종류
4. 해당 항공기의 장비 명세와 정비방식
5. 해당 사용비행장에 설치된 정밀접근시설의 내용
6. 정밀접근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7. 항공기 조종사의 교육훈련 내용
8. 운용시험 실시내용
9.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② 외국항공기를 운용하는 외국인 중 그 외국으로부터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시설을 갖춘 비행장의 활주로에 해당 종류의 정밀접근방식으로 착륙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서에 신청인이 외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서의 사본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정밀접근 운용절차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에 관한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법령명 :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제 7 조 (조사결과보고서)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예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구분한다.

② 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3월이내에 **한글** 및 영어로 작성된 예비보고서 각 5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간해양학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해양조사보고(항적도를 포함한다)
2. 법 제6조제2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계획서와 상이하게 실행된 사항
3. 항해일지 및 조사일지 사본

④ 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5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이관하여야 한다.

• **법령명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7 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법령명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2 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①,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 **법령명 :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 3 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라 함은 헌법재판소 내부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헌법재판소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헌법재판소내의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6.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 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10. “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1.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11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 **법령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방송프로그램) ①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 방송을 녹음·녹화하여 방송하거나 생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 ②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콘텐츠: **한글**·한자·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의식 개선, 약물 남용 예방 등
 2. 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
 3. 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
 4. 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5. 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에 필요한 콘텐츠
- ③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2. 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 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법령명 : 「화장품법」**

제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법령명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는 제1호, 제2호, 제4호가목·다목·사목·차목 및 제10호만 해당한다)와 같다.

1.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2. 별표 2의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3.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를 보관할 것
4.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거나 또는 첨부한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할 것
 - 가. 제품명 또는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 나.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 다. 제조국, 제조회사명 및 제조회사의 소재지

- 라.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사본
 - 마. 제조 및 판매증명서. 다만,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공고상의 수출입 요건 확인기관에서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갖춘 제조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과 같다는 것을 확인받고, 제6조제2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의 기관으로부터 수입할 때마다 제조판매업자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시험성적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바.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 견본
 - 사. 최초 수입연월일(통관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아.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 및 수입량
 - 자.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연월일 및 결과
 - 차. 판매처, 판매연월일 및 판매량
5.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킬 것. 다만,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또는 제조업자나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제조번호별 품질검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관리하고, 그 최종 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7.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제조판매업자는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국가 간 상호 인증되었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는 품질관리기록서를 갈음한다.
 8. 제7호에 따라 제4조제1항제3호의 제조판매업자가 수입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현지실사에 필요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수입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할 것
 10. 제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정보사항(화장품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분을 0.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안정성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할 것

가.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도체

나. 아스코빅애시드(비타민C) 및 그 유도체

다. 토코페롤(비타민E)

라. 과산화화합물

마. 효소

제21조(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법 제12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및 화장품의 가격표시상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다.
2.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 기타 국어 사용에 관한 현행 법령 입법례

• 법령명 : 「교과용도서제정법」

제26조(수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법령명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6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25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부 록 2】

‘국어’·‘한글’ 사용에 관한 현행 행정규칙 입법례

(2012.8.1)

■ 국어 사용에 관한 현행 행정규칙 입법례

● 행정규칙명 :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 취급규정」

제14조(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통지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단일성 결여에 따른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을 하거나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에 대한 제출명령을 함으로써 작성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사용 사본을 특허청장이 수령한 날부터 3월
2. 우선일부터 9월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제출원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PCT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통지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제1항에서 정한 작성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이의신청 없이 추가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만료일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2.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3.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개월
4.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에 대한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 만료일 또는 서열목록 제출 및 가산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 ④ PCT 심사관은 심사파트장,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제1항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보고하기 이전에 영어자문관에게 영어 교정 또는 번역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국어로** 작성되는 경우와 작성기한 임박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PCT 심사관은 제1항의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인용문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문헌의 사본의 첨부 곤란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규칙명 :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확인기준**」

- 제 6 조(언어)** ① 광고·선전물의 언어는 우리말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과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올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의 표현은 주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③ 제명 및 문안, 기업명 또는 상품명 등을 외국어로 표현할 경우, 그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되, 그 음만을 **한글**로 쓰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또는 그 뜻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가장 적합하게 번역된 **한글**을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명칭에 불과하거나 달리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음이나 번역된 내용의 **한글**병기를 생략할 수도 있다. 외국어 또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나 임의로 만든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행정규칙명 :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제11조(한글사용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산업피해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

제 4 조(한글사용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제27조(한글사용 등)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수용자 전화사용 지침」

제13조(통화내용 등) ① 통화는 **국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수용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유해한 내용, 범죄의 모의·교사 또는 증거인멸을 기도하는 내용 등은 통화할 수 없다.

• 행정규칙명 :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자료 등록 등) ① 웹사이트의 자료 등록 등 관리는 「환경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해당 부서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부서에서 생산한 자료를 웹사이트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 등을 실시하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웹사이트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자료는 **국어**를 사용하여 국립국어원에서 규정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도록 작성하고 외래어, 외국어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 **행정규칙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요령」**

- 제3조(심판정의 용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되 해상관용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8조(재결서의 용어)** ① 재결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한글**로 하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괄호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넣어 쓴다.
② 문장으로 표현하기 곤란한 것은 도면 또는 약도·도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 제15조(수사서류의 작성)** ① 별지 제4호 및 제5호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별지 제6호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態樣), 공모 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표기할 것
 3. 진술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용어나 진술자를 위축시키는 과격한 표현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
 4. 내용이 방대하거나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할 것
 5.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를 사용하고, 다만 진술중에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투리·약어·은어·외국어·전문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적정한 설명을 붙일 것②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고, 오기나 증감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서말미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미 작성된 수사서류의 내용을 고쳐서는 아니 된다.

● 행정규칙명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30조(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 ①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할 때의 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할 것
 3. 법률용어나 과격한 표현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
 4.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할 것
 5.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를 사용할 것, 다만 진술중에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투리·약어·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정한 표준**국어**로 설명을 붙일 것
 6.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7. 지명·인명 등으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달 것
 8.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되 연월일은 온점(.)을 찍어 구분할 것
- ②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고, 오기나 증감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서말미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한글 사용에 관한 현행 행정규칙 입법례

● 행정규칙명 :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2. 품종명칭의 출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기본원칙

나. 품종명칭은 **한글**로 표기하고 영문으로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한다. **한글**의 영문표기의 경우 문화관광부 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음역하여 표기하고, 외국어의 **한글** 표기의 경우 외래어 표기법(문교부 고시 제85-11호)에 따라 외국어를 **한글글**로 음역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규칙명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쓴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 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제26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제 6 조(표시기재) ① 지정수입자는 대상의약품이 ‘정부비축용’임을 명시할 수 있고, 「약사법」에서 정하는 표시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입자의 외국어로 표시된 대상의약품 등의 **한글**표시작업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

로 인하여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하면 지정수입자는 표시기재 사항(**한글**표시 스티커, 제품설명서 등) 관련 자재를 납품 수량에 맞도록 따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은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기재 사항 관련 자재를 취급자(약국, 보건소 등)에게 분배하고, 취급자는 해당 제품에 반드시 ‘**한글** 표시기재 스티커’를 부착한 후, 사용설명서와 함께 환자에게 제공토록 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적용기간이 완료되면 질병관리본부장은 취급자에게 공급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3조(제출자료 작성) 제12조의 제출자료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4조 각 호의 제출자료가 면제, 생략되는 경우 또는 제출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작성항목 순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자료 전체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총괄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총괄 요약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각 세부 자료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쉽도록 각 내용의 끝에 자료별 색인번호를 붙여야 한다.
3. 작성항목에 따라 제출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정리한 세부 요약본을 작성항목 자료의 시작에 붙여 자료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제출자료는 원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 5 조(표시방법)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사항

- 가.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 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외국어를 **한글** 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행정규칙명 : 「건물 등기부 용어의 한글화지침」

1. 용어의 한글화
아래와 같이 건물 등기부의 종전 용어는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쓴다. (표 생략)
2. 기존등기부의 종전 용어는 표시변경등기(면적단위 환산, 지붕 바꿈, 분할, 합병, 구분 등)시에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 표기하고 그외 다른 등기(갑구, 을구,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한글화된 용어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며, 구등기부를 카드화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 용어를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 이기한다.

● 행정규칙명 : 「경찰 표창 규칙」

제13조(표창장의 서식등) ① 표창을 할 때에는 공적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창장을, 우등상 및 장려상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외국인을 표창할 때에는 당해 외국어로 된 부분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의 글자는 한글로 한다.
③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에게 공적상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의 경찰공로장 1등급을, 전투경찰순경에게 공적상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의 경찰공로장 2등급을 수여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에게 협조상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의 경찰공로장 1등급을 같이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찰공로장 증서를 함께 수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장·상장 또는 감사장(이하 “표창장등”이라 한다.)은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표창장등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 또는 감사장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표창장등의 수여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표창권자는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계약사무처리규정 시행규칙」

제39조(입찰방법) ① 입찰은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찰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입찰 시에는 미리 준비된 입찰함에 투합하도록 한다.

- ④ 입찰서(별지 제15호 서식)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서의 금액란은 **한글**(또는 한자)로 표기하고 내역란의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도록 하며 두란의 숫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한글**(또는 한자) 표기에 따른다.
 2. 특별히 단가와 금액을 구분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 계산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는 단가, 총액입찰의 경우는 총액에 따른다.
- ⑤ 입찰집행 시에는 입찰조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⑥ 공사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계약 입찰시에 입회할 수 있다.
- ⑦ 규정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입찰을 집행한다.

• 행정규칙명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 제 9 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제 8 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④ 입찰서의 기재 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제 8 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 4 조(제출서류)** ① 사업주는 규칙 제130조의3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는 제3장 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분 변경으로 인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 ③ 제1항의 보고서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읽어 볼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전자파일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파일을 읽을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행정규칙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39-2-3 입찰서의 입찰금액 기재시 **한글** 또는 한자를 원칙으로 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야 하며 **한글**로 기재된 내용이 팔천을 팔척으로, 일십을 십 등으로 기재되었어도 병기한 아라비아 숫자로 확인한 결과 확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 행정규칙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 3 조(공통적인 부여원칙)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부여한다.
 1. 문화재(문화재명)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2. 고유명사(문화재명, 사찰, 서원, 산 등) + 문화재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3. 시·도, 시·군·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4. 시·도, 시·군·구 + 고유명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지역내에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5. 시·도, 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석탑 등 시·도, 시·군·구와 리·동(마을)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 ② 명칭부여는 지역명 + 고유명사 + 방향 + 형태 + 재질 + 문화재의 순서로 부여하되, 제3조1항의 부여원칙에 따른다.

- ③ 지역명은 원칙적으로 시·군을 사용한다. 다만, 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도시명을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앞뒤의 단어가 별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 등의 경우 “~.~”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 ⑥ 지정명칭에 조사 “의”, 의존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⑦ 지정명칭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다.
- ⑧ 문화재 지정명칭은 **한글**과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 ⑨ 문화재명칭 표기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재질, 층수 등은 붙여 쓸 수 있다.
- ⑩ 기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명칭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되, 현재의 통칭과 상이하여 혼란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명칭을 변경한다.
- ⑪ 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유형의 문화재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유형(사적 등)의 지정명칭과 가능한 부합되도록 부여한다.

● 행정규칙명 :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 제 6 조(표기방법)** ① 모든 수리기의 표기는 **한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竝記)할 수 있다.
- ②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등 문화재의 성질이 지류인 경우와 불상에 관한 수리기는 한지(韓紙)로 하고 묵서(墨書)로 한다.
 - ③ 동종 및 무구류 등 금속류의 경우, 수리기의 재질 등에 관해서는 관련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 행정규칙명 : 「국방 간호업무 훈령」

- 제 9 조(간호기록)** 간호기록 작성의 일반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모든 의미 있는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한다.
 - 2. **한글**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공인된 영어 의학 용어를 사용

- 할 수 있다.
3. 기록한 내용이 잘못되어 수정 또는 정정을 할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잘못 기록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정 사유와 원인,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한다.
 4. 모든 기록은 작성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환자가 표현하거나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다.
 5. 간호기록은 정확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가능한 문제중심기록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6. 중환자를 제외한 일반환자의 정기적인 간호기록은 주1회 실시하고, 초(재)입원, 전입(후송) 또는 전과환자는 낮번은 2일, 초·밤번은 필요시 기록하며, 응급 및 정신과 환자는 입원 당일 낮·초·밤번 모두 기록한다.
 7. POD(Post Operative Day) 날짜 변경은 0시를 기준으로 한다.
 8. 퇴원·전원(후송)·전역 및 사망시에 간호기록 종결 확인은 간호처(과)장 및 간호부장이 확인 후 각각 서명하고, 타과 전과시에는 내·외과 간호처(과)장이 확인 서명한다.
 9. 모든 기록은 국방의료정보체계에 등록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군의무기록관리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규칙명 :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 2 조(식별정보) ① 법무부장관은 이미지파일과 함께 국적관련 통보 대상자의 성명(원지음의 한글표기), 출생연월일, 국적변동원인과 일자, 등록기준지,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 통보되는 첨부서류의 종류와 수, 통보일자, 통보업무 담당자의 식별정보를 송부한다.

② 수반취득자의 식별정보는 국적취득자의 식별정보와 연결하여 함께 송부한다.

● 행정규칙명 : 「국제조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사전승인신청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①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실질귀속자 검토업무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2과장)이 담당한다.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2과장)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개인·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으

로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5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0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를 접수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받는다. 이 경우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받으며, 한글번역본이 필요 없을 때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받을 수 있다.

1.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제1항 각 호의 서류
2.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

● 행정규칙명 :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 7 조 (의무기록의 작성 원칙) ① 모든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인적사항(원소속, 계급, 군번, 환자명, 주민번호 또는 성별/나이), 등록번호, 병력, 질병상태, 진단, 치료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서식지별로 날짜 및 작성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 의무기록 작성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수적 작성자로서 직접진료를 행하는 자

- 가. 의사
- 나. 간호사
- 다. 기타 직접 진료를 행하는 자

2. 임의적 작성자로서 특정의료직 종사자

- 가. 사회사업사
- 나. 영양사
- 다. 기타 특정의료직에 종사하는 자

③ 기록에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된 의학용어를 사용하되 최종진단명은 약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질병분류는 통계청에서 발행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최신판에 따르며 수술 및 처치, 특수검사분류는 국가가 정한 분류기준에 따른다.

⑤ 의무기록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등의 기재내용 중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 7 조(자료의 작성등) ① 제출자료는 제5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각각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전자적기록

매체(CD·디스켓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조에 따라 제출자료가 면제 또는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 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화장품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및 확인자 날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제 4 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⑤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내규관리규칙」

제25조(문자) ① 내규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할 용어나 전문어, 관용어 및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을 쓴 후 괄호안에 원어 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15조(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 등 작성방법) ①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의 기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체제 시행일 : 안전관리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기간을 기재. 다만, 안전관리체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음”으로 기재

2. 대상선종 : 사업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으로서 규칙 별표 12 제1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선종을 기재

3. 선정된 선박명 : 사업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선종별 1척을 선정하여 그 선박의 선박명과 안전관리체제 시행일자를 기재

4.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사항 : 별지 제3호 서식의 항목① 에서부터 항목⑫

- 까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제2쪽”에서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경우 “예”란에 √를 표시하고 제2쪽의 “부적합 번호”란에 해당 부적합번호와 심사결과를 기재. 부적합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란에 √로 표시
5. 특기사항 :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관별 부적합사항 총 개수와 그 밖에 주무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재
- ②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 심사를 받은 사업장 이름을 기재
 2. 부적합사항 건 수 : 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건수를 두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로 기재한 후 뒤에 사선을 긋고 심사관 성명을 기재. 관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뒤에 ”관“자를 기재(예시 : 01/홍길동, 01관/홍길동)
 3. 심사일 : 부적합사항을 확인한 날짜를 기재
 4. 부적합사항 : 부적합사항 종류는 중부적합, 경부적합, 관찰사항중 해당란에 √ 를 표시
 5. 부적합사항 내용 : 부적합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및 관련 요건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부적합사항이 5건을 초과하는 경우 제2쪽에 별도 기재
 6. 안전관리체제 요건 : 규칙 별표 11의 안전관리체제 구분 번호를 기재
 7. 관련 문서조항 : 확인된 부적합사항과 관련된 사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문서명과 문서번호 및 관련 조항을 기재
 8. 시정조치 기한 : 확인된 부적합사항별 시정조치에 필요한 기한을 심사관이 기재하여 피심사책임자가 확인후 서명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시정기한이 같은 부적합사항은 같은 란에 기재
 9. 심사관, 주무심사관 서명 : 주무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주무심사관이 서명하고 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심사관 및 주무심사관이 서명
 10. 시정조치결과는 피심사책임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며 부적합사항별 시정 완료일자를 기재하되 시정 일자가 같은 경우 항목별로 묶어서 기재
 11.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한글**로 기재. 다만, 심사대상이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기재 (이하 생략)

● 행정규칙명 :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7. 수출국정부는 식육(食肉)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을 명시할 것)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농림부문서처리요령」

제14조(문서작성의 일반사항)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행정규칙명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통합고시」

제 7 조(입항신청) ① 러시아 국적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고시된 항만으로 입항하는 경우, 선장은 입항 24시간 이전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항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입항신청시 선하증권(B/L)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을 병행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 8 조(도로표지의 글자 표기) ①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별표 9, 영문은 별표 10, 한자는 별표 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광지표지에 **한글**, 영문과 함께 한자를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자 병기가 필요한 대상지명, 표지규격, 표기방법, 설치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8. 수출돼지고기는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태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

록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 중에는 대한민국이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수출국에서 승인한 봉인 종류 및 규격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 돼지고기의 선적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 4 조(자료의 작성) ①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품목별로 작성하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첨부자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각각 제5조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자료가 면제 또는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문과 원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수의·의·약학 전문지식을 가진 번역자 또는 확인자 날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제2조제1호 신약에 해당하는 신물질인 경우 제1항의 심사자료와 함께 표준물질 또는 원료약품으로서 최순품(역가표시 인증서 포함)을 실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 2 조(수출용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 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원료 동물용의약품 성분 등에 관한 서류
2.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서류
3. 당해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취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수입품목허가를 받았거나 수입품목 신고를 한 수입자가

해당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는 때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1. 당해 제품의 **한글**표시사항(수입자, 제조업체명, 제품명, 원료성분과 분량, 성장, 효능·효과, 용법·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국가검정품 여부 및 기타 주의사항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2. 당해 제품(품목)에 대한 생산국 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 등에서 확인(공증)한 반추동물 유래물질 미사용 증명서 또는 소해면상뇌증 미감염 증명서(당해품목을 최초로 수입하거나 원료성분의 변경 등에 따라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입절차, 첨부서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외무역법」이 정한 통합공고를 준용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 6 조(제출자료의 범위) 재평가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는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자료범위에 준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수의학·약학·수산질병학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검사본부장이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가 제한적으로 공급되거나 동물질병 치료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합의의에 관한 자료(동물용의약품 복합제제에 한함).
2. 부작용등(시판 후 수집사례 및 문헌정보 등)에 관한 자료
3.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지침”에서 정한 시험자료(동등성 입증에 필요하다고 검역검사본부장이 인정하여 정하는 품목에 한함)

● 행정규칙명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 3 조(제조번호 등의 등기에 사용할 문자) ①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중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 및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중량, 규격, 재질, 증서번호 등(이하 ‘제조번호 등’이라 한다)의 등기는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외에 로마자 또는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조번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로마자와 부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마자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2. 부호 : 「#」(샤프), 「&」 (앰퍼스앤드), 「 () 」(소괄호), 「-」(붙임표), 「[]」(대괄호), 「:」(쌍점), 「”」(작은따옴표), 「,」(반점), 「.」(온점), 「/」(빗금), 「·」(가운뎃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 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등기부에 외국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규칙명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제14조(표시방법) 먹는샘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1.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다.
3.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제13조제2호와 동조제3호중 수원지 및 동조제4호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6.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2호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먹는샘물등에 대하여는 나목 및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수원지는 주 표시면의 제품명 하단에 제품명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 (이하 “넓이와 폭”을 말한다)로 하여 시·군까지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리·동」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판매하는 먹는샘물등은 주 표시면에 수원지가 소재한 국가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조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수원지 하단에 수원지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유통전문)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포장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 8 조(표시방법)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다.
3.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제7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6.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는 나목 및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취수해역의 이름은 주 표시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이하 “넓이와 폭”을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는 주 표시면에 수입한 국가명과 취수해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조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취수해역의 이름 밑에 가목의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판매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제10조(회의록의 체제 및 용어) 회의록은 가로쓰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자, 기타 외국어를 병용하거나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표기한다.

1. 인명 및 지명
2. 한글로 표기가 곤란한 경우
3. 인용되는 외국어
4. 외국어로 표기된 참고문서
5. 숫자 및 각종 기호
6. 각종 도면 및 사진

● 행정규칙명 :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4조(식별 체제) 식별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기기 또는 선원용기의 외부에 방사능표지를 부착하거나 색인 등의 조치를 하여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거나 방출할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고 있는 방사선기기에는 방사선표지, 방사선원의 종류, 방사능량, 모델번호, 제작번호, 기기공급사 및 설계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방사선발생장치에는 방사선표지, 가속입자의 최대 빔에너지(엑스선발생장치인 경우에는 최대 관전압), 가속입자의 최대 빔전류(엑스선발생장치인 경우에는 최대 관전류), 모델번호, 제작번호, 기기 공급사 및 설계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중성자를 방출하는 방사선기기는 방출되는 중성자속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우라늄을 차폐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방사

선기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6. 부적절한 설치, 조립 또는 연동장치 및 차폐물 제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 또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7. 각종 경고기능은 명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 모든 식별체계는 **한글**로 표기하고, 해당 방사선기기의 수명기간동안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연적인 제거가 쉽지 않아야 한다.

● **행정규칙명 :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

제 7 조(반출통고 목록보고) ① 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해 반출통고를 한 보세구역운영인(지정장치장의 경우 화물관리인)은 반출통고 목록(화주내역과 화물관리번호 포함)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327조제1항에 의한 전자신고 등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화주내역은 **한글**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입력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 등으로 입력할 수 있다.

③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여행자휴대품 등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되지 않는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체화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치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체화카드에 의하여 체화처리를 진행한다.

● **행정규칙명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15조(외국어로 된 서류) 관련법령, 이 훈령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제출하는 제반 서류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11.북한 수의당국은 가금육의 반출시 다음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 남한 검역당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교환에 관한 훈령」**

제19조(해외양도 및 교환 양도약정서 체결) ①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교환에 관한 양도약정서에는 다음의 각호를 포함한다.

1. 대상군수품의 수량 및 가격
 2. 수송 관련사항(수송 비용, 책임 등) 및 제3자 재양도 금지
 3. 기타 양도목적상 필요한 사항
- ② 해외양도 및 교환 양도약정서는「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814호)에 따라 **한글**과 상대국어로 작성하되 필요시 영문으로 추가 작성할 수 있으며, 군수관리관실에서 작성하여 원본은 국제정책관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군수관리관실에서 보관한다.

● **행정규칙명 :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에 관한 예규」**

- 제15조(해외양도 합의각서의 체결)** ①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에 관한 합의각서에는 다음의 각호를 포함한다.
1. 대상군수품의 수량 및 가격
 2. 수송 관련사항(수송비용, 책임 등) 및 제3자 재양도 금지
 3. 기타 양도목적상 필요한 사항
- ② 해외양도 합의각서는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국방부훈령 제814호)에 의거 **한글**과 상대국어로 작성하되 필요시 영문으로 추가 작성할 수 있으며, 원본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군수관리관실에서 보관한다. 다만, 각 군에 위임된 경우 원본은 해당군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및 국제정책관실에 제출한다.

● **행정규칙명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 제 4 조(품목허가신청서의 작성 등)** ①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수입품목허가 신청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첨부서류 등을 근거로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허가항목은 항목별로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전용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전자적기록매체(CD, 디스켓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 요약문만으로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전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수입품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의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해당 국가의 발급 관리 체계에 따라 연수의 변경은 인정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신청 민원의 처리기한 내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기재하고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 및 그 분량(주성분 및 그 규격, 부형제, 색소 등 첨가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판매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조원 및 소재지 등이 명기된 서류로서 해당 품목을 제조하고 있는 국가에서 적법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2.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 및 그 분량(주성분 및 그 규격, 부형제, 색소 등 첨가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제조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조원, 소재지 등이 명기된 서류로서 해당 품목을 허가하거나 등록 받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판매증명서

④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별표 2 및 별표 3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허가받고자 하는 품목의 제품표준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들과 해당 품목 생산에 따른 각종 기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 중 일부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고 실태조사를 받아 자료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희귀의약품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 자신이 이미 허가받은 백신을 모형으로 하고 제형, 제조방법 및 제조원이 동일한 백신인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백신의 허가 및 심사 당시 제출된 자료로서 품목허가신청서(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심사의뢰서의 제출자료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행정규칙명 :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제 8 조(지명 표기 원칙) ① 영문지명의 표기는 로마자 표기 원칙에 준하여 표기한다.

② 외국지명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준하여 표기한다.

③ 지명의 표기가 고유명사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명 등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최종 성과물 검사) ① 작업수행자는 각 공정별 작업진행에 맞게 성과물을 원색으로 출력하여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관은 성과물의 인수와 함께 성과물의 현황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자문위원회 자문사항 등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별표3의 서식에 따른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영문 및 **한글** 지명표기는 우리 원 국토조사과와 협의 후 국립국어원의 검수를 득한다.
- ⑤ 최종 검사는 인쇄용 양판필름으로 출력하여 납품용 인쇄용지에 인쇄하되 내용 전반에 대한 최종 검사를 득한 후 본 인쇄를 한다.

● **행정규칙명 :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제 5 조(한글사용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당자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소방충훈답 관리규정」**

- 제 7 조(위패봉안)** ① 매년 6월 6일 정기적으로 위패봉안 의식을 거행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 위패봉안식 일정을 변경하거나 수시 위패봉안식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 ② 위패봉안 의식절차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에 따를 수 있다.
- ③ 위패봉안 순서는 사망일 순으로 기재하며, 사망일이 같을 때에는 계급순으로, 같은 계급의 경우에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 ④ 위패에 사용되는 글씨체는 궁서체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순직자에 대한 계급은 추서된 계급으로 하며, 지방이라는 용어는 삭제한다.

● **행정규칙명 : 「수로도서지인쇄체제기준」**

- 제 9 조(표지 및 본문의 서체 등)** 서지의 표지, 배면 및 본문에 기재하는 서체 등은 다음 각호에 준한다.
1. 표지 및 배면의 서체는 고딕체형을 사용하고 본문의 서체는 명조체형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제목, 강조 등 필요한 부문에서는 고딕체형 등 다른 서체를 사용할 수 있다.
 2. 모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3. 서지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유명사, 외국어, 외래어나 혼란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에는 외국문자(한자, 영어 등)를 사용하거나 병용할 수 있다.

제12조(국영문의 상호표기) 국, 영문의 상호표기는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기준으로 표기한다.

● 행정규칙명 : 「수로서지 및 일반간행물 제작 지침」

제18조(사용언어) ① 수로서지의 언어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 표기로서 의미전달이 부족하거나 단어가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자 및 영문 등을 병기 할 수 있다.

② 외국 이용자를 위해 간행하는 수로서지는 영어를 병기한다.

제19조(국·영문의 상호표기) 국·영문의 상호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기준으로 한다.

● 행정규칙명 :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7. 수출국정부는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 (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및 돼지에 사용되는 동물약품의 판매실적 등을 명시할 것)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 돼지고기 및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 규정」

제 5 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공적 개요 및 개별공적조사서를 작성한 후,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제 2 조(표시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해당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 내지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3을 적용한다. 당해 공산품의 표면 또는 최소 단위 표장에 표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안전·품질표시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체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 8 조(한글사용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 2 조(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기록 또는 기재하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시(구)·읍·면에서의 사무처리 등) ①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국호, 지명 및 인명의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표기만 있고 해당 외국의 원지음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기재된 국호와 지명에 대한 해당 외국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를 부전지에 적어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붙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기록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통보자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이하 같다)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그 원지음을 같음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으며,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같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기재된 인명의 한자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기재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표기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그 인명이 중국에서 통용되는 간체자로 표기되어 있고, 그 간체자가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자에 대한 간체자인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간체자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 한자를 소명하지 못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인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인명표기를 중국의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도록 보정시킨 뒤, 그 보정된 원지음 표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4 조(귀화통보의 경우) ①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하 “귀화자”라 한다)에 대하여 귀화통보를 하는 경우, 그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한 원지음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귀화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귀화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 5 조(부모의 성과 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귀화자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나 그 부모에게는 우리나라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귀화자의 성·본(한자를 포함한다)은 부모는 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성·본(한자를 포함한다)을 따를 수 있다. 다

만, 이름(성을 제외)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귀화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귀화자의 명(성을 제외)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귀화자는 귀화통보서에 기재된 부모가 자신의 부모임을 증명하는 소명자료(예: 중국국적자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호구부, 친족관계공증서 등.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귀화통보서에 기재된 부모의 인명과 그 소명자료에 기재된 부모의 인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조(귀화자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① 귀화통보를 하는 경우에, 귀화자의 부모의 성명은 우리나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된 그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귀화자의 부모에게 처음부터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폐쇄)부가 없었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인명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고, 귀화자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란에는 부와 모를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한 원지음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귀화자 및 그 부모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귀화자의 부모의 인명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귀화자는 귀화통보서에 기재된 부모가 자신의 부모임을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귀화통보서에 기재된 부모의 인명과 그 소명자료에 기재된 부모의 인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

제 7 조(귀화로 인한 수반취득자의 인명표기) 귀화로 인한 수반취득자의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반취득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수반취득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 8 조(국적회복통보의 경우) 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하 “국적회복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적회복통보를 하는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국적회복통보서에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국적회복자가 처음부터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었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할 수 없는 때, 또는 당해 외국의 원지음 기록을 원하는 경우, 그 인명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국적회복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국적회복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한 원지음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적회복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국적회복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제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외국의 국호와 지명의 정정)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2조(성명 배열의 정정)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외국인의 인명이 해당 외국 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이 아닌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업무처리규칙」**

제109조(문서관리) ① 주재원은 문서처리 시 전자결재를 활용하여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FAX, 유선 등의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② 주재원의 문서관리는 주재원 수신처 및 부서기호 별표5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③ 문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 또는 현지어로 작성된 문건에 대하여 접수 처리하고 **한글**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자결재를 제외한 종이문서는 문서접수대장(별지 제12호 서식), 문서등록대장(별지 제13호 서식)등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사건본인의 이름
마. 외국식 성 또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로마자 등이 아닌 그에 대한 당해 외국에서의 발음(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함께 기재할 수 없다)을 그 원지음을 같음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같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호에 따라 처리한다.

- 행정규칙명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 8 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근로계약은 선박소유자와 외국인선원이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인선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문을 작성하여 선원 본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8. 수출국의 정부 수의관은 다음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수출국 이외에서 케이싱의 원료가 유래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해당 원료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다음 가호 ~ 다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 사본을 한국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 3 조(자료의 작성요령) ① 원료의약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자료는 제4조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하며, 분량이 많은 경우 일정한 두께로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예시 :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에는 전체 번역문(의·약학 전문지식을 갖춘 확인자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제 3 조(자료의 작성요령) ① 원료의약품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원료의약품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자료는 제4조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하며, 분량이 많은 경우 일정한 두께로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예시 :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에는 전체 번역문(의·약학 전문지식을 갖춘 확인자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제39조(소득자료의 작성요령) ① 소득자료의 작성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써넣는다.

② “주민등록번호(납세번호)란??에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사업소득 원천징수 시 사업자등록이 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입한다.

● 행정규칙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1조(승인 신청 및 제출기준 등) ①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인체위해성 및 환경위해성 심사를 받은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와 동일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에서 인체 위해성 및 환경위해성 심사와 관련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2.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한다.

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 4호 서식의 “환경방출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 13호 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② 수입 또는 생산승인 신청 전에 환경위해성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위해성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환경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제출은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다.

2.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문 또는 영문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4-8조(환경위해성 심사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환경위해성에 관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에 대한 심사를 미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제4장에서는 “신청자”라 한다)는 인터넷에 사전접수완료 후, 별지 제 4-2호서식의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심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첨부서류 중에서 심사자료는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자료 20부와 디스켓 또는 CD 등의 전자문서 2부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자료가 외국의 자료일 경우에는 원문 및 **한글**로 번역한 요약문을 각각 제출한다. (이하 생략)

제4-13조(표시방법 등)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등을 하는 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를 모선 또는 컨테이너 등에 적재되어 산물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신용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표시하고,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포장 단위별로 각각의 용기포장에 제2호와 같이 표시한다.
2.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마대, 비닐봉지, 캔 등의 포장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표시사항을 포장 겉면에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하되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며 글자 크기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한다. 또한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문 또는 영문명을 병기할 수 있다.
3.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산물상태로 국내 운송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의 표시사항을 운송장 등에 기재하여 비치하거나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운송차량에 표시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제 4 조(기재·서식 등) ① 유치원생활기록부는 **한글**로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유치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② 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기록부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아가 학기중 또는 1년 과정이수 후 전학할 경우 유치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유아의 생활기록부 출력물 또는 저장매체를 전학하는 유치원에 송부하고, 퇴학할 경우에는 유치원생활기록부에 퇴학일을 기재하여 3년간 보관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④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조(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중앙에 두선을 그어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삭제 또는 수정된 곳에 날인하며,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생활기록부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관인을 날인한다.

제 6 조(인적사항)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한다.

1. 유아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국 언어로 기재할 수 있다.
2. 성별은 해당하는 곳에 남, 여로 기재한다.

3. 생년월일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다.
4. 주소는 입학당시의 주소와 변경된 주소를 차례로 기재하고, 졸업 당시의 주소를 최종적으로 기재한다.
5. '가족상황'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6. '특기사항'란에는 형제자매, 가족의 구성형태, 다문화 가정 여부 등을 기재한다.

● 행정규칙명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8조(사용문서의 한글화) ① 은행은 당해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내규 등 제반 문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및 국제상관습상 영문표기가 불가피한 경우나 대고객 및 감독·검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고객 관련서류 : 한글
 2. 회계관련서류 : 한글. 다만 컴퓨터 출력자료의 경우 “한글조건표” 비치로 대체가능
 3. 내규 및 기타서류 :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요약표” 첨부로 대체 가능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한글조건표 및 한글요약표는 감독·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문서의 한글화는 개점일로부터 2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④ 은행이 대고객 관련서류를 한글과 외국어를 병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주된 문자로 하고 외국어를 보조문자로 사용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심사의뢰서 작성) ① 시행규칙 별치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

1. '의뢰인'란은 제조(수입)업체와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제조(수입)업체'란은 명칭(상호), 업허가번호,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업허가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제조원(수입 또는 제조공정 전부 위탁의 경우)'란은 제조자와 제조의뢰자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자와 제조의뢰자가 동일한 경우 하나로 기재할 수 있다.

4. ‘심사의뢰의 구분’란은 안전성·유효성심사와 기술문서 심사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심사의 경우는 안전성·유효성 자료제출과 기술문서 자료 제출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5. ‘심사의뢰 품목’란은 각 항목은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7조의 첨부자료 중 당해 제품의 특성상 첨부자료의 일부가 불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주요사항을 발췌한 **한글** 요약문 및 원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 제 3 조(제출자료의 작성)** ①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자료는 제4조의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자료가 면제 또는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 요약문(주요발췌사항)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원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번역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 제 4 조(제출자료의 요건과 작성요령 등)** ① 재평가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요건과 작성요령은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에 준하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시판후 수집사례, 문헌정보 등)에 관한 자료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주요사항을 발췌한 **한글** 요약문 및 원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다만, 의료기기 수급과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제27조(자료의 작성 등)** ①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제26조에 따른 첨부자료

등을 식약청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전자적 기록매체(CD·디스켓 등)와 함께 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자료는 제26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상 첨부자료의 일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의 자료는 주요사항을 발췌한 **한글** 요약문 및 원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번역물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어외의 외국어 자료는 공증된 전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사전검토 신청) ①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이하 “사전검토 신청자”라 한다)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의2 의 의료기기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는 서류 등은 전자적 기록매체(CD·디스켓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의 자료는 주요사항을 발췌한 **한글** 요약문 및 원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전검토 신청자는 사전검토신청서에 사전검토 신청내용과 관련된 의료기기의 개발배경 및 단계, 희망하는 회의일자, 사전검토회의에 참석을 희망하는 부서 등을 기재하고, 사전검토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전검토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신청 전·후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검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행정규칙명 :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 5 조(업무절차) 의무장비 심의규정에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1)

1. X-1년 8월에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된 장비에 대해서 사용부대로부터 장비별 선정모델을 각 군 본부·각 국직부대 본부에서 종합한다.
2. 수요군(각 군 본부·각 국직부대 본부)별로 X-1년10월 31일이전에 1차(전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달계획 장비에 대한 내·외자 조달원을 결정하고, 공통규격서 작성을 위한 추천 장비모델을 결정한다.
3. 1차(전문) 심의 결과 가결된 품목은 심의결과를 종합·보완하여 공통규격서 초안을 작성하며 국방부 확대심의 대상장비는 관련업체에 설명회를 실시하며, 수요군 심의종결장비는 필요시 업체설명회 등을 통해 2차(수요군 본심의)심의를 위한 공통규격서(안)을 보완 작성한다. 외자조달장비는 영문 공통규격서와 **한글** 공통규격서 등 2종류로 작성한다.
4. 1차(전문) 심의결과 가결된 품목 중 1억원 미만 품목은 X-1년 12월 25일 까지2차(수요군 본심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통규격서를 확정하고, 심

의결과를 X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한다.

5. 1차(전문) 심의결과 가결된 품목 중 1억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 X-1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국방부확대심의를 건의한다.

6. 국방부는 X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관(보건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확대심의회위원회를 개최하여 공통규격서를 확정한다.

● 행정규칙명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 9 조(원료약품 및 그 분량) ① 제제의 경우 그 주성분의 유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제형을 선택하고 이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은 제제학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으로 정한 기재요령에 따라 각 성분마다 배합목적, 성분명, 규격, 분량(질량·용량·역가·소요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추출·분획물의 사용 시에는 추출·분획물의 명칭(규격)으로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유효성분의 함량은 약리학적 자료 및 임상시험성적 등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복합제의 경우에는 각 성분의 배합의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품목 또는 제제별로 유효성분과 부형제 등 성분의 배합목적을 명시하여 주성분부터 첨가제(일반적으로 실제 제조시의 투여량 또는 투입순서 등에 따른다)의 순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1. 산제·과립제 또는 분포환제류는 “1 포(질량 또는 환수 표기) 중” 또는 “1회 용량(질량 또는 환수 표기) 중”의 함량으로 한다.
2. 정제·캡슐제·환제(분포환제 제외) 또는 트로키제는 “단위제형[1 정, 1 캡슐, 1 환 등](질량 표기) 중”의 함량으로 한다.
3. 산제, 액제, 연고제, 크림제, 로션제, 젤제, 페이스트제, 유제 등은 “100밀리리터 중” 또는 “100그램 중”의 함량(v/v, w/v, w/w) 다만, 분말형 시럽제는 “100그램 중”의 함량(용제의 양도 동시 기재한다)으로, 1회용 제제는 “단위포장[1 병, 1앰플 등](용량 표기)중”으로 각각 기재할 수 있다.
4. 피부에 직접 부착하는 제제는 “1 매(면적·질량 표기) 중”의 함량으로 하거나 “단위면적(예 : 1cm²) 중”의 함량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위면적 중 함량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필요시 매의 크기(2×2 cm², 4×2 cm² 등)를 병기할 수 있다.
5. 에어로솔제는 “100그램 중”(원액과 분사제의 양 구분 표기)의 함량으로 한다.
6. 그 밖에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중 개별단위로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단위제형[개, 개비 등](질량 또는 용량 표기) 중”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각 원료약품의 성분명과 규격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분명은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각 해당 규격근거에 기재된 명칭을, 별첨규격의 경우 일반명 또는 그 성분의 본질을 대표하는 명칭을 각각 주성분과 수화물을 구분하여 **한글**로 기재한다. (이하 생략)

제22조(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작성) ①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자료는 제25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각각 제23조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자료가 면제 또는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의·약학 전문지식을 갖춘 확인자 날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의 작성)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에 따라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위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심사의뢰서를 식약청장이 정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전자적기록매체(CD·디스켓 등)로 제출한다.
2. 심사의뢰서 심사결과 적합 통보된 의약외품에 대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결과통지서 원본(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3. 의뢰인란에는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른 제조업자·수입자의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를 각각 기재한다.
4. 제품명은 제7조에 따라 기재한다.
5.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은 통상 “별첨”이라고 기재하고 첨부문서에 제9조에 따라 기재한다.
6. 성상은 제10조에 따라 기재한다.
7. 제조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사용기간은 “별첨”으로 기재하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다.
8. 비고란에는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른 제조원, 허가조건(수출용, 군납용 또는 관납용) 등 필요한 사항을 각각 기재한다.

9.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한 품목이 있는 경우는 회사명, 제품명 등을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②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1항의 첨부자료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헌, 상용표준품, 제제에 사용된 원료약품,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 기구, 균주 및 배지 등은 따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의·약학 전문지식을 갖춘 확인자 날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품목신고를 위해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29조(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① 원료의 별첨규격은 별표 5의 원료의 별첨규격 작성 예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별첨규격 중 작성항목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원료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제3항의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기재한다. 필요에 따라 이 항목 이외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원료의 별첨규격 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한다.

1. 명칭

가. **한글**명은 제9조제3항 및 식약청장이 정한 의약품 명칭작성 요령에 따라 기재한다. (이하 생략)

제44조(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및 심사자료의 작성) ①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은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로 한다.

②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44조에서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자료는 제47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각각 제45조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자료가 면제 또는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의·약학 전문지식을 갖춘 확인자 날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

제 3 장 생약(한약) 제제

(생약(한약) 제제의 일반적 사항)

제 3 조 의약품의 일반적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한글명은 의약품의약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 및 식약청의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하고 약용부위를 병기한다. 영문명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명칭을 사용하고 약용부위를 병기한다.

● 행정규칙명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2조(원료약품 및 그 분량) ① 제제의 경우 그 주성분의 생체이용률 등 유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제형을 선택하고 이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은 제제학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 2항으로 정한 기재요령에 따라 각 성분마다 배합목적(원료의약품은 생략 가능), 성분명, 규격, 분량(질량·용량·역가·소요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추출·분획물의 사용 시에는 추출·분획물의 명칭(규격)으로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유효성분의 함량은 약리학적 자료 및 임상시험성적 등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복합제의 경우에는 각 성분의 배합의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품목 또는 제제별로 유효성분과 부형제 등 성분의 배합 목적을 명시하여 주성분부터 첨가제(일반적으로 실제 제조시의 투여량 또는 투입순서 등에 따른다)의 순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각 원료약품의 성분명과 규격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분명은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각 해당 규격근거에 기재된 명칭을, 별첨규격의 경우 일반명 또는 그 성분의 본질을 대표하는 명칭을 각각 주성분과 수화물을 구분하여 **한글**로 기재한다. (이하 생략)

제26조(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작성) ①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품목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자료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각각 제5조 및 제8조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자료가 면제 또는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제공

통기술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생략의 사유 대신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③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의·약학 전문지식을 갖춘 확인자 날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기준 및 시험심사 의뢰서의 작성)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에 따라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위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고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절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1항의 첨부자료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헌, 상용표준품(항생물질인 경우 공인된 것), 제제에 사용된 원료의약품,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 기구, 균주 및 배지 등은 따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의·약학 전문지식을 갖춘 확인자 날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품목신고를 위해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33조(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 ①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은 별표 11의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 작성 예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별첨규격 중 작성항목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원료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제3항의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이 항목 이외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원료의약품 별첨규격 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한다.

1. 명칭

가. **한글**명은 제12조제3항 및 식약청장이 정한 의약품 명칭작성 요령에 따라 기재한다. (이하 생략)

● 행정규칙명 :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 3 조(자료의 작성) ①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변경)신청시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자료는 제4조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각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자료가 면제 또는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 요약문(주요 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임상시험계획서, 피험자동의서 및 설명문에 있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 6 조(제출자료의 범위) ① 재평가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및 「생물학적제제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자료범위에 준하되 다음 각호의 자료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 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의·약학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현행 의약품 수급체계에 의해 제한적으로 공급되어 환자의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합의의에 관한 자료(복합제에 한함).
2. 유해사례등(시판 후 수집사례, 문헌정보등)에 관한 자료
3.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자료(비교용출시험자료로 가능한 경우 비교용출시험자료)(대조약으로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의약품동등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품목에 한함)
② 제1항의 제출자료 이외에 추가로 국내 사용현황을 재평가자료로써 제출하고자 할 경우 최근 3년간 국내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 6 조(세부 기재방법) ① 법 제56조제9호 및 제58조제1호에 따라 용법·용량, 그 밖의 사용 또는 취급할 때 필요한 주의 사항을 외부 용기나 포장에 기재

- 할 때 이들 내용이 첨부문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재요령 및 순서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 ②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항은 글상자 안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항목의 제목은 굵은 글씨, 음영, 색상, 글상자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눈에 띄게 표시할 수 있다.
- ③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는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판매되는 단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④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년○○월○○일”, “○○.○○.○○”(연. 월. 일), “○○○○년○○월○○일” 또는 “○○○○.○○.○○”(연. 월. 일)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다만, 연, 월, 일의 표시순서가 전단의 표시순서와 다를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 월, 일의 표시순서를 용기나 포장에 예시하여야 한다.
- ⑤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은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기재하고, 보존제, 타르색소 및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
1. 보존제 : 명칭 및 그 함량(예, 첨가제(보존제): 벤조산나트륨 10mg)
 2. 타르색소 : 명칭(예, 첨가제(타르색소): 황색 5호)
 3. 동물유래성분 : 성분명, 기원 동물 및 사용부위
- ⑥ 소아용 의약품은 용법·용량을 연령·월령에 따라 표로 기재할 수 있다.
- ⑦ 착색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감기약(내용액제에 한함)의 경우에는 용기 또는 외부포장에 “무색소(Dye-Free)” 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의 문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기재사항은 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고딕체류와 같은 읽기 쉬운 글자체의 **한글**을 사용하여 각각의 글자가 겹쳐지지 않도록 하며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⑨ 용기나 포장에는 자세한 품목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업체 홈페이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전자민원창구(ezdrug.kfda.go.kr)의 ‘의약품등 정보’란 참조 등)을 기재한다.

● 행정규칙명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3.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된 경우의 처리방식
- 가. 재외공관, 동사무소에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이름자중 1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

를 착오로 수리하여 등록기준지(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구)로 송부해 온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후보안을 최고(권고)를 하되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출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제3항, 제60조제2항제5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54호, 제111호 참조)

다. 위 “나”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뜻을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와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이름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 행정규칙명 :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 2 조(인명용 한자의 심사) ①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1991. 4. 1. 이후에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때는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가 인명용 한자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는 한자의 자체(자체)와 **한글** 표기가 인명용 한자표에 기재된 것인지도 조사하여야 한다.

제 3 조(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출생자의 이름에 포함된 경우의 처리) ①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인이 권고에 따라 출생신고서의 반력을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권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제1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출생자의 이름 중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에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 좌측여백에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가 날인한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이름에 쓰인 한자 중 1자만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름 전부를 **한글**로 기록한다.

제 4 조(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의 보고) ① 시(구)·읍·면의 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 경우 출생자의 이름으로 신고된 한자로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의 자체(자체)와 발음을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법원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분기마다 다음달 20일 까지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인명용한자 추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1. 인명용한자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1991. 4. 1. 이후에 출생신고된 자녀의 이름이 출생신고서에는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로 신고된 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출생자의 이름이 **한글**로 기록되었으나 그 신고된 한자가 종전「호적법 시행규칙」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추가된 인명용한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출생신고인(신고인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종전에 **한글**로 기록된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록한다.

● **행정규칙명 :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5.7.5.1 측정기의 품명을 기재할 때에는 **한글** 또는 원어로 기입할 수 있으나,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어 그대로 기입한다.

• 행정규칙명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제 2 조(안전기준) ① 제1조의 안전기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다만, 석면제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술표준원장이 별도 고시하는「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5조(한글 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다만, 전문용어 등 특수한 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 3 조(표기방식) ① 현판에는 **한글**과 영어 또는 **한글**과 여타 외국어를 병기한다. 다만, 일본과 중국주재 공관의 현판에는 **한글**과 영어 그리고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중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부착하는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한글** 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사관 : 대한민국대사관(대한민국대사관저)
2. 총영사관 : 대한민국총영사관(대한민국총영사관저)

③ 제2항의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영어 등 외국어 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본항 제9호의 기타 외국어 표기는 본부와 해당공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호 생략)

④ 대표부, 분관, 출장소 등의 **한글**표기는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8조 및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제3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고, 영어 등 외국어표기는 본부와 해당공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행정규칙명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 4 조(외국의 한자 지명의 기록) ①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의 지명을 한자로만 표기하고 한글표기를 하지 않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고서의 한자로 표시된 지명 옆에 그 한자 지명에 대한 해당 외국에서의 발음을 한글로 괄호 안에 함께 기재하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한자로 된 외국지명을 해당 외국에서의 발음을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록한다.

● 행정규칙명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1조(표시방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등의 표시,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으로 제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인증번호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안전인증번호는 제품분류와 지역구분을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제품명칭의 표시는 규칙 제3조 별표 2,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에서 규정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조 별표 2 또는 별표 3에서 규정한 명칭이외의 것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조 별표2,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명칭 다음에 괄호로 명칭을 부가하여 병기할 수 있다.
2. 안전인증표지는 안전인증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표지는 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는 당해제품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구조상 당해 제품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꼬리표 또는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다.
4.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 행정규칙명 :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5.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조사료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동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수출식물위생증명서에 동 내용을 부기하여 발행하여야한다.

• 행정규칙명 : 「조약 및 기관간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 8 조(조약 및 기관간 약정안의 작성) ① 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및 기관간 약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국내관계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익이 최대한 보장되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상호평등성과 공평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약 및 기관간 약정안에는 체결근거, 목적, 합의사항, 분쟁해결조항, 유효기간, 수정 및 폐기방법, 발효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체결일자 및 서명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기관간 약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간의 국제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
2. 기정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
3. 입법이 필요한 사항
4.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
5. 관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세금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
 - 나. 국가시설, 그 밖의 국유재산 제공에 관한 사항
 - 다. 재판권의 면제에 관한 사항
 - 라.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제나 특권을 부여하는 사항

④ 업무소관부서는 기관간 약정 체결 시 상대 외국 정부기관이 이를 조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기관간 약정에 명시한다.

1. 이 약정은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2. 이 약정은 양국 각자의 국내 법령의 틀 내에서 그리고 양측의 가용 재정 및 인력의 범위에서 이행된다.

⑤ 조약 및 기관간 약정안은 **한글**과 상대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한글**과 상대국어 이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3국어(영어 등)로 추가 작성할 수 있다.

• 행정규칙명 :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 4 조(도면의 작성기준) ① 컴퓨터를 이용하여 축척이 서로 다른 지적도, 임야도 및 도시계획도등을 당해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동일한 축척으로 확대 또는 축소한 다음 그 주요내용을 하나의 도면에 합성하여 표시하되, 전지(A0) 크기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읍·면·동 등의 행정구역명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며, 행정구역간의 경계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도면에는 지번을 찾기가 용이하도록 당해지역에 위치한 주요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을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용도지역·용도지구와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지역·지구등)을 표시하되, 글자의 크기와 굵기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오류사항의 정정이나 새로운 내용의 추가등 기입력된 자료의 수정·보완이 가능하여야 한다.
- ⑥ 지가의 정확한 기재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프로그램의 지가전산자료와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 제 9 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 제162조(주기의 취사선택)** ① 행정구역 고유 명칭은 모두 표기하고 그 표현은 한자를 원칙으로 하며,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 **한글**로 한다.
- ② 주거지, 하천, 호수, 못, 바다, 만, 산, 도서, 도로 및 철도(역 포함) 등의 명칭은 표기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표시한다.

③ 제2항 이외의 자연 및 인공적 지형지물의 명칭은 용도상의 필요성, 표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한다.

제164조(글자의 종류)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한글**, 한자, 영문자 및 숫자를 원칙으로 하며, **한글** 및 한자는 지명 및 기타 고유명 등에 사용하고, 숫자는 삼각점, 수준점, 표고점, 등고수치, 도로번호 등에 사용된다.

제210조(도엽명) ① 도엽명은 외도곽 중앙 상부, 우측 상부에 **한글**로 표시한다.
②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 **행정규칙명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10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쓴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 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 **행정규칙명 :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위생조건」**

7. 수출국정부는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및 돼지에 사용되는 동물약품의 판매실적 등을 명시할 것)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명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 6 조(약관의 적용)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

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몰의 경우 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출력에 제한이 있는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화면에 나타나게 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내주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약관의 사본을 다운로드 또는 인쇄 할 수 있는 조치를 사이버몰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업자가 제2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행정규칙명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제32조(데이터요소 등의 명명을 위한 일반규칙) ① 데이터요소의 이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명명하여야 한다.

1.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행정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행정표준용어만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2. 명명하고자 하는 용어가 행정표준용어사전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데이터요소의 이름이 행정표준용어의 조합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 행정표준용어를 언더스코어('_')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4. 데이터요소의 이름이 행정표준용어의 조합에 상응하는 의미 이외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경우 신규 행정표준용어로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작성하는 행정표준용어는 언더스코어('_') 연결 없이 사용한다.

②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행정표준용어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행정표준용어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신청 용어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명확하고 함축성 있으며 익숙한 업무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3. 신청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말이 국어사전에 없거나 업무상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문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신청 용어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의 이름인 경우,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등에 **한글**사용이 제약되는 경우 **한글**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5. 신청 용어에는 아라비아 숫자의 사용이 가능하나 이름의 선두에 올 수 없으며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6. 신청 용어에는 언더스코어(_) 이외의 특수문자와 공백은 허용하지 않는다.
 7. 신청 용어는 전체 주제영역에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한다.
 8. 신청 용어의 주제영역은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다.
 9. 신청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면서 다르게 표현된 이음동의어들 중, 타 용어와 자연스러운 결합이 용이하거나 혹은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행정표준 용어로 정하고 그 이외의 용어는 동의어로 정의한다.
 10. 조직, 조직체계, 규정, 양식, 화면 혹은 보고서의 이름은 일반명사 또는 고유명사화 된 경우에 행정표준용어로 신청 할 수 있다.
 11. 신청하고자 하는 행정표준용어의 영문약어 길이는 최대 6자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표준담당부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 6자를 넘는 영문약어명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데이터요소 명명을 위한 정의된 구분자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는 데이터 도메인 정의서(별지 제17호 서식 붙임1)에 따라 작성하여 표준담당부서에 신청한다.
- ④ 행정DB의 구축 또는 개선사업 수행단계에서 작성한 모든 데이터요소의 이름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데이터사전 정의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데이터요소 등의 설명을 위한 일반규칙) ① 지침의 데이터요소 등을 설명함에 있어 다음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른다.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영문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
2. 해당 주제영역에서 다른 설명과 구별될 수 있게 유일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데이터 요소의 설명에 표현된 개념은 단수로 표현되어야 한다. 다만 개념 자체가 복수인 것은 예외로 한다.
4. 서술적 구 또는 서술적 문장으로 표현해야 하며 문법적으로 정확해야 한다.
5.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서 약어가 아닌 전체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6. 이해의 편의성을 위하여 예시만으로 데이터 요소의 설명을 작성 할 수 있다.

【부 록 3】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2일 법률 전문(투봉법)

(La loi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제 1 조

- ①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공화국 언어인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인격과 자산의 근본적 요소이다.
- ② 프랑스어는 교육·연구·의사전달 및 공공서비스의 언어이다.
- ③ 프랑스어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 속하는 국가들의 특권이다.

제 2 조

- ① 재산과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 제공, 게시, 사용법 또는 활용법 및 보증의 범위와 조건 기타 계산서와 영수증 등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서면이나 구두에 의한 시청각 광고에도 적용된다.
- ③ 이 조의 규정은 다수 국민에게 알려진 외국이름의 대표적 제품과 특수한 제품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와 함께 등록된 기재와 메시지에 이 조의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 ①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 또는 공공 운송 수단의 장소에서 일반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용도로 공공적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게시 또는 공고는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3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한 문구를 공익법인에 속하는 재산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사용자에게 본인 부담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확인된 부정행위를 중지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최고에 의한 방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계약규정 또는 그에게 허용된 용어를 불문하고 위반자에게 재산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 조

- ① 공익 법인 또는 공공 서비스 임무를 시행하는 개인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게시 또는 공고가 번역의 대상이 될 때에는 적어도 두 가지 언어의 번역이 있어야 한다.
- ② 이 법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서 명시한 기재와 게시 및 공고가 하나 또는 다수의 번역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프랑스어 제시가 외국어 제시에서와 동등하게 읽을 수 있고 청취할 수 있도록 이해되어야만 한다.
- ③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국제 운송 영역에서의 조건은 국무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조

- ① 공익 법인 또는 공공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관여한 계약은 그 대상과 형태를 불문하고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계약은 이 법의 규정에서 명시한 조건 속에서 승인된 동일한 의미의 프랑스 표현 또는 용어가 있을 때에는 외국어 표현과 용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조는 자국영토 밖에서 전적으로 수행하는 상공업적 성격의 활동을 관리하는 공익법인, 프랑스은행 또는 신탁공탁금고가 체결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의 적용을 위하여 일반과 세법전 제1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건하에 발행된 공채와 1996년 7월 2일의 금융 활동현대화 법률 제96-59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 서비스 공급과 관련되고 그 시행이 외국 법률에 종속하는 계약은 해외에서 전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조에서 규정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외국인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은 프랑스어 작성 이외에도 입증할 수 있는 하나 혹은 다수의 외국어 버전을 가질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에 대립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외국어로 작성된 규정을 이용할 수 없다.

제 6 조

- ① 프랑스 내에서 프랑스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주최하는 전시, 토론 또는 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프랑스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 ② 행사계획을 제시하기 위하여 회의 개시 이전과 도중에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문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하나 또는 다수의 외국어 번역문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전시, 토론 또는 회의에서 준비 서류 또는 작업 서류를 배부하여야 하거나 결의안 또는 작업 보고서를 출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로 제시한 서류 또는 부속자료는 적어도 프랑스어로 된 요약본을 수반하여야 한다.
- ④ 이 조는 외국인만이 관여하는 전시, 토론 또는 회의와 프랑스의 국외 무역 진흥에 관한 회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 공익 법인 또는 공익 서비스 임무를 띤 사단법인이 이 조에서 의도하는 발표를 주최하는 경우 번역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 7 조

공익 법인이나 공공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공공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개인이 발행하고 프랑스에서 보급되는 출판물과 잡지 및 홍보물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때에는 적어도 프랑스어 요약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조

노동법전 제L.121조의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L.121조의1 ② 서면으로 공증하는 근로 계약은 프랑스어로 작성한다. ③ 근로 계약의 대상에 상응하는 프랑스어 용어가 없어 부득이하게 외국어 용어를 사용하여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 계약에 관한 외국어 용어에 대하여 프랑스어의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근로자와의 계약이 문서로써 공증되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계약서는 해당 외국인의 모국어 및 번역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의 계약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해당 두 가지의 계약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근로자는 모국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만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9 조

노동법전 제L.122조의39 다음에 제L.122조의39의 1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L.122조의39의 1 ① 근로자의 의무가 포함되거나 작업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이해가 필요한 문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한다. 해당 문서는 하나 또는 다수의 외국어 번역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이 조항은 외국으로부터 접수되거나 외국인에게 한정된 문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9 조의3

노동법전 제L.122조의37 제1항과 제3항 중 “제L.122조의34와 제L.122조의35”를 “제L.122조의34, 제L.122조의35와 제L.122조의39의 1”로 개정한다.

제 9 조의4

노동법전 제L.132조의2 다음에 제L.132조의2의 1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L.132조의2의 1 단체 협약 및 협정, 기업 및 기관의 협약은 프랑스어로 작성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규정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다.”

제10조

노동법전 제L.311조의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외국어로 작성된 텍스트. ⑨ 서비스 또는 근로 제공에서 상응하는 프랑스어 용어가 없어 부득이하게 외국어 용어에 의해서만 지칭될 수 있을 때에는 제2호의 의미 속에서 잘못을 유도하지 않도록 프랑스어 교본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⑩ 제9항의 규정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사용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프랑스 영토 내에서 실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며, 제공자 또는 사용자의 국적이 프랑스인 경우에는 외국어의 완벽한 이해가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프랑스 밖에서 실시되는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출판업체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외국어로 작성된 고용 제공을 프랑스 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

제11조 (2000년 6월 15일의 법률명령 제2000-549호에 의한 폐지)

① 외국어 교육과 지방 및 외국 문화의 필요성이 증명된 경우 및 외국의 교환 교수와 초빙 교수에 의하여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

시험 및 경쟁시험에서의 언어와 사설 및 공립 교육 기관에서의 석·박사 학위 언어는 프랑스어로 한다.

② 외국 학교와 외국 국적의 학생 수용을 개방한 특수학교 기타 국제적 성격의 교육을 하는 학교에 관하여는 이 조의 의미를 면제한다.

제11조의2

1989년 7월 10일 교육 대강에 관한 법률 제89-486호 제1조 제2항 다음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③ 프랑스어의 구사와 두 가지의 다른 언어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인 교육목표의 한 부분이다.”

제12조

1986년 9월 30일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86-1067호 제2장 제1절 앞에 제2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20조의1 ① 영화와 시청각 원본의 작품을 제외하고 방영과 보급의 형태를 불문하고 기구의 공고 방송과 광고 메시지 또는 청각 및 텔레비전의 서비스에서 프랑스어 사용은 의무적이다. ② 이 법 제2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은 전체 또는 부분이 외국어로 작성된 텍스트의 음악 작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는 외국어 보급을 위해 전적으로 구상되었거나 언어 습득이 목표인 프로그램, 그 일부와 그 속에 포함된 광고 및 문화예절의 재방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방송과 메시지가 외국어 번역을 동반할 때에는 프랑스어 제시가 외국어 제시에서와 동등하게 읽을 수 있고 청취할 수 있고 이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4조의2 제6항 다음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⑦ 프랑스어에 대한 존경과 프랑스어사용공동체의 번영

2. 제28조 제4호 다음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2. 프랑스어에 대한 존경과 프랑스어 사용 공동체의 번영을 보장하는 데 적합한 규정

3. 제33조 제2호 다음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2 프랑스어에 대한 존경과 프랑스어 사용 공동체의 번영을 보장하는 데 적합한 규정”

제14조

- ① 외국어 표현 또는 용어로 구성된 상업 및 서비스 상표는 이 법률에서 명시한 조건 속에서 승인된 동일한 의미의 프랑스 표현 또는 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공익 법인에게 금지한다.
- ② 제1항의 금지는 공공 서비스 임무를 띤 사단법인이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적용된다.

제14조의2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조

- 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기관에 대하여 부여하는 모든 성격의 보조금 지급은 이 법률규정의 준수와 연계한다.
- ② 이해 당사자가 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 ① 형사소송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하는 사법 경찰관 외에 소비법전 제L.215조의1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열거하는 공무원은 이 법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을 조사하고 확인할 자격이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은 주거로 사용되는 장소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법전 제L.216조의4 제1항에서 열거한 장소와 운송장소 및 동 법전 제L.216조의1에서 언급한 활동이 행해지는 장소를 주간에 출입할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정보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취득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국사원 규칙이 명시한 조건 속에서 문제가 된 재산 또는 물품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다.

제17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직·간접으로 기피하거나 모든 필요한 방법으로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형사법전 제433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제18조

- ① 이 법의 적용에 의하여 채택된 텍스트의 규정에 대한 범죄는 반대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증거가 되는 조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 ② 조서는 종결 후 5일 이내에 공화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를 무효로 한다.
- ③ 이해 당사자에게도 조서의 사본이 동일 기간 내에 송부되어야 한다.

제19조

형사소송법전 제2조의13 다음에 제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2조의14 정관에 의하여 프랑스어 보호를 목적으로 삼고 정기적으로 신고하며 국사원 규칙이 정한 조건 안에서 승인된 모든 협회는 1994년 8월 4일의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 제94-665호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적용을 위하여 채택한 텍스트 규정 위반에 관하여 시민고소인으로 인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

이 법은 공공질서로부터 유래한다. 이 법은 그 효력을 발생한 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제21조

이 법의 규정은 프랑스의 지방 언어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적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을 반대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정부는 이 법과 국제기구에서 프랑스어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 또는 국제 조약의 규정의 적용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9월 15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 ① 제2조의 규정은 이에 관한 범죄를 정의하는 콩세이데타 데크레가 공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늦어도 이 법이 관보에 공포된 지 12월이 경과하면 발효한다.
- ②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제2조가 발효된 날부터 6월이 경과 후에 시행한다.

제24조

1975년 12월 31일의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 제75-1349호는 이 법 제2조가 시행하는 날부터 폐지하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이 법 제3조가 시행하는 날부터 폐지하는 제6조를 제외하고 전부 폐지한다.

【부 록 4】

2008-2011년 문화공보부 불어총무처 연례보고서 목차

2008년도 보고서	법적 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 임금노동자 - 학계 - 고등교육 - 방송미디어
	언어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활동 - 이민자 대상 학습장치 - 언어와 기초지식의 숙달 - 직업과 프랑스어
	언어변화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사용실태조사 - 언어 개발
	언어적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언어들 - 프랑스의 외국어들
	국제기구에서의 프랑스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 국제법 기구들
	세계속의 프랑스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어권의 활동 - 프랑스어 보급
2009년도 보고서	공공서비스에서 프랑스어 사용과 다언어주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규: 「투봉법」과 96년 7월 3일 자 법령 - 프랑스어 어휘 개발 - 공공업무의 언어들 관련 설문조사 - 대중교통 - 번역, 현대행정의 핵심
	노동계와 사회생활에서 프랑스어의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노동자 - 소비자 정보 - 학계 - 방송미디어
	프랑스어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활동 - 성인 대상 활동 - 통합을 위한 프랑스어 학습
	언어적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사용실태조사 - 프랑스의 언어들 - 다언어주의 진흥

	다언어주의 삼부회	
	유럽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기구들에서의 프랑스어 - 유럽 시민 대상 소통과 프랑스어 - 다언어주의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주재 국제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소속 기구들 - 아프리카 연맹 - 아프리카의 하위 기구들
	세계 속의 프랑스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어권의 활동 - 유럽에서 프랑스어 진흥 -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어 보급 - 프랑스어정책을 위한 활동
2010년도 보고서	사회생활에서 프랑스어의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정보 - 대기업의 언어들 - 학계 - 방송미디어 - 프랑스어 어휘 개발
	프랑스어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활동 - 국립문맹퇴치원 - 성인 대상 활동 - 통합에 봉사하는 프랑스어 학습
	언어적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언어들 - 해외지역의 언어문제 - 다언어주의, 문화적 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 - 언어들 비중
	디지털 세상과 프랑스어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어와 인터넷 - 표준화 - 인터넷 권리 포럼
	유럽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어의 현저한 퇴조 - 문서작성 원어 - 스웨덴과 스페인 의장국 기간의 프랑스어와 다언어주의 - 유럽 시민 대상 소통과 프랑스어 - 유럽 기구들 - 프랑스와 프랑스어권 활동
	무역과 개발 담당 국제기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CTAD - WTO - UNPD - OECD - 세계은행과 IMF

	세계 속에서 프랑스어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어권의 활동 - 유럽에서의 활동 - 마그레브에서의 프랑스어 진흥
2011년도 보고서	다언어주의 인지	
	법적 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 노동계 - 방송미디어 - 접근성에 봉사하는 언어
	지식 생산과 전달 그리고 프랑스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과 연구에서의 프랑스어 - 프랑스 사상 보급 - 프랑스어 어휘 개발 - 표준화
	프랑스어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활동 - 국립문맹퇴치원 - 성인 대상 활동 - 통합을 위한 프랑스어 학습
	디지털 세상과 프랑스어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디지털화 - 위키백과와 프랑스어 - 네이밍과 프랑스어 - 공공 프로젝트 - 언어적 다양성,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
	언어적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언어들 - 오크어의 상황 - 아랍어 교육 - 해외지역을 위한 전략
	유럽 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기구들에서의 프랑스어 - 벨기에와 헝가리 의장국 기간의 프랑스어와 다언어주의 - 기자실의 언어적 관행 - 유럽 시민 대상 소통과 언어들 - 대외활동의 언어적 관행 - 프랑스와 프랑스어권의 활동
	국제기구: 유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사무국 - 제네바 사무소 - 비인 사무소
	세계 속의 프랑스어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어권의 활동 - 다언어주의와 프랑스어 교육

【부 록 5】

中华人民共和国 国家通用语言文字法

时间：2007-06-22

(2000年10月31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第委员会第十八次会议通过
2000年10月31日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37号公布)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推动国家通用语言文字的规范化、标准化及其健康发展，使国家通用语言文字在社会生活中更好地发挥作用，促进各民族、各地区经济文化交流，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本法所称的国家通用语言文字是普通话和规范汉字。

第三条 国家推广普通话，推行规范汉字。

第四条 公民有学习和使用国家通用语言文字的权利。

国家为公民学习和使用国家通用语言文字提供条件。

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采取措施，推广普通话和推行规范汉字。

第五条 国家通用语言文字的使用应当有利于维护国家主权和民族尊严，有利于国家统一和民族团结，有利于社会主义物质文明建设和精神文明建设。

第六条 国家颁布国家通用语言文字的规范和标准，管理国家通用语言文字的社会应用，支持国家通用语言文字的教学和科学研究，促进国家通用语言文字的规范、丰富和发展。

第七条 国家奖励为国家通用语言文字事业做出突出贡献的组织和个人。

第八条 各民族都有使用和发展自己的语言文字的自由。

少数民族语言文字的使用依据宪法、民族区域自治法及其他法律的有关规定。

第二章 国家通用语言文字的使用

第九条 国家机关以普通话和规范汉字为公务用语用字。法律另有规定的除外。

第十条 学校及其他教育机构以普通话和规范汉字为基本的教育教学用语用字。法律另有规定的除外。

学校及其他教育机构通过汉语文课程教授普通话和规范汉字。使用的汉语文教材，应当符合国家通用语言文字的规范和标准。

第十一条 汉语文出版物应当符合国家通用语言文字的规范和标准。

汉语文出版物中需要使用外国语言文字的，应当用国家通用语言文字作必要的注释。

第十二条 广播电台、电视台以普通话为基本的播音用语。

需要使用外国语言为播音用语的，须经国务院广播电视部门批准。

第十三条 公共服务行业以规范汉字为基本的服务用字。因公共服务需要，招牌、广告、告示、标志牌等使用外国文字并同时使用中文的，应当使用规范汉字。

提倡公共服务行业以普通话为服务用语。

第十四条 下列情形，应当以国家通用语言文字为基本的用语用字：

- (一) 广播、电影、电视用语用字；
- (二) 公共场所的设施用字；
- (三) 招牌、广告用字；
- (四) 企业事业组织名称；
- (五) 在境内销售的商品的包装、说明。

第十五条 信息处理和信息技术产品中使用的国家通用语言文字应当符合国家的规范和标准。

第十六条 本章有关规定中，有下列情形的，可以使用方言：

- (一) 国家机关的工作人员执行公务时确需使用的；
- (二) 经国务院广播电视部门或省级广播电视部门批准的播音用语；
- (三) 戏曲、影视等艺术形式中需要使用的；
- (四) 出版、教学、研究中确需使用的。

第十七条 本章有关规定中，有下列情形的，可以保留或使用繁体字、异体字：

- (一) 文物古迹；
- (二) 姓氏中的异体字；
- (三) 书法、篆刻等艺术作品；
- (四) 题词和招牌的手书字；
- (五) 出版、教学、研究中需要使用的；
- (六) 经国务院有关部门批准的特殊情况。

第十八条 国家通用语言文字以《汉语拼音方案》作为拼写和注音工具。

《汉语拼音方案》是中国人名、地名和中文文献罗马字母拼写法的统一规范，并用于汉字不便或不能使用的领域。

初等教育应当进行汉语拼音教学。

第十九条 凡以普通话作为工作语言的岗位，其工作人员应当具备说普通话的能力。

以普通话作为工作语言的播音员、节目主持人和影视话剧演员、教师、国家机关工作人员的普通话水平，应当分别达到国家规定的等级标准；对尚未达到国家规定的普通话等级标准的，分别情况进行培训。

第二十条 对外汉语教学应当教授普通话和规范汉字。

第三章 管理和监督

第二十一条 国家通用语言文字工作由国务院语言文字工作部门负责规划指导、管理监督。

国务院有关部门管理本系统的国家通用语言文字的使用。

第二十二条 地方语言文字工作部门和其他有关部门，管理和监督本行政区域内的国家通用语言文字的使用。

第二十三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对企业名称、商品名称以及广告的用语用字进行管理和监督。

第二十四条 国务院语言文字工作部门颁布普通话水平测试等级标准。

第二十五条 外国人名、地名等专有名词和科学技术术语译成国家通用语言文字，由国务院语言文字工作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组织审定。

第二十六条 违反本法第二章有关规定，不按照国家通用语言文字的规范和标准使用语言文字的，公民可以提出批评和建议。

本法第十九条第二款规定的人员用语违反本法第二章有关规定的，有关单位应当对直接责任人员进行批评教育；拒不改正的，由有关单位作出处理。

城市公共场所的设施和招牌、广告用字违反本法第二章有关规定的，由有关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予以警告，并督促其限期改正。

第二十七条 违反本法规定，干涉他人学习和使用国家通用语言文字的，由有关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并予以警告。

第四章 附则

第二十八条 本法自2001年1月1日起施行。

来源：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上传时间：2007-06-22]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주석령 제37호 2000. 10. 31. 공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규범화, 표준화 및 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며, 여러 민족과 지역의 경제 문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법에서 국가통용 언어문자란 보통화(普通話)와 규범한자를 말한다.

제 3 조 국가는 보통화를 보급하고 규범한자를 널리 시행한다.

제 4 조 국민은 국가통용 언어문자를 배우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이 국가통용 언어문자를 배우고 사용할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보통화를 보급하고 규범한자를 널리 시행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사용은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데 유리해야 하고,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에 유리해야 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에 유리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에서는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규범 및 기준을 반포하고,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사용을 관리하며,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교육·연구를 지원하고,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규범화를 추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 7 조 국가에서는 국가통용 언어문자 사업에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해 포상한다.

제 8 조 각 민족은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 소수민족 언어문자의 사용은 헌법, 민족 지역 자치법 및 기타 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사용

제 9 조 국가 기관은 공무 집행 시 보통화와 규범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기타 법적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제10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기본적 교육과 교수·학습에서 말은 보통화를 쓰고 글자는 규범한자를 써야 한다. 기타 법적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한어문(漢語文) 수업을 통해 보통화와 규범한자를 가르친다. 한어문 교재는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규범과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1조 한어문 출판물은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규범과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한어문 출판물에 외국 언어문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통용 언어문자로 주석을 달아야 한다.

제12조 TV·라디오 방송국은 표준어를 방송언어로 사용해야 한다. 외국어를 방송언어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방송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공중 서비스업은 규범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서비스의 필요로 간판, 광고, 고시판, 표지판 등에 외국 문자와 증문을 동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규범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공중 서비스업에서는 보통화 사용을 권장한다.

제14조 다음의 경우 국가통용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1) 라디오, 영화, TV 용어 및 문자
- (2) 공중 시설에 사용하는 문자
- (3) 간판 및 광고의 문자
- (4) 정부기관 및 회사의 명칭
- (5)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 및 설명서

제15조 정보 처리 및 정보 기술 제품에 사용하는 국가통용 언어문자는 국가의 규범과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6조 이 장의 규정 중 다음 상황에서는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

- (1) 국가 기관의 직원이 공무 집행 시 확실히 필요한 경우
- (2) 방송용 언어로 국무원 방송 기관 및 성급(省級) 방송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 (3) 희곡, 방송 작품 등에서 필요한 경우
- (4) 출판, 교육, 연구에서 필요한 경우

제17조 이 장의 규정 중 다음 상황에서는 번체자, 이체자를 보존·유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1) 문물 고적
- (2) 성씨 속의 이체자
- (3) 서예, 전각(篆刻) 등 예술 작품
- (4) 제사(題詞: 기념이나 격려의 글), 간판의 손글씨
- (5) 출판, 교육, 연구에서 필요한 경우
- (6) 국무원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8조 국가통용 언어문자는 『한어병음방안(漢語拼音方案)』을 맞춤법과 발음의 수단으로 한다. 『한어병음방안』은 중국 인명, 지명, 중문(중국어와 문자) 문헌의 로마자 표기법의 통일 규범으로서 한자로 표기하기 어렵거나 표기가 불가능한 분야에 사용된다. 초등 교육에서는 한어 병음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제19조 보통화를 근무 언어로 사용하는 부서의 직원은 보통화를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통화를 근무 언어로 사용하는 아나운서, 사회자, 배우, 교사, 국가 기관 직원의 보통화 실력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한 자는 상황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교육 현장에서는 보통화와 규범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3 장 관 리 및 감 독

제21조 국가통용 언어문자는 국무원 언어문자 기관에서 담당하고 관리·감독한다. 국무원 관련 기관에서는 그 기관의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사용을 관리한다.

제22조 지방 언어문자 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에서는 행정구역 내의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제23조 현급(縣級)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의 공상행정(工商行政) 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회사명, 상품명 및 광고 언어문자에 대해 관리하고 감독한다.

제24조 국무원 언어문자 기관은 보통화 능력시험 등급 기준을 발표한다.

제25조 외국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와 과학기술 용어를 국가통용 언어문자로 번역하는 경우, 국무원 언어문자 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서 심사한다.

제26조 이 법 제2장의 내용을 위반하여 국가통용 언어문자 규범과 기준에 따르지 않고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본 공민은 비판하고 건의할 수 있다. 이 법 제19조 후단(後段)의 규정에 속한 사람이 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기관에서 비판·교육을 하고, 계속 오류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처리한다. 공공장소의 시설, 간판, 광고에서 이 법 제2장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행정관리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시정하게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하며, 제때에 시정하도록 독촉한다.

제27조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이 국가통용 언어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행정관리기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경고한다.

제 4 장 부 칙

제28조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6】

전문가 초점 집단 인터뷰(FGI) 지침서

1. 소 개

- 진행자
- 목적 : 조사목적 설명하고 문제점, 개선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얻기 위한 것
- 녹음기(마이크)
- 응답내용의 비밀보장에 대하여 인지시키기
- 참석자 소개 : 이름/기관(예. 중앙, 광역 등)/부서/국어책임관 업무 담당기간 등

2. 제도 인식에 대한 자료수집

- 국어기본법에 대한 인식정도. 스스로 평가/ 타인 평가
- 국어기본법에 대한 인식정도. 스스로 평가/ 타인 평가
- 국어책임관 임무 수행 전 제도 인식 여부
- 현재 국어책임관 제도 활성화에 대한 인식
- 현재 국어책임관 임무에 대한 평가기준 내지 척도 마련에 대한 인식

3.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평가

- 공무원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경험(여부 및 장소, 형태 등)
- 교육 경험이 실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 공무원 국어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4. 국어전문관제

- 국어책임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어전문관을 두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

- 국어전문관 두는 것에 대한 의견
- 국어전문관제 실시 가정할 경우, 보다 구체적 의견(수준, 형태, 자격요건 등)
- 국어전문관 지원받을 경우, 활용방안

5. 마무리

-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준비한 목록 + 초점 집단 인터뷰 진행 중 나온 의견 포함) 제시 후 우선순위를 두어 방안 제시토록 유도
 - * 전체 반응 고려하여 현 제도의 강점과 한계점, 그리고 앞서 진행한 내용 이외의 의견 도출
- 진행자 마무리 발언 및 인사

【부 록 7】

부처별 소관 기본법 입법 체계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3.12.27 법률 제4643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7장 45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고용정책 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등의 책임과 의무)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7개조
실체규정	제2장 고용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8조 (고용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 (지역 고용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의2 (지역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 등) 제10조 (고용정책 심의회) 제11조 (직업 안정기관의 설치 등) 제12조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지원 등) 제13조 (정책의 분석·평가) 제13조의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제14조 (국제협력)	9개조
	제3장 고용 정보 등의 수집·제공	제15조 (고용·직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6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17조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제18조 (한국 고용정보원의 설립) 제18조의2 (한국 잡월드의 설립 등)	5개조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제4장 직업 능력 개발	제19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제20조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제21조 (기술·기능인력의 양성) 제22조 (직업 능력 평가 제도의 확립)	4개조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지원	제23조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제24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제25조 (청년·여성·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제26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지원) 제27조 (일용근로자등의 고용안정지원) 제28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기업육성) 제29조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제30조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제31조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9개조
	제6장 고용 조정 지원 및 고용 안정 대책	제32조 (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지원등) 제33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제34조 (실업 대책사업) 제35조 (실업 대책사업의 자금조성 등) 제36조 (자금의 차입) 제37조 (관계기관의 협력)	6개조
보칙 규정	제7장 보칙	제38조 (보고 및 검사)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40조 (위탁) 제41조 (벌칙) 제42조 (과태료)	5개조
7장 45개조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8.14 법률 제6510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6장 102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14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재원의 조성 등) 제8조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심의)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 (자료제공 및 전산망이용) 제11조 (근로복지사업 추진협의) 제12조 (용자업무 취급기관) 제13조 (세제지원) 제14조 (근로복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실체규정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15조 (근로자 주택 공급제도의 운영) 제16조 (근로자 주택자금의 용자) 제17조 (주택 구입자금등의 용자) 제18조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17개조
		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제19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제20조 (학자금의 지원등) 제21조 (근로자우대저축)	
		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22조 (신용보증지원 및 대상) 제23조 (보증관계) 제24조 (보증료) 제25조 (통지의무) 제26조 (보증채무의 이행 등) 제27조 (지연이자)	
		제4절 근로복지 시설등에 대한지원	제28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제30조 (이용료 등) 제31조 (민간 복지 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1절 우리사주 제도	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제35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제36조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37조 (우리사주취득에 따른 계정관리) 제38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제39조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제40조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제41조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제42조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제43조 (우리사주의 예탁 등) 제44조 (우리사주의 인출 등) 제45조 (비상장법인의 우리 사주의 처분) 제46조 (우리사주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제47조 (우리사주 조합의 해산)	59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48조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지원) 제49조 (근로자의 회사 인수 지원) 제50조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제51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유지) 제52조 (법인격 및 설립) 제53조 (정관변경) 제54조 (기금법인의 기관) 제55조 (복지기금 협의회의 구성) 제56조 (복지기금 협의회의 기능) 제5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58조 (이사 및 감사) 제59조 (이사 등의 임기) 제60조 (이사 등의 신분) 제61조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제63조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64조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65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제66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공개) 제67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제68조 (다른 복지와의 관계) 제69조 (시정명령)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제71조 (해산한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 제73조 (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제74조 (합병의 효력 발생·효과)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제76조 (분할 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제77조 (분할 등의 효력발생·효과) 제78조 (비밀유지 등) 제7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0조 (「민법」의 준용)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등	제81조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제82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등) 제83조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제84조 (성과배분) 제85조 (발명·제안 등에 대한 보상) 제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87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제88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제89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제90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91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92조 (회계처리의 구분 등)	6개조

구분	장명	조명	비고
보칙 규정	제5장 보칙	제93조 (지도·감독 등) 제94조 (위임 및 위탁) 제95조 (반환명령)	3개조
벌칙 규정	제6장 벌칙	제96조 (벌칙) 제97조 (양벌규정) 제98조 (과태료)	3개조
6장 102개조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9.27 법률 제7988호(전부개정)로 제정되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11장 88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개조
실체 규정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5조 (소비자의 책무)	2개조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제8조 (위해의 방지) 제9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10조 (표시의 기준) 제11조 (광고의 기준) 제12조 (거래의 적정화) 제13조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제14조 (소비자의 능력향상)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17조 (시험·검사 시설의 설치 등)	15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제18조 (소비자 권익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제19조 (사업자의 책무)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제4장 소비자정책 의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 정책의 수립	제21조 (기본 계획의 수립 등) 제22조 (시행 계획의 수립 등)	7개조
		제2절 소비자정책 위원회	제23조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설치) 제2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제25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26조 (의견청취 등)	
		제3절 국제협력	제27조 (국제협력)	
	제5장 소비자단체		제2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제2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제30조 (등록의 취소) 제31조 (자율적 분쟁조정) 제32조 (보조금의 지급)	5개조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1절 설립 등	제33조 (설립) 제34조 (정관) 제35조 (업무) 제36조 (시험·검사의 의뢰) 제37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12개조
		제2절 임원 및 이사회	제38조 (임원 및 임기) 제39조 (임원의 직무) 제40조 (이사회)	
		제3절 회계·감독 등	제41조 (재원) 제42조 (감독) 제43조 (별치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 (준용)	
	제7장 소비자안전	제1절 총칙	제45조 (취약 계층의 보호) 제46조 (시정 요청 등)	8개조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제47조 (결함 정보의 보고의무) 제48조 (물품 등의 자진수거 등) 제49조 (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제50조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제51조 (소비자 안전센터의 설치) 제52조 (위해 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8장 소비자 분쟁의해결	제1절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제53조 (소비자상담기구의설치·운영) 제54조 (소비자상담기구의설치권장)	26개조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55조 (피해 구제의 신청 등) 제56조 (위법 사실의 통보 등) 제57조 (합의권고) 제58조 (처리기간) 제59조 (피해 구제 절차의 중지)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등		제60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1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63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3조의2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제6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5조 (분쟁조정) 제66조 (분쟁조정의 기간) 제67조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68조 (분쟁조정의 특례)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제6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제70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71조 (전속 관할) 제72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3조 (소송 허가 신청) 제74조 (소송 허가 요건 등) 제75조 (확정 판결의 효력) 제76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9장 조사절차 등	제77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 제78조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제79조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3개조
보칙 규정	제10장 보칙	제80조 (시정조치 등) 제81조 (시정조치의 요청 등) 제82조 (청문)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등)	4개조	
벌칙규정	제11장 벌칙	제84조 (벌칙) 제85조 (양벌규정) 제86조 (과태료)	3개조	
11장 88개조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3장 36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교육이념) 제3조 (학습권)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제7조 (교육 재정) 제8조 (의무 교육) 제9조 (학교 교육) 제10조(사회 교육)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11개조
실체규정	제2장 교육당사자	제12조 (학습자) 제13조 (보호자) 제14조 (교원) 제15조 (교원단체) 제16조 (학교등의 설립자·경영자)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6개조
	제3장 교육의 진흥	제17조의2 (남녀 평등교육의 증진) 제17조의3 (학습 윤리의 확립)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 제18조 (특수 교육) 제19조 (영재 교육) 제20조 (유아 교육) 제21조 (직업 교육) 제22조 (과학·기술 교육) 제22조의2 (학교 체육)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제23조의3 (학 생정보의 보호원칙) 제24조 (학술 문화의 진흥) 제25조 (사립 학교의 육성)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제26조의2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증진) 제28조 (장학제도 등) 제29조 (국제교육)	19개조
3장 36개조			

□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 공동소관)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3.27 법률 제5314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자격기본법」은 5장 42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자격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자격 제도관리·운영의 기본방향) 제4조 (국가의 책무)	4개조
실체규정	제2장 자격관리·운영체제	제5조 (국가 직무능력 표준) 제6조 (자격 체제) 제7조 (자격 관리·운영기본계획) 제8조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9조 (교육 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제10조 (자격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6개조
	제3장 국가자격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제12조 (국가 자격의 취득) 제13조 (국가 자격 검정의 면제) 제14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15조 (국가 자격의 정비) 제16조 (국가 자격 관리·운영의 위임·위탁)	6개조
	제4장 민간자격	제17조 (민간 자격의 신설 및 등록등) 제18조 (결격사유) 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 제20조 (민간자격 관리자의 공인기간 등) 제21조 (공인자격의 효력) 제22조 (공인증서의 교부 등) 제23조 (공인자격의 취득 등) 제24조 (공인사항의 변경) 제25조 (시정 명령) 제26조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의 정지 등) 제27조 (공인자격 관리자의 책무) 제28조 (공인의 공고) 제29조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	13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보칙 규정	제5장 보칙	제30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1조 (자격취득자의 성실의 무등) 제32조 (자격취득의 취소·정지등) 제33조 (거짓광고의 금지 등) 제34조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제35조 (보수교육) 제36조 (청문) 제37조 (수수료)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13개조
5장 42개조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8.26 법률 제6713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14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입법 체계>

조 명	비 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의2 (국회에 대한 보고) 제6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제7조의2 (위원회심의결과의 활용) 제7조의3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제8조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제9조 (위원회의 특정 평가 등) 제10조 (인적자원개발정책 책임관의 지정) 제11조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유통 및 활용)	14개조

조 명	비 고
제12조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제13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협력 망 구축) 제14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14개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1.16 법률 제 6353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5장 53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제5조 (과학기술 정책의 중시와 개방화촉진) 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6개조
실체규정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제7조의2(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계획)	3개조
	제2장의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9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무) 제9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3 (위원장) 제9조의4 (위원의 임기) 제9조의5 (직무상 독립 및 신분보장) 제9조의6 (결격사유) 제9조의7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9조의8 (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9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제9조의10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9조의11 (사무처의 설치) 제9조의12 (공무원 등의 파견) 제10조 (위원회심의·의결결과의 활용)	13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3장 과학기술연구개발 추진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제11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제11조의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검토·심의) 제12조의3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제13조 (과학기술예측 등) 제14조 (기술 영향 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5조 (기초연구의 진흥) 제15조의2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제16조 (민간기술 개발지원) 제17조 (협동·융합연구 개발의 촉진) 제17조의2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간 연계촉진)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촉진) 제19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18개 조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제24조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제25조 (과학 영재의 발굴 및 육성)	5개 조
	제5장 과학기술기반강화 및 혁신환경조성	제26조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28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 육성)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제33조 (과학기술비영리법인의 육성)	8개 조
5장 53개 조			

□ 국무총리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

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1.13 법률 제9931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7장 64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추진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 (국민의 책무)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개조
실체규정	제2장 저탄소 녹색 성장국가전략	제9조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수립·시행)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수립·시행) 제12조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 제13조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5개조
	제3장 녹색성장 위원회 등	제14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제16조 (회의) 제17조 (분과위원회) 제18조 (녹색성장기획단) 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20조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8개조
	제4장 저탄소 녹색 성장의 추진	제22조 (녹색경제·녹색산업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제23조 (녹색경제·녹색산업의육성·지원) 제24조 (자원순환의 촉진) 제25조 (기업의 녹색경영촉진) 제2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제27조 (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제28조 (금융의지원 및 활성화) 제29조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제30조 (조세제도운영) 제31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제32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제33조 (중소기업의 지원 등)	16개조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제34조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조성 등) 제35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등) 제36조 (규제의 선진화) 제37조 (국제규범대응)	
	제5장 저탄소사회의 구현	제38조 (기후 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제39조 (에너지 정책 등의 기본원칙) 제40조 (기후 변화대응 기본계획) 제41조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42조 (기후 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제43조 (온실가스감축의 조기 행동촉진) 제44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제45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46조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등의 도입) 제47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관리) 제48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11개조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49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제50조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1조 (녹색국토의 관리) 제52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제53조 (저탄소교통체계의 구축) 제54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제55조 (친환경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 흡수원 확충) 제56조 (생태관광의 촉진 등) 제57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제58조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제59조 (녹색생활실천의 교육·홍보)	11개조
보칙 규정	제7장 보칙	제6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61조 (국제협력의 증진) 제62조 (국회보고) 제63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제64조 (과태료)	5개조
7장 64개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공동소관)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6.3.24 법률 제 7928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6장 34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 제5조 (성과관리전략계획) 제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6개조
실체규정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제7조 (정부업무평가의 원칙) 제8조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제10조 (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제11조 (평가총괄관련기관) 제12조 (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제13조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7개조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제15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제16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제17조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제19조 (특정평가에 관한사항) 제20조 (특정평가의 절차) 제21조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제22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9개조
	제4장 정부업무평가 기반구축의 지원	제23조 (정부업무평가 기반구축의 지원) 제24조 (평가예산) 제25조 (평가제도운영실태의 확인·점검)	3개조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 (평가결과의 공개) 제27조 (평가결과의 보고) 제28조 (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제29조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제30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5개조
보칙 규정	제6장 보칙	제31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 관리 및 자체평가) 제32조 (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3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4조 (별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4개조
6장 34개조			

□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

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5.19 법률 제 10629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지식재산 기본법」은 5장 4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 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개조	
실체규정	제2장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1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2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3조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통보) 제14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5조 (연차보고서)	10개조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촉진	제16조 (지식재산의 창출촉진) 제17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창출의 연계) 제18조 (신지식재산창출 등 지원) 제19조 (지식재산창출자에 대한 보상)	13개조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강화	제20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촉진) 제21조 (소송체계의 정비 등) 제22조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 활성화) 제23조 (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4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보호)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촉진	제25조 (지식재산의 활용촉진) 제26조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육성) 제27조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체계 확립 등) 제28조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제29조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환경조성) 제30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31조 (지식재산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제32조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33조 (지식재산교육 강화) 제34조 (지식재산전문인력 양성) 제35조 (지식재산연구기관 등의 육성)	10개조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제36조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제37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제38조 (남북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보칙 규정	제5장 보칙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0조(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2개조
5장 40개조			

□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8.22 법률 제5368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5장 4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행정규제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규제법정주의) 제5조 (규제의 원칙)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6개조
실체규정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 (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명시) 제9조 (의견수렴) 제10조 (심사요청) 제11조 (예비심사) 제12조 (심사) 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심사) 제14조 (개선권고) 제15조 (재심사)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10개조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 (의견제출) 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제20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21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 제22조 (조직정비 등)	6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 (설치) 제24조 (기능) 제25조 (구성 등) 제26조 (의결정족수)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28조 (분과위원회) 제29조 (전문위원 등)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32조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의제) 제33조 (조직 및 운영)	11개조
보칙 규정	제5장 보칙	제34조 (규제개선점검·평가) 제35조 (규제개혁백서) 제36조 (행정지원 등) 제37조 (공무원의 책임 등)	4개조
5장 37개조			

□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5.17 법률 제8482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6장 29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행정조사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 (행정조사의 근거)	5개조
실체규정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제6조(연도별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7조(조사의 1주기) 제8조 (조사대상의 선정)	10개조
	제3장 조사방법	제9조 (출석·진술요구) 제10조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제11조 (현장조사)	10개조

구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12조 (시료채취) 제13조 (자료 등의 영치) 제14조 (공동조사) 제15조 (중복조사의제한)	
	제4장 조사실시	제16조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제17조 (조사의 사전통지) 제18조 (조사의 연기신청) 제19조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제20조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하는 행정조사) 제21조 (의견제출) 제22조 (조사원 교체신청) 제23조 (조사권 행사의 제한) 제24조 (조사결과의 통지)	9개조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등	제25조 (자율신고 제도) 제26조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제27조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3개조
보칙 규정	제6장 보칙	제28조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제29조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2개조
6장 29개조			

□ 국방부(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12.21, 법률 제8731호 로 제정되었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군인복지기본법 입법 체계>

조 명	비 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복지 사업 재원) 제6조 (군인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 (실태조사)	14개조

조 명	비 고
제8조 (군인복지위원회) 제9조 (군 숙소지원) 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 제11조 (보육 및 교육지원) 제11조의2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4개조	

□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6.12.30 법률 제5230호(전부개정)로 제정되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11장 12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제6조 (건설 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7개조
실체규정	제2장 건설업등록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9조 (건설업등록 등) 제9조의2 (등록증 의발급 등)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1조 (표시·광고의 제한) 제12조 삭제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 사유) 제14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15조 삭제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17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9조 (건설업양도의 내용 등) 제20조 (건설업양도의 제한)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제21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 제21조의2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금지)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의2 (건설사업 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4조 (건설산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제26조 (건설사업 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제27조 (견적기간) 제28조 (건설공사수급인의하자담보책임)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 제30조 삭제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등)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37조 (검사 및 인도)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금지)	22개조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9조 삭제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제41조 (건설공사시공자의 제한) 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제43조 삭제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6개조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지원	제45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제46조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제47조 (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48조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5개조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50조 (협회의 설립) 제51조 (협회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52조 (건의와 자문 등) 제53조 (「민법」의준용)	4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7장 건설관련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55조 (공제조합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5조의2 (운영위원회)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57조 (공제규정) 제57조의2 (보증규정)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제59조 (지분의양도등)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62조 (대리인의 선임)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4조 (시공 상황의 조사 등) 제65조 (조사 및 검사) 제65조의2 (공제조합등건설보증기관의재무건전성 유지등) 제66조 (보증금 징수의 제한)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의2 (하도급 대금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19개조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제69조 (건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의2 (위원회의 관할)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제72조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제73조 (조정거부 및 중지) 제74조 (처리기간) 제75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76조 (조정부) 제77조 (조정전 합의) 제78조 (조정의 효력) 제79조 (비용의 부담) 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제8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4개조
	제9장 시정명령 등	제81조 (시정명령 등) 제82조 (영업정지 등) 제82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의2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제84조 (영업정지등의 세부처분기준)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85조의2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86조 (청문)	12개조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제86조의2 (발주자에 대한 점검등) 제86조의3 (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보칙 규정	제10장 보칙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87조의2 (건설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금지)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제90조 (별치적용시의 공무원의제)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92조 (수수료)	7개조
별치규정	제11장 별치	제93조 (별치) 제94조 (별치) 제95조 (별치) 제95조의2 (별치) 제96조 (별치) 제97조 (별치) 제98조 (양별규정) 제99조 (과태료) 제100조 (과태료) 제100조의2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1개조
11장 120개조			

□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12.21 법률 제8783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건축기본법」은 5장 24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건축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의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개조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실체규정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 (건축의 생활 공간적 공공성 구현) 제8조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제9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3개조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3개조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13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14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제15조 (건축정책국회보고) 제16조 (건축기본조사) 제17조 (기획단) 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 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7개조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21조 (건축디자인기준의 설정) 제22조 (건축디자인시범사업실시) 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제24조 (설계공모의 시행)	5개조
5장 24개조			

□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2.4 법률 제6654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국토기본법」은 6장 36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토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국토 관리의 기본이념) 제3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제4조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제5조 (환경 친화적 국토관리)	5개조
실체규정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관계) 제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13개조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제9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제11조 (공청회의 개최) 제12조 (국토종합계획의 승인) 제13조 (도 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 (도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5조 (도 종합계획의 승인) 제16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17조 (부문별 계획의 수립)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18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19조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제19조의2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제20조 (계획간의 조정) 제21조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제22조 (재정상의 조치)	7개조
	제4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등	제23조 삭제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제25조 (국토조사)	3개조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제26조 (국토정책위원회) 제27조 (구성 등) 제28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5개조
보칙 규정	제6장 보칙	제31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32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개조
6장 36개조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8.3 법률 제8617호(전부개정)로 제정되었다.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은 7장 86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물류정책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개조
실체규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절 물류현황조사	제7조 (물류현황조사) 제8조 (물류현황조사지침) 제9조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제10조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14개조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4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16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제3절 물류정책 위원회	제17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 (분과위원회) 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실체규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1절 물류시설· 장비의 확충등	제21조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제21조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제22조 (물류시설간의연계와 조화) 제23조 (물류공동화·자동 확충진) 제23조 (물류공동화·자동 확충진)	22개조
		제2절 물류표준화	제24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제25조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 조치) 제26조 (물류회계의 표준화)	
		제3절 물류정보화	제27조 (물류정보화의 촉진) 제28조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제29조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 제29조 삭제(시행일 2012.12.2) 제30조 (국가 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30조의 2 (국가 물류통합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제31조 (지정의 취소 등) 제32조 (전자문서의 이용·개발) 제32조 (전자문서의 이용·개발) 제33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제34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35조 (전자문서이용의 촉진)	
	제4절 국가물류 보완시책의 수립 및 지원등	제35조의2 (국가물류보안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35조의3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증진)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강화	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제36조 (물류산업의 육성 등) 제37조 (제3자 물류의 촉진)	26개조
	제2절 종합물류 기업의 인증	제38조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 제39조 (인증종합물류기업인증의 취소 등) 제40조 (인증센터) 제40조의2 (인증센터의 지정취소) 제41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42조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제3절 국제물류주 선업	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44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45조 (사업의 승계) 제46조 (사업의 휴지·폐지) 제46조 (사업의 휴업·폐업) 제47조 (등록의 취소 등) 제48조 (국제 물류주선업협회) 제49조 (자금의 지원) 제49조의2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제49조의3 (인증의 취소 등)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 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제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 제53조 (물류관리사자격의 취소) 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절 물류관련 단체의 육성	제55조 (물류관련협회 등) 제56조 (민·관합 동물류 지원센터) 제56조 (민·관합 동물류 지원센터)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1절 물류관련 연구개발	제57조 (물류관련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제57조 (물류관련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제58조 (물류관련연구의 촉진)	8개조
	제2절 환경 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59조 (환경 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촉진)	
	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제61조 (국제 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62조 (공동투자유치 활동) 제63조 (투자유치활동 평가)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보칙 규정	제6장 보칙	제64조 (업무소관의 조정) 제65조 (권한의 위임) 제66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67조 (과징금) 제68조 (청문) 제69조 (수수료) 제70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7개조
벌칙규정	제7장 벌칙	제71조 (벌칙) 제72조 (양벌규정) 제73조 (과태료)	3개조
7장 86개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7.29 법률 제6955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6장 42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3개조
실체규정	제2장 철도 산업발전 기반의 조성	제1절 철도산업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철도산업위원회) 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제7조 (철도시설투자의 확대) 제8조 (철도산업의 지원) 제9조 (철도산업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 등) 제10조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제11조 (철도기술의 진흥 등) 제12조 (철도산업의 정보화촉진) 제1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촉진)	10개조
	제3장 철도안전 및 이용자보호	제14조 (철도안전) 제15조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제16조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3개조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제4장 철도 산업구조 개혁의 추진	제1절 기본시책	제1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제18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관리청) 제20조 (철도시설) 제21조 (철도운영)	20개조
		제2절 자산·부채 및 인력의 처리	제22조 (철도자산의 구분 등) 제23조 (철도자산의 처리) 제24조 (철도부채의 처리) 제25조 (고용승계 등)	
		제3절 철도시설 관리권 등	제26조 (철도시설관리권) 제27조 (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제28조 (저당권설정의 특례) 제29조 (권리의 변동) 제30조 (철도시설관리대장) 제31조 (철도시설사용료)	
		제4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	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33조 (공익서비스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제34조 (특정 노선폐지 등의 승인) 제35조 (승인의 제한 등) 제36조 (비상사태시 처분)	
보칙 규정	제5장 보칙	제37조 (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9조 (청문)	3개조	
별칙규정	제6장 별칙	제40조 (별칙) 제41조 (양별규정) 제42조 (과태료)	3개조	
6장 42개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12.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24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입법 체계>

조 명	비 고
제1조 (목적)	24개조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제5조 (지역·지구 등의 신설제한 등)	
제5조 (지역·지구 등의 신설제한 등)	
제6조 (지역·지구 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 (지역·지구 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의2 (행위 제한 강화에 대한 심의)	
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조 (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제8조 (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제9조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9조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1조 (규제안내서)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제13조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13조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14조 (행위제한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위원의 결격 사유)	
제18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1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0조 (간사 및 서기)	
제21조 (운영세칙)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의제)	
24개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5.13 법률 제

6700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은 6장 35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5개조	
실체규정	제2장 해양수산물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6조 (해양수산물발전기본계획) 제7조 (해양수산물발전위 원회)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위원회의 직무) 제1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1조 (실무위원회)	6개조	
	제3장 해양개발 등	제1절 해양의 관리 및 보전등	제12조 (해양의 관리) 제13조 (해양환경의 보전) 제14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제15조 (해양안전관리)	18개조
		제2절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제16조 (해양자원의개발등) 제17조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제18조 (해양공간의 이용) 제19조 (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제20조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연구) 제21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22조 (남북간 해양수산물협력)	
		제3절 해양산업의 육성	제23조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제24조 (항만시설 등의 확충)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해양관광의 진흥) 제29조 (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해양수산물발전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 (연구기관의 설치·육성 등) 제31조 (해양수산물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2조 (해양개발 등을 위한 정보화촉진) 제33조 (연구·개발 사업지원 등) 제34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35조 (재정 등의 지원)	6개조		
4장 35개조				

□ 기획재정부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4.12.21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9장 125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15개조
		제2절 기간과 기한	제4조 (기간의 계산) 제5조 (기한의 특례)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6조의2 (납부기한연장의 취소) 제7조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제3절 서류의 송달	제8조 (서류의 송달) 제9조 (송달받을장소의 신고)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제4절 인격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실체규정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세부과세의 원칙	제14조 (실질과세) 제15조 (신의·성실) 제16조 (근거과세)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8개조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금지) 제18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제한)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17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준용)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8조 (소멸시효의중단과 정지)	
		제5절 납세담보	제29조 (담보의 종류) 제30조 (담보의 평가)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34조 (담보의 해제)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8개조
		제2절 제2차납세의무	제38조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납세의무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제5장 과세	제1절 관할관청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15개조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 (수정신고)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3 (기한후 신고) 제46조 (추가자진 납부) 제46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47조 (가산세부과)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제48조 (가산세감면 등) 제49조 (가산세한도) 제50조 삭제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5개조
	제7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55조 (불복) 제55조의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시기간계산의 특례)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9조 (대리인) 제60조 (불복방법의 통지)
제2절 심사		제61조 (청구기간) 제62조 (청구절차)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64조 (결정절차) 제65조 (결정) 제65조의2 (결정의 경정) 제66조 (이의신청) 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제3절 심판		제67조 (조세심판원) 제68조 (청구기간) 제69조 (청구절차) 제70조 삭제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74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 제74조의2 (심판조사관의 제척·회피 및 기피)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76조 (질문검사권) 제77조 (사실판단) 제78조 (결정절차)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80조 (결정의 효력) 제81조 (심사청구에 관 한규정의 준용)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3 (납세자의성실성추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남용금지) 제81조의5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6 (세무조사대상자선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81조의8 (세무조사기간)	15개조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제81조의9 (세무조사범위확대의 제한) 제81조의10 (장부·서류보관금지)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원칙)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결과통지) 제81조의13 (비밀유지) 제81조의14 (정보제공) 제81조의15 (과세전 적부심사)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납세자권리보호)	
보칙 규정	제8장 보칙	제82조 (납세관리인)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85조의2 (지급명세서자료의 이용)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5조의4 (서류접수증발급) 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공개)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86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공동이용)	11개조
9장 125개조			

□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12.31 법률 제6589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13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입법 체계>

조명	비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부담금설치의 제한) 제4조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 제5조 (부담금부과의 원칙) 제5조의2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제5조의3 (가산금 등)	13개조

조 명	비 고
제5조의4 (권리구제절차) 제6조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7조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제8조 (부담금운용의 평가) 제9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	
13개조	

□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1.26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7장 119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칭) 제4조 (법인격과 주소) 제5조 (설립목적) 제6조 (기본원칙) 제7조 (협동조합 등의 책무) 제8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9조 (공직선거관여금지) 제10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1조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제12조 (협동조합의 날)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 (다른 법률의 준용)	14개조
실체규정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 (설립 신고 등) 제16조 (정관) 제17조 (규약 또는 규정) 제18조 (설립 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9조 (협동조합의 설립)	56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2절 조합원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제21조 (가입) 제22조 (출자 및 책임) 제23조 (의결권 및 선거권) 제24조 (탈퇴) 제25조 (제명) 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7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제3절 기관	제28조 (총회)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30조 (총회의 의사록) 제31조 (대의원총회) 제32조 (이사회)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4조 (임원) 제35조 (임원의 임기등) 제36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37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3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9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40조 (임원의 해임) 제4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42조 (감사의 직무) 제43조 (감사의 대표권) 제44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제4절 사업	제45조 (사업) 제46조 (사업의 이용)	
	제5절 회계	제47조 (회계연도 등) 제48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제49조 (운영의 공개) 제50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51조 (손실금의보전과잉여금의 배당) 제52조 (결산보고서의 승인) 제53조 (출자감소의 의결) 제54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제55조 (출자지분취득금지 등)	
	제6절 합병·분할· 해산 및 청산	제56조 (합병 및 분할) 제57조 (해산) 제58조 (청산인) 제59조 (잔여재산의 처리) 제60조 (「민법」등의 준용)	
	제7절 등기	제61조 (설립등기) 제62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63조 (이전등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64조 (변경등기) 제65조 (합병등기) 제66조 (해산등기) 제67조 (청산인등기) 제68조 (청산종결등기) 제69조 (등기부)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등의 준용)	
	제3장 협동조합연 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 (설립신고 등) 제72조 (준용규정)	14개조
		제2절 회원	제73조 (회원의 자격) 제74조 (탈퇴) 제75조 (의결권 및 선거권) 제76조 (준용규정)	
		제3절 기관	제77조 (총회) 제78조 (임원) 제79조(준용규정)	
		제4절 사업	제80조 (사업) 제81조 (사업의 이용)	
		제5절 회계	제82조 (준용규정)	
		제6절 합병·분할· 해산 및청산	제83조 (준용규정)	
		제7절 등기	제84조 (준용규정)	
	제4장 사회적 협동 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 (설립인가 등) 제86조 (정관) 제8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88조 (준용규정)	29개조
		제2절 조합원	제89조 (출자금환급청구권과환급정지) 제90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91조 (준용규정)	
		제3절 기관	제92조 (준용규정)	
		제4절 사업	제93조 (사업) 제94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제95조 (사업의 이용)	
		제5절 회계등	제96조 (운영의 공개) 제97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98조 (손실금의 보전 과잉여금의 배당) 제99조 (부과금의 면제) 제100조 (준용규정)	
		제6절 합병·분할·	제101조 (합병 및 분할) 제102조 (해산)	

구분	장명	조명	비고
		해산 및 청산 제103조 (청산인) 제104조 (잔여재산의 처리) 제105조 (「민법」 등의 준용)	
		제7절 등기 제106조 (설립등기) 제107조 (합병등기) 제108조 (해산등기) 제109조 (등기일의기산일) 제110조 (준용규정)	
		제8절 감독 제111조 (감독) 제112조 (설립인가의 취소) 제113조 (청문)	
	제5장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 (설립인가 등) 제115조 (준용규정)	2개조	
보칙 규정	제6장 보칙	제116조 (권한의 위임)	1개조
별칙 규정	제7장 별칙	제117조 (별칙) 제118조 (양벌규정) 제119조 (과태료)	3개조
7장 119개조			

□ 농림수산식품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12.21 법률 제8749호(전부개정)로 제정되었다.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4장 66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6개조

구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4조의2 (농업인의 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체규정	제2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의 기본방향	제6조 (정책수립·시행의 기본원칙) 제7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8조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9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증진) 제10조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제11조 (농어업 및 식품산업관련단체의 육성) 제11조의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제12조 (통일대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9개조	
	제3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의 수립·시행	제1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제14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 제15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제16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추진) 제17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8조(관련행정조직의 정비)	47개조
		제2절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19조 (생산단계의 농수산물 안전성관리) 제20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질 관리 등) 제21조 (식품산업의 육성) 제22조 (전통식 생활문화의 계승·발전) 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3절 농어업 인력의 육성 등	제24조 (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종사자의 육성) 제25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제26조 (전업농어업인의 육성) 제27조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제28조 (농어업관련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제29조 (벤처 농어업 등의 육성)	
		제4절 농지와 수산자원·어장의 이용 및 보전	제30조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에 관한 기본이념) 제31조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어장의 이용) 제32조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의보전)	
제5절 농어업 생산구조의 고도화		제33조 (농어업생산기반의 정비) 제34조 (농어업투입 재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촉진) 제35조 (농어업 및 식품관련기술·연구 등의 진흥) 제36조 (농어업 및 식품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추진) 제37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38조 (친환경농어업 등의 촉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제39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제40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등록) 제41조 (농어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제42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제6절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기능증진		제44조 (농어촌의 자연환경·수산자원·어장환경 및 경관보전) 제45조 (전통농경·어로문화의 계승 등) 제46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연구·홍보 등) 제47조(지구온난화방지 등)
		제7절 농어촌 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48조 (농어촌 지역발전시책의 수립) 제49조 (지역간의 소득균형) 제50조 (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51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활성화 등) 제52조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촉진) 제53조 (농어촌지역 교육여건의개선) 제54조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제8절 통일대비농 어업·농어 촌 및 식품산업정 책과 국제협력		제55조 (북한의 농어업 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 제56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제57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분야의 국제협력) 제58조 (농어업부문의 해외투자지원) 제59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제60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관리)
보칙 규정	제4장 보칙	제61조 (준 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62조 (조세의 감면) 제63조 (농어업 정책 자금의 지원·관리) 제64조 삭제	4개조	
4장 66개조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5.12.31 법률 제2877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관광기본법」은 15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관광기본법 입법 체계>

조 명	비 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부의 시책) 제3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 (연차보고) 제5조 (법제상의 조치)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제7조 (외국관광객의 유치) 제8조 (시설의 개선) 제9조 (관광자원의 보호 등) 제10조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제11조 (관광종사자의 자질 향상) 제12조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제13조 (국민관광의 발전) 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 제15조 삭제	15개조
15개조	

□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68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5장 28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어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 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개조
실체 규정	제2장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보고)	5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9조 (실태 조사 등)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1조 (어문규범의 제정 등) 제12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13조 (국어심의회)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제15조 (국어문화의 확산) 제16조 (국어정보화의 촉진) 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제19조의2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20조 (한글날) 제2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12개조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2조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제23조 (국어능력의 검정) 제24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3개조
보칙 규정	제5장 보칙	제25조 (협의) 제26조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3개조
5장 28개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2.8 법률 제5927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7장 77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 (문화산업의 중·장기기본계획수립 등) 제5조 (연차보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실체규정	제2장 창업·제작·유통	제7조 (창업의 지원)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제9조 (투자조합) 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0조의2 (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제11조의2 (독립제작사의폐업 및 직권말소) 제12조 (유통활성화) 제12조의2 (공정한 거래질서구축) 제13조 삭제 제14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 제15조 (우수 문화상품의 지정·표시) 제15조의2 (우수 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제15조의3 (우수 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14개조
	제3장 문화산업기반조성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의2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3 (평가기관 및 평가수수료지원) 제16조의4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제17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개발의 촉진) 제17조의2 (기술료의 징수) 제17조의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제17조의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준용) 제17조의5 (문화기술연구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삭제 제19조 (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제20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진출지원) 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2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25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26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지원) 제27조 (각종부담금등의 면제) 제28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8조의3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지원) 제29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제30조 (세제지원 등) 제30조의2 (문화산업진흥시설등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지원) 제30조의3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제30조의4 (소비자보호)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28개조
	제4장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7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5장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4개조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3조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4조 (회사의 형태) 제45조 (사원의 수) 제46조 (사원총회) 제47조 (겸업 등의 제한) 제48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49조 (업무) 제50조 (회계처리) 제51조 (업무의 위탁 등) 제52조 (등록 등) 제53조 (해산) 제54조 (합병 등의 금지) 제55조 (감독·검사 등) 제56조 (등록취소)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15개조
보칙 규정	제7장 보칙	제57조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제5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9조 (과태료)	3개조
7장 77개조			

□ 영상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1.5 법률 제4882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영상진흥기본법」은 16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영상진흥기본법 입법 체계>

조 명	비 고
제1조(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창작의 자유보장 등) 제5조 (정부의 시책) 제6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제7조 (영상물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제8조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 제9조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제10조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촉진) 제11조 (영상전문 인력의 양성) 제12조 (영상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제13조 (영상제작기반의 확충) 제14조 (국제교류 및 협력) 제15조 (영상자료의 보존) 제16조 삭제	16개조
16개조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3.22 법률 제10165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8장 5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6개조

구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4조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5조 (방송통신규제의 원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체규정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8조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10조 (방송통신지수·지표개발) 제11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제12조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제13조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망의 고도화) 제14조 (방송통신 기반시설 조성·지원) 제15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8개조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16조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제17조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제18조 (연구기관 등의 지원) 제19조 (연구 활동의 지원) 제20조 (기술지도) 제21조 (방송통신전문 인력의 양성 등) 제22조 (남북간 방송통신교류·협력) 제23조 (방송통신국제협력)	8개조
	제4장 방송통신 발전기금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제25조 (기금의 조성) 제26조 (기금의 용도) 제27조 (기금의 관리·운영)	3개조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28조 (기술기준) 제29조 (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제30조 (관리규정) 제31조 (기술기준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제32조 (새로운 방송 통신 방식 등의 채택) 제33조 (표준화의 추진) 제34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1개조
	제6장 방송통신 재난의 관리	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6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7조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제38조 (방송통신재난의 보고) 제39조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제40조 (재난방송 등)	6개조
보칙 규정	제7장 보칙	제41조 (통계의 작성·관리) 제42조 (자료제출) 제43조 (보고·검사 등) 제44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45조 (별칙적용시의 공무원의제)	5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별칙규정	제8장 별칙	제46조 (별칙) 제47조 (양벌규정) 제48조 (과태료)	3개조
8장 50개조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3.12.30 법률 제3685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7장 71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전기통신의 관장) 제4조 (정부의 시책) 제5조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삭제 제7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7개조
실체규정	제2장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5조의2 삭제	9개조
	제3장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20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3절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4절 삭제	제30조의2 삭제 제30조의3 삭제 제30조의4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33조 삭제 제33조의2 삭제 제33조의3 삭제 제34조 삭제 제34조의2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7개조
	제5장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0조의2 삭제 제40조의3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4조의2 삭제	11개조
	제5장의2 삭제		제44조의3 삭제 제44조의4 삭제 제44조의5 삭제 제44조의6 삭제 제44조의7 삭제 제44조의8 삭제	6개조
보칙 규정	제6장 보칙		제45조 삭제 제45조의2 삭제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3개조
별칙규정	제7장 별칙		제47조 (별칙) 제48조 삭제 제48조의2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8개조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7장 71개조			

□ 법무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5.17 법률 제8442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5장 23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개조
실체규정	제2장 외국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외국인 정책의 기본계획) 제6조(연도별시행계획) 제7조(업무의 협조) 제8조(외국인 정책위원회)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5개조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0조(재한외국인등의 인권옹호)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지원)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자녀의처우)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제14조(난민의 처우)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16조(전문 외국 인력의 처우개선) 제17조(과거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있던 자 등의 처우)	8개조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제19조(세계인의 날)	2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보칙 규정	제5장 보칙	제20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제21조 (민간과의 협력) 제22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23조 (정책의 공표 및 전달)	4개조
5장 23개조			

□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3.21 법률 제8942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은 5장 28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건강검진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민의 권리 등)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 (공공과 민간의 협력)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개조
실체규정	제2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등	제8조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 (건강검진종합계획)	4개조
	제3장 국가건강검진	제12조 (국가건강검진의 시행) 제13조 (국가건강검진의 전담) 제14조 (검진기관의 지정) 제15조 (검진기관의 평가) 제16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7조 (청문) 제18조 (검진자료의 활용) 제19조 (국가건강검진사후관리)	10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20조 (조사·연구사업 등) 제21조 (국가건강검진비용의 청구 및 심사·지급 등)	
보칙 규정	제4장 보칙	제22조 (자료의 협조요청) 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4조 (국가건강검진의 비용) 제25조 (국가건강검진 수검자의료비지원 등) 제26조 (비용의 보조) 제27조 (위임 및 위탁)	6개조
벌칙규정	제5장 벌칙	제28조 (벌칙)	1개조
5장 28개조			

□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1.12 법률 제6150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7장 57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제7조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제8조 (국민의 참여)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9개조
실체규정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건강권 등) 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권리) 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제13조 (비밀보장) 제14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5개조

구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3장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16조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제1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제18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19조 (비용의 보조) 제20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제23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9개조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등	제24조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25조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등) 제26조 (보건의료인간의 협력) 제27조 (공공·민간보건의료기관의 역할분담 등) 제28조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	5개조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제29조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제30조 (응급의료체계)	15개조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제31조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제32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제33조 (노인의 건강증진) 제34조 (장애인의 건강증진) 제35조 (학교보건의료) 제36조 (산업보건의료) 제37조 (환경보건의료) 제38조 (식품위생·영양)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제39조 (주요 질병관리 체계의 확립) 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제42조 (정신보건의료) 제43조 (구강보건의료)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제44조 (보건의료시범사업) 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제46조 (분쟁조정 등) 제47조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부담) 제48조 (보건의료관련 산업의 진흥) 제49조 (한방 의료의 육성·발전) 제50조 (국제협력 등) 제51조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제52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9개조	
	제7장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	제53조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시책) 제54조 (보건의료정보화의 촉진) 제55조 (보건의료실태조사)	5개조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제56조 (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 제57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추진)	
7장 57개조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12.30 법률 제 5134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4장 35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 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 (국가 등과 가정) 제7조 (국민의 책임) 제8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8개조
실체규정	제2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13조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제14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제15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7개조
	제3장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제16조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위원회의 직무) 제19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제20조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제21조 (공청회) 제22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 제23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	8개조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4조 (운영 원칙) 제25조 (역할의 조정) 제26조 (민간의 참여) 제27조 (비용의 부담) 제28조 (사회보장 전달체계) 제29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0조 (정보의 공개) 제31조 (비밀의 보호) 제32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제33조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제35조 (권리구제)	12개조
4장 35개조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6.13 법률 제9121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은 6장 3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5개조
실체규정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의 임기와 의무) 제11조 (위원회의회의) 제12조 (전문위원회)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제14조 (자료 및 조사·분석요청)	9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3장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등	제15조 (긴급대응) 제16조 (생산·판매 등의 금지) 제17조 (검사명령) 제18조 (추적조사 등) 제19조 (식품 등의 회수)	5개조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제20조 (위해성 평가) 제21조 (신종식품의 안전관리) 제22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23조 (시험·분석·연구기관의 운용 등)	4개조
	제5장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제24조 (정보공개 등) 제25조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제26조 (관계 행정기관간의 상호협력) 제27조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4개조
	제6장 소비자의 참여	제28조 (소비자의 참여) 제29조 (신고인보호) 제30조 (포상금지급)	3개조
6장 30개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5.18 법률 제7496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4장 35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개조
실체규정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저출산 대책 제7조 (인구정책) 제7조의2 (인구교육)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15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9조 (모자보건의 증진 등)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2절 고령사회정책 제11조 (고용과 소득 보장) 제12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제13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제14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제15조 (평생교육과정보화) 제15조의2 (노후설계) 제16조 (취약계층노인 등) 제17조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제18조 (경제와 산업 등) 제19조 (고령 친화적 산업의 육성)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21조 (연도별시행계획) 제22조 (업무의협조)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관계행정기관의협조) 제27조 (국회보고)	8개조
보칙 규정	제4장 보칙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 (조사 및 연구) 제30조 (민간의 참여) 제30조의2 (인구의 날) 제31조 (국제교류의활성화) 제32조 (지원)	6개조
4장 35개조			

□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2.9 법률 제7166호로 제정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5장 38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건강가정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가족가치) 제8조 (혼인과 출산) 제9조 (가족해체 예방) 제10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 제11조 (정보제공) 제12조 (가정의 날)	12개조
실체규정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7조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8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19조 (교육·연구의 진흥) 제20조 (가족 실태 조사)	8개조
	제3장 건강가정사업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제23조 (가족단위 복지증진) 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제28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제29조 (가정의례) 제30조 (가정봉사원) 제31조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2조 (건강가정교육) 제33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13개조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개조
보칙 규정	제5장 보칙	제3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37조 (과태료)	2개조
5장 38개조			

□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12.30 법률 제5136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6장 43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여성발전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민의 책무)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적극적 조치)	6개조
실체규정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제7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0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제10조의2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여성정책조정회의) 제12조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3조 (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제14조 (여성주간)	9개조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제16조 (공직참여) 제17조 (고용평등) 제17조의2 (성희롱의 방지 등) 제18조 (모성보호의 강화) 제19조 (가정교육) 제20조 (학교교육) 제21조 (평생교육) 제21조의2 (여성인적자원의개발등) 제21조의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설립등) 제22조 (여성복지증진) 제23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제24조 (평등한 가족관계확립등) 제25조 (성폭력과 가정폭력예방) 제26조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제27조 (여성국제협력)	18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28조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제28조의2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 (기금의 설치 등) 제30조 (기금의 용도) 제31조 (기금의 회계기관)	3개조
	제5장 여성단체의지원등	제32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 제33조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33조의2 (여성인력개발센터의지정취소등) 제33조의3 (청문) 제34조 삭제	5개조
보칙 규정	제6장 보칙	제3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6조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2개조
6장 43개조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1.12.31 법률 제1477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6장 36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제6조 (가정의 책임) 제7조 (사회의 책임)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8조의2 (교육 및 홍보)	10개조
실체규정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제9조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제10조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8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13조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16조 (청소년의 달)	
	제3장 삭제	제16조의2 삭제 제16조의3 삭제 제16조의4 삭제 제16조의5 삭제 제16조의6 삭제 제16조의7 삭제 제16조의8 삭제	7개조
	제4장 청소년시설	제17조 (청소년시설의 종류)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3개조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0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제21조의2 (청소년지도사자격의 취소) 제22조 (청소년상담사) 제23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4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제24조의2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보수교육) 제25조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제26조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10개조
	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 (청소년단체의 역할) 제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등) 제30조 (수익사업)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41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42조 삭제 제42조의2 삭제 제42조의3 삭제 제42조의4 삭제 제42조의5 삭제	24개조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6조의2 삭제	
	제7장 청소년 활동 및 복지 등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8조 (학교교육등과의 연계) 제48조의2 (청소년방과후활동의 지원)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 삭제 제51조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제52조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7개조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조 (기금의 설치 등) 제54조 (기금의 조성) 제55조 (기금의 사용 등) 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4개조
보칙 규정	제9장 보칙	제57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제58조 (조세 감면 등) 제59조 (감독 등) 제60조 (포상) 제6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2조 (수수료 등) 제63조 (권한의 위임·위탁)	7개조
벌칙규정	제10장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3개조
10장 83개조			

□ 외교통상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1.25 법률 제9938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2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입법 체계>

조 명	비 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제4조 (기본원칙)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8조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국제개발협력주관기관) 제10조 (국제개발협력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11조 (연간국제개발협력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제12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제13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14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16조 (전문 인력의 양성) 제17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제18조 (국제개발협력통계자료) 제19조 (재외공관의 역할)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20개조
20개조	

□ 지식경제부

□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2.4 법률 제6654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은 6장 37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가표준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3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실체규정	제2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제4조 (각종 시책의 마련) 제5조 (국가표준심의회) 제6조 (심의회결사항의 적극추진 등) 제7조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5개조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선진화	제9조 (측정단위의 구분) 제10조 (기본단위) 제11조 (유도단위) 제12조 (국제단위계외의 측정단위) 제13조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제14조 (국가 교정제도의 확립) 제15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제16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제17조 (법정계량) 제18조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19조 (국가측정 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11개조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0조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제22조 (제품인증 등) 제22조의2 (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제22조의3 (신제품의 인증 등) 제22조의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제23조 (시험·검사기관 인정) 제24조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인증) 제25조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6조 (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7조 (출연금의 지원 등) 제28조 (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제29조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30조 (국가표준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14개조
	제4장의2 시험인증기관의 설립 등	제30조의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제30조의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등) 제30조의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등)	3개조
보칙 규정	제5장 보칙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1개조
6장 37개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지식경제부·법무부 공동소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6.1 법률 제11461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8장 69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3개조
실체규정	제2장 전자문서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제6조 (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제7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8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제9조 (수신확인) 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8개조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제13조 (영업비밀보호) 제14조 (암호제품의 사용) 제1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등) 제16조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제18조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18조의2 (인증의 표시) 제18조의3 (인증의 취소) 제18조의4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8조의5 (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제18조의6 (자동프로그램등을이용한공인전자주소의수집등금지) 제18조의7 (광고송신의금지)	13개조
	제4장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9조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제20조 (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21조 삭제 제22조 (전자문서·전자거래진흥담당기관)	4개조
	제5장 전자문서이용및전자거래의촉진과그기반조성	제23조 (전자문서이용의 촉진등) 제24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제25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술개발의 추진) 제26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전문인력의 양성) 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제28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통계의 실태조사) 제29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제30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제30조의2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10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p>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 센터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p> <p>제1절 공인전자문 서센터</p> <p>제2절 공인전자문 서중계자</p>	<p>제31조 (전자문서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 한지원)</p> <p>제31조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제31조의3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제31조의4 (시정명령) 제31조의5 (지정취소 및 과징금) 제31조의6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제31조의7 (전자문서내용의 추정 등) 제31조의8 (전자문서보관 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제31조의9 (준수사항) 제31조의10 (정기점검 등) 제31조의11 (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의12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제31조의13 (이용자의 정보보호) 제31조의14 (공인전자문서센터영업의 양도·양수 등) 제31조의15 (전자문서보관등영업의폐지) 제31조의16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31조의17 (수수료 등)</p> <p>제31조의18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 제31조의19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결격사유) 제31조의20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변경신고) 제31조의21 (정기점검 등) 제31조의2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취소) 제31조의23 (시정명령)</p>	<p>22개조</p>
	<p>제6장 전자문서·전자거래분 쟁조정위원회</p>	<p>제32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등) 제3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3조 (분쟁의 조정) 제34조 (자료요청 등) 제34조의2 (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35조 (조정의 성립) 제36조 (조정의 불성립) 제37조 (조정비용 등) 제37조의2 (비밀유지)</p>	
<p>보칙 규정</p>	<p>제7장 보칙</p>	<p>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40조 (상호주의) 제41조 (청문) 제42조 (별칙적용시의 공무원의제)</p>	<p>5개조</p>
<p>별칙규정</p>	<p>제8장 별칙</p>	<p>제43조 (별칙) 제44조 (별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p>	<p>4개조</p>
<p>8장 69개조</p>			

□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2.4 법률 제6654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6장 27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품안전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국민의 권리)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개조
실체규정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품사고등통계의 작성)	2개조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 수단	제9조 (안전성 조사 등) 제10조 (제품의 수거 등의 권고 등) 제11조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등) 제12조 (권고 등의 해제신청 등) 제13조 (사업자의 제품수거 등의 의무 등) 제14조 (내부자신고 등) 제15조 (제품사고관련 자료제출요청 등)	7개조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 조성	제16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7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18조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제19조 (제품안전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20조 (국제협력) 제21조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6개조
보칙 규정	제5장 보칙	제22조 (예비 안전기준 운영)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5조 (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개조
벌칙규정	제6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과태료)	2개조
6장 27개조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5.31 법률 제 7542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6장 47개 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제3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3개조
실체규정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 (소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 (의사의 공개) 제14조 (사무처의 설치) 제15조 (자문기구의 설치 등) 제16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개조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 (진실규명신청) 제20조 (신청의 방식) 제21조 (각하결정) 제22조 (진실규명조사 개시) 제23조 (진실규명조사 방법) 제24조 (동행명령 등) 제25조 (조사기간) 제26조 (진실규명결정) 제27조 (진실규명불능결정) 제28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15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29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30조 (위원등의 보호) 제31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제32조 (보고 및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제33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7개조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조치	제34조 (국가의 의무) 제35조 (불이익금지) 제36조 (피해 및 명예회복) 제37조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건의) 제38조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화해조치) 제39조 (가해자와 피해자·유족과의 화해) 제40조 (과거사연구재단설립)	
보칙 규정	제5장 보칙	제41조 (비밀준수의무) 제42조 (자격사칭금지) 제43조 (유사명칭사용금지)	3개조
벌칙규정	제6장 벌칙	제44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45조 (벌칙) 제46조 (형의감경 등) 제47조 (과태료)	4개조
6장 47개조			

□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1995.8.4 법률 제4969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6장 53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5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실체규정		제4조 (국가정보화추진의 기본원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정보화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국가정보화정책등의 조정) 제9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 (정보화책임관) 제12조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제13조 (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9개조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5조 (공공정보화의 추진) 제16조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17조 (민간분야정보화의 지원) 제18조 (지식·정보의 공유·유통) 제19조 (민간기관등과의 협력) 제20조 (정보통신 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제21조 (표준화의 추진) 제22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제23조 (국가정보화관련영역과의 연계) 제24조 (국제협력)	14개조
		제2절 지식정보 자원의 관리 및 활용	제25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제26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제27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방지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보장	제29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30조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제31조 (정보격차해소시책의 마련) 제32조 (장애인·고령자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제33조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제34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제35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제36조 (재원의 조달)	14개조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보장		제37조 (정보보호시책의 마련) 제38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 등) 제39조 (개인정보보호시책의 마련) 제40조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제41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42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5장 연차보고 등		제43조 (연차보고 등) 제44조 (지표조사)	5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45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4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7조 (과태료)	
	제6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제4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9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제50조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제51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확충을 위한 협조 등)	4개조
6장 53개조			

□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5.7.25 법률 제2776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39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민방위기본법 입법 체계>

조 명	비 고
제1조 (목적)	39개조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제4조 (재정상의 조치)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중앙민방위협의회)	
제7조 (지역민방위협의회)	
제8조 (총괄 및 집행기관)	
제9조 (협조)	
제10조 (민방위계획의 종류)	
제11조 (기본계획)	
제12조 (집행계획)	
제13조 (시·도계획)	
제14조 (시·군·구계획)	
제15조 (민방위준비)	
제15조의2 (점검 등)	
제16조 (출입·확인 등)	
제17조 (설치)	
제18조 (조직)	

조 명	비 고
제19조 (편성)	
제20조 (편성절차 등)	
제21조 (민방위대의 지휘·감독)	
제22조 (검열)	
제23조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제24조 (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제25조 (민방위훈련)	
제26조 (동원)	
제27조 (직장보장)	
제28조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29조 (보상 및 치료)	
제30조 (실비변상 등)	
제31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32조 (응급조치와 보상)	
제32조의2 (수습 및 복구)	
제33조 (민방위경보)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5조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과태료)	
39개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2.4 법률 제6654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2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입법 체계>

조 명	비 고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방향)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정치활동 등 금지 의무)	
제6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20개조	

조 명	비 고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8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제9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장려) 제12조 (포상)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보호) 제15조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제16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제17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 (벌칙)	
20개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3.11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10장 10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국민의 책무) 제6조 (안전점검의 날 등) 제7조 (안전관리현장)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8개조
실체규정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9조의2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제10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등)	17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10조의2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10조의3 (개선권고) 제11조 (지역위원회) 제12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제13조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제14조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등) 제15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등) 제15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심의·조정)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7조 (지역본부장의 권한 등) 제18조 (재난신고) 제19조 (종합상황실 등의 설치·운영) 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제21조 (해외재난상황의 관리)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집행계획) 제23조의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등과의 연계) 제24조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개조
	제4장 예방및대비	제25조의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제25조의3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제26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관리 등) 제2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제29조의2 (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실명관리) 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4조 (재난예방교육·홍보) 제34조의2 (재난대비활동지침의 작성 등) 제34조의3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등)	14개조
	제5장 응급대책	제35조 (물자·자재의 비축 등) 제36조 (재난사태선포) 제37조 (응급조치) 제38조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등) 제38조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등) 제38조의2 (재난예보·경보체계구축종합계획의 수립) 제39조 (동원명령 등) 제40조 (대피명령)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제42조 (강제대피조치) 제43조 (통행제한 등)	16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44조 (응원) 제45조 (응급부담) 제46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제4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 응급조치) 제48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제6장 긴급구조	제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51조 (긴급구조) 제52조 (현장지휘) 제5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5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55조 (재난대비능력보강) 제55조의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56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제57조 (항공기등조난사고시의 긴급구조 등) 제58조 삭제	11개조
	제7장 재난의복구	제59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61조의2 (재난합동조사단)	4개조
	제8장 재정 및 보상 등	제62조 (비용의 부담) 제63조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64조 (손실보상) 제65조 (치료 및 보상) 제66조 (국고보조 등)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7개조
보칙 규정	제9장 보칙	제69조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제70조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제71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71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등) 제72조 (연구개발사업성과의 사업화지원) 제72조의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73조 (재난대비훈련) 제74조 (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제74조의2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제76조 (재난관련보험 등의 개발·보급) 제77조 (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등) 제7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8조의2 (별칙적용시의 공무원의제)	14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별칙규정	제10장 별칙	제79조 (별칙) 제80조 (별칙) 제81조 (양별규정) 제82조 (과태료)	4개조
10장 100개조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10장 177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33개조
		제2절 과세권 등	

구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3절 지방세부과 등의 원칙	제17조 (실질과세) 제18조 (신의성실) 제19조 (근거과세)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4절 기간과 기한		제23조 (기간의 계산) 제24조 (기한의 특례)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7조 (납부기한연장의 취소)		
제5절 서류의 송달		제28조 (서류의 송달)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 (송달의 효력발생) 제33조 (공시송달)		
실체규정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16개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제44조 (연대납세의무) 제45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46조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9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장 부과		제50조 (수정신고) 제51조 (경정 등의 청구) 제52조 (기한 후 신고) 제53조 (가산세의 부과)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제55조 (납세의 고지) 제56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제57조 (납부기한의 지정)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제59조 (가산금)	12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4장 징수	제60조 (증가산금) 제61조 (독촉과 최고)	30개조	
		제1절 통칙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제63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64조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66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제2절 징수절차 등		제67조 (도세징수의 위임) 제68조 (징수촉탁) 제69조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면제) 제70조 (제3자의 납부) 제7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제72조 (공탁) 제73조 (납기전 징수) 제74조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납부) 제74조의2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납부) 제75조 (「국고금관리법」의준용)
		제3절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환급 가산금		제76조 (지방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제77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78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79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4절 징수유예 등		제80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 제81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철회) 제82조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제83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 제84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
		제5절 납세담보		제85조 (담보의 종류) 제86조 (담보의 평가) 제87조 (담보의 제공방법) 제8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89조 (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제90조 (담보의 해제)
	제5장 체납처분	제91조 (압류의 요건) 제92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93조 (압류의 해제) 제94조 (체납처분의 중지) 제95조 (체납처분유예) 제96조 (결손처분) 제97조 (사해행위의 취소) 제98조 (체납처분에 관한「국세징수법」의준용)	8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6장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우선	제99조 (지방세의 우선징수) 제100조 (직접채납처분비의 우선) 제101조 (압류에 따른 우선) 제102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6개조
제2절 물적납세의무 등		제103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제104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제7장 납세자의 권리		제105조 (납세자권리현장의 지정 및 교부) 제106조 (납세자보호관) 제107조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제108조 (세무조사권남용금지) 제109조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110조 (세무조사 대상자선정) 제111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12조 (세무조사기간) 제113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제114조 (비밀유지) 제115조 (정보의 제공) 제116조 (과세전 적부심사)	12개조
	제8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117조 (청구대상) 제118조 (이의신청)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120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121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122조 (보정요구) 제123조 (결정 등) 제124조 (결정의 경정) 제1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6조 (청구의 효력 등)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준용)	11개조
제9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칙	제128조 (처벌)		26개조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129조 (지방세의 포탈) 제130조 (채납처분면탈) 제130조의2 (장부의 소각·파기 등) 제130조의3 (성실신고 방해행위) 제130조의4 (명의대여행위 등) 제131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제131조의2 (명령사항 위반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제131조의3 (양벌규정) 제131조의4 (「형법」 적용의 일부배제) 제132조 (고발) 제133조 (공소시효의 기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133조의2 (범칙혐의자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제133조의3 (압수·수색영장) 제133조의4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33조의5 (심문조서의 작성) 제133조의6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제133조의7 (국가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33조의8 (보고 및 즉시고발) 제133조의9 (통고처분) 제133조의10 (공소시효의 중단) 제133조의11 (일사부재리) 제133조의12 (고발의무) 제133조의13 (압수물건의 인계) 제133조의14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134조 삭제	
	제9장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34조의2 (용어의 정의) 제134조의3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34조의4 (과세자료의 범위) 제134조의5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34조의6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요청) 제134조의7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4조의8 (비밀유지의무) 제134조의9 (과세자료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의10 (징역과 벌금의 병과)	9개조
보칙 규정	제10장 보칙	제135조 (납세관리인) 제136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137조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 제138조 삭제 제139조 (서류접수증교부) 제140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41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42조 (지방세업무의 정보화) 제142조의2 (지방세 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143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제144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145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147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14개조
10장 177개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8.4 법률 제7664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2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입법 체계>

조 명	비 고
제1조 (목적)	20개조
제2조 (정의)	
제3조 (기금의 설치제한)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10조 (기금운용계획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집행)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2조 (지출사업의 이월)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4조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제17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17조의2 (발전기금의 재원)	
제18조 (발전기금의 용도)	
제19조 (발전기금예의 예치)	
제20조 (발전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등)	
20개조	

□ 환경부(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0.8.1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5장 61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오염원인자책임원칙) 제8조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제9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제10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촉진) 제11조 (보고)	11개조	
실체규정	제2장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 등	제1절 환경기준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42개조
		제2절 기본적 시책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제17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8조 (시·도의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시·군·구의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제21조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제25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26조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촉진) 제2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제2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제2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제3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제31조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제32조 (경제적 유인수단) 제33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제34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제35조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제36조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 제37조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제고) 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제39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제40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41조 (환경영향평가)	
		제4절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제42조 (분쟁조정) 제43조 (피해구제)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5절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제45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6조 (회계의 세입) 제47조 (회계의 세출) 제4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49조 (차입금)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51조 (잉여금의 처리) 제52조 (예비비) 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54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56조 (사업자의 환경관리지원) 제57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4개조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제59조 (환경보전협회)	2개조	
보칙 규정	제5장 보칙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1조 (별칙적용시의 공무원의제)	2개조	
5장 61개조				

□ 국가보훈처(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5.31 법률 제7572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은 4장 3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가보훈 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7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국민의 책무) 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유지의무)	
실체규정	제2장 국가보훈발 전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국가보훈 발전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수립등) 제9조 (실천계획의수립·시행) 제10조 (비용의 일부보조)	10개조
		제2절 국가보훈 위원회 등	제11조 (국가보훈위원회)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 (조사·연구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16조 (국가보훈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제17조 (관계기관의장의 협조)	
	제3장 예우 및 지원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제19조 (예우 및 지원) 제20조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제21조 (권리의 보호)	4개조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제22조 (보훈 문화창달의 노력)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24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25조 (기념일·추모일지정 등) 제26조 (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27조 (국립묘지 등예의 안장 등) 제28조 (국제교류·협력의 강화) 제29조 (조사·연구에 관한 지원) 제30조 (민간의 참여조성)	9개조
4장 30개조				

□ 경찰청·해양경찰청(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2.22 법률 제11334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3장 11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개조
실체규정	제2장 경찰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증진기본계획의 수립등	제5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현황조사) 제7조 (경찰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정책심의위원회)	3개조
	제3장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8조 (의료지원) 제9조 (직원숙소지원) 제10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1조 (퇴직경찰공무원취업 등 지원)	4개조
3장 11개조			

□ 산림청(산림기본법)

「산림기본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5.24 법률 제6477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산림기본법」은 7장 3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산림기본법 입법 체계>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개조
실체규정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제6조 (산림기능의 증진) 제7조 (임업의 육성) 제8조 (산촌의 진흥) 제9조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정책)	5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등	제10조 (산림자원 및 임산물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제11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2조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3개조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제13조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제14조 (자연 친화적인 산림이용) 제15조 (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3개조
	제5장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등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제17조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제18조 (도시지역산림의 조성·관리) 제19조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제20조 (산림휴양공간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	5개조
	제6장 임업의 육성	제21조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제22조 (임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제23조 (임산물의 품질인증 및 유통구조개선) 제24조 (임업기술의 진흥) 제25조 (산림정보화촉진) 제26조 (임업관련단체의 육성)	6개조
	제7장 국유림관리 및 산촌진흥	제27조 (국유림의 관리) 제28조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제29조 (산촌진흥시책의 수립) 제30조 (도시와 산촌의 교류확대)	4개조
7장 30개조			

□ 소방방재청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2.22 법률 제11341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4장 18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토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제5조 (소방공무원의 의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개조
실체규정	제2장 소방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등	제7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8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의 수립·시행)	2개조
	제3장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 등	제9조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 제10조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1조 (소방보건의) 제12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3조 (퇴직소방공무원취업 등 지원)	5개조
	제4장 소방공무원보건안전 관리규정 등	제14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등) 제15조 (소방업무 환경측정 등) 제16조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제17조 (역학조사) 제18조 (질병 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수행의 제한)	5개조
4장 18개조			

□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5.29 법률 제6893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6장 36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소방기본법 입법 체계>

구분	장명	조명	비고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7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등) 제4조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등)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실체규정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 시설 등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제11조의2 (소방력의 동원)	5개조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警戒)	제12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 가연물의 저장·취급)	4개조
	제4장 소방활동 등	제16조 (소방활동)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제17조 (소방교육·훈련) 제1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 제17조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제17조의4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18조 (소방신호)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 제25조 (강제처분 등) 제26조 (피난명령) 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8조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17개조
	제5장 화재의 조사	제29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제30조 (출입·조사 등) 제31조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제32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등) 제33조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의 협력)	5개조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34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3개조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38조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제39조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제39조의2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4개조

구 분	장 명	조 명	비 고
	제7장의2 소방산업의육성·진흥 및 지원 등	제39조의3 (국가의 책무) 제39조의4 삭제 제39조의5(소방산업과관련된기술개발등의지원) 제39조의6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수행) 제39조의7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5개조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제40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제41조 (협회의 업무) 제42조 (회원의 자격) 제43조 (협회의 정관) 제44조 (협회의 운영경비)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8개조
보칙 규정	제9장 보칙	제48조 (감독) 제49조 (권한의 위임)	2개조
벌칙규정	제10장 벌칙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57조 (과태료)	8개조
10장 68개조			

□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66.12.6 법률 제1840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28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입법 체계>

조 명	비 고
제1조 (목적)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28개조

조 명	비 고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제5조 (창업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제6조 (경영합리화와 기술향상) 제7조 (판로확보) 제8조 (중소기업사이의 협력) 제9조 (기업구조의 전환) 제10조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제11조 (사업영역의 보호) 제12조 (공제제도의 확립) 제13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제14조 (국제화의 촉진) 제15조 (인력확보의 지원) 제16조 (소기업대책) 제17조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제18조 (법제 및 재정조치) 제19조 (금융 및 세제조치) 제20조 (중소기업육성계획수립 및 연차보고) 제21조 (중소기업실태조사) 제22조 (중소기업움부즈만의 운영) 제23조 (의견제출 등) 제24조 (행정지원 등) 제25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26조 (중소기업주간) 제27조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제28조 (과태료)	
28개조	

【부 록 8】

국어기본법 개정안 (제1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하 “다문화가족”이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 6 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 확산 및 국어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공공언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국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12.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3.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 7 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과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관(이하 “국어전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등 및 제2항에 따른 국어전문관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등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와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경우에는,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이하 “어문규범 영향평가”라 한다)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문규범 영향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

-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국어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어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어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 외국인,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어교육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 방법·절차·내용·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 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⑧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⑨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그 밖에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 관련 상담, 국어의 발전과 보급, 국어 사용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는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록 9】

국어기본법 개정안 (제2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0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하 “다문화가족”이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 6 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국어심의회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 확산 및 국어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공공언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국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12.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3.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 7 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올바른 국어 사용

제10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어심의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⑤ 국어심의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어심의회의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의 심의는 국어심의회의의 심의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와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경우에는,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이하 “어문규범 영향평가”라 한다)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문규범 영향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14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관(이하 “국어전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등 및 제2항에 따른 국어전문관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 제15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 외국인,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어교육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 방법·절차·내용·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⑧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⑨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국어능력의 향상

- 제21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어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그 밖에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한국어교육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어교육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 방법·절차·내용·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 관련 상담, 국어의 발전과 보급, 국어 사용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25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는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록 10】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 1 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민의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 나. 국민의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 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 실태
 - 라. 가요·영화·광고·상호 및 상표 등의 언어 사용 실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3 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 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관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어문규범 영향평가) ①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어문규범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 가. 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 나. 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
 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 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나이·성(性)·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어문규범 영향평가는 평가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변경 전후의 어문규범 모두를 평가할 수도 있고, 변경 후의 어문규범만이나 변경 전의 어문규범만을 평가할 수도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국어심의회 위원 임기)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 조(국어심의회 회의) ①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 7 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 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
-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 라.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마. 한자의 자형(字形)·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 바. 어문규범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 나.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수당 등) 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협의회 설치·구성 등) 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 및 관련 학술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고나 고시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린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구분)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 외국인,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 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단체)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및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제15조(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3조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를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업무 수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④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것
 3.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
- ⑥ 부정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⑦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⑧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이나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의2 제6항에 따른 세종학당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관,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2.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3. 한국어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된다.

제2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이 법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수익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한글날 기념행사) ① 정부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표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국어능력 검정시험 업무의 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것
3. 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어능력 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지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 전문 인력을 갖출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나. 상근 상담원 2명 이상: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적은 서류

③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에 상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록 11】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 개정안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의 위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어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을 때

제 3 조(위원의 결원 보충 및 임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4 조(전문 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영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위원 일부로 하여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소위원회와 합동으로 소위원회(이하 “합동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5 조(위원장 등 선출) ①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합동전문소위원회(이하 “합동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 6 조(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의 업무 등) ① 필요할 때 소위원회 또는 합동소위원회는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발굴하거나 이를 사전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② 소위원회 또는 합동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심의 안건을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하려면 소위원회 또는 합동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1명이 심의회나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의 상정 이유 및 검토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 7 조(회의의 소집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내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내 합동소위원회, 분과위원회 간 합동소위원회 등의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내 합동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 합동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내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내 합동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는 소집권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개최 시기, 개최 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집통지서를 위원들에게 발송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회의 소집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소집 통지서 대신 유선, 전자우편 등의 다른 방법으로 소집 통보를 할 수 있다.

⑤ 모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⑥ 회의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없거나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서로 대행한다.

제 8 조(회의의 의결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 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9 조(회의록 작성 등) ①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회(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제출·설명의 요구 등) ① 심의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소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영 제8조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에 심의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의 지명) ① 영 제9조에 따라 심의회의 간사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이 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에 따라 언어정책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어문규범분과위원회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이 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중에서 국어심의회 운영 담당자가 된다.

④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중에서 국어심의회 운영 담당자가 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임무) ① 영 제9조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서식 1] 위촉장

[서식 2] 국어심의회 소집 통지서

[서식 3] 심의회(분과위원회) 회의록

[서식 4]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